Ⅰ. 반론보도청구사례

청구인들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내용 자체만으로 평가할 때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론보도하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9. 4. 22.자 판결 (99카합600)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길기봉 부장판사)는 1999년 4월 22일 국제크리스천연합과 이 단체 총재 겸 목사인 정 씨가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 소송에서 피청구인은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법 제41조 제3항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란 그 반론보도의 내용이 사회 일반에 걸쳐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라면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므로 청구인들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내용 자체만으로 평가할 때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보도할 수 없다고 한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SBS가 1999년 1월 7일과 8일 8시 뉴스를 통해 '탈퇴신도 납치극', '종교집단 성 파문'이라는 제하로 청구인 단체 소속 신도들이 탈퇴하려는 신도에 대한 납치극을 벌였고, 목사인 청구인이 여신도들과 집단 성 관계를 가졌다는 방송을 하자 청구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99서울중재40)을 하였는데, 중재결과 중재불성립결정되자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

사건 : 99카합600 반론보도
청구인 : 1. 국제크리스천연합
대표자 총재
2. 정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청구인 : 주식회사 서울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의 2
대표이사 송 도 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찬진, 강 훈, 서 현, 홍지욱, 김재호, 최혜리
변론종결 : 1999. 4. 1.

주문 : 1. 피청구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에 방송하는 21:00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화면 오른쪽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제1 기재의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청구인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위 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각 금 5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청구인들의, 나머지는 피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후 최초로 방송되는 SBS 텔레비전의 '8시 뉴스' 프로그램의 첫머리(8시 정각)에서 상단 화면에는 두 줄로 "국제크리스천연합 정 총재의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제2 반론보도요구문을, 위 방송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SBS 텔레비전의 '8시 뉴스' 프로그램의 첫머리(8시 정각)에서 상단 화면에는 두 줄로 "국제크리스천연합 정 총재의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제3 반론보도요구문을, 각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천천히 표시하면서(글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각 진행자로 하여금 각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각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만약 피청구인이 위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청구인은 위 각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각 이행완료일까지 각 청구인들에게 각 금 1억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청구인 국제크리스천연합은 예수교대한감리회(진리)교단 산하의 기독청년대학생선교단체이고, 청구인 정 은 청구인 국제크리스천연합의 총재 겸 목사이며, 피청구인은 방송매체를 운영하면서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1999. 1. 7.자 보도내용
피청구인 방송사는 1999. 1. 7. 20:00부터 방송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8시 뉴스'에서 「탈퇴신도 납치극」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즉, 피청구인 방송사 소속의 앵커는 서두에서 "한 신흥 종교단체에서 탈퇴하려 한 20대 여성이 친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간신히 풀려났습니다. 이 피해 여성은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겪은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이어서 이를 취재한 기자는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으슥한 골목길, 갑자기 건장한 남자들이 나타나더니 28살 황모 여인을 납치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행선지는 충남 금산, 동서크리스천이라는 종교집단입니다. 납치된 황씨는 승합차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멈추는 동안 중앙분리대를 뛰어 탈출하려다가 전치 3주의 폭행만 당했습니다. …황씨는(동서크리스천연합 성전에) 6개월 가량 머물면서 종교를 믿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교주 정모 씨의 기이한 행동에 염증을 느껴 최근 탈퇴를 결행했고 갖은 회유와 협박에 시달려 온 끝에 납치극을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서크리스천연합은 지난 80년 JMS라는 이름으로 개설한 신흥종교집단으로 금산의 본부 안에 100여 명이 넘은 젊은 여신도들을 집단

으로 거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납치극을 벌인 32살 김모 씨 등 4명을 폭행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종교집단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그 배후와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보도를 위 황모 여인과의 인터뷰장면과 함께 방영하였다.

다. 1999. 1. 8.자 보도내용

피청구인 방송사는 또 1999. 1. 8. 20:00부터 방송된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종교집단 성파문」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였다.

즉, 피청구인 방송사 소속의 앵커는 서두에서 "어제 여덟 시 뉴스에서 한 종교집단에서 탈출하려다가 곤혹을 당한 여신도 얘기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직후부터 많은 제보가 잇달았는데 그 가운데는 이 종교 여신도들과 성 관계를 갖는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이어서 이를 취재한 기자는 "교단을 떠난 여신도를 재교육시켜야 한다며 납치극을 벌였던 피의자들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충남 금산의 교단본부를 찾았습니다. 교주가 태어난 자리에 2만여 평의 산을 깎아 만들고 있는 성전은 그 화려함을 자랑하며 10년째 공사 중이었습니다. 지난 80년 JMS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이 교단은 이미 수 차례 이름을 바꿔 현재 동서크리스천연합으로 불리며 신도 수만 해도 전국에 10여 만명에 이릅니다. …총재 또는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교주가 다니는 곳에는 항상 여신도들이 그림자처럼 따라 다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정총재가 수년간 여신도들과 집단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합니다. 평소 젊은 여신도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리며 모델처럼 예쁜 여신도들만 골라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다는 주장입니다."라는 보도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전 신도들과의 인터뷰 장면과 함께 방송하였다.

계속하여 위 취재기자는 "교단에서 만든 각종 비디오 홍보들에서는 하느님보다 정총재에 대한 존경과 숭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단 내에서는 정총재가 신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여신도들은 총재와의 성관계가 마치 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설명입니다. 신도 10만명이 넘는 대규모 신흥종교집단,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정총재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번 납치사건의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라는 보도를 "정　　은 재림예수이고 1999년 7월 14일날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정　　)이 재림예수라면 나는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닐까? 그럴 바엔 나의 모든 것을 바치자라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거죠"라는 등의 말을 하는 전 신도와의 인터뷰방면과 함께 방영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방송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위 방송프로그램에서 공표된 보도내용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방송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별지 제2, 3 반론보도요구문의 내용 중 당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별지 제1 반론보도문을 방송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이 사건 반론보도심판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론보도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인 방송법 제41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란 그 반론보도의 내용이 사회 일반에 걸쳐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라면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그 내용 자체만으로 평가할 때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청구인들의 반론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별지 제1 반론보도문의 방송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피청구인이 반론보도를 명한 기간 내에 반론보도문을 방송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그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금 5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4. 22.

재판장 판사 길 기 봉

판사 이 건 배

판사 고 창 후 □

어린이집 변칙운영 실태를 증언한 학부모에게 보복을 가했다는 취지의 기사로 인해 어린이집 원장인 원고가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9. 5. 12.자 판결 (99가합2430)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소순무 부장판사)는 1999년 5월 12일 청룡어린이집 원장인 이 씨가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 소송에서 “사실적 주장의 공표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한겨레신문사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한겨레신문이 1999년 2월 2일자 25면에 『어린이 집 ‘비리’ 증언에 분풀이』라는 제하로 구의회의 국·공립 어린이집 감사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비리사실이 적발되자 구의회는 원고와 자모회 간부들과의 자리를 마련했고, 이에 자모회 간부들이 평소 생각해 온 어린이집의 변칙운영 실태를 증언하자 원고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증언한 학부모들한테는 재등록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는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1999년 2월 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99서울중재38)을 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이 내려졌으나 한겨레신문측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판결문

사건 : 99가합2430 반론보도
원고 : 이
피고 : 한겨레신문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의 25
대표이사 권 근 술
변론종결 : 1999. 4. 28.
주문 : 1.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한겨레신문 제25면 우측상단에 상자기사로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이 사건 대상기사인 「어린이 집 '비리' 증언에 분풀이」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은 위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1회 게재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 : 1. 기초사실
피고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한겨레신문 1999. 2. 2.자 제25면에 「어린이 집 '비리' 증언에 분풀이」라는 제목을 단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두 딸을 기르며 집에서 부업을 하는 주부 변 (33·서울) 씨에게 요즘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 3년 동안 집 근처 청룡어린이집에 두 딸을 보내 왔지만 새 학기가 시작되면 아이들을 이 곳에 맡길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변씨의 걱정은 지난해 11월 관악구의회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면서 비롯됐다. 구의회는 청룡어린이집(원장 이)이 보육료 외에도 사진값이나 교재비를 부당하게 챙긴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구의회는 원장 이씨가 참석한 가운데 자모회 회장 등으로부터 얘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때 자모회 간부들은 평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온 어린이집의 변칙운영 실태를 증언했다고 한다.
그러자 어린이집 이씨는 자모회 회장을 비롯해 증언을 한 부모들한테 재등록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에 협조한 데 대한 '보복'인 셈이다. 변씨도 원장한테 "애들 보기가 그전 같지 않으니 더 좋은 데를 알아 보라"는 통보를 받았다. 변씨는 증언을 하지 않았지만 자모회의 홍보담당으로 평소 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을 자주 지적해 원장의 눈밖에 나 있었다.
이런 통보를 받고 변씨는 관할 관악구청에 호소를 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구청쪽은 "재등록 여부는 원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변씨는 "가난한 서민을 위해 설립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장의 눈밖에 났다고 아이

들을 안 받겠다고 하니 이해되지 않는다.”며 당연히 감독관청인 구청이 나서 어린이집의 이런 태도를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 판단

가. 반론보도청구권의 발생

살피건대, 앞에서 본 피고 발행의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보도내용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의 존부에 관한 사실적 주장임이 분명하며, 이러한 주장이 공표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할 것이다.

나. 반론보도의 내용과 크기 및 게재 방법

(1)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고의 기사 내용과 이로 인해 침해된 원고의 법익, 그리고 허위 보도내용 중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박적 사실의 진술을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반론보도의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함이 상당하다.

(2) 또한 위 반론보도문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한겨레신문에 게재하되, 위 신문 제25면 우측상단에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이 사건 기사인 「어린이 집 ‘비리’ 증언에 분풀이」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은 이 사건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1회 게재하는 것이 원보도문과 균형을 이루는 범위 안에서 반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5. 12.

재판장 판사 소 순 무

판사 조 양 희

판사 최 창 영 □

신청인에게 해명 또는 반박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신청인은 위 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9. 5. 25.자 판결 (98카합2593)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999년 5월 25일 경기북부노동정책연구소 소장 김 씨가 경기북부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 소

송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해명 또는 반박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신청인은 위 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주간 “의정부시민신문”, “동두천신문”, “양주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경기북부신문사는 1998년 11월 2일 위 각 신문에『적반하장격의 고발』이라는 제하로 동두천 환경미화원 임금착복 및 시예산 횡령조사 범시민대책위원회 소속원인 신청인이 동두천 환경미화원 임금횡령의혹을 조사하던 중 환경미화원들이 연차수당 미지급분으로 시로부터 받은 돈에서 걷은 불우이웃돕기 및 수재의연금 1백만원을 받아 사용하였고, 이를 취재한 기자에게 폭언을 하며 사이비기자로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자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기사와 관련 신청인은 1998년 11월 1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으나(98경기중재49, 51, 53) 중재결과 중재불성립결정을 받은 바 있다.

판결문

사건 : 98카합2593 반론보도청구
신청인 : 김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기북부신문사
의정부시 의정부4동 237의 20
대표이사 신 현 섭
변론종결 : 1999. 4. 20.
주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각 주간신문 “의정부시민신문”, “동두천신문”, “양주신문”의 본문 제2면 우측 상단에 “‘기자수첩-적반하장격의 고발’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30급 고딕체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고, 그 아래 부분에는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문 본문을 위 각 주간지의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의 이름을 16급 명조체 활자로 각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약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재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각 주간신문 “의정부시민신문”, “동두천신문”, “양주신문”을 발행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주 각 신문마다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동두천신문, 양주신문, 의정부시민신문의 각 제2면 우측 상단 사설란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반론보도문 대제목 부분은 32포인트 고딕체활자로 가로로 기재하고,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반론보도신청인의 이름은 26포인트 고딕체활자로 각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만료 익일로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매일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 1. 인정사항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 1, 4, 6호증, 소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원의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신청인은 경기북부노동정책연구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1998. 6.경 동두천시가 청소대행업체에게 지급한 대행수수료에 포함된 인건비 중 퇴직금 등의 일부분이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횡령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동두천민주시민회,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북부지구협의회, 북부노동조합, 민주택시연맹 경기북부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동두천양주지회, 환경미화원 상조회 등과 같이 동두천시 환경미화원 임금착복 및 시예산 횡령조사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그 진상조사 활동을 벌여왔고, 피신청인은 주간 "의정부시민신문", "동두천신문", "양주신문"을 발행하는 회사이다.
나. 피신청인은 자신이 발행하는 위 3종류의 주간신문의 각 1998. 11. 2.자 2면의 우측상단 기자수첩란에 약 35포인트 크기의 활자로 "적반하장격의 고발"이라는 제목을 붙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가로쓰기 상자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보도하였다.
다. 이 사건 기사의 요지
① 동두천 환경미화원임금횡령의혹을 조사하는 중에 "동두천 환경미화원 임금착복 및 시예산 횡령조사 범시민대책위원회" 소속의 김아무개 씨가 환경미화원들이 시에서 연차수당미지급분으로 받은 돈 가운데 금 1,000,000원을 받아 사용하였다.
② 이 사실을 알고 취재를 하는 한승주 기자에게 김아무개 씨는 사실을 부인하며 폭언을 하다가 사실이 드러나자 "내가 대책위 일로 돈 썼는데 무슨 문제있냐"며 큰소리를 쳤다. 또한 김아무개 씨는 단지 사생활을 침해하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자에 대하여 동두천시에 민원을 내고 사이비언론기자라고 고발했다.
③ 환경미화원들이 모은 돈은 연차수당으로 받은 돈 중 10%를 불우이웃돕기 내지는 수재의연금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걷은 돈이다.
④ 이러한 김아무개 씨의 행동은 시민단체의 소장을 맡고 있는 공인으로서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투명성 및 노동단체에 속한 노동운동가로서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행동이다.
라. 이에 신청인은 1998. 11. 17.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를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접수하였으나 (98경기중재 49, 51, 53호), 1998. 11. 26. 중재불성립결정을 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기사 내용 중 신청인과 관련한 위 1.의 다.항 전체의 기사내용은 신청인에 관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이 사건 기사내용 중 위 1.의 다.항 ④ 부분은 사실적인 주장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나머지 ① 내지 ③ 부분과 같이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문맥은 신청인이 불우이웃돕기 내지는 수재의연금으로 환경미화원들이 걷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사실적인 주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신청인이 그러한 기사에 대해 신청인에게 해

명 또는 반박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신청인은 일용 위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이 포함된 기사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는 진실에 부합하고 신청인이 청구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반론보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전 입증으로도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신청인이 청구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청인의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및 게재방법
신청인 회사의 반론보도의 내용은 위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 신청인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고, 그 반론보도문의 크기 및 게재방법은 이 사건 보도의 활자크기 및 자수 등에 비추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며, 간접강제신청부분에 관하여는 주문 제1항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주문 제2항과 같이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5. 25.
재판장 판사 강 영 호
판사 홍 동 기
판사 박 종 욱 □

사실적 주장이 공표된 이상 다른 사람의 발표내용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서울지방법원 1998. 11. 13.자 판결 (98카기10294)
서울고등법원 1999. 5. 27.자 판결 (98나64969)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1999년 5월 27일 서울성락교회와 교회 담임목사인 김 목사가 「기독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유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심판 소송 항소심에서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반론보도청구권의 목적이 언론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

반 대중에게 다양한 의견을 제공,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사실적 주장이 공표된 이상 다른 사람의 발표내용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된다"며, "이 사건 기사의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 김 과 그가 담임목사로 있는 신청인 교회가 기독교 이단의 반종교적, 반윤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기독신문은 1998년 8월 5일자에 『한국이단 '교주 신격화'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일반적인 한국 내 기독교 이단들의 특징을 열거하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귀신론을 이단의 예로서 소개하자 신청인들은 1998년 9월 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신청을 제기했고(98서울중재180),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중재결정이 내려졌으나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문

사건 : 98카기10294 반론보도청구심판
신청인 : 1. 서울성락교회
대표자 담임목사
2. 김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홍우
피신청인 :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유지재단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7의 3
대표이사 신세원
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진효근, 김기열
변론종결 : 1998. 10. 30.
주문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독신문의 제9면 좌측상단에 상자기사로 별지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은 제목 부분을 사진식자 32급 고딕체 활자로 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 : 1. 인정사실
가. 신청인 김 은 1969. 신청인 서울성락교회(이하 신청인 교회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현재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 재단법인 베뢰아아카데미 진흥재단 이사장, 사단법인 기독인 귀순(월남)용사 선교회 총재, 베뢰아대학원 대학교 총장 등으로 재직중이고, 피신청인은 그 기관지로 기독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기독신문 1998. 8. 5.자(1214호) 제9면에 "한국이단 '교주 신격화' 특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피신청인 총회 산하 이단조사연구회의 세미나에서 신청외 심창섭이 강연한 내용을 요약한 형식의 위 기사에서는, 일반적인 기독교 이단들의 특징을, 교주의 신격화와 완전한 지배구조, 종말론적 사관, 성문란은 물

론 가정파괴 등 반사회적 행동의 정당화 등으로 규정하고, 한국내 기독교 이단들은 위와 같은 특징 이외에도 귀신론 강조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신청인 김　　과 그가 주장하는 귀신론을 이단의 예로서 소개하고 있다.

2.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발행한 기독신문에 공표된 위 기사는 기독교내 이단들의 반종교적, 반윤리적 특징 및 식별법을 나열한 후 귀신론을 주장하는 신청인 김　동을 한국내 이단의 한 사람으로 소개함으로써, 신청인 김　　과 그가 담임목사로 있는 신청인 교회가 이단으로서, 앞에서 나열된 반종교적, 반윤리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이 그러한 보도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해명 또는 반박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신청인들은 일응 위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며,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반론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은 위 기사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반론보도의 내용은, 신청인이 구하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고, 그 반론보도문의 게재방법은 이 사건 기사부분의 위치, 활자크기 및 자수(字數) 등에 비추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1998. 11. 13.

재판장 판사 신성철

판사 박성수

판사 곽병훈

2심 판결문

사건 : 98나64969 반론보도청구심판

신청인, 피항소인 : 1. 서울성락교회

대표자 담임목사 김

2. 김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이홍우

피신청인, 항소인 :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유지재단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7의 3

대표이사 신 세 원

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진 효 근

변론종결 : 1999.4.29.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8. 11. 13. 선고 98카기10294 판결

주문 : 1.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신청인들의 당심에서의 신청취지 확장에 따라, 만약 피신청인이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기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피신청인이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기독신문”을 발행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월 금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신청취지확장비용 포함)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제1심 판결이 송달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독신문”의 제9면 좌측상단에 상자기사로 별지 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을 사진식자 32급 고딕체 활자로 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만약 피신청인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피신청인이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기독신문”을 발행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월 금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신청인들은 당심에서 간접강제신청부분을 확장하였는데, 이는 확장된 신청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것이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신청인 김 은 1969년 신청인 서울성락교회(이하 신청인 교회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현재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 재단법인 베뢰아아카데미 진흥재단 이사장, 사단법인 기독인 귀순(월남)용사 선교회 총재, 베뢰아대학원 대학교 총장 등으로 재직중이고, 피신청인은 그 기관지로 주 1회 “기독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기독신문” 1998. 8. 5.자(1214호) 제9면에 “한국이단 ‘교주 신격화’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목록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피신청인 총회 산하 이단조사연구회의 세미나에서 신청외 심창섭이 강연한 내용을 요약한 형식의 이 사건 기사에서는, 일반적인 기독교 이단들의 특징을, 교주의 신격화와 완전한 지배구조, 종말론적 사관, 성문란은 물론 가정파괴 등 반사회적 행동의 정당화 등으로 규정하고, 한국내 기독교 이단들은 위와 같은 특징 이외에도 귀신론 강조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신청인 김 과 그가 주장하는 귀신론을 이단의 예로서 소개하고 있다.
2. 판단
가. 반론보도청구의 당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기독교내 이단들의 반종교적, 반윤리적 특징 및 식별법을 나열한 후 귀신론을 주장하는 신청인 김 을 한국내 이단의 한 사람으로 소개함으로써, 신청인 김 과 그가 담임목사로 있는 신청인 교회가 이단으로서, 앞에서 나열된 반종교적, 반윤리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적 주장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그러한 보도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해명 또는 반박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신청인들은 일응 위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며,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반론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

한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은 위 기사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가 연구비판의견 또는 견해에 관한 발표를 요약, 인용한 것으로서 반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반론보도청구권의 목적이 언론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다양한 의견을 제공하여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사실적 주장이 공표된 이상 다른 사람의 발표내용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기사는 그 전반부에 기독교 이단의 반종교적, 반윤리적 특징에 대하여 열거한 후 신청인 김　　과 그의 귀신론을 이단의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바, 이러한 전후의 문맥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 김　　과 그가 담임목사로 있는 신청인 교회가 앞에 열거한 기독교 이단의 반종교적, 반윤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사실적 주장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신청인들의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및 게재방법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의 내용은, 신청인들이 구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고, 그 반론보도문의 게재방법은 이 사건 기사 부분의 위치, 활자크기 및 자수(字數) 등에 비추어 "기독신문"의 제9면 좌측상단에 상자기사로 별지 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을 사진식자 32급 고딕체 활자로 하여 게재하기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반론보도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간접강제신청부분에 관하여는 위 반론보도문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주문 제2항과 같이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5. 27.

재판장 판사 김재진

판사 박순성

판사 최규홍 □

보도내용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프로그램에 의해 원고 종중이나 우암 송시열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8. 8. 12.자 판결 (97가합29791)

서울고등법원 1999. 2. 4.자 판결 (98나47919)
대법원 2000. 2. 25.자 판결 (99다12840)

사실개요

대법원 제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2000년 2월 25일 우암 송시열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인 은진송씨 송자각하종친회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문제삼는 내용이 방송법 제41조 소정의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보도내용과 원고 종중 사이에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며,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에 의해 원고 종중이나 우암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보도내용이 조선후기 역사에 관한 고찰로, 당시의 상황을 토론회 형식으로 극화하거나 사료를 요약하여 방영한 것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 종중이 거론된 바가 없고, 우암이 원고 종중의 선조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현도 사용된 바 없으며, 특히 안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우암의 견해가 성급한 효종의 견해보다 신중하고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에 의하여 우암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KBS는 1997년 11월 18일 「TV조선왕조실록」에서 조선 효종대에 논의된 북벌론의 제기와 추진경과 및 의의에 대한 내용의 방송을 하였는데, 원고 종중은 위 보도에서 우암 송시열이 북벌 실패를 두려워하였고 나아가 북벌을 반대하는 신하의 대표인 것처럼 묘사되었다며 1997년 12월 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신청을 하였고(97서울중재282), 중재불성립결정 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1,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 판결문

사건 : 97가합29791 반론보도
원고 : 은진송씨 송자각하 종친회
대표자 공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정상학, 이유영, 김동섭, 이 율
피고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박권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경 국
변론종결 : 1998. 7. 15.
주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매주 화요일 22:00부터 23:00 사이에 방송하는 'TV 조선왕조실록' 방송프로그램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를 하라는 판결.
이유 :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기록에 첨부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에 따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피고는 1997. 11. 18. 22:00경부터 23:00경까지 'TV 조선왕조실록'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효종대에 논의된 북벌론의 제기 및 추진 경과와 그 의의에 대한 문제제기, ② 북벌을 위해 효종이 추진한 인재등용, 군제개혁 및 군사훈련의 내용, ③ 효종의 군사적 북벌에 대하여 민생을 이유로 반대하는 대신들과의 대화를 극화(劇化)한 내용, ④ 당시 조선의 경제 상황에 대한 역사적 고찰, ⑤ 질문자들이 극중 인물인 효종과 송시열에게 북벌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토론을 극화한 <북벌 대토론회>, ⑥ 동북아시아의 당시 정세를 통한 북벌의 실행가능성, ⑦ 북벌 추진에 대한 백성들의 입장, ⑧ 효종과 송시열 사이의 기해독대(己亥獨對)를 극화한 내용, ⑨ 북벌론의 역사적 의의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송시열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친회이고, 위 방송 내용 중 송시열이 언급된 방송 내용은 ②, ⑤, ⑧로서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효종이 봉림대군 시절 그의 사부로서는 윤선도, 최은, 윤빈, 신석번, 심대부 등이 있었는데 송시열도 인열왕후 사후 병자호란까지 7개월 동안 봉림대군과 사제관계를 맺었다.
송시열은 사헌부장령의 승임을 사양하면서(효종 원년 :1649)에 효종에게 13조의 상소를 올렸는데(이를 己丑封事라고 한다) 그 중 하나가 '정사를 닦아 오랑캐를 물리칠 것(修政事以攘夷狄)'이다.
라. 효종은 김자점의 북벌밀고사건 후 낙향해 있던 송시열을 이조판서로 임명한 뒤(효종 10년 : 1659)에 독대하였는데, 독대의 첫부분은 효종이 동북아시아에 대한 국제 정세판단을 언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⑥ 북벌의 실행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로 상세하게 인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별지 2. 방송내용의 (기해독대) 기재 부분으로 요약되어 방송되었다. 위 독대 뒤 왕자(현종)를 통해 그와 북벌에 관한 밀찰을 교신하였다.
마. 또한 효종은 송시열을 이조판서로 임명한 해 겨울에 그에게 초구(담비 가죽으로 만든 옷)을 하사하였다.
2. 원고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효종의 북벌은 당시 비밀리에 추진되었으므로 그 추진 과정은 위에서 든 기축봉사, 악대설화, 북벌밀찰, 초구발 등의 자료에 의할 수밖에 없는 바, 이들 자료와 효종과 우암(尤菴) 송시열의 사제 관계 등을 종합하면 우암이 북벌에 적극 찬성하였고, 효종도 북벌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우암과 상의하고, 우암이 북벌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건의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우암이 북벌의 실패를 두려워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북벌을 반대하는 신하의 대표인 것처럼 방영함으로써 우암의 후손들의 명예가 훼

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반론의 보도를 구하고 있다.
나. 우암의 북벌론에 대한 학설
우암이 북벌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국내외 사학자들의 몫으로 돌리고, 여기에서는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연구 논문(갑 제10호증)에 나타난 것을 요약·제시하는 것에 그친다.
-존왕양이석 준추대의와 화이의식적 명분론에 바탕을 둔 우암의 북벌론은 대청무력정벌(對淸武力征伐)을 주장하는 효종의 북벌론과 그 실행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인식의 차이가 있다.
첫째, 우암은 효종에게 북벌에 앞서 수신(修身)에 정진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북벌사업의 우선 순위로 수신(修身)을 꼽았다.
둘째, 우암은 명(明)에 대한 의리의식에서 북벌의 당위성을 주장하였고, 효종은 삼전도(三田渡)의 치욕을 씻고자 함이 우선이었다.
셋째, 우암 등 사림세력은 당시 상황을 평화시대로 파악하여 '안민(安民)'을 우선으로 생각한 것에 반하여, 효종은 위기상황으로 인식하여 '양병(養兵)'을 우선으로 생각하였다.
다. 피고의 방송 내용이 우암 또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1) 원고가 들고 있는 악대설화(갑 제1호증), 내사초구발(갑 제3호증), 기측봉사(갑 제4호증)의 각 기재를 면밀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엿볼 수 있다.
먼저, 우암은 정유봉사(1657. 8.)에서 군대를 양성하는 것과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서로 배치된다(養民養兵必相妨)고 상소를 하였고, 악대설화에서 효종이 득대시 우암의 위와 같은 상소 내용에 대한 대책을 묻자, 우암은 주나라 제도인 보호법(保五法 : 양민 3명 중 1명만 병사로 양성하고, 나머지는 베를 내어 이로써 병사를 양성하는 군제)을 소개하였으나 이 역시 기장을 세운 뒤에라야 그 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며 효종에게 먼저 사실을 없앨 것을 진언하였다.
다음으로, 우암이 초구를 하사받은 후 그 경위를 직접 기록한 내사초구발에서는 우암이 초구 하사를 처음에 사양하자 효종이 북벌을 함께 하자는 뜻으로 내린다고 하자 우암은 그 뜻은 알고 있으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먼저 없애야 한다는 주자의 말씀을 들어 진언하였다.
끝으로, 위에서 든 수정사이양이적(修政事以攘夷狄)은 주자(朱子)의 주장을 원용한 것으로서 기축봉사 13조의 내용은 성리학에 입각한 내수외양책이다.
위 사정과 이 사건 기록에 증거로 제출된 우암의 북벌론에 대한 논문(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을 종합하면 우암은 북벌에 찬성하되 그 방법으로 효종의 수신을 통한 양민을 들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2)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우암에 대한 방송 내용을 보건대, 별지 2. 방송내용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우암이 북벌론에 찬성하지만 다만 그 실행방법에 있어서 효종의 북벌론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토론회 형식으로 극화하거나 효종과 우암 사이의 악대설화 내용을 요약하여 방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들어 원고 주장과 같이 우암이 북벌의 실패를 두려워하여 북벌을 반대하는 것처럼 묘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또한 원고는 효종의 북벌에 반대하는 신하들의 탄원 내용이 방송된 직후에 효종과

우암 사이의 토론회 내용이 방송되고, 토론회 내용도 우암의 북벌 방법이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부각시킴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우암이 그 신하들과 같이 북벌에 반대하는 듯한 인상을 갖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③ 신하들의 반대 탄원 내용 다음에 반대 이유인 ④ 조선의 경제적 사정이 방송되었고 그 다음에 ⑤ 북벌대토론회가 방송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론회 내용 중 우암의 북벌 방법의 현실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도 우암이 자신의 북벌 의지와 북벌 방법의 현실성에 대하여 피력한 점과 위에서 든 이 사건 프로그램 내용의 구성 그리고 전체 방송 내용을 살펴보면, 우암에 대하여 시청자들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인상을 갖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4) 더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관련 사료와 논문 그리고 전문 학자의 의견을 들어 효종 시대에 제기되었던 북벌론이 우리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어떠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는지를 나타내는 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우암에 대한 역사적 사실 또는 평가를 왜곡하거나 왜곡할 위험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방송한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우암을 북벌의 반대론자로 묘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8. 12.
재판장 판사 윤 석 종
판사 남 성 민
판사 김 영 학

2심 판결문

사건 : 98나47919 반론보도
원고, 항소인 : 은진송씨 송자각하 종친회
대표자 공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이 율
피고, 피항소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박 권 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경 국
변론종결 : 1999. 1. 21.
제1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8. 8. 12. 선고 97가합29791 판결
주문 :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매주 화요일 22:00부터 23:00까지 사이에 방송되는 'TV 조선왕조실록'

프로그램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를 방송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의 취소 및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함.
이유 :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기록에 첨부된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우암(尤菴) 송시열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국내외에 대한 방송실시와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1997. 11. 18.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TV 조선왕조실록'이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방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 효종대에 논의된 북벌론의 제기 및 추진 경과와 그 의의에 대한 문제 제기
② 북벌을 위해 효종이 추진한 인재등용, 군제개혁 및 군사훈련의 내용
③ 효종의 군사적 북벌에 대하여 민생을 이유로 반대하는 대신들과의 대화를 극화(劇化)한 내용
④ 당시 조선이 경제 상황에 대한 역사적 고찰
⑤ 질문자들이 극중 인물인 효종과 우암 송시열에게 북벌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토론을 극화한 <북벌 대토론회>
⑥ 동북아시아의 당시 정세를 통한 북벌의 실행가능성
⑦ 북벌 추진에 대한 백성들의 입장
⑧ 효종과 우암 송시열 사이의 기해독대(己亥獨對)를 극화한 내용
⑨ 북벌론의 역사적 의의
나.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우암 송시열이 언급된 내용은 ②, ⑤, ⑧로서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특별 및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우암 송시열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 및 이에 기한 역사적 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효종이 봉림대군 시절 그의 사부로서는 윤선도, 최은, 윤빈, 신석번, 심대부 등이 있었는데, 우암 송시열도 인열왕후 사후 병자호란까지 7개월 동안 봉림대군과 사제관계를 맺었다.
② 우암 송시열은 효종 원년인 1649년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의 승임(陞任)을 사양하면서 효종에게 13조의 상소를 올렸는데(이를 己丑封事라고 한다) 그 중 하나가 '정사를 닦아 오랑캐를 물리칠 것(修政事以攘夷狄)'이다.
③ 효종은 김자점의 북벌밀고 사건 후 낙향해 있던 우암 송시열을 이조판서로 임명한 뒤 효종 10년에 그와 독대하였고(이에 관한 내용을 '己亥獨對' 또는 '幄對說話'라고 한다), 그 후 효종은 왕자(현종)을 통해 그와 북벌에 관한 밀찰을 교신하였다.
④ 또한, 효종은 송시열을 이조판서로 임명한 해 겨울에 그에게 초구(貂裘 : 담비 가죽으로 만든 갖옷)을 하사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효종의 북벌은 당시 비밀리에 추진되었으므로 그 추진 과정은 앞서 본 기축봉사, 악대설화, 북벌밀찰, 초구발 등의 자료에 의할 수밖에 없는 바, 그런데, 이들 자료와 효종과 우암 송시열의 사제 관계 등을 종합하면 우암이 북벌에 적극 찬성하였고, 효종도 북벌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우암과 상의하고, 우암이 북벌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건의하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우암이 북벌의 실패를 두려워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북벌을 반대하는 신하의 대표인 것처럼 방영함으로써 우암의 후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반론의 보도를 구한다.

3. 판단

가. 반론보도청구권의 의미

(1)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존립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요소로서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언론의 보도가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 여론 형성에 미치는 언론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개인이 입는 피해를 참으로 큰 것이므로,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피해자인 개인에게도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 수단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방송법 제41조는 방송으로 피해를 받은 자에게 반론보도의 방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대법원 1986. 1. 28. 선고 90다카25468 판결 참조). 그러나, 다른 한편, 편면적인 정보의 흐름을 수정하여 보다 진실되고 공익에 합치되는 정보의 흐름을 꾀하는 반론권제도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따라 방송법 제41조 제1항은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우선 ‘사실적 주장’에 한하여 반론을 인정하고, 나아가 이러한 사실적 주장 내용에 개별적으로 관련되고 그로 인하여 명예나 신용 등 일정한 권리나 법익의 침해를 입은 자에 한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2) 그리하여, 방송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의 존부에 관한 사항의 주장으로서, 그 존재 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가치평가적 인식의 표현인 의견, 감정, 논설, 비평 등과 대비되는 것이고, 양자의 구별은 당해 보도나 표현의 진정한 의도, 그것이 공표된 방송의 성격 및 보도 경위, 주된 시청자층, 사회 일반의 가치관 및 언어생활상의 의미, 전후의 문맥과 행간에 내포된 의미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서울고등법원 1992. 8. 21.자 91라161 결정 참조). 또한, 위 조항에서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 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 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키며, 그 보도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는 피해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가 방영한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가 문제삼는 내용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난 이후 나라가 극도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대두된 북벌 논의의 전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조선 후기에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다시 세울 것인가(國家再造)'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알아보는 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우암이 거론된 부분을 살펴보면, 우암은 청나라가 척화인사로 지목한 사림세력으로서 효종과 마찬가지로 북벌론에 찬성하였지만 그 실행방법에 있어서는 '양병(養兵)'을 우선으로 생각한 효종과는 달리 '안민(安民)'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등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당시의 상황을 토론회 형식으로 극화하거나 효종과 우암 사이의 악대설화 내용을 요약하여 방영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앞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축봉사, 악대설화, 북벌밀찰, 초구발 등의 사료에 기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방영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우암은 북벌의 실패를 두려워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북벌을 반대하는 신하의 대표이다.'라는 내용의 사실적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위와 같은 사료에 나타나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가치평가를 함에 있어서 앞서 본 기획 의도에 따라 효종과 우암 간의 입장 차이에 중점을 둔 것일 뿐이다. 결국 원고가 반론보도를 구하는 별지 제1의 내용은, 위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피고 나름의 가치평가와는 달리, '당시 특별 자체를 반대한 신하들이 많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북벌을 해야 한다는 효종의 생각에 찬성한 우암의 기본적인 입장이 더욱 강조되었어야 한다'는 원고 나름의 가치평가에 관한 반론보도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사실적 주장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방영한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원고가 문제삼는 내용은 방송법 제41조 소정의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반론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원고가 방송법 소정의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명예 등의 인격권은 일신전속적(一身專屬的)인 것이고 사람은 사망에 의하여 당연히 권리능력을 상실하므로, 인격권도 사람의 사망에 따라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사법상의 소송에 있어서 300년도 넘은 세월 이전에 이미 사망한 우암의 인격권 자체를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설사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에 관한 형법 제308조나 저작권법 제14조에 기하여 사법상의 소송에 있어서도 사자(死者) 자신의 인격권을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사자(死者)를 대신하여 사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현행 실정법은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자(死者) 자신의 인격권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기는 마찬가지이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로서는 우암 자신의 인격권에 관한 권리 자체를 행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한도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우암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 단체이므로(대법원 1972. 9. 12. 선고 72다1090 판결, 1994. 10. 11. 선고 94다19792 판결 등 참조), 원고 자신의 인격권도 이러한 종중의 고유한 목적에 비추

어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함에 있어서 원고 종중을 거론한 바 없음은 분명하고, 특히 그 내용 가운데에 우암이 원고 종중의 선조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현(예를 들면, 은진송씨)도 사용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보도내용과 원고 종중과의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보도내용, 특히 그것이 조선 후기의 역사에 관한 고찰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위 보도내용과 원고 종중 사이에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음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명예훼손이란 사람(종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7. 9.자 97마634 결정 등 참조), 설령 원고 종중의 구성원인 우암의 후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그들의 주관적 명예감정이 침해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원고 종중의 목적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성격, 기획의도, 주된 시청자층의 수준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방영한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말미암아 원고 종중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은, 보기에 따라서는 '안민(安民)'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우암의 견해가 성급하게 '양병(養兵)'을 내세우는 효종의 견해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우수한 것이라는 가치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자료, 즉 당시의 피폐한 경제 상황과 백성들의 입장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으로 우암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 매체에 의하여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우암은 조선 후기의 대정치가로서 국가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므로, 우암이 사망한 때로부터 무려 3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우암의 사상과 행적은 단순히 원고 종중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것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공영방송인 피고가 앞서 본 기획 의도 하에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써 우암을 다룬 것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원고는 방송법 제41조 소정의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그 이유 설시는 달라도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2. 4.
재판장 판사 김 재 진

판사 황 병 하
판사 조 영 철

대법원 판결문

사건 : 99다12840 반론보도
원고, 상고인 : 은진송씨 송자각하 종친회
대표자 공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정상학, 이유영, 이 율, 김무진
피고, 피상고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박 권 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경 국
원심판결종결 : 서울고등법원 1999. 2. 4. 선고98나47919 판결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방송법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키며, 그 보도내용이 진실한지의 여부는 피해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의 사실 피고가 1997. 11. 18. 22:00경부터 1시간 가량 'TV 조선왕조실록'이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방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조선 효종대에 논의된 북벌론의 제기와 추진 경과 및 의의에 대한 문제제기, ② 북벌을 위하여 추진한 인재등용, 군제개혁 및 군사훈련 ③ 효종의 북벌계획에 대하여 민생을 이유로 반대하는 대신들과의 대화를 극화(劇化)한 내용, ④ 당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역사적 고찰, ⑤ 현대의 질문자들이 북벌에 관하여 극중 인물인 효종과 우암에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을 극화한 북벌 대토론회, ⑥ 동북아시아의 당시 정세를 통한 북벌의 실행가능성, ⑦ 북벌 추진에 대한 백성들의 입장, ⑧ 효종과 송시열 사이의 기해독대(己亥獨對)를 간추려 극화한 대화, ⑨ 북벌론의 역사적 의의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우암이 직접 언급된 곳은 위 ②, ⑤, ⑧ 부분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그 판시 별지 2의 기재와 같으며, 한편 북벌 및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우암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 및 이에 기한 역사적 사실로 우암은 효종이 봉림대군 시절 그의 사부였고, 효종 원년인 1649년 효종에게 '정사를 닦아 오랑캐를 물리칠 것(修政事以攘夷狄)'이 포함된 13조의 상소(己丑封事)를 올렸으며, 이조판서로

임명된 뒤 효종과 독대(己亥獨對 또는 幄對說話)하고 북벌에 관한 밀찰도 받았으며, 효종으로부터 초구(貂裘)를 하사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악대설화 등의 사료 중에는 우암과 효종이 서로 북벌의 의지를 확인하고 방법을 의논하는 등 우암이 효종의 북벌계획에 적극 찬성하였음을 알 수 잇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료 중 이와 같은 부분을 생략한 채 우암과 효종 사이의 의견차이에만 중점을 두고서 우암이 북벌의 실패를 두려워하였고 나아가 북벌을 반대하는 신하의 대표인 것처럼 제작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함으로써 우암의 후손들로 구성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니 반론보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프로그램은 기획의도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나라가 극도로 피폐해진 상화에서 대두된 북벌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조선 후기에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다시 세울 것인가(國家再造)'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 알아보는 데에 있고, 그 과정에서 우암이 거론된 부분은 기축봉사, 악대설화, 북벌밀찰, 초구발 등의 사료를 기초로, 우암은 청나라가 척화인사로 지목한 사림세력으로서 효종과 마찬가지로 북벌계획에 찬성하였지만 그 실행방법에 있어서는 양병(養兵)을 우선으로 생각한 효종과는 달리 안민(安民)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등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당시의 상황을 토론회 형식으로 극화하거나 효종과 우암 사이의 악대설화의 내용을 요약하여 방영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우암은 북벌의 실패를 두려워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북벌을 반대하는 신하의 대표이다.'라는 내용의 사실적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가치평가를 함에 있어서 기획의도에 따라 효종과 우암 사이의 입장 차이에 중점을 두었을 뿐이라 할 것이니,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원고가 문제삼는 내용은 방송법 제41조 소정의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음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 종중이 거론된 바가 없고 그 내용 가운데에 우암이 원고 종중의 선조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현(예를 들면 은진 송씨)도 사용된 바가 없으므로 그 보도내용과 원고 종중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와 보도내용 특히 그것이 조선 후기의 역사에 관한 고찰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 보도내용과 원고 종중 사이에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원고 종중의 목적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성격과 기획의도 및 주된 시청자층의 수준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에 의하여 원고 종중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안민(安民)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우암의 견해가 성급한 효종의 견해보다 신중하고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자료, 즉 당시의 피폐한 경제 상황과 백성들의 입장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에 의하여 우암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바,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송법 제41조 소정의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원고가 방송법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논평이나 논설 등 가치평가나 의견표시를 하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전제 혹은 예시 등을 위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실적 주장은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프로그램에는 우암과 효종 사이의 대화를 기록한 악대설화의 내용을 요약해 극화한 부분이 있음이 분명하고 그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악대설화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나 가치평가 혹은 의견이나 희망의 표시라기보다는 악대설화에 기재된 역사적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프로그램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가치평가를 함에 있어서 기획의도에 따라 효종과 우암 사이의 입장 차이에 중점을 두었을 뿐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원고가 문제삼는 내용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시 부분에는 방송법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방송법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2. 25.
재판장 대법관 조 무 제
주심 대법관 김 형 선
대법관 이 용 훈
대법관 이 용 우 □

이 사건 방송이 2회에 걸쳐 보도되었으나 2차방송은 1차방송을 요약 보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반론보도는 방송 내용을 포괄하여 1회 방송함으로 족하며, 반드시 프로그램 첫머리에 방송되어야 할 것도 아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9. 4. 22.자 판결 (99카합91)
서울고등법원 1999. 10. 14.자 판결 (99나27325)
대법원 2000. 3. 24.자 판결 (99다63138)

사실개요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000년 3월 24일 종교단체인 '세계정교' 총령본존인 하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심판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방송이 2회에 걸쳐 보도되었으나 2차 방송은 1차 방송을 요약 보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반론보도는 한 번에 포괄하여 1회 방송함으로써 족하다"며, 2회에 걸쳐 반론보도문을 방송

하여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인용 부분을 넘어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부분은 대부분이 원 방송 내용에 비추어 그 사실적 주장과 관련성이 없거나 신청인의 의견 내지 가치평가이거나, 신청인의 사실적 진술에 의한 반박을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의 한도를 넘어서는 보충적·추가적 진술이거나 제3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것으로서 그대로 방송될 경우 인격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는 위법한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2회에 걸친 원 방송 중 신청인과 관련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주된 부분의 내용 등을 참작하면 반론보도요구문을 적절히 삭제·수정, 제한하여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반론보도 방송의 실행 방법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 원 방송에서 피신청인의 주된 사실적 진술이 자막의 방식으로 방송된 것도 아니므로 반론보도 방송의 실행방법도 낭독과 함께 자막으로 표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방송되어야 할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MBC는 1998년 11월 24일 「PD수첩」 ‘총령본존, 어디 계십니까?’ 프로그램에서 신청인의 성관련 비리, 헌금 및 재산관련 비리, 학력에 대한 의혹 등을 보도하였고, 이어 12월 22일에도 앞서 한 보도내용을 요약해 방송하면서 신청인이 성폭행 및 금품갈취 의혹이 있다고 보도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각 보도에 대해 1998년 12월 24일과 2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으나(98서울중재327, 329) 모두 중재불성립결정 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는 인용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신청인은 방송횟수 및 방법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상소하였고, 2심 법원도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판결문

사건 : 99카합91 반론보도심판청구
청구인 : 하
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청구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이 득 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
변론종결 : 1999. 4. 1.
주문 : 1. 피청구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에 방송하는 23:00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화면 오른쪽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청구인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금 5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청구인의, 나머지는 피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 수첩'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상단 화면에는 두 줄로 "세계정교 하　　총령본존의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제2목록 반론보도요구문을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피청구인은 제1항의 이행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 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상단 화면에는 두 줄로 "세계정교 하　　총령본존의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제3목록 반론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천천히 표시하면서(글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3. 만약 피청구인이 위 제1, 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청구인은 위 각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각 이행완료일까지 청구인에게 각 금 1억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청구인 하　는 종교단체인 '세계정교'의 총령본존이고, 피청구인은 방송매체를 운영하면서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1998. 11. 24.자 보도내용

피청구인 방송사는 1999. 11. 24. 23:00부터 방송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PD 수첩'에서 「총령본존, 어디 계십니까?」이라는 제목으로 서두에 "세스팔다스신이 세계를 구한다? 세계정교를 아십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신이라는 교주에게 재산은 물론 성착취까지 당하고 있는 사람들… 세계정교의 실체를 PD 수첩에서 파헤쳤습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를 구원해야 한다는 교리를 내세운 세계정교라는 한 신흥종교의 교주가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하총령은 자신이 인류를 구원할 살아있는 신임을 자처하며 절대적인 숭배의 대상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들 성폭행 피해자들 가운데는 모녀가 당한 경우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와 인류를 구원할 살아있는 신으로, 롸한뭐루라는 전통무예의 창시자로 유난히 민족정신과 가정의 화목을 강조해 왔단 세계정교의 하　총령.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신도들에 대한 성폭행과 헌금강요 그리고 석연치 않은 과거행적 등이 있었습니다."라고 전제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1)청구인의 성(性) 관련 비리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피해자) 박씨는 …시댁문제로 고민을 하던 끝에 하총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 세계정교에는 총령이 신도들을 직접 접견하는 성친 의식이 있는데 이를 빌미로 박씨를… 불러 성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총령은 그후 박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시자를 시켜 낙태수술을 받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 결혼생활을 계속하면 남편이 죽는다며 이혼을 하게 한 후 박씨로 하여금 아예 방을 얻어 살도록 하고 수시로 불러 성폭행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박씨의 어머니 김씨가 차마 딸에겐 말을 못했다며 자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김씨는 …하총령의 지방순례에 따라 갔다가 같은 일을 (또)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총령은 주로 성친을 빌미로 성경루로 부르거나 지방순례에 동행한 여신도들을 호텔 방으로 불러 병을 치료해 준다며 눕게 한 후 겁탈을 해왔다고 합니다. 저희는 허리가 아파 아는 이의 소개로 하총령을 찾아갔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는 주부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총령에게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한 뒤 어렵게 탈출했다는 한 피해자는 하총령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시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도 목격했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그때 "…중생 모든 만인에게 자기 손이 가면 평생의 병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리는 것을 강조하죠", "…네가 전생에 내 부인이었다."는 등의 말을 하는 피해자들과의 인터뷰장면을 함께 방송하였다.

(2) 헌금 및 재산관련 비리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그(청구인)는 자신을 만나는데도 성친비라고 해서 그때마다 돈을 받고 또 신도들에게 액을 물리쳐 준다는 명목으로 각종 제금을 올리도록 종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탄단절 행사 등에서는 자식과 가정이 잘 되라는 징을 한 번 치는데도 무려 330만원을 제금으로 올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하총령의 말이 담긴 경전과 각종 책자들을 몇 만원씩 받고 신도들에게 사도록 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매년 탄단절에는 계옴지라고 해서 종이 한 장에 4만8천원씩 112자을 5백만원이 넘는 돈을 받고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하총령에 관한 기사가 실린 모월간지를 4만8천원에 팔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호를 지어주는데도 돈을 받고 제금도 가족단위가 아닌 가족 수대로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총령은 다른 사업이나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거하고 있는 성경루를 기점으로 바로 옆의 시자들이 사는 집 등 인근 한옥을 몇 년째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창성동 일대에만 하총령 명의로 다섯 채, 시자인 손모 씨 명의로 두 채 총 7채가 등재돼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조금 떨어진 통인동에는 극제본청과 만세전이라고 불리는 세계정교 소유의 건물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각각 시자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세금 때문에 명의만 이렇게 해놓았을 뿐 하총령 소유일 것이라고 합니다. …재산을 추적해 본 결과 드러난 것만 해도 하　　총령은 서울에만 본인 및 차명 부동산 9건 지방엔 본인 명의의 부동산 8건 그리고 이밖에 차명 부동산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하총령은 매년 탄단절 행사 때마다 민족통일을 강조하면서 신도들에게 통일성금을 내도록 종용해 왔다고 합니다. 그(청구인)는 신문에 고정 칼럼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알고 보면 재정이 어려운 신문사가 광고를 실어주는 대가로 지면을 내준 것이라고 합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그때 "(청구인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자들 명의로… 세금관계 때문에…각서를 받아 놓았더라구요"라는 등의 말을 하는 제보자들이 인터뷰장면도 함께 방영하였다.

(3) 청구인의 학력과 관련된 의문점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그(청구인)의 공식적인 이력서를 보면 모 대학 법정대 법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신도들에게는 형편이 어려워서 장학생으로 진학했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성적표를 보면 도무지 믿기지 않을뿐더러 대학교에 그의 학적을 여러 차례 확인해 본 결과 그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총령 측에서는 학력위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4) 세계정교의 교리 및 경전의 표기 등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하　　총령은 …10년 맨발수행 끝에 신의 게시를 받아서 세계정교를 창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정교가 모시는

신은 7개의 뿔을 가진 세스팔다스신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세스팔다스신은 '스스로 팔팔하게 다스리는 신'이라고 말하는 세계정교의 신도와의 인터뷰장면을 함께 방송하였고, 또 "1940년 생인 하총령은 그 동안 자신이 세계를 구원할 살아있는 신이라며 신도들에게 항상 4배를 올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음력 생일인 1월 1일은 탄단절이라고 하여 매년 호텔에서 대규모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그를 숭배하는 의식 또한 대단합니다.…"라는 보도를 하였으며, "그(청구인)가 경전 등에 써온 한글표기는 한글학회에서조차 전혀 뜻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라고 보도한 후 "이런 글자는 존재한 적이 없고… 조선 초기 문헌에서도 이런 글자 본 적이 없다."는 말을 하는 한글학회 회장과의 인터뷰장면을 방송하였다.

(5) 그밖에 피청구인은 "하총령은 뫄한뭐루라는 동작 역시 10년 맨발수행 끝에 꿈에 나타난 신의 계시를 받아 만든 것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그를 잘 아는 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후 "우리 아버지(청구인) 같은 인내심으로 봐서는 맨발로 1년이 아니라 하루도 못 다닐 것 같아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아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청구인의 딸과의 인터뷰장면을 방영하였고, "그(청구인)은 각종 군소 언론에 글을 게재함으로써 그 위세를 과시해 왔습니다. 그는 현재 B일보의 전신인 검경일보의 주필로도 활동해 왔었는데 정작 신문사 측에서는 별 관계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총령은 또 행사 때마다 유명인사들을 동원하는 수법으로 위세를 과시해 왔는데 본인들은 사례를 받고 참가한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는 또 세계평화운동을 한다며 고향 선배인 전직 3선 국회의원인 강모 씨를 행사에 초대해 신도들에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라고 보도하였고, 또 피청구인 소속 취재팀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만나려고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다. 1998. 12. 22.자 보도내용

피청구인 방송사는 또 1998. 12. 22. 23:00부터 방송된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위 1998. 11. 24.자 보도내용을 줄여서 방송하면서 청구인의 성폭행 및 금품갈취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2.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심판청구 중 세계정교의 실체 및 교리 또는 청구외 최정희, 강민경, 김봉옥과 관련된 부분은 청구인과 개별적 연관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먼저 청구인이 세계정교의 교주(총령본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방송내용 중 세계정교의 실체 및 교리에 관한 부분과 청구인 개인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또 이 사건 방송내용 중 최정희, 강민경, 김봉옥과 관련된 부분은 청구인 개인의 비리나 의문점과 관련되어 언급되어 있고 청구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도 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그들의 언행과 관련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한다고 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용되는 부분

(1) 앞서 인정한 방송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방송프로그램에서 공표된 보도내용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방송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별지 제2, 3목록 반론보도요구문의 내용 중 당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별지 제1목록 반론보도문을 방송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먼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하는 반박주장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이 사건 반론보도심판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반론보도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인 방송법 제41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란 그 반론보도의 내용이 사회 일반에 걸쳐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라면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이 사건 반박주장이 그 내용이 그 내용 자체만으로 평가할 때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뿐만 아닐,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청구인들의 반론이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피청구인은, 위 방송사가 이 사건 방송을 하기에 앞서 청구인 측에게 수 차례 반론의 기회를 주었으나 청구인 측에서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끝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심판청구는 권리남용금지 및 신의성 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기각되는 부분
청구인은 위 인용부분 이외에 세계정교의 성립과정과 교의 및 교기(별지 제2목록 제2항, 제3목록 제2, 3항 중 일부), 이 사건 방송보도의 취재방법 및 취재과정(별지 제2목록 제4, 8, 9, 10, 16항, 제3목록 제5, 6항 중 각 일부), 이 사건 방송보도의 표현방법(별지 제2목록 제7항), 피해자들 제보의 신빙성 여부(별지 제2목록 제17, 20, 27, 28, 32, 33항, 제3목록 제11항), 제보자들 개인의 신상(별지 제2목록 제22, 24, 28), 이 사건 방송보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별지 제2목록 제36항), 세계정교 경전의 한글표기와 관련한 문제점 지적(별지 제2목록 제39항), 청구인의 출생시 일화(별지 제2목록 제43항)에 대하여도 이 사건 반론보도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앞서 인용한 범위를 벗어나는 제보자들 개인의 신상에 관한 반론보도청구는 만일 반론보도가 허용된다면 제보자들 개인의 명예 등 인격권이 중대·명백하게 침해됨이 예상되는 위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나머지 부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도 앞서 인용한 범위를 벗어나는 한 피청구인의 사실적 주장과 전혀 관련이 없거나, 청구인의 주관적 의견 또는 평가, 반박에 불과하여 반론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별지 제1 반론보도문의 방송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

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피청구인이 반론보도를 명한 기간 내에 반론보도문을 방송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그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금 5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4. 22.
재판장 판사 길 기 봉
판사 이 건 배
판사 고 창 후

2심 판결문

사건 : 99나27325 반론보도심판청구
신청인, 항소인 : 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청구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노 성 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
변론종결 : 1999. 9. 30.
제1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9. 4. 22. 선고 99카합91 판결
주문 : 1.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신청인은 제1심 판결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 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상단 화면에는 두줄로 "세계정교 하 총령본존의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제1심 판결 첨부 별지 제2목록 반론보도요구문을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은 제2항의 이행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 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상단 화면에는 두줄로 "세계정교 하 총령본존의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제1심 판결 첨부 별지 제3목록 반론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천천히 표시하면서(글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4. 만약 피청구인이 위 제2, 3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청구인은 위 각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각 이행완료일까지 각 신청인에게 각 금 100,00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중 '청구인'을 '신청인'으로 '피청구인'을 '피신청인'으로 각 고치고, ② 신청인이 구하는 제1심 판결 첨부 별지 제2목

록(이하 별지 2목록이라고만 한다) 반론보도요구문 및 제1심 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이하 별지 1목록이라고만 한다) 반론보도문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신청인이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주장을 부연 또는 보충하거나 새로이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신청인은 먼저, 별지 2, 3목록 각 반론보도요구문 중 별지 1목록 반론보도문의 범위를 넘는 부분(이하 나머지 신청 부분이라고만 한다)도 피신청인이 한 이 사건 원방송에 대한 반박이거나 그 해명적 진술, 보충적 진술 또는 설명적 진술로서 모두 사실적 진술이고, 제보자들 개인의 명예 등 인격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는 위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원 방송이 2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중 1998. 11. 24.자 방송이 약 60분 동안, 같은 해 12. 22.자 방송이 약 10분 동안 실시된 이상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되기 위하여서는 신청인이 구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2차례로 나누어 별지 2목록 반론보도요구문과 별지 3목록 반론보도요구문 각 전부를 순차 방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원 보도의 내용이 사실적 주장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반론보도문의 내용도 이의의 대상인 원 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곧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보충적 또는 추가적 진술만이 허용되고 신청인의 개인적 의견이나 가치 평가는 포함시킬 수 없으며 또한 명예훼손 등 제3자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는 위법한 내용은 포함될 수 없고, 나아가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 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고 그 기준은 공표된 원 보도의 기사 또는 방송 전체가 아니라 이의의 대상이 된 사실적 주장 부분의 양으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원 보도의 이의 대상에 비하여 장황하고 길게 작성된 반론보도문은 허용될 수 없는 바, 따라서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인용하되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대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신청인의 위 나머지 신청 부분은 그 대부분이 이 사건 원 방송의 내용에 비추어 그 사실적 주장과 관련성이 없거나, 신청인의 개인적인 의견 또는 가치 평가이거나, 신청인의 사실적 진술에 의한 반박을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한도를 넘는 보충적 또는 추가적 진술이거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어서 그대로 방송된 경우 개인의 명예 등 인격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는 위법한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2회에 걸친 이 사건 원 방송 중 신청인과 관련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주된 부분은 당원이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에 설시한 정도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별지 2, 3목록의 각 반론보도요구문을 적절히 삭제 수정하여 별지 1목록 반론보도문과 같은 내용으로 제한하여 인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원 방송이 2회에 걸쳐 행하여지긴 하였으나 그 2차 방송은 1차 방송을 요약 보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

우에 있어서는 1, 2차 방송의 내용과 길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론보도는 한 번에 포괄하여 행하는 것이 합당하여 피신청인으로서는 별지 1목록 반론보도문을 1회 방송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와 반대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문의 방송에 앞서 신청인의 반론이 허위이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는 사전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이를 금지하는 내용이 반론보도문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신청인으로서는 법원이 명한 반론보도문을 그대로 방송하여야 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신청인의 반론이 허위 또는 신빙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기는 비난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 있는 등으로 인하여 적합한 반론보도라고 볼 수 없는 결과가 되는 한도 내에서는 피신청인의 사전 방송은 당연히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원이 반론보도문을 인용함에 있어 굳이 그와 같은 사전 방송을 금지하는 내용은 명시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반론보도문을 방송함에 있어 낭독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그 내용을 화면에 자막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까지 신청하고 있으나, 방송에서 반론보도의 실행 방법은 통상 방송사의 아나운서, 진행자가 있는 방송의 경우에는 그 진행자가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이 사건 원 방송에 있어서 피신청인의 주된 사실적 진술이 화면에 자막 처리하는 방법으로 방송된 것도 아니므로 신청인의 위 신청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마지막으로 신청인은, 이 사건 반론 방송이 이 사건 원 방송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PD 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반론보도문이 방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원 방송이 이루어진 같은 시각에 행하여질 'PD 수첩' 프로그램 내에서 이 사건 반론 방송이 실시되는 것으로써 이 사건 반론 방송은 이 사건 원 방송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위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방송하도록 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실제에 있어 피신청인으로서는 위 프로그램의 중간에 이 사건 반론 방송을 실시한다면 그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모양이 될 수 있어 불리할 것이므로 위 프로그램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이를 시행할 것이 예상되고 이 사건 반론 방송은 그로써 충분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신청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0. 14.

재판장 판사 김 재 진

판사 박 순 성

판사 최 규 홍

대법원 판결문

사건 : 99다63138 반론보도심판청구
신청인, 상고인 : 하
피신청인, 피상고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文化放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노 성 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9. 10. 14. 선고 99나27325 판결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 상고이유를 본다.
방송법이 규정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피해자에게 방송의 사실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고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판결 참조), 법원이 반론보도의 내용을 정할 때에는 신청취지가 기재된 반론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4조 제3항).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이 1998. 11. 24. 23:00경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PD 수첩'에서 '총령본존, 어디 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종교단체인 세계정교의 총령인 신청인에 대하여 성관련 비리, 헌금 및 재산관련 비리, 학력에 대한 의혹, 세계정교의 교리 및 경전의 표기, '롸한머루'라는 동자, 언론이나 유명인사를 이용한 허세적 행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를 하고, 또 1998. 12. 22. 23:00경 같은 프로그램인 'PD 수첩'에서 앞서 한 보도내용을 요약해 방송하면서 신청인의 성폭행 및 금품갈취 의혹에 대하여 보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청인은 그 방송프로그램에서 공표된 보도내용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그 판시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반론보도요구문의 내용 중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그 판시 별지 제1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방송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신청인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반론보도로서 인용부분뿐 아니라 별지 제2, 3목록 기재 반론보도요구문 전부를 원 방송에 대응하여 2회로 나누어 순차로 방송하여야 하고, 또 반론보도는 보도문의 낭독뿐 아니라 자막도 함께 표시하여 'PD 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방송되어야 하며, 반론보도의 방송에 앞서 반론이 허위이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는 사전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판결주문이나 반론보도문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반론보도는 원 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 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고 그 대상에 비하여 장황하고 길게 작성된 반론보도문은 허용될 수 없으며,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에 위와 같은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인용부분을 넘어선 나머지 신청부분은 대부분이 원 방송 내용에 비추어 그 사실적 주장과 관련성이 없거나, 신청인의 의견 내지 가치평가이거나, 신청인의 사실적 진술에 의한 반박을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의 한도를 넘어서는 보충적·추가적 진술이거나, 제3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것으로서 그대로 방송될 경우 명예 등 인격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는 위법한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및 2회에 걸친 원 방송 중 신청인과 관련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주된 부분의 내용 등을 참작하면, 별지 제2, 3목록 기재 반론보도요구문을 적절히 삭제 수정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반론보도문과 같은 내용으로 제한하여 인용함이 상당하다. 또 이 사건 원 방송이 2회에 걸쳐 행하여지긴 하였으나 그 2차 방송은 1차 방송을 요약 보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1, 2차방송의 내용과 길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론보도는 한 번에 포괄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1회 방송함으로써 족하다. 반론보도 방송의 실행방법도 통상 방송사의 아나운서나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 원 방송에서 피신청인의 주된 사실적 진술이 자막의 방식으로 방송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반론보도문을 낭독과 함께 자막으로도 표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반론 방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방송이 이루어진 같은 시각에 행하여질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써 원 방송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반드시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방송되어야 할 것도 아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으로서는 법원이 명한 반론보도문을 그대로 방송하여야 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신청인의 반론이 허위 또는 신빙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거나, 비난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 있는 등으로 인하여 적합한 반론보도라고 볼 수 없는 결과가 되는 한도 내에서는 피신청인의 사전 방송은 당연히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반론보도문을 방송하게 하면서 굳이 그와 같은 사전 방송을 금지하는 내용은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반론보도청구권 및 관련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신청인이 지적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의 첫머리에 있는 두 문단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 방송의 사실적 주장에 대한 신청인의 반론 게재를 구성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사건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경위를 알리는 도입부분일 뿐이어서 신청인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의 반론보도 주체가 잘못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반론보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 배상금을 1일 500만 원으로, 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간접강제 배상금액의 결정은 적절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배상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제1심이 정한 배상금액이 부당하게 과소한 것은 아니라고 판

단하여 증액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거기에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 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3. 24.
재판장 대법관 윤 재 식
대법관 이 임 수
주심 대법관 송 진 훈 □

Ⅱ. 정정보도청구사례

제주 4·3 사건과 관련, 이승만 정권이 미군정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는 진실하다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8. 7. 15.자 판결 (97가합15722)
서울고등법원 2000. 1. 20.자 판결 (98나44705)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2000년 1월 20일 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인 이　　씨가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망 이승만과 그의 유족인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주 4·3사건과 관련한 제반 진상규명 및 역사적 평가작업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진상을 국민에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보도하였다고 판단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당시 이승만 정권이 미군정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는 아무런 자료도 없이 추측을 과장보도한 것이며, 진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계엄의 적법성에 관한 보도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보도내용이 사실의 적시냐 의견의 표명이냐의 구별기준은 단순히 사용된 구절의 용어만이 아니라 어떠한 맥락에서 보도되었는가 하는 보도내용을 둘러싼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며, "피고가 계엄법 제정 이전 발령된 이 사건 계엄이 불법적일 것이라는 가치판단을 전제로 불법이라고 보도한 점, 일제시대에 시행되던 계엄령이 이 사건 계엄 선포시까지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었는지 여부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것으로 논란이 있는 점, 어느 정도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관한 가치판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내용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곤란한 점, 공인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라는 공적인 행위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계엄이 불법이라고 보도한 것은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논리의 비약이 있고, 다른 의견을 균형있게 소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불과할 뿐이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겨레신문이 1997년 4월 1일자에 『4·3계엄령은 불법』, 『이승만 정권 - 미군정 합작 최소 2만명 '무차별 학살'』이라는 제하로 1948년 제주 4·3사건 당시 선포된 계엄령이 당시 이승만 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선포되었고, 이승만 정권이 미군정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제주도의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1심에서도 피고에게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원고승

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 판결문

사건 : 97가합15722 정정보도등
원고 :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 영
피고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의 25
대표이사 권 근 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 명
업무담당변호사 이영대, 김대호
변론종결 : 1998. 6. 3.
주문 : 1.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간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한겨레신문의 제3면 기사게재부분 우측 하단의 4각형 테두리 안에,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그 위쪽에는 가로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견출고딕체 30포인트 크기 활자로 기재하고, 그 아래에는 정정보도내용을 신문명조체 10포인트 크기 활자로 기재한 정정보도문을 1회 게재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1997. 4. 1.자 한겨레신문 제3면에 게재된 「4·3 계엄령은 불법」과 「이승만 정권-미군정 합작 최소 2만명 '무차별 학살'」이라는 각 제목 하의 각 기사내용에 관하여 이 판결 송달 후 피고가 최초로 발행하는 한겨레신문 제3면 우측 상단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본문 기사 제목활자 크기로, 내용은 본문활자 크기로 3단에 걸쳐 게재하라.
이유 : 1. 기초사실
다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또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반증 없는 사실들이다.
가. 원고는 이승만 전 대통령(1965. 7. 19. 사망)의 양자(1961. 11. 13. 입양신고)이고, 피고는 '한겨레'라는 이름의 전국 일간지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1997. 4. 1.자 한겨레신문 제3면에 "4·3계엄령은 불법"이라는 제목 하에 별지 제1기사 목록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와 「이승만 정권-미군정 합작 최소 2만명 '무차별 학살'」이라는 제목 하에 별지 제2기사 목록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한다)를 그 소속 허 기자의 명의로 게재하여 보도하였다.
다. 위 각 기사는 1948년 제주 4·3사건 당시 정부에 의하여 선포된 계엄령의 법적 근거에 관하여 다룬 기사인데,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948. 11. 17. 대통령령 제31호로서 제주도의 반란을 급속히 진정하기 위하여 동지구를 합위지경으

로 정하고 위 영 공포일로부터 계엄을 시행하며, 계엄사령관은 제주도 주둔 육군 제9연대장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제주도 지역에 계엄(이하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하였었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위 각 신문사로 인하여 원고 자신과 그의 양부인 망 이승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법이라 줄인다)에 의하면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또는 사실보도 후 6월내에 먼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중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정간법에 의하여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위 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일 뿐, 민법 제76f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정정보도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에서는 위 중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정간법에 의한 중재 및 반론보도청구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민법 제764조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는 손해배상청구만이 해당되는 것이라거나,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는 헌법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항쟁하나, 민법 제764조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터이고, 위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중에서 '사죄광고'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의한 민사손해배상판결의 신문·잡지에의 게재, 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잘못된 보도내용을 정정시키고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는 처분 등은 여전히 허용된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위 이승만의 양자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 사건과 같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며, 실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느냐 여부는 본안심사에서 가릴 문제이므로,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 본안에 관하여 살핀다.

3. 명예훼손의 성립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일제시대에 칙령에 의하여 조선에 시행되던 법률로서 '계엄령'이 있었고, 해방후에는 미군정법령에 의하여, 제헌헌법 제정 후에는 제헌헌법에 의하여 여전히 위 계엄령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헌법과 계엄령에 근거하여 발령된 이 사건 계엄은 그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기사들을 통하여 이 사건 계엄이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선포된 것처럼 허위보도를 하였고, 이로써 위 이승만과 그의 양자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식민지시대에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공포되었던 계엄령은 그

정당성이 없는 데다가, 해방 후에는 미군정법령 제11호와 제21호의 취지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제헌헌법은 계엄제도를 규정하기는 하였으되, 정작 그 시행법률인 계엄법은 1949. 11. 24.에야 공포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률 제정 이전인 1948. 11. 17. 선포된 이 사건 계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가치판단의 문제로서 역사적 평가의 차원에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룬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엄의 근거

(가)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의 쟁점인 이 사건 계엄의 법적 근거 여하에 대하여 살피건대, 다음은 공지의 사실 또는 현저한 사실들이다.

① 일제는 대정 2년(1913년) 9월경 칙령 제283조로 '조선에 시행하는 법률에 관한 건'을 재가하고 공포하였는데, 위 '조선에 시행할 법률' 중에는 계엄령(명치 15년 8. 5. 태정관포고 제36호, 명치 19년 칙령 제74호로 개정, 이하 '계엄령'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계엄령은 전시사변에 있어 병비로써 전국 또는 일지방을 경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그에 의하면 계엄은 원칙적으로 태정관(조선총독)이 포고하도록 되어 있고, 임전지경의 계엄에서는 지방행정사무와 사법사무 중 군사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지역의 사령관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합위지경의 계엄에서는 지방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그 지역의 사령관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② 8·15 해방후 미군정은 1945. 10. 9. 미군정법령 제11호를 공포하였는 바, 그 제1조(특별법의 폐지)는 '북위 38도 이남의 점령지역에서 조선인민과 그 통치에 적용하는 법률로부터 조선인민에게 차별 및 압박을 가하는 모든 정책과 주의를 소멸하고 조선인민에게 정의의 정치와 법률상 균등을 회복케 하기 위하여 다음 법률과 법률의 효력을 가진 조령 및 명령을 폐지한다'고 규정한 다음, 정치범처벌법, 예비검속법, 치안유지법 등의 법령들을 열거하였는데, 위 계엄령은 이와 같이 폐지되는 법령으로 열거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위 미군정법령의 제2조(일반법령의 폐지)는 '기타 법률 또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조령 내지 명령으로서 그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적용으로 인하여 종족, 국적, 신조 또는 정치사상을 이유로 차별을 가져오는 것은 이를 전부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③ 또한 1945. 11. 2. 미군정법령 제21호의 제1조(법률의 존속)는 '모든 법률 또한 조선 구정부가 발포하고 법률적 효력을 가진 규칙, 명령, 고시 기타 문서로서 1945. 8. 9. 실행 중인 것은 그동안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 조선군정부의 특수명령으로 폐지할 때까지 전효력으로 이를 존속한다'라고 규정하였다.

④ 그 후 1948. 7. 17. 공포된 제헌헌법은 제64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2조 제6호에서 계엄안, 해엄안을 국무회의 의결사항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한편 제100조에서는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법령의 입법취지에다가, 일반적으로 계엄제도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지역 내의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군대의 권력

하에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의 일부에 대하여 예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고전적인 국가긴급권의 한 형태라는 점, 제헌헌법 이래의 우리 헌법도 위와 같은 긴박한 국가비상사태를 예정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입헌주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일정한 조건하에서 독재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엄을 국가긴급권의 하나로서 인정하여 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제시대 하에서 우리나라에 시행되던 '계엄령'은 해방 이후에 미군정법령 제11호 제1조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하였고, 그 제2조가 규정한 대로 종족·국적·신조 또는 정치사상을 이유로 차별을 가져오는 법률로서 폐지되어야 할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계엄령'은 해방 후에는 위 미군정법령 제21호 제1조에 의하여, 또한 제헌헌법 제정 후에는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여전히 유효한 법률로서 존속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위 헌법에 의하여 계엄의 선포권자는 대통령이 되고, 계엄안 또는 해엄안에 관한 사항이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는 한도 내에서 위 일제시대의 계엄령은 그 적용이 없거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일 뿐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은 헌법상의 계엄선포권자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위 계엄령에 근거하여 선포한 것이므로 일응 그 법적 근거가 있다 할 것이다.

(2) 명예훼손의 성립

(가) 일반적으로, 신문기사에 의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그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통상 신문기사를 읽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기사의 제목과 전문의 내용, 배치,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 사건 계엄선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응 그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기사는 제목에서 「"4·3계엄령은 불법"」,「법제정 1년 앞서 48년 선포 "효력없어"」,「정부문서기록 보존소서 관련문건 발굴」이라고 기재한 다음, '…제주 도민에 대한 대량학살의 법적 근거로 알려진 계엄령은 당시 이승만 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선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관련 문건에 따르면, 당시 이승만 정권은 계엄법을 제정하기 전인 48년 11월 1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계엄령을 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계엄법이 제정된 49년 11월 24일보다 앞서 공포한 이 계엄령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등으로 기재하고, 소외 최병모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하여 '제헌헌법에 계엄선포를 법률에 위임했는데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에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 '당시 진압과정의 불법성과 국가권력의 전단행위를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도하였고, 이 사건 제2기사는 제목에서 '이승만 정권-미군정 합작, 최소 2만명 무차별 학살'이라고 기재한 다음 '…제주 4·3항쟁이 이승만 대통령의 지휘 아래 불법적으로 공포된 계엄령을 근거로 하여 무차별 살상과 함께 진압됐다는 사실은…', '지금까지…상당수 도민들은…방화나 학살 등 무차별 초토화작전이 일어난 것도 그나마 합법성을 띤 계엄령이 공포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인식해 왔다'는 등으로 기재하여 보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기사들은 일반의 독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계엄선포 당시는 우리나라

에 계엄에 관한 법률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사건 계엄을 법적 근거 없이, 국무회의의 의결만을 거친 후 임의로 선포하였으며, 그가 계엄선포라는 막중한 국가권력작용을 '마음대로 행'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관련문서의 발굴에 의하여 새삼 밝혀지게 된 것처럼 이해하게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속 허　　기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 피의사건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검사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주관적 가치판단의 문제로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이 사건 계엄의 합법성 논란에 관한 순수한 의견표명이나 가치판단의 문제를 넘어, 이 사건 계엄 당시의 근거법규 여하 즉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위 이승만과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 또는 사실적 주장을 보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주 4·3사건에 관하여는 그 사건의 원인 및 경위, 사건의 전체적인 성격, 계엄군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인명·재산 피해문제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고,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학계나 정계에서도 점차 커져가고 있는 사실, 이외에 이 사건 계엄선포 자체의 법적 근거에 관하여도 관련 법규의 해석 여하와 논자의 가치관에 따라 계엄선포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엄이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뒤집는다거나, 이 사건 계엄이 불법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오히려 피고로서는 4·3사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알았다면, 위와 같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기사보도를 할 것이 아니라, 더더욱 사실의 확인과 기사의 표현에 신중을 기하였어야 한다고 보인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위와 같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담은 기사를 보도함으로 인하여 망 이승만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그의 유족인 원고 자신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민법상의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그 내용도 진실한 것이거나, 가사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 하여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의 기준
무릇, 신문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기사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한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게 되고, 또한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취재행위에 관련된 자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바, 여기에서 취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문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함에 비추어 그 기사가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에 의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며, 타인의 판단에 기한 정보를 인용하여 기사를 보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취재기자로서는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보도하였다 하여 불법행위의 귀책사유를 결하는 것은 아니고 관계 자료와 사람들을 두루 취재하는 등 필요하고도 상당한 진실확인작업을 다한 연후에 그 정보가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나아가 보도기관이 과장 또는 각색하여 보도하거나 자기의 견해나 억측을 부가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는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 이 사건 기사의 공익성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언론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제주 4·3사건의 발생원인, 이 사건 계엄선포 및 사태의 진압경위 기타 4·3사건과 관련한 제반 진상규명 및 역사적 평가작업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나름대로는 그 진상의 일단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기사보도에 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일응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 여부

그러나 이 사건 기사들에 의하여 적시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함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사내용이 진실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

마. 상당한 이유 여하

다음 피고가 위 기사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주 4·3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터이기는 하나, 특히 이 사건 계엄선포의 법적 근거 내지 합법성에 관하여는 일응 그 계엄선포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일부에서 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에 불과하므로, 피고로서는 그 사실여부를 두루 문의하고, 상이한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들에 대하여 성실히 취재하고 확인의 노력을 다한 연후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에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엄이 합법적으로 선포된 것인지 여부, 특히 계엄선포에 법적 근거가 있다는 측의 주장 및 근거자료, 나아가 정부의 입장이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는 확인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4·3계엄의 합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측만을 취재하고 그 주장내용만을 주로 근거로 삼거나 이에 과장 내지 각색을 더하여 기사화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 또는 그 소속 담당기자가 위 기사내용의 진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가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위법성조각항변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그렇다면, 피고는 망 이승만과 그의 유족인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기사를 정정하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정정보도문의 크기, 게재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한겨레신문의 제3면 기사게재부분 우측 하단의 4각형 테두리 안에,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그 위쪽으로는 가로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견출고딕체 30포인트 크기 활자로 기재하고, 그 아래에는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내용을 신문명조체 10포인트 크기의 활자로 기재한 정정보도문을 1회 게재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계엄이 합법적이었다는 사실만을 단정적으로 기술한 내용의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나, 게재를 명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원문보도와의 연관성 및 독자들에게 알릴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에 대한 간결한 기재, 그리고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포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7. 15.
재판장 판사 김 길 중
판사 문 광 섭
판사 조 양 희

2심 판결문

사건 : 98나44705 정정보도등
원고, 피항소인 :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진 우
피고, 항소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의 25
대표이사 최 학 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이영대, 김대호
변론종결 : 1999. 12. 16.
제1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8. 7. 15. 선고 97가합15722 판결
주문 :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간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한겨레신문의 제3면 기사게재부분 우측 하단의 4각형 테두리 안에,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그 위쪽에는 가로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견출고딕체 30포인트 크기 활자로 기재하고, 그 아래에는 정정보도내용을 신문명조체 10포인트 크기 활자로 기재한 정정보도문을 1회 게재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1997. 4. 1.자 한겨레신문 제3면에 게재된 「4·3 계엄령은 불법」과 「이승만 정권-미군정 합작 최소 2만명 '무차별 학살'」이라는 각 제목 하의 각 기사내용에 관하여 이 판결 송달 후 피고가 최초로 발행하는 한겨레신문 제3면 우측 상단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본문 기사 제목활자 크기로, 내용은 본문활자 크기로 3단에 걸쳐 게재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별지 제2목록의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이승만 전 대통령(1965. 7. 19. 사망)의 양자(1961. 11. 13. 입양신고)이고, 피고는 '한겨레'라는 이름의 전국 일간지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1997. 4. 1.자 한겨레신문 제3면에 "4·3계엄령은 불법"이라는 제목 하에 제1심 판결의 별지 제1기사 목록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와 「이승만 정권-미군정 합작 최소 2만명 '무차별 학살'」이라는 제목 하에 제1심 판결의 별지 제2기사 목록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한다)를 그 소속 허 기자의 명의로 게재하여 보도하였다.
다. 위 각 기사는 1948년 제주 4·3사건 당시 정부에 의하여 선포된 계엄령의 법적 근거에 관하여 다룬 기사인데,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948. 11. 17. 대통령령 제31호로서 제주도의 반란을 급속히 진정하기 위하여 동지구를 합위지경으로 정하고 위 영 공포일로부터 계엄을 시행하며, 계엄사령관은 제주도 주둔 육군 제9연대장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제주도 지역에 계엄(이하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하였었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위 각 신문사로 인하여 원고 자신과 그의 양부인 망 이승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법이라 줄인다)에 의하면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또는 사실보도 후 6월내에 먼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중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정간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피해자 또는 언론사가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동법 제16조 제2항이 정하는 기간 안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한편 동법 제19조 제2항에서 동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간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하나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정정보도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정간법에 의한 중재 및 반론보도청구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민법 제764조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는 손해배상청구만이 해당되는 것이라거나,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는 헌법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항쟁하나, 민법 제764조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터이고, 위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중에서 '사죄광고'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의한 민사손해배상판결의 신문·잡지에의 게재, 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잘못된 보도내용을 정정시키고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는 처분 등은 여전히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위 이승만의 양자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 사건과 같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며, 실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느냐 여부는 본안심사에서 가릴 문제이므로,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공지의 사실 및 법원에 현저한 사실들이거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원의 법제처 및 국방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들이다.
(1) 일제는 대정 2년(1913년) 9월경 칙령 제283조로 '조선에서시행하는법률에관한건'을 재가하고 공포하였는데, 위 '조선에시행하는법률에관한건' 중에는 계엄령(명치 15년 8. 5. 태정관포고 제36호, 명치 19년 칙령 제74호로 개정, 이하 '계엄령'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계엄령은 전시사변에 있어 병비로써 전국 또는 일지방을 경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그에 의하면 계엄은 원칙적으로 태정관(조선총독)이 포고하도록 되어 있고, 임전지경의 계엄에서는 지방행정사무와 사법사무 중 군사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지역의 사령관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합위지경의 계엄에서는 지방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그 지역의 사령관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2) 8·15 해방후 미군정은 1945. 10. 9. 미군정법령 제11호를 공포하였는 바, 그 제1조(특별법의 폐지)는 '북위 38도 이남의 점령지역에서 조선인민과 그 통치에 적용하는 법률로부터 조선인민에게 차별 및 압박을 가하는 모든 정책과 주의를 소멸하고 조선인민에게 정의의 정치와 법률상 균등을 회복케 하기 위하여 다음 법률과 법률의 효력을 가진 조령 및 명령을 폐지한다'고 규정한 다음, 정치범처벌법, 예비검속법, 치안유지법 등의 법령들을 열거하였는데, 위 계엄령은 이와 같이 폐지되는 법령으로 열거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위 미군정법령의 제2조(일반법령의 폐지)는 '기타 법률 또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조령 내지 명령으로서 그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적용으로 인하여 종족, 국적, 신조 또는 정치사상을 이유로 차별을 가져오는 것은 이를 전부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3) 또한 1945. 11. 2. 미군정법령 제21호의 제1조(법률의 존속)는 '모든 법률 또한 조선구정부가 발포하고 법률적 효력을 가진 규칙, 명령, 고시 기타 문서로서 1945. 8. 9. 실행중인 것은 그동안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 조선군정부의 특수명령으로 폐지할 때까지 전효력으로 이를 존속한다'라고 규정하였다.
(4) 그 후 1948. 7. 17. 공포된 제헌헌법은 제64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2조 제6호에서 계엄안, 해엄안을 국무회의 의결사항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한편 제99조에서는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00조에서는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5) 계엄법은 1949. 11. 24. 법률 제69호로 제정, 공포되었고, 공포일로부터 시행되었다.
(6) 제주 4·3사건에 관하여는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되던 중 제주도의회가 1992. 3. 20. '4·3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1993. 10.과 1996. 11. 2차례에 걸쳐 국회에 국회내 '4·3 특별위원회(가칭)'의 설치를 청원하자, 국회의원 154명이 찬성서명을 하여 1996. 12. 17. '제주도 4·3 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함으로써 제주 4·3 사건이 사회문제화되었다.
(7) 1997. 4.경 제주도 지역신문을 중심으로 이 사건 계엄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제주 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가 주최한 학술심포지엄에서도 이 사건 계엄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몇몇 학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계엄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논문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8) 한편 이 사건 계엄에 관한 피고의 기사가 보도되자 법제처의 법제관이 이 사건 계엄이 적법하다는 개인적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내부보고를 한 바 있었는데 그와 같은 내용이 1997. 4. 4.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되었고, 국방부는 '사단법인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에 대하여 이 사건 계엄이 제헌헌법 제64조, 제100조에 따라 일제하에서 시행되던 계엄령을 적용하여 발령된 것이라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기도 하였으며, 육군본부가 작성한 '계엄사'라는 책자에는 "일본계엄령이 해방후 미군정법령 제11호에 의하여 미군정하의 한국에 적용되었다."라는 기재가 있으나 정부에서 이 사건 계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는 없었다.
(9) 국회는 1999. 12. 16. "제주4·3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을 통과시켰는

데, 위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시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나. 이 사건 계엄의 적법성에 관한 보도내용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제시대에 칙령에 의하여 조선에 시행되던 법률로서 '계엄령'이 있었고, 해방 후에는 미군정법령에 의하여, 제헌헌법 제정 후에는 제헌헌법에 의하여 여전히 위 계엄령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헌법과 계엄령에 근거하여 발령된 이 사건 계엄은 그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기사들을 통하여 이 사건 계엄이 근거없이 불법적으로 선포된 것처럼 허위보도를 하였고, 이로써 위 이승만과 그의 양자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 명예회복을 위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별지 제2 목록의 가.항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한겨레신문에 게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식민지시대에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공포되었던 계엄령은 그 정당성이 없는 데다가, 해방 후에는 위 계엄령이 미군정법령 제11호와 제21호의 취지에 따라 폐지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헌헌법 제100조에 저촉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제헌헌법은 계엄제도를 규정하기는 하였으되, 정작 그 시행법률인 계엄법은 1949. 11. 24.에야 공포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률 제정 이전인 1948. 11. 17. 선포된 이 사건 계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가치판단의 문제로서 역사적 평가의 차원에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신문의 보도내용이 불법행위로서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이나 견해의 표명이 있는 경우 이는 개인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여져 그것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도2683 판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도 1693 판결 참조).

어떠한 보도내용이 사실의 적시냐 의견의 표명이냐의 구별기준은 단순히 사용된 구절의 용어만이 아니라 어떠한 맥락에서 그 보도가 되었는가 하는 보도내용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기사 전체의 내용, 문맥, 전달방법, 그 보도내용의 진실성이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의 신분이 공인인가 사인인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제1 기사에서 '최근 총무처 산하 정부문서기록보존소에서 나온 제주도지구 계엄선포 관련 문건에 따르면, 당시 이승만 정권은 계엄법을 제정하기 전인 48년 11월 1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계엄령을 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사실을 보

도한 후 ‘그러나 제헌헌법 제64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고 돼 있어 계엄법이 제정된 49년 11월 24일 보다 앞서 공포한 이 계엄령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엄이 ‘당시 이승만 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선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4·3 연구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고, 이 사건 제2 기사에서는 이 사건 계엄이 불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승만 정권-미군정 합작 최소 2만명 무차별 학살’이라는 제목으로 제주 4·3사건 당시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에 대하여 보도하였는 바, 피고가 제주도지구 계엄선포일이 계엄법 시행일 이전인 사실을 확인한 후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에 발령된 이 사건 계엄이 불법적일 것이라는 가치판단을 전제로 이 사건 계엄이 불법이라고 보도한 점, 일제시대에 시행되던 계엄령이 이 사건 계엄 선포시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군정법령 및 제헌헌법의 각 해당조항에 대한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것으로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점, 위 계엄령이 이 사건 계엄 선포시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제헌헌법 및 관계법령의 해석문제이고, 이는 어느 정도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관한 가치판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그 보도내용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곤란한 점, 이 사건 기사들의 내용이 공인인 이승만 전대통령의 이 사건 계엄선포라는 공적인 행위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엄이 불법이라고 보도한 것은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논리의 비약이 있고, 다른 의견을 균형있게 소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소간의 과장이 있는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의 적시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엄이 불법이라고 보도한 것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그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2 기사의 보도내용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2 기사에서 “이승만 정권-미군정 합작 최소 2만명 ‘무차별 학살’”이라는 제목하에, ‘제주 4·3항쟁이 이승만 대통령의 지휘 아래 불법적으로 공포된 계엄령을 근거로 하여 무차별 살상과 함께 진압됐다’, ‘제주도에선 당시 군경 토벌작전 과정에서 최소 2만명에서 최대 8만명까지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토벌대는 중산간마을 초토화작전을 전개하면서 팔순 노인에서부터 서너살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육하는 만행을 저질러’라고 보도하여 마치 제주4·3사건 당시 ‘이승만 정권이 미군정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제주도의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고 할 것인바,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일부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승만 정권이 미군정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제주도의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위와 같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담은 기사를 보도함으로 인하여 망 이승만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그의 유족인 원고 자신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민법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그 내용도 진실한 것이거나, 가사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 하여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언론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제주 4·3사건의 발생원인, 이 사건 계엄선포 및 사태의 진압경위 기타 4·3사건과 관련한 제반 진상규명 및 역사적 평가작업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나름대로는 그 진상의 일단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기사보도에 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일응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제주4·3사건 당시 '이승만 정권이 미군정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제주도의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는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의 공모'와 '의도적인 양민학살'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이 추측을 과장 보도한 것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함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또는 그 소속 담당기자가 위 기사 내용의 진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바, 그렇다면 위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가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따라서, 피고는 망 이승만과 그의 유족인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위 기사를 정정하는 정정보도 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정정보도문의 크기, 게재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한겨레신문의 제3면 기사게재부분 우측 하단의 4각형 테두리 안에,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그 위쪽으로는 가로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견출고딕체 30포인트 크기 활자로 기재하고, 그 아래에는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내용을 신문명조체 10포인트 크기의 활자로 기재한 정정보도문을 1회 게재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위 보도내용에 관하여 별지 제2 목록의 나.항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나, 게재를 명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원문보도와의 연관성, 독자들에게 알릴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에 대한 간결한 기재의 필요성,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나타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 20.

재판장 판사 채 영 수

판사 박 순 성

판사 최 규 홍 □

Ⅲ. 손해배상청구사례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재나 타매체의 기사를 열람한 것만으로는
기사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재를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1995. 12. 12.자 판결 (94가합63176/94가합63183 병합)
서울고등법원 1997. 1. 17.자 판결 (96나4659/96나4666 병합)
대법원 1999. 1. 26.자 판결 (97다10215/97다10222 병합)

사실개요

대법원 제1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1999년 1월 26일 이○○ 씨가 대한민국과 중앙일보사,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 대한민국과 중앙일보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목적의 공익성과 공표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고 밝히고, 담당 검사가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음에도 추가 보강수사를 하지 않은 채 참고인측의 불확실한 진술만을 근거로 마치 피의자의 범행이 확정된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 중앙일보사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재나 조선일보의 기사를 열람한 것만으로는 기사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재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더욱이 기사 내용도 원고가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직접 취재에 의하여 원고의 범행이 확인 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사를 게재하였으므로 일간신문에 있어서의 보도의 신속성이란 공익적인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사를 게재한 것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반면 피고 조선일보사에 대해서는 “검사의 발표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에 관한 기사를 그대로 작성·게재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위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혐의를 받아 구속된 것 자체가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조선일보사의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보도가 ‘… 혐의를 받고 있다’ 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또 원고가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회사기밀을 누설한 것이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는 이상 그 신문보도가 진실이라는

입증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며 원심과 다른 견해를 밝혔다.
원고는 1991년 절도 및 업무상 배임 등의 죄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를 인정받았으나 항소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공판청구 전에 혐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등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혐의사실이 일간신문에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원고는 회사동료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하여 2심에서는 1천5백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1심 판결문

사건 : 94가합63176 손해배상(기)
94가합63183(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 1. 박○○
2. 이○○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대 삼
피고 : 1.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안 우 만
소송수행자 조정환, 최용석, 김충우
2.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 우 영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장원찬, 정주교, 이병선, 최승인, 최광률
3.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홍 석 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경 훈
소속복대리인 변호사 오 두 환
변론종결 : 1995. 11. 28.
주문 :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박○○에게 금 200,000,000원, 원고 이○○에게 금 3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1. 1.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3호증(고소장), 갑 제4호증의 1, 3, 4(각 신문기사), 갑 제5호증(공소부제기이유서), 갑 제6호증의 1(공소장), 2(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갑 제7호증의 1, 2(각

판결), 갑 제10호증(판결), 갑 제14호증(구속영장)의 각 기재 및 증인 황　　의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가. 소외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은 음, 식료품을 포함한 각종상품을 판매하는 종합소매업 운영을 포함한 가맹점 구성 및 운영지도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88. 5.경 설립되어 미국에서 세븐-일레븐이라는 상호로 전국적인 지점망을 구축하고 유통업을 하고 있는 미국 유통체인업체인 사우스랜드사와 편의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경영기법 및 노하우(상표사용 포함)를 들여오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세븐일레븐(SEVEN-ELEVEN)이라는 상호로 24시간 영업 편의점을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 박○○은 1988. 8. 1.에 원고 이○○는 1988. 9. 12.에 위 회사에 각 입사하여, 원고 박○○은 위 회사의 ○○과장으로, 원고 이○○는 위 회사의 물품구매, 판매, 광고, 기획업무 등을 사실상 책임지는 직책인 ○○차장으로 각 재직하던 중, 소외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문　　에 의해 1991. 1. 11. 소외 회사의 업무상 기밀서류를 절취하여 경쟁회사의 간부인 소외 채　　, 소외 유　　에게 넘겨준 혐의로 고소당하였는 바, 원고 이○○는 1991. 1. 22. “피의자는 미국 굴지의 유통업체인 세븐일레븐사로부터 거액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기업 경영 방식 등에 관한 노하우를 도입하여 현재 서울시 전역에 12개의 소매 유통점포(편의점)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곧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출 예정인 (주)코리아 세븐의 차장직급으로 상품기획부의 책임자로 있는 자인 바, 최근 능력부족 등의 이유로 회사의 상부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불만이 누적되어 오던 중, (주)동양마트 및 (주)유공 등에서 새로이 전국에 체인망을 구성하고 유통업계에 뛰어들 것을 구상 중에 있음을 감지하고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위 회사의 사업계획서 등 중요 기업비밀 문건을 사전에 유출시킨 다음 위 회사들 중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로 스카웃 되어 가기로 마음먹고, (가) 1990. 12. 초순 19:00경 서울 장충동 소재 앰배서더호텔에서, 위 회사 상품기획부의 과장 조　　을 불러내어 동인과 함께 위 (주)동양마트 대표이사 채　　과 만나 위 (주)코리아 세븐의 중요기밀인 회사의 유통조직 개요, 사업계획서, 물품판촉 일정표 등에 관한 문서사본을 넘겨주는 한편 그 밖의 회사기밀 사항 일체를 구두로 알려 주어 이를 고의로 유출하고, (나) (주)코리아 세븐의 ○○과장인 박○○과 공모하여 같은 해 12. 중순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미원빌딩 4층 일식 집에서 위 조　　과 함께 (주)유공의 유　　과장을 만나 식사를 한 후 지하다방에서 차를 마시면서 위와 같은 (주)코리아 세븐의 유통조직 개요, 사업계획서 등 문서 사본 일체를 넘겨주고 구두로 이를 보충, 설명하는 등 회사 기밀 문건을 고의로 유출시킴으로써 위 (주) 코리아 세븐의 회사 중요 기밀 사항 일체를 절취하여 경쟁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이로 인하여 동 회사로 하여금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한 것”이라는 범죄사실로 업무상배임 및 절도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원고 박○○은 불구속 입건되었다.

나. (1) 원고 이○○가 구속된 다음날인 1991. 1. 23.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사라 한다) 발행의 일간신문인 조선일보 제23면에 “회사기밀 유출 간부 구속”이라는 세로 6단 크기의 제목과 ‘경쟁사에 자사 유통조직 등 알려’라는 소제목 하에 “코리아세븐 30대 차장, 서울지검 형사 4부 박　　검사는 22일 자신의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

는 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스카우트되기 위해 자기회사의 사업계획서 등 기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주식회사 코리아 세븐 ○○차장 이○○ 씨(34)를 구속하고 ○○과장 박○○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자신의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동양마트와 주식회사 유공 등에서 전국적인 체인망을 구성 유통업계에 뛰어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작년 12월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코리아세븐 회사의 유통조직 개요, 사업계획서, 물품판촉일정표 등의 사본을 넘겨주고 그 밖의 회사 기밀사항을 구두로 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중략) 검찰은 이들로부터 회사기밀을 제공받은 동양마트와 유공의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사전 공모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세로 4단 크기로 게재되었고, (2)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이하 피고 중앙일보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1991. 1. 23.자 중앙일보 제18면에 세로 4단 크기로 "회사기밀 유출 직원 구속"이라는 제목과 "'능력부족' 질책 받자 사업계획 빼돌려"라는 소제목 하에 "서울지검 형사 4부는 22일 회사의 사업계획서 등 중요 비밀서류를 다른 기업에 유출시킨 (주)코리아세븐 ○○차장 이○○ 씨(34)를 절도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 회사 ○○과장 박○○ 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미국의 유통업체인 세븐일레븐사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노하우를 도입, 소규모 유통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세븐 직원인 이씨 등 2명은 최근 유공과 동양마트 등 2개 업체가 새로 유통업계에 진출하려는 것을 알고 이들 회사 관계자들에게 코리아세븐의 조직개요와 사업계획서 등을 문서 또는 구두로 유출시킨 혐의다. 검찰 수사결과 이씨 등 2명은 최근 회사로부터 능력부족 등을 이유로 질책을 받자 이들 2개업체에 비밀서류를 유출시킨 다음 유리한 스카우트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로 자리를 옮기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기사가 세로 2단 크기로 게재되었으며, 또한 피고 중앙일보사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1991. 1. 23.자 중앙경제신문 제18면에 "유통 노하우 유출 구속", "30대 간부 판촉 조직표 경쟁사에 빼돌려"라는 제목 하에 "서울지검 형사4부 박 검사는 22일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기밀서류를 빼내 경쟁회사에 넘겨 준 (주)코리아세븐 ○○차장 이○○ 씨(34·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705동)를 업무상 배임 및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이 회사 ○○과장 박○○ 씨(3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세븐일레븐'측에 거액의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12개의 소매 유통 점포를 운영 중인 (주)코리아세븐의 상품기획 업무를 맡고 있던 중 회사 상사들로부터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꾸지람을 듣자 지난해 12월 초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호텔에서 경쟁업체인 (주)동양마트의 간부를 만나 회사에서 빼낸 유통 조직 개요, 사업계획서, 물품판촉 일정표 등 기밀서류의 사본을 넘겨 준 혐의다."라는 내용의 2단 기사가 게재되었다.

다. 원고 이○○는 1991. 2. 8. 업무상 배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고 박○○은 같은 날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처분을,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 바, 1991. 12. 6. 원고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 바, 1991. 12. 6.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공소는 취소되고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이 다음과 같은 요지로 변경되었다.

즉, "원고 이○○는 1990. 12. 18. 18:0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111의 7 소재 강풍빌딩 내

에 있는 소외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동 회사 소유의 상품판매계획, 홍보계획, 월별 상품판매촉진계획서 등 150여 쪽 분량의 회사기밀 문건 및 미국 세븐일레븐회사에서 발행하여 보내온 28쪽 분량의 '마케팅 블레틴(MARKETING BULLETIN)' 1권을 소외 (주)동양마트 대표이사인 소외 채 에게 보여주거나 교부할 목적으로 회사에서 임의로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9:30경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앰배서더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채 에게 위 기밀문건을 보여주고 위 '마케팅 블레틴' 책자를 건네줌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원고들은 1990. 12. 21. 11:00경 소외회사 사무실에서 원고 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미국 세븐일레븐의 조직, 판매전략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4쪽 짜리 영문서적 복사문서 1부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미원빌딩 4층 '대어' 일식 집에서.3 소외 주식회사 유공의 영업개발2과장인 소외 유 에게 건네줌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라. 그런데, 원고 이○○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1991. 12. 19. 제1심 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1993. 1. 28. 항소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92노637호 사건에서 월별상품판매촉진계획서 등 공소제기된 구체적인 회사 비밀문건 자체를 위 범죄일시, 장소에 원고 이○○가 소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 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항상 그러한 서류들을 소지하고 다닌 점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마케팅 블레틴' 1988년 11월호는 위 원고가 미국 사우스랜드사에 연수갔을 때 기념으로 받아온 것으로서 이는 위 원고의 개인소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소외회사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위 원고가 그의 소유라고 믿고 있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유 에게 건네준 영문복사문서 4장은 위 원고의 소유임이 분명하여 결국 위 원고에 대한 절도 범죄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5. 11.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서 확정되었다.

2. 피고 조선일보사, 피고 중앙일보사에 대한 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우리 헌법 및 형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아무리 범죄 혐의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회적 영향력 있는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위 피고들로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범죄 혐의사실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판 청구 전에 피의자인 원고 박○○, 이○○의 성명, 나이, 소속까지 정확하게 밝혀 범죄 혐의사실을 일간지상에 보도하였는 바, 원고 박○○은 그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되지도 아니하였고, 한편 원고 이○○는 구속기소되었으나,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검찰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취의 점에 관하여도 위 원고가 소외 채 에게 준 마케팅 블레틴 1988년 11월호는 사우스랜드사의 LA 지점에서 발행한 홍보용 책자로서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영업비밀을 담고 있는 책자가 아니고 또 소외 유 에게 준 영문서적 복사서류 4장도 경영학에 관한 영문서적인 "마케팅"의 428쪽에서 431쪽까지를 복사한 것으로서 소외회사의 영업비밀이 수록된 것이 아니며, 위 소외인들에게 원고가 보여준 서류철은 원고가 그때그때마다 개인적으로 모아둔 위 사우스랜드사와의 서신철 등으로 결코 소외회사의 영업비밀이 수록된

서류는 아니고 그 소유권도 위 원고에게 속한 것이어서, 결국 피고들이 보도한 원고들에 대한 범죄 혐의사실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이는 위 원고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만 보아도 명백하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 조선일보사 및 피고 중앙일보사가 발행하는 위 각 신문에 게재된 기사는 모두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들이 그 발행의 신문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 배포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조선일보사 및 피고 중앙일보사는 위 각 기사는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적시된 기사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가사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로서는 위 기사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신문, 잡기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적시된 기사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한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되어 불법행위를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우선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소속회사의 영업기밀을 경쟁업체에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경쟁업체간의 과당 스카우트 행위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계몽한다는 점에서 일응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위 각 기사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증인신문조서), 갑 제12호증(당사자본인신문조서,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갑 제15호증(마케팅 블레틴 88년 10월호 표지), 갑 제16호증(마케팅 블레틴 88년 11월호), 갑 제18호증의 1, 2(각 샌디에이고 스피리트 표지), 갑 제19호증(경영학 원서 표지), 갑 제20호증의 1(압수조서), 3(지침서 및 조직개요 목록표, 을 제1호증의 40과 같다), 갑 제22호증의 1, 2(각 영문서신), 을 제1호증의 9 내지 16(각 증인신문조서), 17 내지 19(각 공판조서, 각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24, 27(각 증인신문조서,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34(진술조서), 35(진술서), 36, 38(각 진술조서), 39(진술서), 42(피의자신문조서), 44(진술조서), 45(마케팅계획 등 목록), 46(주식회사 사우스랜드의 목록표), 47(대리점사업관련지침서 목록), 48(진술조서), 49(피의자신문조서), 60(피의자신문조서, 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을 제2호증의 8(증인신문조서), 9(기술도입 계약신고서), 10, 11(기술도입계약서 및 그 번역문), 12(월별 판매촉진계획서), 13(마케팅 블레틴), 15(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는 1990. 12. 7.경 주식회사 동양제과의 총무부장인 박　　을 만난 자리에서 '동양에서도 편의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이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이 필요할 텐데 좋은 사람을 추천하면 채용하겠느냐'고 제안을 하자, 위 박　　은 같은 달 10.경 주식회사 동양마트의 대표이사인 위 채　　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고 위 채　　은 마침 그 때가 동양마트를 설립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시화 시키는 단계였기에 위 원고를 만나겠다고 승낙하여, 원고 이○○는 소외 조　　과 함께 1990. 12. 18.경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앰배서더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채　　을 만나 자신이 평소에 모아온 사우스랜드사와의 서신철, 소외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의 1991년 월별판매촉진계획서, 1991년 한국내 점포개점계획서 등 소외회사의 영업에 관

계된 서류 또는 그 복사본을 위 채 에게 보여주면서 소외회사의 판촉방법, 진열방법, 고객관리분석, 판매동향분석 등의 소외회사의 사업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고 '마케팅 블레틴' 1988년 11월호 1권을 위 채 에게 건네준 사실(위 원고는 1988. 11. 26.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원고 박○○과 함께 위 사우스랜드사의 초청으로 미국 달라스, 샌디에이고, 로스앤젤레스 등 3개 도시를 방문하던 도중 같은 해 12. 18. 로스앤젤레스 지사를 방문하였을 때 그 담당자로부터 방문기념으로 세븐 일레븐의 홍보책자인 '마케팅 블레틴' 1988년 10월호 및 11월호를 2부씩 증정 받았고, 위 사우스랜드사에서는 다음 해인 1990년 봄경부터 소외 주식회사 코리아 세븐에 위 '마케팅 블레틴'을 정기적으로 보내왔다), 또 원고 이○○는 1990. 12. 21.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미원빌딩 4층 '대어' 일식집에서 당시 편의점 유통업에 진출할 계획을 추진 중이던 주식회사 유공의 영업개발2과장으로서 편의점 사업의 실무자였던 위 유 을 원고 박○○의 소개로 만나 소외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의 업무관련자료를 보여주고 설명하면서 소외회사의 영업방법 및 국내 편의점 사업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은 사실, 위 '마케팅 블레틴'은 사우스랜드사의 L.A.지부에서 매월 발행하는 책자로서 위 사우스랜드사를 홍보하는 내용 외에도 특정상품의 마케팅전략, 그 달의 판촉방법의 제시, 지난달의 판촉결과분석 및 판촉효과분석, 광고 및 홍보전략 등이 담겨 있는 책자인 사실, 소외회사와 위 사우스랜드사간에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서 제5조 비(B)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위와 같은 서류 및 책자들을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만약 그와 같은 누설 및 제공행위가 있을 경우 소외회사는 위 사우스랜드사에게 손해배상 등의 책임과 함께 계약을 해지 당할 수도 있어 소외회사는 위와 같은 서류 및 책자들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엄격한 보안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9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20, 41(갑 제9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7 내지 19, 23, 60의 각 일부 기재, 증인 황 의 증언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 및 박○○이 위 채 , 유 등에게 알려준 사항들과 위 '마케팅 블레틴' 책자 기재사항들은 모두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의 영업기법에 관련된 것들로서 그 경쟁업체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소외회사에게 불이익이 되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또 원고 이○○가 소외회사의 영업에 관계되는 서류 또는 그 복사본 등을 갖고 나가 경쟁업체의 간부들에게 건네주거나 보여주고 설명을 하는 등의 행위는 소외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원고 이○○가 절도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그 무죄판결의 이유는 주로 절취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서류에 관한 소유권유무와 불법영득의 의사유무에 대하여만 판단을 한 것이고, 또한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공소가 취소됨으로써 그 판결에서 위 인정과 같은 영업비밀여부 및 그 누설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인정의 판단이 위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들에 대한 위 1991. 1. 23.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및 중앙경제신문의 기사는 세세한 부분에서는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취지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진실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설사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

예가 다소간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은 조각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이 불법행위가 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을 살필 것 없이 이유없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형법 제126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수사담당자는 공판 청구 전까지 범죄 혐의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하여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의사실이 언론에 공표되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피의사실이 공판 청구 전에 언론에 공표된 것은 수사를 담당한 소외 박상길 검사가 피의사실을 직접 언론기관에 공표하였거나 가사 직접 공표한 바는 없다고 하여도 수사책임자로서 공판 청구 전까지 피의사실이 언론에 공표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박 검사가 직무집행 중 범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수사담당자인 소외 박 검사가 언론기관에 피의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일부 부합하는 증인 김 , 홍 의 각 증언은 증인 문상린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조선일보사의 법원 출입기자인 소외 김 및 피고 중앙일보사의 법원 출입기자인 소외 홍 은 법원 당직실에 비치된 구속영장 부본철을 임의로 열람하여 원고 이○○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사담당자인 위 박 검사로서는 자신이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의사실이 그와 관계없이 언론에 공표되는 것까지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박 검사의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2. 12.

재판장 판사 박 국 수

판사 강을 환

판사 오 영 준

2심 판결문

사건 : 96나4659 손해배상(기)

96나4666(병합)

원고, 항소인 : 이○○
피고, 피항소인 : 1.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안 우 만
소송수행자 김한수, 김충우
2.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우영, 방상훈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최승인, 허은강
3.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홍 석 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경 훈
변론종결 : 1996. 11. 29.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5. 12. 12. 선고 94가합63176, 94가합63183 (병합) 판결
주문 : 1. 원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에 대한 원고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각자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 1. 23.부터 1997. 1. 1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20분하여 그 1은 위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0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1991. 1.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또는 갑 제3호증(고소장, 을 제1호증의 31과 같다), 갑 제4호증의 1, 3, 4(각 신문기사), 갑 제6호증의 1(공소장), 2(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갑 제7호증의 1, 2(각 판결), 갑 제10호증(판결), 갑 제14호증(구속영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음, 식료품을 포함한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종합소매업 운영을 포함한 가맹점 구성 및 운영지도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88. 5.경 설립되어, 미국에서 세븐-일레븐이라는 상호로 전국적인 지점망을 구축하고 유통업을 하고 있는 유통체인업체인 소외 사우스랜드사와 편의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경영기법 및 노우하우(상표 사용 포함)를 들여오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세븐일레븐(SEVEN-ELEVEN)이라는 상호로 24시간 영업 편의점을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박○○(원심 공동원고)은 1988. 8. 1.에 원고는 같은 해 9. 12.에 소외 회사에 각 입사하여, 위 박○○은 위 회사의 ○○과장으로, 원고는 위 회사의 물품구매, 판매, 광고, 기획업무 등을 사실상 책임지는 직책인 ○○차장으로 각 재직하던 중,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문 으로부터 1991. 1. 11. 서울지방검찰청에 '원고와 위 박○○ 등이 위 회사의 사업계획서 등 기밀서류를 보관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복사하여 소외 주식회사 동양마트의 대표이사인 소외 채 , 소외 주식회사 유공의 과장직에 있는 소외 유 등에게 건네 주는 등 회사 기밀누설 및 배임 등의 죄를 범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였다.

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박 은 같은 해 1. 12. 위 고소 사건을 배당받아 같은 해 1. 12. 위 고소 사건을 배당받아 같은 해 1. 15. 고소인인 위 문 을, 같은 해 1. 16. 위 문용준에게 위 혐의사실을 제보한 위 회사 상품기획부 물류과장인 소외 조 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개시하여 같은 해 1. 22. 원고와 위 박○○을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을 한 다음, 같은 날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원고를 구속하였는데, 그 구속영장에 기재된 사건명은 절도, 업무상 배임 등이었고, 피의사실의 요지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라. (1) 원고가 구속된 다음날인 같은 해 1. 23.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사라고 한다) 발행의 일간신문(조간)인 조선일보 제23면에 '회사기밀유출 간부구속'이라는 세로 6단 크기의 제목, '경쟁사에 자사 유통조직 등 알려'라는 중간제목, '코리아세븐 30대 차장'이라는 소제목하에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세로 4단 크기로 게재되었고,

(2)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이하 피고 중앙일보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석간)인 중앙일보 제18면에 세로 4단 크기로 '회사기밀 유출 직원 구속'이라는 제목과 "'능력부족' 질책 받자 사업계획 빼돌려"라는 소제목하에 별지 3 기재와 같은 기사가 세로 2단 크기로 게재되었으며, 또한 피고 중앙일보사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같은 날짜 중앙경제신문 제18면에서도 '유통 노하우 유출 구속', '30대 간부 판촉 조직표 경쟁사에 빼돌려'라는 제목하에 별지4 기재와 같은 내용의 2단 기사가 게재되었다.

마. (1) 원고는 같은 해 2. 8. 절도 및 업무상 배임 등 죄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위 법원 91고단786 절도 등 사건의 공판절차가 진행되던 중, 같은 해 12. 6. 검사의 공소장변경으로 위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공소는 취소되었고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그 공소사실이 별지 5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위 법원은 같은 해 12. 19.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고의 항소로 위 사건이 위 법원 92노637호로 항소심에 계류중, 위 법원은 1993. 1. 28.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5. 11. 대법원에서 그 상고가 기각

됨으로서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원고는, 검사 박　　은 원고에 대한 위 고소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그 혐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언론에 공표하는 등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혐의사실이 위와 같이 일간신문에 보도됨으로써 원고는 그 명예가 훼손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공무원인 검사 박　　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리 나라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 등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그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사유, 예컨대 수사활동상의 필요나 시민생활의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의 제기 이전이라도 피의사실을 신속히 공표하지 않으면 안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위 피의사실 공표행위로 말미암아 피의자를 비롯하여 수사에 관련된 사람들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그들의 사생활이 침해를 받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원심 증인 홍　　, 원심 및 당심 증인 김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검사 박　　은 원고를 구속한 날인 1991. 1. 22. 서울지방검찰청 형사4부 검사실에서 피고 조선일보사 사회부 소속 기자인 소외 김　　등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와 위 박○○ 등에 대한 피의사실을 요약 정리한 자료를 배포하면서 위 문　　의 고소로 이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원고 등이 경쟁업체에 스카우트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음이 밝혀졌다고 수사경위를 발표한 사실, 위 김　　는 서울형사지방법원 영장계에서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사본을 열람하여 원고에 대한 혐의사실을 지득하고 담당 검사를 찾아가 그로부터 위와 같은 수사내용의 설명을 듣는 등의 취재활동을 거쳐 이를 토대로 신문기사를 작성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사가 조선일보에 게재되기에 이른 사실, 피고 중앙일보사 사회부 소속 기자인 소외 홍　　은 같은 해 1. 23. 아침에 조선일보에 게재된 위 기사를 읽고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사본을 열람한 다음 그 혐의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어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여 중앙일보에 게재하였으나, 그 취재과정에서 원고와 공범으로 보도된 위 박○○(불구속 상태였음)이나 또는 원고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상대방으로 보도된 소외 동양마트나 유공 등의 담당 직원들에게 그 기사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보지는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 증인 문상린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 박　　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을 법령에 위배하여 공판청구전에 공표함으로써 그 피의사실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게 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조선일보 및 중앙일보에 게재된 이 사건 신문기사(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고 한다)가 보도됨으로서 원고의 명예가 훼손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공무원인 위 박　　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는 위 피의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날인 1991. 1. 23.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94. 1. 23.까지 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국가 배상법에 정한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심의회에 그 손해배상을 신청한 것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것에 해당하고 위 배상심의회가 위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 결정할 때까지는 국가가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에 해당하여 이 경우 민법 제174조에 정한 6월의 기간은 위 배상심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5. 7. 8. 선고 74다178 판결 참조), 갑 제26호증의 1, 2(각 배상결정통지서), 갑 제29호증의 1(국가배상접수증명명원), 2(국가배상재심접수증명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3. 10. 18.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위 피의사실 공표행위로 말미암아 명예를 훼손당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배상신청을 하여 위 심의회는 같은 해 12. 16. 그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 정본이 같은 해 12. 22.경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2. 28. 본부배상심의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위 본부심의회는 1994. 5. 10.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 정본이 같은 해 5. 19.경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3. 10. 18.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 피고로부터 위 재심 결정을 통지받은 날인 1994. 5. 19.경부터 6월 이내인 같은 해 7.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위 최고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법성조각사유
가. 원고는, 피고 조선일보사 및 피고 중앙일보사는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모두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들이 발행하는 위 각 신문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 배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위 각 기사는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적시된 기사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가사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로서는 위 기사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신문 등 언론매체가 보도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기사 등 보도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하여 원고가 명예를 훼손당하는 손해를 입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각 기사의 내용 자체는 유통업체인 회사의 간부가 소속 회사의 영업기밀을 경쟁업체에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경쟁업체간의 과당 스카우트 행위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비리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계몽한다는 점에서 일응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위 각 기사의 내용이 과연 진실한 것인지, 가사 진실성에 대한 증명이 없더라도 위 피고들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다. (1) 갑 제15호증(마케팅 블레틴 88년 10월호 표지), 갑 제16호증(마케팅 블레틴 88년 11월호), 갑 제19호증(경영학 원서 표지), 갑 제22호증의 1, 2(각 영문서신), 을 제1호증의 14, 20(각 증인신문조서), 17 내지 19(각 공판조서) 51, 52(각 진술서), 53(진술조서), 62(마케팅 블레틴), 을 제2호증의 13, 14(마케팅 블레틴 및 그 번역문)의 각 기재(다만을 제1호증의 12, 13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0. 12. 7.경 주식회사 동양제과의 총무부장인 박　　을 만난 자리에서 '동양에서도 편의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이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이 필요할 텐데 좋은 사람을 추천하면 채용하겠느냐'고 제안을 하자, 위 박　　은 같은 달 10.경 주식회사 동양마트의 대표이사인 위 채　　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고 위 채　　은 마침 그 때가 동양마트를 설립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시화시키는 단계였기에 위 원고를 만나겠다고 승낙하여, 원고는 위 조　　과 함께 같은 해 12. 18.경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앰배서더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채　　을 만나 자신과 사우스랜드사와의 영문서신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철을 보여 주며 편의점사업의 국내 전망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 위 사우스랜드사의 세븐일레븐 홍보책자인 '마케팅 블레틴' 1988년 11월호를 건네 준 사실, 위 '마케팅 블레틴' 1988년 11월호를 건네 준 사실, 위 '마케팅 블레틴'은 사우스랜드사의 로스앤젤레스 지부에서 매월 발행하는 책자로서 세븐일레븐 체인점들에게 그 달의 판촉방법을 제시하거나 지난달의 판촉결과 및 효과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외에도 장차 세븐일레븐 체인점의 경영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 사우스랜드사에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위 사우스랜드사를 홍보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책자인데,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인 1988. 11. 26.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위 사우스랜드사의 초청으로 미국 달라스, 샌디에이고, 로스앤젤레스 등 3개 도시를 방문하던 도중 같은 해 12. 18. 로스앤젤레스 지사를 방문하였을 때 그 담당자로부터 방문기념으로 위 '마케팅 블레틴' 1988년 10월호 및 11월호를 2부씩 증정받았으며, 위 사우스랜드사에서는 다음 해인 1990년 봄경부터 소외 회사에게 위 '마케팅 블레틴'을 정기적으로 보내 온 사실, 또 원고는 1990. 12. 21.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미원빌딩 4층 '대어' 일식집에서 당시 편의점 유통업에 진출할 계획을 추진 중이던 주식회사 유공의 영업개발2과장으로서 편의점 사업의 실무자였던 위 유　　을 만나 국내 편의점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경영학에 관한 영업방법 및 '마케팅 블레틴' 중 일

부를 복사한 서류 4장을 건네 주었는데, 위 책자는 소외 회사의 직원인 소외 김　　가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연구실로부터 개인적으로 입수하여 원고에게 건네 주었던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나아가 원고가 위 채　　이나 유　　을 만나 소외 회사의 상품판매계획, 홍보계획, 월별상품판매촉진계획서 등 기밀문건을 넘겨 주거나 또는 구두로 영업비밀을 유출시켰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 제20호증의 2(진술서, 을 제1호증의 39와 같다), 을 제1호증의 8(진정서), 9 내지 11, 24(각 증인신문조서), 22(확인서), 26(진술서), 32, 33(각 인증서), 34, 36, 44(각 진술조서), 35(진술서), 55, 56, 59(각 진술조서), 을 제2호증의 8(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위 을 제1호증의 12, 13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20호증의 1(압수조서), 을 제1호증의 27(증인신문조서), 38, 48(각 진술조서), 58(서류표지)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마케팅 블레틴'은 위 사우스랜드사가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것을 전제로 배포하는 판촉용 내지는 홍보용 책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소외 회사의 영업에 관계되는 비밀서류라고 볼 수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 중 원고가 소외 회사의 비밀서류나 기업비밀을 다른 기업에 유출하였다는 부분은 진실성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피고 조선일보사가 게재한 기사의 요지는 검사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구속하였고 그 혐의 사실에 대하여 수사할 방침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임은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의 위와 같은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피고 중앙일보사의 기사의 요지는 위와 같은 내용 외에도 검찰의 수사결과 원고의 혐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것처럼 단정적으로 서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위 피고 소속 기자인 위 홍　　은 조선일보에 게재된 기사를 참조하고 구속영장사본을 열람한 외에는 원고나 위 박○○ 또는 그밖의 관련 당사자들에게 접촉을 시도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등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였음은 이미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일간신문이 신속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피고가 위 기사의 취재과정에서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피고는 위 기사의 내용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그런데,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잘못과 피고 중앙일보사의 피용자의 사무집행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임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연령, 학력,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액수는 금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중앙일보사는 각자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

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1991. 1. 23.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1997. 1.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조선일보사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중앙일보사에 대한 원고패소부분을 각 취소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조선일보사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 17.
재판장 판사 유 현
판사 권 순 일
판사 정 일 성

대법원 판결문

사건 : 97다10215 손해배상(기)
97다10222(병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이○○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대한민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7. 1. 17. 선고 96나4659, 4666 판결
주문 :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인 소외 문 은 1991. 1. 11. 서울지방검찰청에 소외 회사 ○○차장인 원고와 ○○과장인 소외 박○○이 소외 회사의 사업계획서 등 기밀서류를 복사하여 소외 주식회사 동양마트의 대표이사인 소외 채 과 소외 주식회사 유공 영업개발 2과장인 소외 유 에게 건네주는 등 회사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 박○○을 고소한 사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박 은 그 무렵 위 문 과 이러한 사실을 제보한 소외 회사 물류과장인 소외 조 을 소환하여 조사한 다음, 같은 달 22. 원고와 위 박○○을 소환하여 심문하고, 같은 날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원고를 구속하기에 이른 사실, 검사 박 은 같은 날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4부 검사실에서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사라 한다) 사회부 소속 기자인 소외 김낭기 등 기자들이 동석한 가운데 원고와 위 박○○에 대한 피의사실을 요약·정리한 수사자료를 배포하면서, 위 문 등 이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원고 등이 경쟁업체에 스카우트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음이 밝혀졌다는 내용의 수사 경위와 앞으로의 수사 방침에 대하여 발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박 이 위와 같이 직무상 알게 된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그 피의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나. 제3점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 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 당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위 문 은 원고가 회사기밀을 유출한 현장에 동행하였다는 위 조 으로부터 원고 등의 범행을 전해 들었을 뿐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었고, 위 조항민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조직개요, 마케팅 전략 등이 수록된 약 20페이지 분량의 복사된 책자를 넘겨주고, 회사경영방법, 91월별판매촉진계획 등에 관한 기밀서류를 보여주면서

구두로 회사기밀을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서류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나아가 그것이 회사의 기밀사항에 속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다만 원고가 위 서류를 건네주면서 “이것이 세븐일레븐의 마케팅 기본전략이다.”라고 말하여 그 서류가 회사기밀서류인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었을 뿐이며, 위 박○○은 원고가 2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그 내용은 알지 못하고 그 외에 ‘세븐일레븐의 조직내용’에 관한 파일 1권과 시험지 몇 장을 보여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반면, 원고는 위 채 등을 만난 사실만 인정하였을 뿐 그들에게 회사 기밀사항을 누설한 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업무상 알게 된 소외 회사의 영업기밀을 유출하여 위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회사기밀 문건을 복사하여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 및 절도죄로 기소되었는데 위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가 취소되고 절도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위 수사결과 발표 당시 고소인 등의 진술 내용이나 범행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회사의 기밀사항을 누설한 혐의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원고에 대한 혐의는 위 조 등 고소인측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그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어떠한 서류를 넘겨주고 어떠한 내용을 누설하였는지, 또 그가 넘겨준 서류나 누설한 내용이 과연 회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가운데 원고는 피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검사로서는 피의사실을 공표하기에 앞서 적어도 원고로부터 서류나 기밀을 넘겨받은 상대방인 위 채 과 유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통하여 이러한 사항을 명백히 밝혀 보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이러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피의사실을 공표한 이상 그 당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다고는 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 사건 피의사실을 공표함에 있어 수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당시까지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만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참고인들의 불확실한 진술을 근거로 성급히 원고의 범행 동기나 그가 유출한 회사기밀의 내용, 경쟁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향후 수사확대방향 등에 관하여 상세히 언급함으로써 마치 원고의 범행이 확정된 듯한 표현을 사용한 점, 검사는 각 언론사의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에 의한 보도를 전제로 이 사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고 언론매체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이 공표될 경우 피해자인 원고는 물론 그의 가족 등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의사실이 당시로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이른바 산업 스파이에 관한 것이어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사항이었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릴 현실적 필요성도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발표 당시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어느 정도의 증거는 확보되어 있었던 면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피의사실 공표에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조선일보사 사회부 기자인 위 김　　는 1991. 1. 22. 서울형사지방법원 영장계에서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을 열람하여 원고에 대한 혐의사실을 지득하고, 이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담당검사를 찾아가 수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을 취재한 다음, 이를 기초로 같은 달 23. 조선일보 제23면에 『회사기밀 유출 간부 구속』이라는 세로 6단 크기의 제목과 『경쟁사에 자사 유통조직 등 알려』라는 중간제목 및 『코리아세븐 30대 차장』이라는 소제목하에 원심판결 첨부 별지 2 기재와 같이 세로 4단 크기로 기사를 작성·게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⑴ 신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경우, 그 보도내용이 진실인가의 여부는 기사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제목과 본문의 크기 및 배치, 본문의 길이 등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일반 독자들이 보통의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통상 기사를 읽는 방법에 의하여 기사로부터 받을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조선일보 기사는 그 제목이 본문에 비하여 활자의 크기나 지면 면적에 있어 훨씬 크고, 『회사기밀 유출 간부 구속』, 『경쟁사에 자사 유통조직 등 알려』라고 되어 있어 원고의 범행을 단정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사의 제목과 아울러 본문의 내용 또한 원고의 범행 동기와 그가 누설한 회사기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원고의 범행이 진실임을 전제로 수사당국이 수사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인 것처럼 '유공' 등 관계자에 대해서도 사전공모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검찰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제목의 크기나 표현된 문구에 비추어 대부분의 일반 독자들로서는 먼저 기사 제목에 의하여 원고의 범행사실에 대한 강한 인상을 받은 다음 본문은 대충 읽어 넘어가기 쉽고,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더라도 원고의 범행 동기와 그가 누설한 기밀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단순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보다는 경쟁업체에 스카우트되기 위하여 회사기밀을 누설하였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보도가 '… 혐의를 받고 있다'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또 원고가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회사기밀을 누설한 것이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는 이상 그 신문보도가 진실이라는 입증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위 기사 본문 내용과 같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된 것 자체가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조선일보사의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판단한 것은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⑵ 신문보도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라는 또다른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

게 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과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위법성의 조각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고, 이러한 이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서는 보도 목적의 공익성과 보도내용의 공공성, 보도 매체의 성격과 보도내용이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것인가의 여부, 보도의 근거가 된 정보원(情報源)의 신빙성, 보도내용의 진실성과 공정성 및 그 표현 방법,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 등이 입게 될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보도내용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공적인물이 아닌 사인(私人)의 경우 가급적 익명을 사용하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보도기관은 수사기관과는 달리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조사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도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김　　는 1991. 1. 2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사본을 열람하여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을 알게 되자, 검사 박　　에게 취재를 요청하여 다른 기자들이 동석한 가운데 원고와 위 박○○에 대한 피의사실이 요약·정리된 자료를 배포받고 검사가 발표하는 수사 경위를 들은 다음, 이러한 취재자료에 기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다는 것인 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그다지 신속성을 요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위 기사의 취재원이 이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한 검사인 데다 사적인 정보가 아니라 소정의 절차에 의한 발표 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 신뢰도가 높고, 더욱이 사건 당사자인 원고는 구속되어 있어 원고에 대한 직접 취재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기는 쉽지 아니하였던 점, 위 기사는 그 제목 등에 있어 원고의 범행을 단정하는 듯한 표현이 사용되어 있으나 본문과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위 검사로부터 취재한 사건 경위와 수사의 방향 및 그로부터 배포받은 수사자료를 기초로 취재 내용이 객관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검사로부터 취재한 피의사실을 기사화하는 경우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아니하고 보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의 취재 관행에 반하지 아니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조선일보사가 검사의 발표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에 관한 기사를 그대로 작성·게재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조선일보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앞에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3.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0. 12. 18. 위 채 에게 미국 사우스랜드사로부터 받은 <마케팅 블레틴> 1988년 11월호를 건네주고, 같은 달 21. 위 유 에게 경영학 영문서적인 <마케팅>에서 복사한 서류 4장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위 채 이나 유 에게 소외 회사의 상품판매계획, 홍보계획, 월별 상품판매촉진계획서 등의 기밀서류를 넘겨주거나 또는 구두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증거판단을 한 다음, 원고가 위 채 에게 건네준 위 <마케팅 블레틴>은 위 사우스랜드사가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판촉용 내지는 홍보용 책자로서 소외 회사의 영업에 관한 기밀서류라고 할 수가 없고, 위 유 에게 건네준 서류 역시 영업에 관한 기밀서류라고 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중앙일보와 중앙경제신문의 기사내용 중 원고가 소외 회사의 기밀서류나 영업비밀을 다른 기업에 유출하였다는 부분은 기사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사회부 소속 기자인 소외 홍 는 1991. 1. 23. 조선일보에 게재된 앞서의 기사를 읽고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을 열람한 다음 같은 날짜 중앙일보와 중앙경제신문에 원심판결 첨부 별지 3, 4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고, 그 이외에는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각 기사의 근거가 된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재나 조선일보의 기사를 열람한 것만으로는 위 홍 가 기사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재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더욱이 기사내용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직접 취재에 의하여 원고의 범행이 확인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사를 게재하였으므로, 일간신문에 있어서의 보도의 신속성이란 공익적인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사를 게재한 것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6. 5. 28. 선고94다3382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나이, 학력,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금 15,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자료 산정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 26.
재판장 대법관 신성택
주심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지창권
대법관 송진훈 □

비록 '한나라당 ㅂ 의원' 정도로만 표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판문점 총격요청의혹 사건' 관련여부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었고,
원고의 성명을 밝힌 사진을 함께 게재하여 원고가 기사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9. 1. 28.자 판결 (98가합11581)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윤용섭 부장판사)는 1999년 1월 28일 박 국회의원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천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특정될 것을 요하나, 반드시 성명을 명시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고 밝히며, "위 각 기사에서 비록 '한나라당 ㅂ 의원' 정도로만 표현하였다 하더라도 보도될 당시, '판문점 총격요청의혹 사건' 당사자 중 한사람이 원고의 조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고의 사건 관련여부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었고, 기사 옆에 원고의 성명을 밝힌 사진을 함께 게재, 원고가 위 기사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수의 독자들은 '한나라당 ㅂ 의원'이 원고를 가리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한겨레신문은 1998년 10월 7일자와 8일자 보도를 통해 '한나라당 ㅂ 의원'이 '판문점 총격공작'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기사와 함께 원고의 사진을 게재한 바 있는

데, 이에 원고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

사건 : 98가합11581 손해배상(기)
원고 :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현
담당변호사 이 호 선
피고 : 1.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의 25
대표이사 권 근 술
2. 박
3. 김
위 피고들 주소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의 25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형 태
변론종결 : 1999. 1. 7.
주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0. 29.부터 1999. 1. 2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는 '한겨레' 신문 제1면에 제목은 38급 고딕체 활자로, 내용은 16급 명조체 활자로 하여 별지1 기재의 보도문을 1회 게재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는 이 판결 송달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한겨레' 신문 제1면 전면에 2회에 걸쳐 제목은 70급 활자로, 부제는 28급 활자로 한 별지 2. 기재 내용에 이어 이 판결 전문을 신문서체 10급 활자로 게재하라. 3.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가 위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게재시까지 지체된 신문발행일 1일당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
이유 : 1. 인정사실
다음은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5 내지 1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한나라당 소속 5선의 국회의원이고,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문사'라고 한다)는 신문의 발행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문사로서 '한겨레'라는 일간신문

을 발행하고 있으며, 피고 박　　은 피고 신문사의 편집위원장으로서 취재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 내용을 검토하여 기사의 게재 여부, 지면 할당 및 기사 크기 등을 결정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자이고, 피고 김　　은 피고 신문사의 기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 신문사는 그 발행의 위 한겨레신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바, 그 중 아래 (1) 기사는 피고 신문사의 특별취재반이, (2), (3)기사는 피고 김　　이 각 취재하여 작성한 기사로서 위 각 기사의 게재 여부 및 지면, 활자 크기 등은 피고 박　　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1) 1998. 10. 7.자 제1면 머릿기사로 「'공작' 배후 ㅂ의원 주목」이라는 제목을 달고 그 아래에 「안기부와 검찰은 '판문점 총격공작' 사건의 배후에 지난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핵심 참모 구실을 한 한나라당 ㅂ의원이 깊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ㅂ의원의 행적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의 한 핵심관계자는 6일 "한성기 씨 등이 북한쪽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배후가 ㅂ의원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줄 만한 물증이 드러나 현재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문제 때문에 이 증거를 당장 공개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의 진위와 관련해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경우 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ㅂ의원은 '일'의 대가로 비료 지원 등 북한의 요구를 충분히 들어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2) 같은 날자 제3면에 「판문점 '총격공작' 수사당국 초점은…」라는 제목과 「"일 잘되면 비료지원" ㅂ의원 메시지 포착」이라는 부제 아래에 『'판문점 총격공작' 사건의 최대 관심사는 막후에 가려진 배후의 인물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한　　씨 등 이른바 '공작 3인방'이 아무런 막후 지원이나 사후보장 없이 북한 쪽 인사들을 만나 그런 엄청난 일을 제안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주목하는 인물은 ㅂ의원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씨이다. (중략) 그러나 수사당국이 '총격공작' 사건의 직접적인 배후로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은　　씨보다 ㅂ의원이다. 한씨 등이 북한 쪽 관계자들과 중국 베이징에서 접촉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증거물에 ㅂ의원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일이 잘 되면 비료 지원 등 북한 쪽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보장을 했다는 것이다. 수사당국은 이와 관련해 한씨 등이 ㅂ의원의 후원 아래 북한 쪽과 '총격 공작' 협상에 나섰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ㅂ의원은 오래 전부터 북한의 전금철 조국평화통일의 부위원장 등과 채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안보'를 고려해 증거물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3) 같은 달 8.자 제5면에서 「'판문점 총격공작' 당국 배후지목 3인의 역할은」이라는 제목과 「ㅂ의원, 북 전금철과 비밀채널 '꼬리'」라는 부제 아래 「'판문점 총격공작사건'에 대한 안기부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배후인물이 과연 있었는지, 있다면 누구였고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성기·장석중 씨 등이 지난해 12월 북한 공작원들을 만날 때 누군가가 이들의 '신분' 등에 관해 보증을 했으며, 보증을 한 '배후인물'로는 3명 정도가 중점 거론되고 있다. 먼저 한씨 등이 북쪽에 총격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물증'에 등장하는 인물은 ㅂ의원(한나라당)이다. ㅂ의원은 한씨를 통해 북한 쪽 인사들에게 "일이 잘되면 비료를 지원하

는 등 요구를 충분히 들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다. 이 점은 ㅂ의원이 이번 '총격 공작'의 실질적인 배후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특히 ㅂ의원이 수년 전부터 북한의 전금철 조평통 부위원장과 비밀 채널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수사당국은 그가 대선 때 이 채널을 가동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던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그 오른쪽 상단에 「한나라 대책회의, 박

한나라당 의원이 6일 오전 당사에서 열린 판문점 총격공작 사건 대책회의에 나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황낙주 전 국회의장 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는 설명을 붙인 원고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다. 한편 국가안전기획부 부장인 소외 이 은 1998. 10. 21.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이른바 '판문점 총격요청의혹 사건'의 수사결과 원고는 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그 이전인 같은 달 20. 법무부 장관인 소외 박상천 또한 원고는 위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아직까지 원고가 위 사건에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2. 명예훼손의 성립

가. 먼저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특정될 것을 요하나, 반드시 성명을 명시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기사에서는 비록 '한나라당 ㅂ의원' 정도로만 표현하였을 뿐 원고의 성명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갑 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각 기사가 보도된 당시 이른바 '판문점 총격요청의혹 사건'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인 소외 오 이 원고의 조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고가 위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었던 점, 특히 위 (3)의 기사에서는 기사의 옆에 원고의 성명을 밝힌 사진을 함께 게재함으로써 원고가 위 기사의 내용과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은 위 각 기사의 '한나라당 ㅂ의원'이 원고를 가리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그리고 비록 피고들이 위 각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서 수사기관 관계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그대로 게재한 것이고(다만 실제로 수사기관의 관계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 기사의 형식도 주로 수사기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거나 수사상황을 전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각 기사의 표제, 내용, 문구 등에 비추어 그 기사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위 사건에 개입되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됨에는 지장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 김 , 박 은 위 각 기사를 직접 작성한 기자 또는 위 각 기사가 위 신문에 게재되도록 한 편집자로서, 그리고 피고 신문사는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가.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위 각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사회적 지위, 위 각 기사의 내용과 표현, 그리고 위 각 기사가 정치인으로서의 원고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과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신문사에게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명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들은 그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한편 위와 같은 손해배상만으로는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므로 이와 함께 피고 신문사에 대하여는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명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지면 및 활자의 크기와 종류,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신문사는 주문 제2항 기재의 지면 및 활자에 의하여 별지1 기재 보도문을 1회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에 더하여, 피고 신문사가 위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한 강제수단으로서 지체된 1일당 금 10,000,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므로 보건대, 피고 신문사가 자신이 발행하는 위 신문에 앞서와 같은 보도내용을 게재하여야 할 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로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한 것이고 통상적으로 판결절차(협의의 소송절차)에서 먼저 채무명의가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민사소송법 제694조)을 거쳐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시에 일정한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참조, 다만 위 판결에서는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 일정한 요건 아래 장래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작위의무를 명하는 이 사건에서는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1998. 10. 29.부터 피고들이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신문사는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으로서 그 발행의 '한겨레' 신문에 주문 제2항 기재의 지면 및 활자로 별지1 기재의 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 28.

재판장 판사 윤 용 섭

판사 황 진 구

판사 김 인 택 □

의견 또는 논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서 그 전제로서 적시한 사실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7. 3. 28.자 판결 (96가합10010)
서울고등법원 1998. 5. 28.자 판결 (97나16826)
대법원 1999. 2. 9.자 판결 (98다31356)

사실개요

대법원 제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1999년 2월 9일 희곡작가 이 씨가 국민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이 사건 기사들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 또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잘 따져보지 아니하고 종합적으로 이 사건 기사들이 천박한 상업주의의 외설 작품이라는 데에 주안점을 둔 보도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보도는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기사들은 사실 적시 부분에서 적시한 사실과 의견 또는 논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서 그 전제로서 적시한 사실들이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그 의견 또는 논평 자체가 진실인가 혹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위법성의 판단이 될 수 없고 그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는가, 혹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밝혔다.

국민일보는 1993년 7월 13일자 사회면 『벗기기 위험 수위…연극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원고가 집필한 희곡을 기초로 하여 공연되는 연극이 남녀 어린이와 중년 남·여성과의 변태적 성행위를 묘사하여 벗기기 연극으로 관객을 끌려고 하는 천박한 상업주의적 외설 작품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기사들이 사실과 다르게 이 사건 연극을 벗기기 연극, 변태성희연극으로 단정하였고, 이 사건 연극에는 작품의 주제와는 관계없이 출연자의 신체를 과다노출하는 의미의 벗기기 장면이나 어린이가 중년 남녀와의 변태적 성행위를 하는 내용 등이 없는데도 이 연극이 마치 과다노출이나 변태적 성관계가 전부인 것처럼 게재되어 원고의 작가로서의 인격과 명예, 신용이 훼손당하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기사를 "진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한 공공적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평론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따져 볼

것도 없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자가 이 사건 희곡이나 연극을 보지 아니한 채 보도자료만을 보고 평론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 사건 기사가 "작품과 작가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여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단편적이고 외형적인 작품내용이나 불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주관적인 판단아래 전체적으로 음란성을 띤 작품인 것처럼 과장 보도함으로써 희곡이나 연극의 내용을 왜곡하였다며 3천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1심 판결문

사건 : 96가합10010 손해배상(기)
원고 :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고 : 주식회사 국민일보사
서울 마포구 신수동 371의 16 국민일보사내
대표이사 차 일 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 양 호
변론종결 : 1997. 3. 7.
주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7.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0, 갑 제7호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7호증의 8의 각 기재와 증인 채 , 전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희곡부문에 '요한을 찾습니다'라는 작품이 당선되어 등단한 이래 '0.917'(이하 이 사건 희곡이라고 한다) 등 다수의 희곡을 발표한 희곡작가이고, 피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언론법인으로서 일간 '국민일보'를 발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3. 7. 13.자 국민일보 제19면 상단에 "벗기기 위험수위… 연극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하로 "어린이들 출연 변태성희 충격"이라는 대제목과 "내달공연 0.917논란"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기사 중간에 "중년 남녀와 관계 섬뜩… 술·담배도 연출가 '군부의 국민유린묘사 주장"이라는 중제목을 삽입하여 별지 1과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신문 같은 달 7. 16.자 같은 면의 '여울목'이라는 란에 "연극 0.917 공연취소"라는 대제목과 "성논란…아역부모 자녀출연거부로"라는 소제목으로 별지2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피고 회사 문화부 기자인 소외 전 는 소외 채 이 1993. 7. 10.경 배포한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제1 기사를 작성하였는 바, 위 보도자료 및 이에 붙어있는 사진과 1984년 위 희곡이 연극으로 공연될 당시의 선전포스터의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희곡으로 1984. 11. 29.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문학상 희곡부문에 신인상을 수상하였고, 이 사건 희곡은 극단 세실의 대표인 소외 채 의 연출로 1981. 1. 초연된 이래 1984. 3.부터 1985. 3.까지 서울과 지방 등지에서 연극으로 수백 회에 걸쳐 공연되었다.
마. 위 채 은 원고로부터 공연승낙을 받은 이 사건 희곡을 기초로 한 '0.917'이라는 연극(이하 이 사건 연극이라고 한다)을 1993. 8. 1.부터 같은 달 14.까지 공연한다는 계획으로 그 공연 준비를 하다가 이 사건 제1기사가 보도된 이후 이 사건 연극에 출연하기로 되어 있던 소외 김 등의 부모의 반대로 위 김 이 위 연극에 출연하지 않게 되는 사정 등이 생기자 위 이 사건 연극의 공연계획을 취소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첫째, 이 사건 기사들은 이 사건 연극을 '벗기기 연극', '변태성희연극'으로 단정하였고, 둘째, 위 채 및 김 는 이 사건 제1 기사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사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허위 보도되었으며, 셋째, 이 사건 연극에는 작품의 주제와는 관계없이 출연자의 신체를 과다 노출하는 의미의 벗기기 장면이나 어린이가 중년 남녀와의 성관계 또는 변태적 성행위를 하는 내용 그리고 어린이가 성적 학대를 당하거나 그 외 잔혹한 내용이 없는데도 이 사건 기사들에서는 위 연극이 마치 과다 노출이나 변태적 성관계가 전부인양 되어 있고, 넷째, 이 사건 희곡이 연극으로 처음 공연된 연도가 1981년인데도 이 사건 기사들에서는 1984년으로 잘못 보도되었고, 원고나 연출자의 의도가 군부의 국민유린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하였다.
② 위와 같은 허위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작가로서의 인격과 명예, 신용이 훼손당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들은 이 사건 희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연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들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위 기사들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측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 사건 기사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고 피고는 오로지 건전한 연극문화의 조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들을 보도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신문에 이 사건 기사들을 보도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사들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등이 훼손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제1 기사의 내용(특히 이 사건 제1 기사 중 ① 내지 ③ 부분 및 기사 제목 중 '벗기기', '변태성희' 등의 표현과 이 사건 희곡의 작가가 원고라고 명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기사는 직접적으로는 이 사건 희곡을 기초로 하여 공연되는 이 사건 연극에 관한 기사라고 할 것이지만, 위 기사에는 이 사건 연극이 이 사건 희곡의 내용과는 달리 연출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위 기사를 읽은 신문 독자 중 상당수는 원고가 변태적 성행위 등을 묘사하는 내용의 희곡을 쓴 작가라고 생각하였다고 보여지고(물론 이 사건 제1기사 ⑥ 부분의 작가의 의도가 성희묘사에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와 이 사건 제2 기사 중 이 사건 연극이 변태 성행위를 통하여 독재권력의 폭압을 다루려고 하였다는 부분에 의하여 위 신문을 제대로 읽은 독자 중에는 이와 달리 생각하는 독자들도 많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기사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중 이유 없는 부분에 관하여

이 시간 희곡이 처음으로 연극으로 공연된 연도가 1981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사들에서 그 연도가 1984년이라고 보도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명예 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연출가인 소외 채　　의 발언이나 연극평론가 김　　의 발언 내용에 관한 기사는 오로지 연출가의 이 사건 연극에 대한 연출의도 및 연출기법에 관한 것이므로, 위 기사가 허위인가 여부 등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 기사 부분으로 인하여 위 채윤일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명예 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밖에 이 사건 제1, 2 기사 중 이 사건 희곡이 군부의 국민유린 또는 독재권력의 폭압성을 다루려 하였다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희곡 및 이 사건 연극에 대한 평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평론으로서의 범위를 부당하게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국 이 사건 제1 기사 중 ① 내지 ③ 부분 및 기사 제목 중 '벗기기', '변태성희' 등의 제목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 등이 훼손되었다고 볼 것이다.

나. 피고의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이 사건 제1 기사 중 ① 내지 ③ 부분 및 기사 제목 중 '벗기기', '변태성희' 등의 표현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피고측이 위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등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제1 기사 중 ③ 부분 등 이 사건 희곡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이 사건 희곡의 내용(갑 제6호증의 2)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위 적시 부분은 위 희곡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이므로 진실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위 기사 부분이 위 희곡 내용 중의 일부만에 불과하다거나 표현상의 사소한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외 이 사건 제1 기사 중 '변태성희', '변태적 성행위', '성적 학대' 등 이 사건 희곡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적시한 부분은 위 전　　가 이 사건 희곡 중에 나오는

남녀 어린이들과 성인 남녀간의 행위를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표현한 것인바, 갑 제6호증의 2와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희곡에는 7살 된 여자 어린이가 스스로 옷을 벗어 찢은 다음 성년 남자로 하여금 상처를 입으로 닦게 하거나, 7살 된 남자 어린이가 여자의 가슴을 만진다든가 벌거벗은 자신의 몸에 술을 부은 다음 키스를 가르쳐 주려는 중년 여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성행위'라는 낱말은 통상 성교뿐만 아니라 성적 접촉행위까지 포함하여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표현은 사실에 기초하여 통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표현으로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진실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이 사건 희곡이 변태적 성행위 등을 묘사하는 희곡 내지 이른바 '벗기기' 희곡이라는 평론(더 정확하게는 이 사건 연극이 이른바 '벗기기' 연극이라는 평론)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위 평론이 진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공공적 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위 평론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또는 다수에 의하여 지지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평론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 등이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평론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희곡 및 위 보도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위 평론은 진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한 위 평론은 공공적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므로 위 평론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따져 볼 필요 없이 위 평론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신문기자가 이 사건 희곡이나 연극을 보지 아니한 채 보도자료만을 보고 위와 같은 평론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원고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희곡은 이른바 부조리극이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희곡의 제목인 '0.917'은 얼음의 비중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수면에 가라앉아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의미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통상인으로서는 마치 수면 아래 잠겨 있는 얼음을 보지 못한 채 수면 위에 떠있는 얼음만을 보듯이 위 희곡 중 남녀 어린이와 성년 남녀간의 성적인 접촉행위에 관한 일부분만을 얼핏 보고 위 희곡을 변태 성행위를 묘사한 희곡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별지 3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희곡을 1984년에 연극으로 공연한 실험극장 소극장측도 위와 유사한 점을 부각시켜 위 연극을 선전하였다).

(2) 나아가 위 기사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피고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신문에 위 기사를 게재하였는가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연극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연극인 점과 위 기사의 내용에 비추어 위 기사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기사가 게재되기 이전에 원고가 희곡을 집필하고 위 채 이 연출한 '불의가면-권력의 형식'이라는 연극이 연극평론가와 배우, 그리고 일반인들 사이에서 외설 연극인가 여부에 관하여 논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및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외설 내지 변태적 성행위를 묘사한 연극이 공연될 경우 사회적으로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과 이 사건 기사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위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 등을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

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1997. 3. 28.
재판장 판사 민 경 도
판사 김 문 관
판사 김 인 택

2심 판결문

사건 : 97나1682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고, 피항소인 : 국민일보(國民日報)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신수동 371의 16
대표이사 조 희 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양호, 이형석, 유철형, 이재식
변론종결 : 1998. 4. 16.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7. 3. 28. 선고, 96합10010 판결
주문 :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7. 16.부터 1998. 5. 28.까지는 연 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7. 13.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7. 13.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0,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채 , 전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희곡부문에 ‘요한을 찾습니다’라는 작품이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한 이래 순수예술작품인 ‘누구세요?’, ‘산씻김’, ‘0.917’(이하 이 사건 희곡이라고 한다) 등 다수의 희곡을 발표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견 희곡작가이고, 피고는 언론회사로서 일간신문인 ‘국민일보’를 발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3. 7. 13.자 국민일보 제19면(사회면) 좌측 상단에 “벗기기 위험수위…연극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 아래 “어린이들 출연 변태성극 “충격””이라는 대제목과 “내달공연 「0.917」 논란”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기사 중간에 “중년 남녀와 「관계」 섬뜩…술·담배도 연출가 “군부의 국민유린묘사” 주장”이라는 소제목을 삽입하여 별지 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고 한다.)와 같은 달 16.자 같은 신문 같은 면 하단의 ‘여울목’이라는 난에 “연극 0.917 공연취소”라는 제목과 “성논란…아역부모 자녀출연거부로”라는 소제목 아래 별지 제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피고 소속 문화부 기자인 소외 전 는 이 사건 희곡의 연극연출을 맡은 소외 채 이 1993. 7. 10.경 배포한 보도자료와 1981년 이 사건 희곡이 연극으로 공연될 당시의 공연선전물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제1기사를 작성하였던 바, 그 보도자료 및 이에 첨부된 사진과 공연선전물의 내용은 별지 제3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희곡으로 1984. 11. 29.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문학상 희곡부문 신인상을 수상하였고, 이 사건 희곡은 극단 쎄실의 대표인 소외 채 의 연출로 1981. 1.경 초연된 이래 1984. 3.경부터 1985. 3.경까지 서울과 지방 등지에서 수백회에 걸쳐 연극으로 상연되었다.

마. 소외 채 은 원고로부터 공연승낙을 받고, 이 사건 희곡을 기초로 ‘0.917’이라는 연극(이하 이 사건 연극이라고 한다)을 1993. 8. 1.부터 같은 달 14.까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공연한다는 계획 아래 산울림소극장 연습장에서 그 공연준비과정 중 제1단계로 출연 배우들로 하여금 이 사건 희곡작품을 읽고 그 대사를 외우도록 하는 연습을 시키고 있던 중(연극공연을 위한 준비과정은 총 3단계로 구분되는 바, 제1단계는 희곡작품읽기를 통하여 대사를 외우는 과정이고, 제2단계는 동선연결 및 행위연출을 연습하는 동작연습과정이며, 제3단계는 출연배우들이 실제 공연과 마찬가지로 의상 및 분장을 한 뒤 소품이 장치된 무대에서 총연습하는 과정이다.) 이 사건 연극의 공연을 앞두고 이 사건 제1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이 사건 연극에 아역 배우로 출연하기로 하였던 소외 김 이 그 부모의 반대로 이 사건 연극에 출연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연극의 공연계획 자체를 취소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연극은 공연되지 못하게 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기사들은, 첫째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연극을 ‘벗기기 연극’, ‘변태성희연극’으로 단정하였고, 둘째 소외 채 , 김 는 이 사건 제1기사에서 게재된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허위 보도하였으며, 셋째 이 사건 연극에는 작품의 주제와는 관계없이 출연자의 신체를 과다 노출하는 의무의 벗기기 장면이나 어린이가 중년 남녀와의 성관계 또는 변태적 성행위를 하는

내용, 그리고 어린이가 성적 학대를 당하거나 잔혹한 내용이 없는데도 이 사건 기사들에서는 이 사건 연극이 마치 과다노출이나 변태적 성관계가 전부인 것처럼 게재되어 있고, 넷째 이 사건 희곡이 연극으로 처음 공연된 연도가 1981년인데도 이 사건 기사들에서는 1984년으로 잘못 보도되었고, 원고나 연출자의 의도가 군부의 국민유린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하였다.

② 위와 같은 허위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작가로서의 인격과 명예, 신용이 훼손당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들은 이 사건 희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연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들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사들은 모두 진실한 사실에 터 잡은 것이고 피고측에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피고는 오로지 건전한 연극문화의 조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들을 보도하였으므로 피고가 게재한 이 사건 기사들의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원고의 명예훼손 여부에 관하여

(1)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기사들의 내용(특히 이 사건 제1기사 중 ① 내지 ③ 부분 및 그 기사 제목 중 '벗기기', '변태성희', '중년남녀와 「관계」 섬뜩' 등의 표현과 이 사건 제2기사 중의 '변태성행위' 등의 표현, 이 사건 기사들에 이 사건 희곡의 작가가 원고라고 명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들은 직접적으로는 이 사건 희곡을 기초로 하여 공연되는 이 사건 연극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 기사내용이 연극에서의 연출기법이나 배우들의 연기에 관한 비평이라기보다는 연극내용의 성적 변태성이나 선정성에 관한 비평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결국 희곡의 내용이 비평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희곡작가인 원고의 이름까지 보도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기사들에 대한 신문독자들의 인식에 따라 연극연출가는 물론 작가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그 명예가 훼손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명예훼손주장 중 이유 없는 부분에 관하여

첫째 이 사건 희곡이 연극으로 초연된 해가 1981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사들에서 이 사건 연극의 초연연도를 1984년이라고 허위 보도하였다는 부분은 그와 같이 잘못 보도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이 사건 제1기사 중 이 사건 연극의 연출가인 소외 채 의 발언내용에 관한 부분이나 이 사건 기사들 중 희곡작가인 원고나 이 사건 연극의 연출가인 소외 채 이 이 사건 연극을 통하여 독재권력의 폭압을 다루려고 한 것이라는 부분은 이 사건 연극에 대한 연출가로서의 연출의도 및 그 기법에 관한 것이거나, 그 내용도 이 사건 연극이나 희곡의 주제에 대한 해석이나 비평에 관한 의견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기사내용이 허위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보도내용의 의미
별지 제1, 제2의 이 사건 보도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희곡과 연극을 남녀 어린이와 중년 남·여성과의 변태적 성행위를 묘사하여 벗기기 연극으로 관객을 끌려고 하는 천박한 상업주의의 외설작품이라는데 주안점을 둔 보도라고 할 수 있다.
라. 인정사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7, 갑 제17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6,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 및 당심증인 채 , 전 의 각 증언(단, 당심증인 전 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당심증인 전 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희곡은 3개의 이야기가 옴니버스 스타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줄거리는 별지 제3 기재와 같은 바, 이 사건 희곡은 부조리연극의 일종이고, 그 작품제목인 '0.917'은 얼음의 비중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물 속에 잠겨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빙산의 나머지 대부분을 뜻하는데, 평론가들에 의하여 일상적 삶 속의 환상세계를 성에 관한 주제를 통하여 비현실적인 사건을 등장시켜 자각하게 하는 현실적인 삶에 대한 상징적이며 암시적인 일깨움을 주어 '없음'에서 '있음'을 발견해 낼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동화가 가져다주는 환상적 세계로의 접근을 가능케 한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원고는 1984. 대한민국문학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1976.부터 발표한 작품마다 작품상을 받아 온 순수예술계열의 작가로 인정되고 있다.
(2) 이 사건 희곡에서 작가인 원고가 표현하고자 한 작품의 의도는 어린이들을 어린 백성 즉 우민을 상징하나 실제로는 결코 어리석지 아니하고, 거대한 권력에 의하여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자유와 정의를 갈구하는 민중을 상징화하여 첫째 이야기에서는 어린이를 대변하는 우민들이 무지하게 보이지만 알 것은 다 알고 있음을 나타내어 '숨겨진 앎에 대한 공포'를 표현하고 있다. 둘째 이야기에서는 소년이 힘으로 여인을 기어오라고 만듦으로써 '숨겨진 힘에 대한 공포'를 표현하고 있으며, 셋째 이야기에서는 억눌려 있는 우민이 부도덕한 권력(성인)에 눌려 한탄하면서 민주화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표현하려고 한 것이다.
(3) 이 사건 희곡은 같은 연출가의 연출로 1981. 1. 공간사랑에서 연극으로 초연되었고, 1984. 3.부터 1985. 3.까지 문예회관 소극장, 대진카톨릭문화회관 등에서 약 500회 이상 공연되어 평론가들은 물론 관객들로부터도 좋은 평을 받았다.
(4) 이 사건 취재기자인 소외 전 는 이 사건 기사를 취재하면서 연출가인 소외 채 일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연극평론가 소외 김 에게 전화로 이 사건 연극에 대한 평을 부탁하였으며, 그 외에 극단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이 사건 연극 초연 당시 배포하였던 공연선전물 등이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보도기사를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희곡을 전부 읽어보거나 10여 년 전에 공연된 연극을 직접 관람한 적은 없었으며, 초연 당시의 연극평도 찾아보지 아니하였다.
(5) 소외 전 는 이 사건 희곡이 순수문학예술전문지인 월간 '문학사상' 1981. 4.호에 발표된 이래 연극화되어 공연윤리위원회의 대본심의를 거쳐서 1985.까지 약 500회 이상 공

연된 작품이고, 1984. 대한민국문학상 수상작품이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보도기사를 작성하였다.
(6) 소외 전　는 연극담당기자로 옮긴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도 당시 연극계를 잘 모르고 있었고, 부조리극이 어떤 내용의 연극인지 그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으며, 부조리극 계통의 연극을 본 적이 없었다.
마.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이 사건 희곡 중에는 첫째 이야기에서의 7세 소녀가 나이답지 않게 대담하고 저돌적으로 30대 중반의 남자를 유혹하면서 비에 젖은 옷을 벗겨 달라고 하고, 스스로 옷을 벗어 갈기갈기 찢은 다음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낸 뒤 그 남자로 하여금 상처부위를 입으로 닦도록 요구하는 장면과 둘째 이야기에서의 30대 중년여성이 장난기로 7세 소년에게 키스를 가르쳐 주려 한다든가, 7세 소년이 역시 나이답지 않게 대담하고 저돌적으로 그 여자의 가슴을 만진다든가 벌거벗은 자신의 몸에 술을 부은 다음 키스를 가르쳐 주려던 그 여자로 하여금 기어오도록 명령하는 장면(이 사건 보도기사에서는 소년이 자신의 알몸에 위스키를 끼얹어 중년여자로 하여금 핥게 만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이 사건 희곡에는 없는 내용이다.)이 성적으로 가장 선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채　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연극의 연출가 소외 채　은 1984년 공연 당시 공연선전물을 통하여 “단내나는 아이들에 의해 침몰하는 성인의 밤” 또는 “밤마다 자극을 찾아 헤매는 무서운 아이들의 이야기”, “욕망의 전화번호 영점구일칠”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건 연극을 일반인들에게 선정적인 연극인 것으로 선전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표현이 이 사건 보도기사와 같은 어린이와 중년 남·여성 사이의 변태적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직접적으로 이른바 벗기기 연극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을 표현한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희곡이 1984년도 대한민국문학상 희곡부문 신인상을 수사한 예술작품이고, 1984~1985년도에 전국적으로 500회 이상 공연되었고 공연윤리위원회의 대본심의를 거친 점, 원고는 순수예술계통의 작가로서 발표한 작품마다 작품상을 받아 온 점, 이 사건 취재기자 소외 전　는 연극담당기자 경력이 짧아서 연극에 대한 깊은 소양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도기사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희곡을 전부 읽어보지도 아니하였고, 1984~1985년도의 연극공연에 대한 평론이나 이 사건 희곡의 작품성과 작가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희곡의 연극공연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시점에서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전정희는 취재기자로서 충분한 조사를 하여 나름대로의 진실확인작업을 하거나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중년의 어른들 사이에서 전개되는 성적인 이야기라는 것에 터 잡아 을 제1호증의 보도자료와 을 제2호증의 1 내지 8의 이 사건 연극연습장면을 찍은 사진들 및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공연선전물만을 보고 성을 소재로 한 이 사건 희곡이나 연극에 7세 내지 10세 전후의 어린이가 출연하는 것 자체가 비도덕적이라는 주관적인 판단하에 이 사건 희곡이 변태적이고 선정적인 음란한 작품이라고 속단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들은 소외 전　가 취재기자로서 작품과 작가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여 나름대로의 진실확인작업을 하거나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단편적이고 외형적인 작품내용이나 불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주관적인 판단아래 전체적으로 이 사건 희곡이나 연극이 마치 미성년자와 중년어른들의 변태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음란성을 띤 작품인 것처럼 과장 보도함으로써 이 사건 희곡이나 연극의 내용을 왜곡하여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나 취재기자인 소외 전　　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기사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도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발행의 일간신문인 국민일보에 이 사건 기사들을 게재·반포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고, 따라서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입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수액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이 사건 기사들의 내용 및 취재경위, 허위기사부분이 전체내용에 미치는 영향, 이 사건 기사들의 게재·반포행위로 인하여 입은 원고의 피해정도, 특히 문단에 등단한 후 대한민국문학상 희곡부문 수상경력까지 있는 중견희곡작가로서의 명성에 오점을 남긴 점, 원고의 연령 및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그가 저지른 이 사건 명예훼손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제2기사 게재·반포일인 1993. 7. 16.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 5. 28.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소정의 연 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5. 28.
재판장 판사 김 목 민
판사 안 기 환
판사 황 경 학

대법원 판결문

사건 : 98다31356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고, 상고인 : 국민일보(國民日報)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진 외 2인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8. 5. 28. 선고, 97나16826 판결
주문 :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언론회사로서 일간신문인 국민일보를 발간하면서 1993. 7. 13.자 국민일보 제19면(사회면) 왼쪽 상단에 『벗기기 위험水位 … 演劇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 아래 『어린이들 출연 변태性戱 "충격"』이라는 대제목과 『내달공연 「0.917」 논란』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기사 중간에 『중년 남녀와 '관계' 섬뜩… 술·담배도 연출가 '軍府의 국민유린묘사' 주장』이라는 소제목을 삽입하여 원심판결문 첨부 별지 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고 한다)와 같은 달 16.자 같은 신문 같은 면 하단의 '여울목'이라는 난에 『演劇 0.917 공연취소』라는 제목과 『性논란… 兒役부모 자녀출연거부로』라는 소제목 아래 원심판결문 첨부 별지 제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제1, 제2 기사들(이하 이 사건 기사들이라고 한다)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들은 원고가 발표한 '0.917'이라는 희곡(이하 이 사건 희곡이라 한다)과 소외 채 이 원고의 공연승낙을 받고 이 사건 희곡을 기초로 하여 1993. 8. 1. 부터 같은 달 14.까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예회관에서 공연할 계획이었던 '0.917'이라는 연극(이하 이 사건 연극이라고 한다)이 남녀 어린이와 중년 남·여성 사이의 변태적 성행위를 묘사함으로써 벗기기 연극으로 관객을 끌려고 하는 천박한 상업주의의 외설작품이라는 데에 주안점을 둔 보도로서 이 사건 희곡의 작가인 원고의 이름까지 보도함으로써 작가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가 하는 점과 관련하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⑴ 이 사건 희곡은 3개의 이야기가 옴니버스 스타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줄거리는 원심판결문 첨부 별지 제3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희곡은 부조리연극의 일종이고, 그 작품 제목인 '0.917'은 얼음의 비중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물 속에 잠겨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빙산의 대부분을 뜻한다.
이 사건 희곡은 평론가들에 의하여 성(性)에 관한 주제를 통하여 비현실적인 사건을 등장시켜 일상적 삶 속의 환상세계를 자각하게 하고, 현실적인 삶에 대한 상징적이며 암시적인 일깨움을 주어 '없음(無)'에서 '있음(有)'을 발견해 낼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동화가 가져다주는 환상적 세계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원고는 1984. 대한민국문학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1976.부터 발표한 작품마다 작품상을 받아 온 순수예술계열의 작가로 인정되고 있다.
⑵ 이 사건 희곡에서 작가인 원고가 표현하고자 한 작품의 의도는 어린이들로 상징되는 어린 백성 즉 우민(愚民)은 실제로는 결코 어리석지 아니하고, 거대한 권력에 의하여 침

묵을 강요당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자유와 정의를 갈구하는 민중이라는 것을 상징화하여 제1막에 해당하는 하나에서는 어린이로 상징화된 우민들이 무지하게 보이지만 알 것은 다 알고 있음을 나타내어 '숨겨진 앎에 대한 공포'를 표현하고 있고, 제2막에 해당하는 둘에서는 소년이 힘으로 여인을 기어오게 만듦으로써 '숨겨진 힘에 대한 공포'를 표현하고 있으며, 제3막에 해당하는 셋에서는 억눌려 있는 우민이 성인으로 상징화된 부도덕한 권력에 눌려 한탄하면서 민주화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표현하려고 한 것이다.

⑶ 이 사건 희곡은 채　　의 연출로 1981. 1. 공간사랑에서 연극으로 초연되었고, 1984. 3.부터 1985. 3.까지 문예회관 소극장, 대전카톨릭문화회관 등에서 약 500회 이상 공연되어 평론가들은 물론 관객들로부터도 좋은 평을 받았다.

⑷ 이 사건 취재기자인 소외 전　　는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기 위하여 취재하면서 연출가인 채　　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연극평론가 소외 김　　에게 전화로 이 사건 연극에 대한 평을 부탁하였으며 그 외에 극단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이 사건 연극 초연 당시 배포하였던 공연선전물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을 뿐 이 사건 희곡을 전부 읽어보거나 10여년 전에 공연된 연극을 직접 관람한 적은 없었으며, 초연 당시의 연극평도 찾아보지 아니하였다.

⑸ 전　　는 이 사건 희곡이 순수문학예술전문지인 월간 <문학사상> 1981. 4.호에 발표된 이래 연극화되어 공연윤리위원회의 대본심의를 거쳐서 1985.까지 약 500회 이상 공연된 작품이고, 1984. 대한민국문학상 수상작품이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보도기사를 작성하였다.

⑹ 전　　는 연극담당기자로 옮긴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기사 작성 당시 부조리극이 어떠한 내용의 연극인지 그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부조리극 계열의 연극을 본 적이 없었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희곡 중에는 하나에서 7세 소녀가 나이답지 않게 대담하고 저돌적으로 30대 중반의 남자를 유혹하면서 비에 젖은 옷을 벗겨 달라고 하고, 스스로 옷을 벗어 갈기갈기 찢은 다음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낸 뒤 그 남자로 하여금 상처부위를 입으로 닦도록 요구하는 장면과 둘에서 30대 중년 여성이 장난기로 7세 소년에게 키스를 가르쳐 주려 하고, 7세 소년이 역시 나이답지 않게 대담하고 저돌적으로 그 여자의 가슴을 만지고 벌거벗은 자신의 몸에 술을 부은 다음 그 여자로 하여금 기어오도록 명령하는 장면(이 사건 제1기사는 소년이 자신의 알몸에 위스키를 끼얹어 중년 여자로 하여금 핥게 만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이 사건 희곡에는 없는 내용이다)이 성적으로 가장 선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연극의 연출가인 채　　은 1984년 공연 당시 공연선전물을 통하여 "단내나는 아이들에 의해 침몰하는 성인의 밤" 또는 "밤마다 자극을 찾아 헤매는 무서운 아이들의 이야기", "욕망의 전화번호 영점구일칠"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일반인들에게 이 사건 연극이 선정적인 연극인 것으로 선전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희곡의 위와 같은 표현이 이 사건 기사들과 같은 어린이와 중년 남·여성 사이의 변태적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직접적으로 이른바 벗기기 연극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을 표현한다고는 볼 수 없는 반면

위 (1) 내지 (6)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전　　는 취재기자로서 충분한 조사를 하여 나름대로의 진실확인작업을 하거나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어린 아이와 중년의 어른들 사이에서 전개되는 성적인 이야기라는 것에 터잡아 을 제1호증의 보도자료와 을 제2호증의 1 내지 8의 이 사건 연극연습장면을 찍은 사진들 및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공연선전물만을 보고 성을 소재로 한 이 사건 희곡이나 연극에 7세 내지 10세 전후의 어린이가 출연하는 것 자체가 비도덕적이라는 주관적인 판단 아래 이 사건 희곡이 전체적으로 변태적이고 선정적인 음란한 작품이라고 속단하여 과장보도하는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기사들은 전체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나아가 피고나 취재기자인 전　　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의견 또는 논평에 의한 명예훼손과 그 경우의 위법성 조각 사유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즉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인 바,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그 의견 또는 논평 자체가 진실인가 혹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는가, 혹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

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참조)인데, 이는 앞에서 본 사실 적시와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구별,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경우에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의 판별에 있어서도 타당한 기준이 될 것이고, 아울러 사실 적시와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구별,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경우에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의 판별에 있어서는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신문기사 가운데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로 된 부분에 대하여 거기서 사용된 어휘만을 통상의 의미에 쫓아 이해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증거에 의하여 그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타인에 관한 특정의 사항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바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당해 부분 전후의 문맥과 기사가 게재될 당시에 일반의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지 경험 등을 고려하여 볼 때에 그 부분이 간접적으로 증거에 의하여 그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타인에 관한 특정의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그 부분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묵시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과 함께 그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기사들의 위법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⑴ 이 사건 기사들 중 원심이 명예훼손책임을 물은 부분

앞서 본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보면 이 사건 기사들 중 원심이 명예훼손책임을 물은 부분은 이 사건 기사들 중 다음 각 부분(원심이 붙인 번호를 그대로 붙이고 이하 번호만으로 해당 부분을 특정한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1기사 중 원심이 판시한 대제목과 소제목 전부. ① '불의 가면'과 같은 벗기기 연극에 관객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10세 전후의 소년소녀가 성적 학대를 당하는 연극이 1일부터 문예회관 소극장 무대에 올려질 예정이어서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

② 지난 10일부터 연습에 들어간 문제작은 '0.917'(李鉉和 작·蔡允一 연출). 아역배우 김 양(전곡국교 4년) 등 5명이 출연, 중년 남·여성과의 변태적 성행위를 하는 등의 파격성을 보여주고 있다.

③ 극중 7세의 남녀 어린이는 키스를 가르쳐 주려던 30대 주부의 성적 학대 의도를 앞질러 스스로 전라가 돼 자신의 몸에 위스키를 끼얹고 오히려 핥게 만들거나 숙직하는 중년 남성에게 접근 '강제추행당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상처난 자신의 몸을 탐하게 하는 섬뜩함을 보여준다.

또 "숙직할 때면 으레 한번쯤 여자 생각하게 마련 아녜요", "나는 사랑도 할 줄 알아요", "저한테 유혹을 느끼지 않으세요"라며 스스럼없이 옷을 벗고 술과 담배를 즐긴다.의 각 부분. 이 사건 제2기사 중 7세 전후의 소년소녀와 중년 남·여성의 변태 성행위를 통해 독재권력의 폭압을 다루려던 연극 「0.917」(李鉉和 작·蔡允一 연출)이 드센 비난 여론에다 아역배우의 부모가 자녀의 출연을 거부함으로써 공연 자체가 취소됐다.의 부분

⑵ 대법원의 판단

우선 이 사건 제1기사 중 ③의 내용은 문맥상 연극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어서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희곡(갑 제6호증의 2)의 대사 또는 지문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서 대체로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다는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희곡의 둘에는 소년이 포도주를 자신의 몸에 끼얹고 30대 여성으로 하여금 이를 먹으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③의 내용 중 소년이 위스키를 끼얹었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진실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문맥에서 이 사건 희곡의 내용상 소년이 알몸이 되어 자신의 몸에 술을 끼얹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술의 종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차이를 가지고 ③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만 ③의 내용 중 '성적 학대 의도'라는 부분은 ③에 별도로 적시되어 있는 '30대 주부가 소년에게 키스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을 전제사실로 하여 그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희곡 중에는 '30대 주부가 소년에게 키스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이외에도 30대 주부가 예정하고 있는 별도의 '성적 학대'가 있다는 것인지 애매하다.
이와 같이 애매한 점은 이 사건 제1기사 중 ①에 나오는 '성적 학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만약 ①과 ③의 '성적 학대'라는 부분이 ③에 별도로 적시되어 있는 '30대 주부가 소년에게 키스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을 전제사실로 하여 그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진실 증명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지만, ①과 ③의 '성적 학대'라는 부분을 그 어느 쪽으로 읽는다 하더라도 '성적 학대'라는 표현은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제1기사 중 ②와 이 사건 제2기사의 '성행위'라는 표현 부분과 관련하여 독자들이 가지게 되는 그릇된 인상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③ 중 '자신의 몸을 탐하게'라는 부분 역시 그 자체로는 증거에 의하려 진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인지 애매하지만, 이 사건 희곡 중 하나의 내용은 소녀의 홀연한 출현과 당돌한 언동에 숙직을 하고 있던 30대 남성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소녀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다가 소녀의 강요에 이를 거절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마지못해 소녀의 몸에 난 상처를 핥는다는 것이어서 역시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제1기사 중 ②와 이 사건 제2기사의 '성행위'라는 표현 부분과 관련하여 독자들이 가지게 되는 그릇된 인상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1기사 중 ②와 이 사건 제2기사의 '성행위'라는 표현 및 이 사건 제1기사 중 소제목의 '관계'라는 표현은 그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에 이 사건 희곡에 7세 남녀 어린이와 중년 남녀 사이의 성행위가 묘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에서 '성행위'라는 단어는 성적으로 관계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관계'라는 단어는 남녀 사이의 정교라는 뜻도 가지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성행위' 또는 ② 중의 '성행위를 한다'라는 표현에서 연상하는 것은 남녀간의 성교이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몸을 핥는 등 이 사건 희곡에 묘사되어 있는 것과 같은 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위 표현은 이 사건 희곡이 7세 남녀 어린이와 중년 남녀 사이의 성교 행위를 묘사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기사들의 위 각 '성행위'라는 표현 앞에는 '변태적' 또는 '변태'라는 수식어가 붙

어 있으나 그와 같은 수식어가 붙어 있다 하여 적시된 사실의 의미 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희곡의 내용에 의하면 하나에서는 소녀의 요구에 따라 남자가 마지못해 소녀의 상처를 입으로 핥다가 소녀가 남자의 목을 끌어안자 질겁하여 이를 뿌리치고 소녀의 뺨을 때리고, 그래도 소녀가 계속 달라붙자 소녀의 목을 누르는 장면이 나오고 이어 장면이 바뀌어 남자의 아내가 등장하고, 소녀는 환영(幻影)처럼 사라진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성행위 장면은 없고, 둘에서는 소년이 알몸을 드러내고 여자에게 무릎을 꿇고 기어 올 것을 명령하고, 소년이 가슴팍에 술을 부은 후 여자에게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술을 먹을 것을 명령하고 여자는 그 과정에서 당황한 나머지 계속 "어… 어… 어…" 라는 대사만 한 후 조명이 암전(暗轉 fade out)하여 둘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역시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성행위 장면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기사 중 ②와 이 사건 제2기사의 '성행위'라는 표현 및 이 사건 제1기사 중 소제목의 '관계'라는 표현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1기사의 제목 중 '벗기기'라는 표현은 사회통념상 연극 또는 영화 등에 있어서 관객의 저속한 성적 호기심을 유발시키기 위하여 주제 표현과는 관계없이 필요 이상으로 출연자의 신체를 노출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역시 그 자체로는 이 사건 제1기사에 적시된 다른 사실들을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은 희곡의 내용을 벗기기로 평가한 것으로 볼 소지도 있고, 반대로 이 사건 희곡에는 이 사건 제1기사에 별도로 적시된 사실 이외에도 관객의 저속한 성적 호기심을 유발시키기 위하여 출연자의 신체를 노출시키는 부분이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그와 같은 별도의 전제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볼 소지도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기사의 내용에 '아역배우들이 중년 남녀성인과 변태적 성행위를 하는'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 사건 기사가 문예비평란에 희곡 또는 연극에 대한 비평으로 게재된 것이 아니고, 사회면에 '벗기기 연극'이 위험 수위에 달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연극을 그와 같은 벗기기 연극의 하나로 비판하는 직접적인 사실보도 형식으로 기사로 실린 점, 아직 여성 또는 남성으로서의 2차 성징이 발현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인 7세의 남녀 어린이가 이 사건 제1기사 ③에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상반신을 벗거나(여자 어린이의 경우) 혹은 알몸이 된다(남자 어린이의 경우) 하더라도 일반인의 경우 그것을 보고 성적 호기심이 유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독자들은 위 '벗기기'라는 표현을 후자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사건 희곡에는 7세의 남녀 어린이가 상반신을 벗거나(여자 어린이의 경우) 혹은 알몸이 되는 것(남자 어린이의 경우) 이외에 성인 남녀가 옷을 벗는 장면은 일체 없다.
이와 같이 볼 때에 '벗기기'라는 표현을 위 후자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그 전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위 표현을 위 전자와 같이 본다 하더라도 그 전제가 되어 있는 사실 중 '성행위'라는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원심은 앞서 본 법리와는 달리 이 사건 기사들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을 적시

한 것인지, 아니면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 또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잘 따져 보지 아니하고 종합적으로 이 사건 기사들은 이 사건 희곡이 남녀 어린이와 중년 남·여성 사이의 변태적 성행위를 묘사함으로써 벗기기 연극으로 관객을 끌려고 하는 천박한 상업주의의 외설작품이라는 데에 주안점을 둔 보도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보도는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따져 보더라도 이 사건 기사들은 사실 적시 부분에서 적시한 사실과 의견 또는 논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서 그 전제로서 적시한 사실들이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사건 기사들이 사실 적시 부분에서 적시한 사실과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서 그 전제로서 적시한 사실들이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그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가.의 (1) 내지 (6) 기재 사실을 인정한 것은 모두 옳고, 그 사실들과 특히 전　　가 이 사건 희곡을 단 한번도 통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사들을 작성한 이상 그와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기사들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평론 및 사실보도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기사들의 내용과 취재경위, 허위기사 부분이 기사 전체의 내용에 미치는 영향, 이 사건 기사들의 게재·반포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 정도, 특히 문단에 등단한 후 대한민국 문학상 희곡부문 수상경력까지 있는 중견 희곡작가로서의 원고의 명성에 오점을 남긴 점, 원고의 연령 및 가족관계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수액을 그 판시와 같은 금액으로 결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다액의 위자료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2. 9.
재판장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이돈희
주심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서성 □

신분노출이 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인터뷰를 승낙한 것인데도, 그대로 방영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9. 4. 2.자 판결 (98가합16587)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변종춘 부장판사)는 1999년 4월 2일 곽○○, 나○○ 씨가 SBS와 「문성근의 다큐세상-그것이 알고 싶다」의 민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분노출이 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인터뷰를 승낙한 것인데도, 모자이크 무늬로 가리거나 뭉개는 방법 등을 하지 않고 음성도 변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영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했다. 또한 "방송매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 비추어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보도기사와 달리 신속성의 요청이 거의 없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근거에 대한 요청이 더욱 강하다"며, "원고들의 신상에 대해 아무런 조사 없이 원고들을 인신매매범이라고 보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SBS가 「문성근의 다큐세상-그것이 알고 싶다」'신종 인신매매 - 아직도 사람이 팔려가고 있다' 제하의 방송에서 1998년 6월 4일 서울역에 가출여고생으로 분장한 연기학원생을 배치하고 원고 곽○○이 위 학원생들에게 접근하여 행동한 장면 및 '나○○(전 인신매매 조직원)'이라는 자막과 함께 원고 나○○과 인신매매범들의 행태나 성향 등에 관한 인터뷰 장면을 방영하면서 음성변조 및 모자이크 무늬 등 원고들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한 처리를 하지 않은 채 보도하자 원고들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

사건 : 98가합16587 손해배상(기)
원고 : 1. 곽○○
2. 나○○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
피고 : 1. 주식회사 서울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의 2
대표이사 윤세영, 윤혁기

2. 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의 2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종걸, 이광수, 정현교
변론종결 : 1999. 3. 19.
주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곽기웅에게 금 30,000,000원, 원고 나○○에게 금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8. 6. 14.부터 1999. 4. 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 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8. 6.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테이프검증결과 및 증인 김 , 김 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들은 서울역 부근에서 일용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서울방송(이하 피고 방송사라고 한다)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등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사이며, 피고 민 은 피고 방송사의 피용자(프로듀서)로서 피고 방송사가 1998. 6. 14. 19:00경부터 방영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문성근의 다큐세상-그것이 알고 싶다' 중 '신종인신매매, 아직도 사람이 팔려가고 있다'를 취재, 촬영, 편집, 방영한 프로듀서이다.
(2) 피고 민 은 1998. 5. 4.경 환란(이른바 IMF 시대)을 맞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인신매매의 유형과 수법 그리고 팔려간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한다는 목적아래 조연출 소외 김 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시작하여 제작비 2,240여만원을 들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3) 피고 민 은 1998. 6. 초순경 서울역 부근에서 마당발로 통하는 소외 신부장으로부터 과거에 인신매매를 한 적이 있었다는 원고 나○○을 소개받고, 그에게 자신들이 신종 인신매매(예전의 강압적인 방법이 아닌 유인하는 방법으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의 실태를 제작하려고 하니 인신매매범으로 보이는 빨이꾼(가출소녀를 인신매매 조직에 넘기는 중간책을 표현하는 은어)을 지적하여 (찍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날 저녁 원고 나○○은 피고 민 등 제작진, 가출여고생으로 분장한 연기학원생 2명과 함께 영등포역에서 1시간 30분 동안 서성거렸으나 인신매매 현장을 포착하지 못하였다.
(4) 한편 피고 민 은 원고 나○○에게 전직 인신매매범 조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

며 인터뷰 촬영을 요구하였고, 원고 나○○은 얼굴, 목소리 등을 조작하여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신원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5) 피고 민　　은 1998. 6. 4.경 인신매매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서울역에 가출여고생으로 분장한 영상연기학원생 2명을 배치하였는데, 원고 곽○○이 위 학원생들에게 접근하여 행동한 장면을 아래와 같이 촬영, 편집하였다.
(6) 한편, 피고 방송사는 1998. 6. 14. 19:00경부터 방송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문성근의 다큐세상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신종인신매매-아직도 사람이 팔려가고 있다'라는 부제하에 피고 민　　이 위와 같이 촬영, 편집한 내용을 방영하였는데, 그 방송장면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 곽○○과 관련된 방영 내용 중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 곽○○이 위 학원생들에게 접근하여 여관에 가자고 제의했으나 거절당하자 노래방에 가자며 위 학원생들을 서울역 부근의 벽산빌딩 앞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원고 곽○○이 누군가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하자 피고 민　　등의 취재진은 위 학원생들이 인신매매 조직에 넘겨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곽○○을 제지하고(피고 민　　은 이 상황을 비록 어둡기는 했으나 원고 곽○○의 전체 모습과 얼굴 윤곽을 알아 볼 수 있게 촬영하고도 목소리의 변조도 없이 그대로 편집하였다), 남대문경찰서에 신고하여 원고 곽○○은 경찰서 보호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 진행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그들의 은어로 빨이꾼이라고 한다. 주로 역이나 터미널 근처에서 소녀들을 유인해 인신매매로 빨아들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울역에서 빨이꾼들이 그 소녀들을 어디로 데려가려 했을까"라고 해설을 했고, 원고 곽○○이 휴대전화로 "여보세요, 호야, 여기 벽산 좀 나와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진행자는 "누군가와 약속을 한 듯 전화를 한다. 나오라는 딱 한마디를 하자 저쪽에서 금방 알아듣는다."라고 말한 뒤 두 명의 남자가 다가오자 "전화로 불러낸 패거리 두 명이 나타났다. 경찰 얘기가 나오자 뒤늦게 나온 패거리 두 명이 어느 새 자취를 감추었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원고 곽○○이 경찰서 보호소에 갇히는 장면에서는 "오늘밤 딴에는 공들였던 먹이사냥을 수포로 끝낸 남자, 그는 수배 중이었다."고 설명하였다.
㉢ 원고 나○○과의 인터뷰 장면에서는, 원고 나○○이 인신매매범들의 행태나 성향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데 음성변조를 전혀 하지 않고 원고 나○○의 육성을 그대로 방송하였고, 나○○(전 인신매매 조직원)라고 자막을 넣고는 원고 나○○의 얼굴옆 부분 중 코밑이 보일 정도(왼쪽 턱부분에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고, 안경테 아랫부분이 조금 보였다), 뒷모습은 불과 머리가 반씩 보일 정도로 방영되었다.
(7) 원고 곽○○은 서울역 부근 후암동에서 거주하는 일용노동자로서 약 15년간 중국요리집에서 주방장 및 주방보조일을 하다 실직하고 남대문 인력시장에서 일일 주방보조로 일하고 있었고, 원고 곽○○이 전화한 호야는 원고 곽○○과 한방을 쓰고 있는 강모 씨로 트럭운전사로 일하다 일용노동자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고, 뒤늦게 나타난 두 명의 남자는 곽씨를 아는 후암동 일대의 주민들로 택시에 내려 우연히 그 옆을 지나다 말참견을 한 것이었다. 그리고 원고 곽○○은 인신매매 혐의로 수배된 사실은 없었고 단지 경찰서에서 폭행죄로 소환한 것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을 뿐이었으며, 남대문 경찰서에서 조사한

결과 인신매매의 혐의가 없음이 밝혀져 10분만에 풀려났다.
(8) 또한 원고 나○○도 재단사 일을 하다가 실직하고 서울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일용노동자이었다.
(9) 원고들은 위 프로그램이 방영된 다음날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 등으로부터 서울역 사람들의 체면을 다 망치고 다닌다고 욕설과 비난을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 특히 원고 곽○○이 인신매매를 하였다는 점을 부인하는 데다가 그에 대한 뚜렷한 자료가 없고, 그를 조사한 경찰관도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하여 그를 금방 풀어주었는데도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마치 그가 인신매매범인 것처럼 시청자들이 오인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장면을 편집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설명을 하게 한 점, 위 원고의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고 그의 전신과 얼굴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방영한 점, 원고 나○○이 피고 방송사의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 자신이 전직 인신매매범인 것처럼 인터뷰를 하고 방영되는 것을 승낙하기는 하였으나, 아무도 원고 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것이고 피고 민 도 이를 약속하였으므로 피고 민 으로서는 원고 나○○을 취재, 방송함에 있어 원고 나○○의 얼굴을 모자이크 무늬로 가리는 방법 등으로 방영하고 음성도 변조하여 방송함으로써 원고 나○○의 신분노출을 막았어야 하고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나○○을 전 인신매매 조직원이라고 자막을 내보내면서도 다른 성을 사용하지 않고 원고 나○○의 본성을 그대로, 얼굴 일부분을 방영하면서도 전혀 모자이크 무늬로 가리거나 뭉개는 방법 등을 하지 않고, 음성도 변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영함으로써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원고들을 아는 주위사람들이 쉽게 원고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민 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방송사는 그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들이 원고 곽○○에 대하여는 보도의 자유를, 원고 나○○에 대하여는 동의를 각 근거로 하여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작, 방송된 것이고, 원고들의 행동으로 보아 인신매매범임에 틀림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나. 먼저, 원고들이 현재나 과거에 인신매매범이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김 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다름 피고들이 과연, 원고들이 인신매매범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방송된 프로그램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려면 방송매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 비추어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보도기사와 달리 신속성의 요청이 거의 없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근거에 대한 요청이 더욱 강하다고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증인 김 , 김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민　　은 단지 원고 곽○○이 학원생들에게 여관에 가자고 말한 것에 인신매매범으로 오신하여 원고 곽○○의 신상 등에 관해 조사도 하지 않았고, 경찰서에서 원고 곽○○을 인신매매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바로 결정하였는데도 마치 원고 곽○○이 인신매매범인 것처럼 방영한 사실, 비록 피고 민　　이 소외 신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원고 나○○을 전에 인신매매 행위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 나○○이 이러한 취재에 응하는 이유(실제로 인신매매 행위를 한 자가 자신을 인신매매범이라고 취재에 응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원고 나○○ 같은 일용노동자는 일당을 받고 이러한 취재에 응할 여지가 많으며, 인신매매범의 행태 등에 대해 다소 알고 있다고 하여 그가 인신매매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 나○○의 신상 등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도 없이 위 신부장이라는 사람의 말만을 믿고 원고 나○○을 인신매매범이라고 방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민　　이 원고들을 인신매매범이라고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의 인격권과 관련된 진실임이 입증되지 않는 사실을 제작, 방송하였고, 피고 민　　이 이 사건 프로그램 내용 중 원고들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이라고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제작, 방송되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인격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원고들이 방영된 경위와 방영내용 및 방영시간, 방영 후의 결과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위자료액수로 원고 곽○○에 대하여는 금 30,000,000원, 원고 나○○에 대하여는 금 20,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곽○○에게 금 30,000,000원, 원고 나○○에게 금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일인 1998. 6. 1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9. 4. 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4. 2.

재판장 판사 변 종 춘

판사 이 은 애

판사 김 종 석 □

이 사건 보도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원고의 폭로내용을 기사화한 것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1999. 6. 8.자 판결 (98가단240080)

사실개요

1999년 6월 8일 서울지방법원 송희섭 판사는 전국한약업사시험추진위원회 위원장 정 씨가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경향신문이 1998년 6월 16일자를 통해 '오순열의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 납치사건' 배경을 기사화 하면서 『정치자금 논란 정 사건 다시 도마에』,『정치자금 논란 정 사건과 흡사』등을 소제목으로 달아 정치자금 전달을 이유로 구속된 적이 있었던 원고가 마치 이번 납치사건과 관련 있는 것처럼 보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리를 맡은 송희섭 판사는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며, "비록 피고가『정치자금 논란 정 사건 다시 도마에』,『정치자금 논란 정 사건과 흡사』등의 제하로 원고의 정치자금 제공 기사를 실어 원고가 '김현철 납치사건'과 관련 있는 것처럼 게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보도는 김현철의 정치자금 관련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자 이에 주안점을 두어 이미 언론에 보도된 원고의 폭로내용을 기사화한 것일 뿐이므로 그 기사내용으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

사건 : 98가단240080 손해배상(기)
원고 : 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 종 훈, 이 성 직
피고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홍 성 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종 훈
변론종결 : 1999. 4. 20.
주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름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8. 12. 20.경부터 전국한약업사시험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1983년 실시된 한약업사 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의 성적을 얻고도 합격대상에서 제외된 867명의 한약업사 자격구제 추진업무에 종사해 왔고, 피고는 언론회사로서 일간신문인 '경향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나. 소외 오순열이 1998. 6. 15.경 서울 종로구 구기동 북한산 등산로 부근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소외 김현철을 납치한 뒤 다이너마이트와 가스총 등으로 3억원을 갈취하려다 경찰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위 오순열은 199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 후보이던 소외 김영삼의 아들인 위 김현철에게 자신의 슈퍼마켓까지 팔아서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는데 그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감정을 갖게 되어 위 납치사건을 일으켰다고 주장하였다.
다. 피고는 1998. 6. 16.자 경향신문 초판 제19면(사회면)에 위 오순열이 위 김현철을 납치한 사건에 관한 배경을 기사화하면서 그 밑에 "정치자금논란 정 사건 다시 도마에"라는 소제목 아래 별지 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가 그 이후의 같은 날자 40판 제19면 우측 상단에 '정치자금 둘러싼 보복극'이라는 제목 아래 "오순열 씨 현철 씨 납치 뭘 노렸나"라는 소제목과 함께 위 오순열과의 일문일답 내용을 기사화 하면서 그 밑에 "정치자금 논란 정 사건과 흡사"라는 소제목하에 별지 제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라. 원고는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약업사 자격구제 추진업무를 맡아 오던 중 1992. 11.경 제14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 당시 소외 김영삼 후보의 아들인 위 김현철의 측근이던 소외 이 에게 정치자금 120,000,000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는 이유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원고 자신은 위와 같이 위 이 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없고 전국한약업사구제추진위원회 고문인 소외 지 가 위 이 에게 금 105,000,000원을 어음으로 전달하였을 뿐임에도 원고가 소외 김현철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였다고 게재하였고, 그 돈의 액수가 금 120,000,000원이나 되며, 둘째 원고가 자격구제를 추진한 대상은 무자격 한약업사가 아닌 합격대상에도 마치 무자격 한약업사의 구제를 추진한 것처럼 게재하였으며, 셋째 원고는 위 제1의 나항 기재 납치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위와 같은 허위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당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들은 모두 진실한 사실에 터 잡은 것이고 피고측에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피고는 오로지 소외 김현철을 둘러싼 정치자금 수수의혹이 진실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들을 보도하였으므로 피고가 게재한 이 사건 기사들의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기사 중 원고가 소외 김현철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였고, 그 돈의 액수가 금 120,000,000원이나 되는 것처럼 게재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1992. 4. 27. 당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원고는 언론사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83한약업사구제추진위원회 고문으로 일하던 소외 지 로부터 그가 1992년 대통선 선거 당시 위 이 에게 금 120,000,000원을 전달하였고, 그 자리에는 위 김현철이 동석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폭로하면서 1992년 대통령 선거 후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위 김현철로부터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편지까지 받았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그래서 1994. 2. 2. 청와대에 위 김현철에게 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문서를 팩시밀리로 송부하자 위 김현철 측에서 자신을 협박하고 급기야는 보복성 수사를 하여 구속까지 시켰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제1기사에서 소외 지 가 위 이 에게 전달하였다고 게재하였다가 기사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2기사와 같이 원고가 직접 전달한 것으로 게재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돈을 전달한 위 지 는 원고가 위원장으로 있는 전국한약업사시험추진위원회 대전지역 대표이자 비슷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인 83한약업사자격구제추진위원회의 고문이고, 원고 스스로 위 지 가 전달한 돈이 한약업사 자격구제와 관련한 정치자금이라고 폭로한 점 및 위 지 가 위 이 에게 금 120,000,000원을 전달하였고 그 중 금 105,000,000원은 어음으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사가 허위의 사실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각 기사 중 원고가 자격구제를 추진한 대상은 무자격 한약업사가 아닌 합격 대상자에도 마치 원고가 무자격 한약업사의 구제를 추진한 것처럼 게재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잘못 보도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각 기사 중 원고 자신이 위 오순열의 납치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사실을 게재한 겨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위

오순열이 위 김현철을 납치한 사건에 관한 배경을 기사화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논란 정　　사건 다시 도마에” 또는 “정치자금 논란 정　사건과 흡사”라는 소제목을 붙여 원고의 정치자금 제공 기사를 실어 원고가 위 오순열의 납치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게재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소제목을 이 사건 각 기사내용의 전체적인 흐름과 연관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는 위 김현철의 정치자금과 관련된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자 피고가 위 김현철의 정치자금 문제에 주안점을 두어 이미 언론에 보도된 원고의 폭로내용을 기사화 한 것일 뿐이므로, 그 기사내용이 허위라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의 사실로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6. 8.

판사 송 희 섭　　□

검사인 원고가 청탁을 받아 범죄혐의자의 구속영장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한 것처럼 표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방법원 1999. 6. 23.자 판결 (99가합14391)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1999년 6월 23일 서울지방검찰청 최　　검사가 한국방송공사와 보도국장, 사회2부장, 기자, 앵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한국방송공사가 1999년 2월 3일 오후 9시 뉴스시간에 『납득하지 못할 영장 기각』이라는 제목으로 ‘경찰공무원이 근무 중에 폭행을 당하는 경우 가해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는 것이 상례임에도,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경찰 공무원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받은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하였는데, 그 피의자는 부산에 있는 동료 검사의 처남’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하자 원고가 마치 동료검사의 청탁을 받아들여 부당하게 기각결정을 한 것처럼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납득하지 못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가 기각해서는 안 될 범죄에 대한 영장신청을 기각한 것처럼 단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고, 원고가 독자적인 판단에서 기각결정을 내렸음에도 이 사건 방송내용의 전체 흐름, 제목, 경위, 구성과 배치 및 진행자의 태도에 비추어 원고가 청탁을 받아들여 부당한 결정을 한 것처럼 표현하였

으므로 한국방송공사와 방송이 되기까지 기획, 취재, 편성과정에 참여한 피고들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는 정정보도문의 방송도 요구하였으나 재판부는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원고의 명예회복에 충분하다며 이를 기각하였으며, 사건 방송당시 뉴스 앵커였던 피고 김 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방송의 기획, 취재, 편성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했다.
한편, 원고는 동 보도와 관련하여 1999년 2월 2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신청(99서울중재51)을 했으나 중재불성립결정된 바 있다.

판결문

사건 : 99가합14391 손해배상(기)
원고 :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 영 기
피고 : 1. 한국방송공사
대표자 사장 박 권 상
2. 류
3. 이
4. 박
5. 김
피고들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변론종결 : 1999. 6. 9.
주문 : 1. 피고 한국방송공사, 류 , 이 , 박 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원과 이에 대하여 1999. 2. 4.부터 1999. 6.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김 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가, 80%는 나머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5억원과 이에 대하여 1999. 2.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별지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취지의 정정보도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 1. 명예훼손의 성립
가. 원고는 서울지방검찰청에 재직하고 있는 검사이고, 피고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전국에 방송의 시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방송 문화의 발전과 공공 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류 , 이 , 박 , 김 은 피고 공사의 피용자들이다. (피고 류 : 보도국장, 피고 이 : 사회2부장, 피고 박 : 기자, 피고

김　　: 뉴스 앵커)
나. 한국 휴렛팩커드 주식회사의 과장인 임　　은 1999. 1. 29. 23 : 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리치칼튼 호텔 로비에서 술에 취해 회사 동료 1명과 상의를 벗고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는 소란을 피웠는데, 위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은 역삼 1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장 김　　, 심　　이 현장에 출동하여 임　　에게 임의 동행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자, 위 경찰 공무원들은 임　　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 하였고, 이에 화가 난 임　　은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버둥을 쳐, 위 경찰 공무원들에게 약 14일,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무전기 1대(시가 10만원 상당)도 부수었다.
다. 위 사건의 조사를 맡은 강남경찰서 담당 경찰 공무원은 수사를 마친 뒤 1999. 1. 30. 16 : 00경 위 범죄 사실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하여 서울지방 검찰청에 임　　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라. 위 구속영장 신청 사건은 당시 영장 당직 검사인 원고에게 배당되어, 원고가 위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을 검토하였는데, 원고는, ① 회사 동료들 사이에 일어난 단순 소란 행위임에도 임의 동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경찰 공무원이 강제 연행을 시도하다가 위 사건이 발생된 점에서 공무 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②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신청한 구속 영장에 대한 영장 기각률이 전국 평균 영장 기각률보다 현저하게 높아서 구속영장 심사를 신중히 하여 영장을 청구하라는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에 신중을 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③ 임　　이 초범이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건실한 회사의 중견 간부로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④ 임　　의 가족이 피해 경찰관에 대한 보상을 다짐한 점, 임　　이 근무하는 회사의 상사와 동료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한편, 피고 박　　는 위 피해 경찰 공무원과 위 사건의 관할 경찰서인 강남 경찰서의 담당 경찰 공무원을 취재한 다음, 별지 방송 내용 기재에 상응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 이　　, 류　　과 순차 방송할 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피고 류　　, 이명구가 위 기사를 방송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999. 2. 3. 오후 9시 정규 뉴스 시간에 별지 방송 내용 기재와 같이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서울지방검찰청이 1998. 12.에 처리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총 사건수는 145건인데, 그 중 구공판한 사건이 25건, 구약식한 사건이 100건, 불기소 처분되었거나 이송된 사건이 17건이고, 미제가 3건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피고 공사, 피고 류　　, 이　　, 박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방송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시청자에게 부여하는 인상도 그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 바, 피해자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는 비록 인적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기

사나 영상 자체만으로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후자의 판단에서는 진행자를 비롯한 출연자들의 발언 내용 이외에도 일반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프로그램의 제목, 배경 화면과 자막, 내용의 전체 흐름, 구성과 배치 및 진행자의 태도, 그밖에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을 종합하여, 그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주는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 공사는 '납득하지 못할 영장 기각' 이라는 제목으로 '경찰 공무원이 근무 중에 폭행을 당하는 경우 가해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는 것이 상례임에도,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경찰 공무원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받은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하였는데, 그 피의자는 부산에 있는 동료 검사의 처남' 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는 바, 위 방송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를 평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원고의 직역과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영장을 기각한 검사가 원고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위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영장을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검사가 부당히 영장을 기각하였다는 표현만으로도 원고가 피해자임을 특정하기에 충분하며, 아울러 위 방송 내용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방송을 편성하면서도 제목에서 '납득하지 못할'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도저히 기각해서는 안될 범죄 사실에 대한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처럼 단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고, 사실은 경찰 공무원이 근무 중에 폭행 또는 상해를 당하는 경우 가해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는 비율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동료 검사의 청탁을 받음이 없이 독자적인 판단에서 정당한 결정을 하였음에도, 마치 경찰 공무원이 근무 중에 폭행을 당하는 경우 가해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는 것이 상례인 것처럼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방송 내용의 전체 흐름, 제목, 경위, 구성과 배치 및 진행자의 태도에 비추어 원고가 동료 검사의 부당한 청탁을 받아들여 검사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기각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아주 부당한 기각 결정을 한 것처럼 표현을 하여, 원고가 검사로서 가지는 자긍심과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공사와 이 사건 방송이 되기까지 기획, 취재, 편성 과정에 참여한 피고 공사의 피용자인 피고 류 , 이 , 박 는 연대하여 이 사건 방송을 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위법성 조각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공사, 피고 류 , 이 , 박 는, 이 사건 방송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된 것으로서 내용이 진실하므로, 이 사건 방송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방송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그 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방송 내용이 진실하다고 증명되는 한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게 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사

실에 따르면, 이 사건 방송은 검사가 가진 기소 독점 주의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한편 이 사건 방송 내용의 전체 흐름, 제목, 구성과 배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방송의 일부 내용은 관계자들의 진술을 내세워 피해자를 일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서 비방하려는 데 보도의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 공사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방송을 하였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고, 마치 경찰 공무원이 근무 중에 폭행을 당하는 경우 가해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는 것이 상례이고, 원고가 동료 검사의 부당한 청탁을 받아들여 검사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기각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아주 부당한 기각 결정을 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아서, 이 사건 방송 내용은 일부 허위인 사실인 점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피고 김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방송 당시 피고 공사의 9시 뉴스 앵커였던 위 피고에 대하여도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가 뉴스 진행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피고에게 나머지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달리 위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의 기획, 취재, 편성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공사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아울러 별지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방송의 내용과 경위,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모아보면, 원고의 명예 회복을 위한 처분은 아래에서 인정된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 공사, 피고 류　　, 이　　, 박　　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방송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방송의 제목과 내용 및 방송 시점, 방영 시간, 위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밖에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방송이 법집행자로서 검사라는 사회적 지위에 있는 원고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공정한 법집행을 담당한 검사, 기타 법조인들이 부당한 청탁을 받아 들여 왜곡된 판단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우리 사회에 공직 사회에 대한 부리 깊은 불신감을 심어 준 데 일조를 한 점, 나아가 이른바 “대전 법조 비리” 사건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원고와 동료 검사들에게 국민들의 따갑고도 의혹어린 시선을 부당히 더하여 줌으로써 커다란 고통과 좌절을 안겨 준 점, 피고 공사가 우리 나라 언론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리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1억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공사, 피고 류　　, 이　　, 박　　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억원과 위 불법 행위일 다음날인 1999. 2.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9. 6.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로

각 셈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공사, 피고 류 , 이 , 박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김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1999. 6. 23.
재판장 이성룡
판사 함석천
판사 김선일 □

원고의 피의사실을 위법하게 공표하고, 이를 진실인 양 단정적으로 보도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국가와 언론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원지방법원 1999. 2. 25.자 판결 (98가합19427)
서울고등법원 1999. 7. 15.자 판결 (99나17731)

사실개요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999년 2월 25일 신 씨가 대한민국과 경기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1천만원, 경기일보는 5천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취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 또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위 자료 및 근거도 입수나 취재경위가 공표권한이 있는 자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공표절차에 의해 입수된 경우라야 할 것이고, 또한 보도경위에 있어서도 보도기관이 과장 또는 각색하여 보도하거나 자기의 견해나 억측을 부가하여 보도하거나 단순한 혐의내용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에는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기사는 공보관으로서의 직무 또는 권한부여 여부가 불명한 사건 수사담당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취재기자에게 피의사실을 제보,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혐의내용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혐의에 불과한 원고의 피의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수사경찰관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 보조하는 자로서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는 공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자에게 공표하여 신문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였다"고 밝혔다.

수원남부경찰서 출입기자인 경기일보 소속 기자는 담당형사로부터 원고의 혐의내용을 듣고 수사기록과 구속영장 등을 넘겨받은 후 이를 기초로 경기일보 1995년 9월 7일자 사

회면에 『생사람 잡아 옥살이 철면피 법무사 구속』이라는 제목과 『사문서위조 5억대 가로채고 오히려 매입자 어음위조 고발』이라는 소제목으로 법무사인 원고가 6억 상당의 여관 건물을 매각한 뒤 매매계약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5억6천만여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매입자를 사기 등 혐의로 허위고발해 죄없는 사람을 6개월간 옥살이 시켰던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며 원고의 혐의사실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보도하자 원고는 대한민국과 경기일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은 위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를 제기했으나 1999년 7월 15일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이유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 판결문

사건 : 98가합19427 손해배상(기)
원고 : 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 정 희
피고 :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상 천
소송수행자 손 세 영
2. 주식회사 경기일보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52의 1
대표이사 신 선 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상 용
변론종결 : 1999. 1. 14.
주문 :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금 1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경기일보는 금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 10. 1.부터 1999. 2. 2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0분하여 그 29는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경기일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6분하여 그 5는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제8호증의 5, 6, 21, 22, 제9호증 내지 제13호증의 16,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인영, 증인 정 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1973. 5. 15.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검찰서기보 시보로 임명된 이래 20여 년 동안 검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83. 7. 12. 사임하고 경수합동법률사무소라는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경기일보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일간신문인 경기일보를 발행,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배 은 1995. 8. 4. 수원남부경찰서에 원고와 그의 처인 소외 박 및 소외 노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를 사문서위조, 사기, 무고 등으로 고소하면서, 위 배 은 원래 위 박 , 노 의 공동소유이던 수원시 326, 327 양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여관을 운영하던 중 1992. 5. 10. 위 박 , 노 로부터 이를 대금 70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과 개보수공사비용 금 200,000,000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대체하기로 하고, 1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금 110,000,000원은 고소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잔금 290,000,000원은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1년 내에 분할하여 갚기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배 및 그의 처 소외 이 (이하 배 등이라 한다) 명의로 이전 받았는데, 원고 등이 위 부동산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매매대금이 금 662,500,000원으로 기재된 배 등 명의의 1992. 5. 26.자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다시 매매대금이 금 350,000,000원으로 기재된 배 등 명의의 같은 해 6. 17.자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며, 채무자 배 등, 근저당권자 위 박 , 노 , 채권최고액 금 600,000,000원으로 된 배 등 명의의 같은 해 7.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원고 등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다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금 564,217,860원을 배당 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배 이 위 박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 이 박 명의의 액면금 30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박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원고가 이를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위 배 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위 고소사건을 배당 받은 위 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소속 경장 소외 신 은 수사에 착수하여 고소인인 배 , 원고, 위 박 , 노 , 위 박 의 동생인 소외 박 등을 소환 조사하고 관련 문서 등을 검토하였다.

라. 위 조사과정에서 원고는, 위 박 , 노 와 위 배 등 사이에 위 1992. 5. 26.자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서는 배 등의 의사에 기하여 서명, 날인이 된 것이어서 위조된 것이 아니며, 같은 해 6. 17.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검인을 받기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로서 위 배 등의 의사에 기하여 세금감면을 위하여 실제의 매매대금보다는 적은 액수를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것 역시 위조된 것이 아니며, 근저당권설정계약서도 배 등이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들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위조된 것이 아니고, 원고 등으로서는 배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배 등이 약정한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 박　　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위에선지 배　　이 박　　명의의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어 배　　을 고소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들어 그를 무고한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위 혐의 사실 전부를 부인하였다.

마. 수원남부경찰서는 원고의 일관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먼저 위 배　　을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으로 고소하여 배　　이 구속 기소되었으나 배　　이 위조하였다고 주장된 문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진정한 문서로 밝혀져 배　　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석방된 점 등을 중시하여 원고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1995. 9. 5.경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하였고, 그 다음날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피고 회사 소속 사회부기자로서 수원남부경찰서를 출입, 취재하던 소외

기자는 위 경찰서의 유치인 명단에서 원고의 이름과 죄명 등을 살펴 본 후 담당형사인 위 신　　을 찾아가 원고에 대한 혐의내용을 문의하여 직업이 법무사라는 점과 대략적인 혐의내용을 듣고 그로부터 수사기록과 구속영장을 넘겨받은 후 피의자가 혐의내용을 시인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구속영장 등을 기초로 하여 취재기사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 회사에 송고하였고, 피고 회사는 1995. 9. 7. 위 경기일보 사회면 상단에 “생사람 잡아 옥살이 철면피 법무사 구속”이라는 5단 62급 활자의 큰 제목 아래 “사문서위조 5억대 가로채고 오히려 매입자 어음위조 고발”이라고 작은 제목을 달고 5단 크기로 별지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바. 원고는 1995. 12. 28.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결정을 받았고, 이에 배　　은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6. 8. 30. 대검찰청에서 위 재항고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위 배　　이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처분취소청구를 하였으나 1997. 5. 29. 위 청구 역시 기각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수원남부경찰서 수사경찰관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 보조하는 자로서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고소제기 전에는 공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 회사의 기자에게 공표하여, 이것이 피고 회사 발행의 신문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결국 허위사실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경찰관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위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수사경찰관의 피의사실 공표내용을 보도함에 있어 그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고, 원고가 피의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부인주장은 전혀 보도하지 아니하였으며, 한편 원고의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원고의 실명과 주소를 그대로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명예훼손의 성립에 관한 판단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독자에 부여하는 인상도 그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 바, 후자의 판단에 있어서는 일반의 독자가 통상 신문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본문의 내용 이외에 특히 제목 및 전문의 내용, 배치, 본문의 길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경기일보 사회면에 “생사람 잡아 옥살이 철면피 법무사 구속”이라는 5단 62급 활자의 큰 제목 아래 “사문서위조 5억대 가로채고 오히려 매입자 어음위조 고발”이라고 작은 제목을 달고 5단 크기로 원고의 실명, 나이, 주소 등 인적 사항을 명시한 후, “현직 법무사가 6억 상당의 여관건물을 매각한 뒤 매매계약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등 사문서위조로 5억6천만여 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매입자를 사기 등 혐의로 허위 고발해 죄없는 사람을 6개월간 옥살이 시켰던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라고 기재하여 위 혐의사실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기사를 게재하였는 바, 위 기사의 내용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기사 게재의 방법에 있어서도 제목에서 “철면피”라는 자극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원고의 위 혐의사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원고가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혐의사실의 자백 여부는 피의자의 인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혐의사실을 수사초기부터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혐의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전혀 게재하지 아니하여 독자로 하여금 원고가 마치 혐의사실을 전부 시인하는 듯한 인상을 가지게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한 피고 회사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위법성 조각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기사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신문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기사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취재행위에 관련된 자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여기서 취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함에 비추어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에 의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 또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나, 위 자료 또는 근거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입수나 취재경위가 공표권한이 있는 자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공표절차에 의해 입수된 경우라야 할 것이고, 또한 보도경위에 있어서도 보도기관이 과장 또는 각색하여 보도하거나 자기의 견해나 억측을 부가하여 보도하거나 단순한 혐의내용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도

하는 경우에는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기사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으로서 피고 회사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공공의 이익
갑 제3호증, 제4호증, 제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110, 제1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기사 보도 당시 법무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수원지방법원의 가사 및 민사조정사건의 조정위원, 안양교도소 교화위원, 수원법무사회 부회장, 수원시 집단민원조정위원, 수원시권선구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거나 활동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사실을 모두어 보면, 이 사건 기사는 그 내용으로 보아 개인 사이의 재산분쟁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사화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의 사회활동 내용이 시민들의 법률문제의 처리와 관련되어 있고, 또 그 혐의내용이 단순한 재산범죄 이외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문서위조, 무고 등의 범죄로 되어 있어, 일응 원고에 대한 범죄혐의의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다.
(나) 취재 및 보도경위
이 사건 기사는 위 정 가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인 명단을 보고 담당수사관인 위 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 원고의 신상 및 범죄혐의 내용의 대강을 들은 후 그로부터 수사기록을 건네 받아 그 구속영장을 기초로 취재기사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공보관으로서의 직무 또는 권한이 부여된 여부가 불명한 사건 수사담당 경찰관이 아무런 내부적 결재절차를 거침이 없이 개인적으로 취재기자에게 피의사실을 제보하고 수사기록까지 건네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부적법한 제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단정적 기사
원고가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혐의내용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의 혐의내용의 시인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또 그에 관하여 아무런 기사를 게재하지 아니한 채 당시로서는 혐의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범죄혐의내용이 보도에 있어서 피의자가 혐의내용을 자백하고 있는지 여부는 보도기관이 그 혐의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의사실의 내용 및 피해금액이 타사건에 비하여 중한 사건에 있어서 구속영장의 피의사실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혐의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합리적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가 위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결국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4. 손해배상액의 범위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피의사실이 공표 및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기사의 보

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연령, 신분, 교육 정도, 피고들이 이 사건 피의사실의 공표 및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의 정도 및 혐의없음결정 후의 명예회복조치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0,000,000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금 10,000,000원, 피고 회사는 금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8. 10.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9. 2.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1999. 2. 25.
재판장 판사 조 병 현
판사 윤 상 도
판사 이 종 우

2심 판결문

사건 : 99나17731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정희, 김동균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안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 재 창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김 정 길
소송수행자 정순태, 이동우
변론종결 : 1999. 6. 24.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9. 2. 25. 선고 98가합19427 판결
주문 :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0. 1.부터 1999. 2. 25. 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7. 15.

재판장 판사 김 재 진
판사 박 순 성
판사 최 규 홍 □

원고의 공천헌금수수 관련 혐의가 포착되어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보도를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방법원 1999. 9. 1.자 판결 (99가합107104)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1999년 9월 1일 새정치국민회의 양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와 관련 자신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연합뉴스, SBS, 세계일보 및 이와 관련된 발언을 한 허 전남도의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연합뉴스는 5백만원, SBS와 세계일보는 각 1천만원, 피고 허 는 1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998년 6·4 지방선거 당시 원고가 공천헌금 5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는 피고 허 의 발언내용이 정치인인 원고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임에도 사실 확인절차도 밟지 않았고, 결국 많은 언론사들이 원고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피고 연합뉴스에 대해서는 검찰청이 원고의 공천헌금 수수혐의를 포착한 바 없음에도 마치 검찰청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원고의 공천헌금 관련 혐의를 포착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보도를 하여 다른 언론사들에 송부함으로써 다른 언론사들도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보도한 피고 SBS에 대해서는 검찰청이 원고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개시한 것처럼 보도하였고, 피고 연합뉴스로부터 원고에 대한 수사종결 계획 기사까지 송부받았음에도 원고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보도를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피고 세계일보에 대해서는 타 언론사가 이미 원고에 대한 내사가 종결되었다는 보도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결하였다.

한편, 이에 앞서 원고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여(98서울중재214, 215, 216) 연합뉴스와 SBS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 정정보도가 게재되었고, 세계일보에 대해서는 세계일보측에서 정정보도를 게재하여 취하한 바 있다.

판결문

사건 : 98가합107104 손해배상(기)
원고 : 양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 연 철
피고 : 1. 허
전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용 학
2. 주식회사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수송동 85의 1
대표이사 김 종 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 변호사 이상직, 나승복
3. 주식회사 서울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의 2
대표이사 윤 혁 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광수, 정현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 형 성
4. 주식회사 세계일보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63의 1
대표이사 이 상 희
지배인 이 정 재
변론종결 : 1999. 7. 28.
주문 : 1. 원고에게, 피고 허 는 10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연합뉴스는 5,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서울방송, 주식회사 세계일보는 각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0. 1.부터 1999. 9. 1.까지는 연 5%, 1999.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허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와 피고 허　　가 각 50%를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90%를, 나머지 피고들이 10%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원고에게, 피고 허　　는 20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연합뉴스, 주식회사 서울방송, 주식회사 세계일보는 각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0.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 1. 이 사건 보도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박철귀의 증언과 이 법원의 조선일보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새정치국민회의 전남 구례·곡성 지구당 위원장이자 국회의원이고, 피고 허　　는 새정치국민회의 전남 도지부 대변인이자 전남 도의회 의원이며, 피고 주식회사 연합뉴스(이하 피고 연합이라고 한다.)는 다른 언론 매체 등에 기사를 송부하는 통신사이고, 주식회사 서울방송(이하 피고 서울방송이라고 한다.)은 방송 사업 및 문화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SBS-TV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주식회사 세계일보(이하 피고 세계일보라고 한다.)는 일간 신문인 세계일보를 발행,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허　　는 1998. 9. 29. 12:00경 광주 동구 남동에 있는 '갯마을 식당'에서 전라남도 의회 출입 기자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로 하고 위 식당에 들어서던 중, 홀에서 소외 박　　을 만났는데, 위 박　　에게서 '원고가 1998. 6. 4. 지방 선거 당시 소외 국　　에게 소위 공천 헌금 500,000,000원을 받은 뒤 돌려 주지 않아 위 국　　이 1998. 9. 30. 오전 서울 한나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 회견을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광주일보 기자 조　　, 전남일보 기자 김　　, YTN 기자 이　　 등 언론사 기자 10명이 모여 있는 방으로 들어와 박　　에게서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하였다.
다. YTN 기자 이　　는 피고 허　　에게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후 같은 날 14:00경 YTN의 광주지방검찰청 출입 기자인　　환에게 원고가 공천 헌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취재를 부탁하였다.
이에 위　　환은 피고 연합의 검찰청 출입 기자인　　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전한 뒤 같은 날 17:00경 함께 광주지방검찰청 정민수 차장 검사를 찾아가 피고 허　　가 말한 바가 사실인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정민수 차장 검사는 "처음 듣는 말"이라면서 위 검찰청 강영권 특수부장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고, 이에 강영권 특수부장은 같은 날 19:00경 국　　을 출석케 한 뒤 원고에게 공천 헌금을 준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였으나, 국　　은 원고에게 공천 헌금을 준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으며, 같은 날 19:30경 강영권 특수부장은 피고 연합의　　기자에게 연락하여, 국　　이 돈을 준 사실을 극구 부인

하고 있다고 알려 주었다.
라. 피고 연합의 기자는 1998. 9. 30. 10:03경 별지 1-1 기재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 서울방송, 세계일보를 비롯한 언론사에 이를 송부하였고, 같은 날 15:25경 별지 1-2 기재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이를 송부하였으며, 피고 연합에서 위와 같은 기사를 송부받은 문화일보, 광주타임즈, 전남매일, 중부일보 등 많은 언론사는 위와 같이 송부받은 기사를 참조하여 '원고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마. 피고 서울방송은 1998. 9. 30. 11:00 뉴스 프로그램과 17:00 뉴스 프로그램에서 별지 2-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였고, 20:00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별지 2-2·3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바. 피고 세계일보는 1998. 10. 1.자 세계일보에 별지 3-1·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2. 피고 허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허 는 위와 같이 언론사 기자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해 정치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하였을 경우 신문이나 방송 매체를 통하여 발언 내용이 타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높음에도, 아무런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원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광주지방검찰청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 을 출석시켜 조사하게 되었으며, 결국 피고 연합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많은 언론사들이 '원고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 허 는 위와 같은 발언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 허 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 허 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허 의 발언 내용이 정치인인 원고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임에도 아무런 사실 확인절차도 밟지 않은 점, 위 발언으로 결국 많은 언론사들이 원고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게 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원고가 마치 공천 헌금을 받은 듯한 인상을 심어 주게 된 점, 원고의 고소로 구속되었다가 고소 취소로 석방되고도 위 명예훼손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원고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아니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허 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피고 연합, 서울방송, 세계일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광주지방검찰청은 1998. 9. 29. 17:00경 YTN의 환 기자와 피고 연합의 기자에게서 원고의 공천 헌금과 관련된 사실 확인 요청을 받고서야 비로소 국 을 출석케 하여 조사를 하였고, 그 전에는 원고가 공천 헌금을 받은 사실 여부

에 관하여 내사나 수사를 벌인 적이 없음이 분명하며, 같은 날 19:00경 국 을 출석케 한 뒤 조사를 하였지만 국 은 원고에게 공천 헌금을 준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고, 위 검찰청은 그 후에도 별다른 조사를 한 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 연합의 기자는 1998. 9. 30. 10:03경에 별지 1-1 기재와 같이 "광주 지검 특수부(강영권 부장검사)는 30일 국민회의 전남도지부장 직무대행 양 의원이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전남도 의원 공천과 관련,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씨가 도의원 공천을 대가로 양의원에게 5억원을 건넸는데도 경선에서 탈락했으며 탈락된 뒤에도 양의원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작성하여 다른 언론사에 송부하였는 바, 위와 같은 표현은 전체적으로 위 검찰청이 원고가 국 에게서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확실하게 포착하고 수사를 개시하였는데, 국씨가 공천 헌금을 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검찰청은 1998. 9. 29. 17:00경 피고 연합의 기자와 YTN의 환 기자에게서 원고의 공천 헌금과 관련된 사실 확인 요청을 받고 비로소 국 을 출석케 하여 조사를 하였을 뿐, 다른 수사 자료 등을 통해 원고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바가 없고, 또 같은 날 바로 국 을 조사하였으나, 국 이 공천 헌금을 준 사실을 극구 부인하자, 강영권 특수부장이 피고 연합의 기자에게 연락하여 '국 이 공천 헌금을 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말까지 하였음에도, 피고 연합의 기자는 마치 위 검찰청에서 원고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여 다른 언론사들에 송부함으로써 다른 언론사들도 1998. 9. 30. 위와 같은 취지의 보도를 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연합은 그 소속 기자인 의 위와 같은 기사 작성과 송부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판단

㈎ 공공의 이익

피고 연합의 별지 1-1 기재와 같은 기사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 할 것이다.

㈏ 진실인지 여부

피고 연합은, 위 기사 내용이 원고가 국 에게서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니라,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도한 것이고, 또 위 검찰청이 국 을 출석케 하여 이에 관한 조사를 한 것이 사실인 이상 원고가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기사에는 허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연합의 위 기사 내용이 원고가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임은 그 주장과 같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위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검찰청은 원고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여 수사를 개시하지도 않았고, 단지 사실 확인을 위하여 국 을 조사한 것에 불과함에도 마치 위 검찰청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원고의 공천 헌금 관련 혐의를 포착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보도를 하였으므로, 피고 연합의 위 기사 내용은 결국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 위 기사 내용

중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어 전한 부분은 원고가 공천 헌금을 받은 것이 사실이나 국정환이 공천 헌금을 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인데, 검찰 관계자가 이러한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피고 연합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연합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연합이 위와 같은 보도를 하게 된 경위, 보도 내용이 원고가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인 점, 위와 같은 보도가 나간 지 5시간 22분 후 별지1-2와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공천 헌금 관련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는 기사를 작성 보도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연합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만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 서울방송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 서울방송은 위와 같이 1998. 9. 30.자 11:00 뉴스 프로그램에서 별지 2-1 기재와 같이 위 검찰청이 원고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개시한 것처럼 보도를 하였고, 피고 연합에서 같은 날 15:25경 “양 의원 공천비리설은 사실무근”이란 제목으로 원고가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사실 무근이어서 검찰이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란 기사까지 송부받았음에도 같은 날 17:00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였으며, 같은 날 20:00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별지 2-2 기재와 같이 “양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은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일단 내사를 종결하였다.”는 보도를 하면서도, “양 의원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검찰소환에 불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라고 더불어 보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듯한 보도를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서울방송은 위와 같은 보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판단
㈎ 피고 서울방송의 별지 2-1·2·3 기재와 같은 보도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 할 것이다.
㈏ 진실한지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피고 서울방송은 위와 같은 보도내용이 모두 진실이고,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검찰청이 원고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여 수사를 개시한 바가 없음에도, 별지 2-1 기재와 같이 위 검찰청이 구체적인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처럼 보도하고, 더구나 피고 연합에서 원고에 대한 수사 종결 계획 기사까지 송부받았음에도 17:00 뉴스 프로그램에서 아직도 수사 중인 것처럼 보도를 한 이상 위와 같은 보도내용은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피고 서울방송이 위와 같은 보도를 함에 즈음하여 보도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를 조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⑶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서울방송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서울방송의 보도내용이 원고가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인 점, 별지 2-2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공천 헌금 관련 의혹이 사실 무근이어서 내사를 종결하였다고 보도한 점, 그러면서도 원고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남긴 점, 기타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서울방송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만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다. 피고 세계일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 세계일보는 1998. 9. 30.에 이미 원고에 대한 헌금 관련 의혹이 사실 무근으로 판명되었고, 피고 연합을 비롯한 다른 언론사들이 이미 원고에 대한 내사가 종결되었다는 보도를 하였음에도, 1998. 10. 1.자 세계일보에 별지3-1·2 기재와 같이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회의 의원은…양 …의원 등이다.”, “…양 의원 등 호남출신들이 공천비리 의혹 등과 관련, 잇달아 검찰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기 때문이다.”라는 보도를 함으로써, 마치 아직도 원고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보도를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세계일보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3-1·2 기사의 초점은 원고가 공천 헌금을 받았다거나 이로 인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라기보다 사정 대상이 주로 일부 지역 의원들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인 점, 1998. 10. 17.자 세계일보를 통해 정정보도를 하긴 했으나, 최초 보도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16일 후에야 그것도 언론중재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정정보도에 이른 점, 기타 이 사건 반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세계일보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허 는 100,000,000원, 피고 연합은 5,000,000원, 피고 서울방송, 세계일보는 각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8. 10.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9. 9.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1999.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로 셈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9. 1.

재판장 이성룡

판사 함석천

판사 김선일 □

검찰 수사결과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심증으로

원고가 살인을 교사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고,
이를 언론기관에 알려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지방법원 1998. 9. 2.자 판결 (98가합8290)
서울고등법원 1999. 7. 15.자 판결 (98나52003)
대법원 1999. 9. 20.자 판결 (99다46898)

사실개요

대법원 제1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999년 9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강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식 씨가 「월간 현대종교」 발행사인 현대종교사의 이사장과 잡지 발행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에게 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인 2심 재판부(1999. 7. 15.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결과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심증으로 원고가 살인을 교사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여 발행하고, 이 사실을 언론기관에 알려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원고가 이단이라는 비판 부분에 대해서는 "기독교 신자들을 이단에서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들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의 개인 비리와 살인 교사혐의와 관련시켜 게재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종교비판의 표현행위나 의견제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명예훼손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월간 현대종교」의 전 발행인이었던 탁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대성교회(현 평강제일교회)의 설립자인 원고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내자 이에 불만을 품은 원고의 운전사에 의해 살해된 사건과 관련, 원고의 살인교사혐의가 무혐의로 결정되자 피고들은 각종 간행물, 성명서를 통해 원고의 살인교사가 명백하여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월간 현대종교」 1997년 10월호와 1998년 1월호를 통해 원고가 살인을 교사하였고, 기독교 이단 종파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에 이에 대한 보도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이에 앞서 진행되었던 1심 판결(1998. 9. 2. 판결,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 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에서도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 판결문

사건 : 98가합8290 손해배상(기)
원고 : 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형, 유제인
피고 : 1. 심

서울
2. 탁
서울
3. 훈
남양주시
4. 신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진 우
변론종결 : 1998. 8. 19.
주문 : 1. 피고 심 , 탁 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심 은 1998. 2. 12.부터, 피고 탁 은 1998. 2. 13.부터 각 1998. 9. 2.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훈, 신 에 대한 청구 및 심 , 탁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심 , 탁 사이에 생긴 부분은 5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훈, 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 1. 이 사건 기사의 게재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 8,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강제일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피고 심 은 '월간 현대종교'를 발행하는 현대종교사의 이사장이고, 피고 탁 은 위 잡지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고, 피고 훈은 한국 기독교 이단 사이비 대책협의회의 명예 회장이고, 피고 신 은 위 협의회의 회장이다.
나. 피고 탁 의 망부인 소외 망 탁 은 국제종교문제연구소의 소장 겸 '월간 현대종교'의 발행인으로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대성교회(현재 명칭은 평강제일교회, 이하 대성교회라 한다)의 설립자인 원고에 대하여 '월간 현대종교' 1979년 9월호에 '대성교회의 내막, 식은 이단인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은 이래 1983년 3월호부터 1991년 1월호까지 17차례에 걸쳐 원고와 대성교회의 교리를 비판하고, 그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의 특집 기사와 공개질의서를 게재하다가, 1990. 6. 25. 원고와 화해하여 원고를 비방하지 않겠다는 사과문을 작성하고, 같은 해 8월호 '월간 현대종교'에 원고는 이단이 아니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에 소속된 건전한 목사임을 밝히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의 운전사이고 대성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아 총회 신학교 야간부에 다니게 된 소외 임○○은 탁 의 위와 같은 행동에 불만을 품고 그 무렵 영생교 문제가 대두되어 이에 사회의 관심이 쏠린 틈에 범행을 하면 추적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1994. 2. 18. 위 탁 을 살해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임○○의 위 살인 범행이 이루어지기 4일 전에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일시 귀국한 후 같은 달 22일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이에 검찰은 원고가 위 범행을 교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혐의를 품고 있었으나 조사하지 못하다가, 원고가 1997. 4. 8. 귀국하자 원고에 대한 살인 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마. 검찰은 이후 원고와 위 임○○을 수사한 결과, 위 임○○이 원고로부터 1994. 2. 6. '탁 씨가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될 텐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지, 하나님이 판단을 잘 해주시겠지', 1994. 2. 12. '쌔끼, 말마다 공수단, 공수단 했지, 아무 것도 아니다. 보이는 사탄도 못 때려잡으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탄은 어떻게 잡을라고 그래, 임마!'라는 말을 듣고 이를 위 탁 을 살해하라는 것으로 알아듣고 범행을 결심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있지만 직접으로나 간접으로나 위 임○○에게 위 탁 을 살해하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부인하는 데다가, 위 임○○도 자기 혼자 결심하여 위 탁 을 살해한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원고의 위와 같은 말이 위 임○○에게 위 탁 을 살해하도록 지시하거나 또는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다른 자료는 없으며, 원고의 살해 교사의 동기가 미약하고, 위 임○○을 도피시켰던 소외 신 , 조 , 위 임○○의 누나인 임 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1997. 8. 7. 원고의 살인 교사 혐의 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바. 피고 심 , 탁 은 검찰의 위와 같은 혐의 없음 결정 이후 각종 간행물, 성명서를 통하여 원고가 위 탁 의 살해를 교사하였음이 명백하고 사이비 이단 종교의 주도자로서 각종 비리 행위를 자행해 온 자로서, 검찰의 수사와 위 결론은 그 당시의 정권과 결탁하여 이루어졌기에 정권이 바뀌면 재수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위 피고들이 주도하여 발행하는 '월간 현대종교' 1997년 10월호에 50쪽 이상에 걸쳐 별지 제1 목록 기재와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원고가 여전히 기독교의 이단 종파이며 위 탁 에 대한 살인을 교사한 자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피고 심 은 1997. 9. 20. 각 언론 기관에 위 혐의 없음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를 탄핵하는 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보도협조문을 발송하였다.
사. 한편, 소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이하 소외 교단이라고 한다)는 그 교리를 보호하고 신자들의 신앙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산하 상설 기관으로 '총회 사이비신앙운동 및 기독교이단대책위원회'를 두고 보조 기관으로 사이비이단문제상담소를 설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른 교단 소속 목사 주장의 이단 여부에 관하여 연구하게 하였는 바 원고에 대한 조사 결과, 소외 교단은 1991. 9. 12.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서울 소망교회에서 개최된 제76회 총회에서 원고의 이단을 문제삼은 별지 제1 목록 순번 4의 가항 기재의 부분을 채택하였고, 이와 동일한 내용을 사이비이단문제상담소가 발행한 '상담소 자료집 8 사이비이단연구보고서'라는 제목의 책자에 그대로 게재하여 소외 교단산하의 지교회에

배포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위 '월간 현대종교' 1997년 10월호에 게재하였다.
아. 원고에 대하여 이와 같은 비판이 계속되자, 원고는 피고 심　　, 탁　　을 피신청인으로 삼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7카합2965호 비방행위금지 및 도서반포금지등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1997. 10. 20. 가처분 인용 결정을, 97카합3406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1998. 1. 12. 위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피고 심　　, 탁　　은 별지 제2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기사와 피고　훈, 신　　이 주도하여 작성한 별지 제2 목록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은 성명서를 '월간 현대종교' 1998년 1월호에 각 게재하여 발행하였다. 위 사건에 대한 항소심인 98나8976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998. 6. 11. 피고 심　　, 탁　　의 항소를 원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 심　　, 탁　　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심　　, 탁　　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살인 교사 혐의 사실 적시 부분과 원고의 이단 비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하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1) 살인 교사 혐의 적시 부분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심　　, 탁　　은 원고가 이미 검찰의 수사 결과 살인교사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결정을 받았는데도, 원고가 위 탁　　을 살해할 것을 임○○에게 교사하였다는 내용을 게재한 '월간 현대종교' 1997년 10월호, 1998년 1월호를 발행, 배포하고, 이러한 사실을 언론 기관에 알리는 등의 일련의 행위로 원고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각자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심　　, 탁　　은 원고의 살인 교사 혐의 사실과 이에 대한 재수사 촉구가 합리적인 의심을 바탕으로 한 의견, 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고, 명예훼손이 되더라도 한국 기독교의 개혁과 순화, 국민과 기독교 신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여러 가지 자료 및 정황에 기하여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심　　, 탁　　의 행위는 검찰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처분의 비판, 재수사 촉구 의견의 제시라는 측면이 있지만, 전제로 볼 때 피의자였던 원고에 대하여는 살인 교사라는 명백한 범죄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서 단순한 평가가 의견 제시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살인 교사 사실이 진실이라고 볼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또한 한국 기독교의 개혁과 순화, 국민과 기독교인의 알권리의 보호는 이단 비판의 면에서는 인정될 수 있더라도,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수사를 하여 결정한 혐의 없음 처분이 명백히 존재하는 마당에, 또 무죄가 추정되는 원고가 마치 명백한 살인 교사범인 것처럼 주로 자신들의 심증에 터잡아 일련의 사실들을 적시한 것을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단 비판 부분
원고는 피고 심　　, 탁　　이 원고가 기독교의 정통 가르침에서 벗어난 이단자로 보게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게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로 포함되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질을 지닌다 할 것이므로 종교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다른 종교나 종교 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데, 그로 인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 행위로 얻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 방법 등 그 비판 행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참작함과 동시에 그 비판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심 , 탁 이 별지 각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 중 원고가 이단이라고 비판한 부분은 그 목적이 원고를 이단으로 몰아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기독교 신자들을 이단에서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명예훼손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이고, 그 절차에서도 소외 교단의 정식 결정을 거쳤으며, 교리를 비판했을 뿐이고, 그 비판이 피고 심 , 탁 이 속한 교단의 공식 견해로 본다면 진실이라고 수긍할 수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 심 , 탁 이 원고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하면서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원고의 개인 비리와 살인 교사 혐의 사실을 관련시켜 '월간 현대종교'에 게재하여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단 비판 부분에 관한 피고 심 , 탁 의 행위는 전체로 종교 비판의 표현 행위나 의견 제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따라서, 피고 심 , 탁 의 원고에 대한 위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는데, 그 위자료 액수는 원고의 성별, 나이, 직업 및 사회적 지위, 이 사건 '월간 현대종교'의 발행 경위 및 내용, 발행 부수 및 배포 범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피고 훈, 신 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훈, 신 이 별지 제1 목록 제4의 라항 기재와 같은 성명서를 주도하여 작성하고 '월간 현대종교' 1997년 10월호에, 별지 제2 목록 제2항 기재 성명서를 주도하여 작성하고 '월간 현대종교' 1998년 1월호에 각 게재하여 발행, 배포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위 각 성명서의 내용 중 원고에 대한 이단 비판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살인 교사 혐의에 대한 부분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훈, 신 이 원고의 살인 교사 혐의 사실이 담긴 각 성명서의 작성자 중의 일부인 사실이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피고들이 위 각 성명서를 '월간 현대종교'에 게재하였다거나 그 발행 및 배포에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위 각 성명서를

공연히 배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심 , 탁 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월간 현대종교'의 발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심 은 1998. 2. 12.부터, 피고 은 1998. 2. 13.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9.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심 ,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훈, 신 에 대한 청구와 피고 심 , 탁 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9. 2.
재판장 판사 이 성 룡
판사 강 한 승
판사 류 용 현

2심 판결문

사건 : 98나52003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형, 유제인
피고, 항소인 : 1. 심
서울
2. 탁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진 우
변론종결 : 1999. 6. 24.
제1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8. 9. 2. 선고 98가합8290 판결
주문 :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인용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심 은 1998. 2. 12.부터, 피고 탁 은 1998. 2. 13.부터 각 1999. 7. 1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항' 및 '2.의 가.항'의 해당 설시 부분 중 '1.항'의 첫머리 증거설시 부분에 채용증거로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여 열거하는 외에는 위 해당 설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 위자료의 수액은, 피고들이 피고 탁 의 아버지로서 '월간 현대종교'의 발행인이던 위 망 탁 이 원고의 운전사인 위 임○○에 의하여 살해된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위 임○○의 진술 등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월간 현대종교'에 이 사건 기사 등을 게재하거나 언론기관에 보도를 요청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기사 등의 비방성의 강도, 이 사건 기사 등의 게재 행위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 정도, '월간 현대종교'의 발행 부수 및 배포 범위, 원고의 성별, 나이, 직업 및 사회적 지위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심 은 1998. 2. 12.부터 피고 탁지원은 1998. 2. 13.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1999. 7.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7. 15.
재판장 판사 김 재 진
판사 박 순 성
판사 최 규 홍

대법원 판결문

사건 : 99다46898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　　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주 형
피고, 상고인 : 1. 심
서울
2. 탁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진 우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7. 7. 15. 선고 98나52003 판결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 피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9. 20.
재판장 대법관 서　성
대법관 박 준 서
주심 대법관 신 성 택
대법관 이 임 수　　□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자동차연비향상장치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와 함께
원고와의 인터뷰 장면을 자의적으로 편집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대법원 1999. 10. 8.자 판결 (98다40077)

사실개요

대법원 제1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999년 9월 20일 김　　씨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천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통의 주의를 가진 일반의 시청자들로서는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성방식으로 볼 때 보도 앞부분에서 한 제조업자들의 제품에 대한 설명은 그와 대비되는 객관적인 시험결과에 의하여 허구임이 밝혀졌으며, 제조업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하여 제품을 설명한 원고는 허구임이 밝혀진 효과 없는 제품의 제조자 중 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되었으므로 원고 및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사이클론 제품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은

원고와의 인터뷰 장면을 자의적으로 삽입하여 편집 보도한 이 사건 보도에 의하여 훼손되었다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KBS가 1994년 5월 20일 9시 뉴스를 통해 '부스터 효과없다'의 제하로 연비 향상장치에 대한 제조업자들의 선전 내용은 효과없는 제품을 과장 선전하는 광고공세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면서, 제조업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 제품을 설명한 원고와의 인터뷰 장면을 삽입하여 보도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1·2심 법원 모두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1·2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6집 187~200면 참조).

판결문

사건 : 98다40077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현 석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사 사장 홍 두 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 두 형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8. 7. 9. 선고 97나47790판결
주문 :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방송보도로 인한 피고의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매출액 감소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방송보도를 전후하여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연비 향상 및 매연절감장치인 사이클론 제품의 매출액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5.에 이르러서는 거의 도산 지경에까지 이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변론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매출액의 감소가 이 사건 방송보도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사건 방송보도 직후 원고가 생산하는 사이클론 제품에 대한 반품 요구가 쏟아진 사실 및 그 이후 사이클론 제품의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매출이 급감한 사실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이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점에 관하여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 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

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는 있으나(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참조)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궁극적으로 사실심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383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니, 원심이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금 20,000,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 피고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운영하는 KBS 텔레비전의 뉴스보도 담당자들이, 자동차 연비향상장치의 대부분이 제조업자들의 선전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연비 향상이나 매연 절감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사시를 소비자들에게 알려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중한 구매를 하도록 할 의도하에, 이 사건 보도 첫머리에 먼저 “부스터 효과 없다”라는 제목을 화면으로 내보낸 다음, 뉴스진행자로 하여금 ‘제조업자들이 연비향상장치의 효과를 과장하여 선전하고 있으나 그 선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암시하게 하고, 원고를 포함한 2인의 제조업자를 등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한 후, 이어 제조업자들이 선전 근거로 제시하는 종전의 각종 시험결과의 부정확성을 비판하고 나서, 종전의 시험결과와 대비되는 객관적인 시민단체의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들의 선전 내용의 허구성을 밝히는 자료로 제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연비향상장치에 대한 제조업자들의 선전 내용은 효과 없는 제품을 효과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선전하는 광고공세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소비자들에게 그와 같은 광고공세에 현혹되지 말도록 당부하는 말로 보도를 끝맺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보통의 주의를 가진 일반의 시청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성방식의 영향으로, 보도 앞부분에서 한 제조업자들의 제품에 대한 설명은 보도 첫머리의 뉴스진행자의 암시대로 그와 대비되는 객관적인 시험결과에 의하여 허구임이 밝혀졌으며, 제조업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하여 제품을 설명한 원고는 뒤에서 허구임이 밝혀진 효과 없는 제품의 제조자 중 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고 및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사이클론 제품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은 원고와의 인터뷰 장면을 자의적으로 삽입하여 편집 보도한 이 사건 보도에 의하여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텔레비전 방송보도에 있어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 및 신용훼손 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부대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사고 및 피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1999. 10. 8.
재판장 대법관 김 형 선
대법관 이 용 훈
주심 대법관 조 무 제 □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는 내용 전체가 다소 진실과 합치되지 아니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합치하면 충분하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9. 10. 21.자 판결 (99가합2318)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변종춘 부장판사)는 1999년 10월 21일 KBS 소속 신 PD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각 기사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보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기사의 작성 및 방송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화방송은 1998년 7월 21일 「뉴스데스크」 및 22일 「굿모닝코리아」를 통해 원고가 KBS 일요스페셜 “하남시 춘궁동, 5백년 왕도의 미스테리” 담당 PD로서 역사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당국의 허가 없이 유적지로 추정되는 지역을 발굴하여, 문화재관리국이 KBS를 고발할 방침이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절토지는 유적지가 아니고, 당시 문화재 관리국은 KBS를 고발할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는 보도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내용 전체가 다소 진실과 합치되지 아니하더라도 중요부분이 진실과 합치하면 충분하며, 기사의 제목은 그 기사의 전체 내용을 짧은 글로 표현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본문의 내용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할 정도로 다른 인상을 줄 경우가 아니면 제목만을 따로 떼어내어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지적하며, “피고는 본 보도에서 각 절토지를 ‘유적지로 추정되는 지역’이라고 표현하였으므로, 제목에서 ‘유적지’라고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고, 문화재관리국이 시에 진상조사를 지시,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고발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문화재관리국, KBS 고발 방침’이라는 자막을 방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사는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위 방송과 관련하여 원고는 1998년 8월 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신청을 했으나 모두 중재불성립결정되었고, 이에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은 바 있다(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6집 73~80면 참조).

판결문

사건 : 99가합 2318 손해배상(기)등
원고 : 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영 화
피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이 득 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영 일
변론종결 : 1999. 9. 30.
주문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판결을 송달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방송하는 21:00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화면 오른쪽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과 'KBS 유적지 불법훼손은 사실과 달라'라는 부제목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제1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금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7.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 1. 명예훼손의 성립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한국방송공사(KBS) 소속 프로듀서로서 백제초기의 왕도 하남위례성의 위치와 실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KBS 일요스페셜 '하남시 춘궁동, 5백년 왕도의 미스테리'의 담당연출자이고, 피고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1998. 7. 21. 21:00경 방송하는 'MBC 뉴스데스크', 같은 달 22. 21:00경 방송하는 'MBC 뉴스데스크'와 같은 날 06:00경 방송하는 '굿모닝 코리아'라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별지 제2 내지 제4 목록 기재와 같이 보도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위 각 뉴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고가 관계 당국의 허락도 없이 유적지로 추정되는 곳을 발굴하여 유적지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도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위법성조각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의 위 각 보도는 사실이고 공공의 이해에 관련한 것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하남시장, 문화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하남시는 1998. 5. 26.부터 사업비 5,000만원을 책정하여 세종대학교 박물관(관장 최정필)으로 하여금 하남시 신장동 덕풍천 지역을 포함한 하남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유적지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98. 7. 6. 14:00경 위 KBS 일요스페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일부 향토 사학자들이 백제 개로왕이 쌓았다고 주장하는 야산(현재 야산이고, 당시 제방으로 추정)의 상태가 인위적으로 쌓은 제방인지 자연적으로 형성된 제방인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하남시 신장동 254의 7 소재 임야 절개지 옆면 일부를 포크레인으로 팠고, 동시에 그 곳으로부터 약 10m 떨어진 하남시 신장동 254의 15 소재 임야 일부(이하 위 두 곳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절토지라고 한다)를 삽으로 파 내려갔는데, 삽으로 파내려 가던 곳에서 석렬과 기와, 토기편 등이 출토되자 절토를 중지하고,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위 절토지를 다시 메꾼 사실, 하남시에서는 1998. 7. 8. 소외 조선일보 신 기자와 문화일보 최 기자로부터 위 사실을 듣고 문화재관리국에 보고한 사실, 문화재관리국은 1998. 7. 9. 하남시에게 당사자로부터 그 경위서를 받아 보고하도록 지시한 다음, 1998. 7. 23. 문화재관리국, 국립문화재 연구소, 하남시 동 관계전문가 및 실무자 합동으로 현장을 조사한 후, 역사프로그램 제작이라는 행위의 목적과 해당지역의 유적의 성격, 훼손 정도를 감안하여 형사고발하지는 않고 당사자에게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다시는 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낸 사실, 피고의 직원인 소외 조 가 문화재관리국 과장인 소외 한 등을 만나 인터뷰를 하였더니, 그가 KBS측의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당연히 고발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고, 문화재보호법을 보면, 제2조 제1항은 '문화재'로서 제1호 '유형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화·희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제3호 '기념물 :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큰 것…' 등을 들고 있고, 매장문화재 발굴의 제한으로서 제44조 제1항에서 '매장문화재(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는 이를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발굴제한 위반자의 처벌로서 제82조 제1항에서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위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역사와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도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유적지로 추정되는 지역을 발굴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으로서 문화재관리국은 원고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고발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각 기사는 모두 진실이라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살핀 이 사건 각 기사의 전체의 내용에다가 증인 조　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기사는 공영방송 프로듀서의 유적지 훼손을 고발하고 문화재 보호의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련되고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여도 그 기사 내용이 위와 같이 진실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사 작성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기사의 작성, 방송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다툼은 이유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별지 제2목록 기재 기사 보도시 'KBS 유적지 불법훼손'이라는 표제와 배경화면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각 절토지는 유적지가 아니고, 별지 제4목록 기재 기사 보도시 화면 하단에 '문화재 관리국, KBS 고발방침'이라는 자막을 내보냈는데 당시 문화재 관리국은 KBS를 고발하기로 하는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각 기사는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는 보도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내용 전체가 다소 진실과 합치되지 아니하더라도 중요부분이 진실과 합치하면 충분하며, 기사의 제목은 그 기사의 전체 내용을 짧은 글로 표현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본문의 내용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할 정도로 다른 인상을 줄 경우가 아니면 제목만을 따로 떼어내어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유적지'와 '유적지로 추정되는 지역'이라는 단어의 의미의 차이가 크지 않아 이 사건 각 절토지가 '유적지'인지 '유적지로 추정되는 지역'인지 여부는 이 사건 보도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지엽말단적인 부분일 뿐 아니라, 피고는 본 보도에서 이 사건 각 절토지를 '유적지로 추정되는 지역'이라고 표현하였으므로, 위 기사의 제목에서 '유적지'라고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고, 또한 피고는 '문화재 관리국, KBS 고발방침'이라는 자목을 보내면서, 원보도에서 '문화재관리국은 …조사과정을 거쳐 위법사실이 명백하면 제작진을 고발할 방침이며 KBS측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아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남시에 지시했다'고 보도하였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문화재관리국은 하남시에, 원고의 행위가 문화재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였으며, 문화재관리국 과장인 소외 한　등이 피고의 직원인 위 조　에게 KBS측의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고발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므로,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은 자막을 방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사는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2) 원고는, 피고가 하남시의 도로개설로 이미 절단되어 있던 토지 단면층을 마치 원고가 처음부터 새로이 지표면부터 마구 파헤쳐 절단한 것처럼 허위보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보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기사를 방송함에 있어 불법도굴의 형사범죄규정을 함께 보도함으로써 원고가 불법도굴죄를 저지른 것처럼 오인케하는 허위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각 기사 중 문화재보호법 규정을 방송한 부분은, 원고

의 이 사건 각 절토지의 발굴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이므로 그 평가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한 것인가를 보아야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기사는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절토지가 제방이 아님에도 1998. 7. 22.자 MBC뉴스데스크 보도에서 '제방'이라고 표현하여 허위보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위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절토지가 제방인지 여부는 원고의 명예훼손과 관련이 없는 지엽말단적인 것으로, 비록 이 사건 각 절토지가 제방이 아니라고 하여도 그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5) 원고는, 피고가 '고고학계에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불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대로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라고 보도하였는데 이는 허위보도라고 주장하나, 증인 조 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인 조 가 고고학자인 소외 등과 인터뷰하였더니 그들이 유적지 불법훼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비록 피고가 일부 고고학자와의 인터뷰 결과를 가지고 고고학계라는 표현을 써서 그 내용을 약간 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엽말단적인 것으로 그 기사가 전체적으로 진실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0. 21.
재판장 판사 변 종 춘
판사 노 혁 준
판사 김 유 범 □

공인이 아닌 단순 음주운전자의 신원을 밝혀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9. 5. 14.자 판결 (98가단779)
서울지방법원 1999. 10. 22.자 판결 (99나49001)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최은수 부장판사)는 1999년 10월 22일 이○○ 씨가 S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의 촬영거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주위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원고를 알 수 있는 형태로 원고의 모습과 음성

및 행동을 방영, 원고의 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천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위자가 공적인 인물인 경우 행위자가 누구인지 여부 자체가 공공의 관심대상이므로 그 관심사를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기능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나 단순 음주운전에 대하여 행위자가 공적 인물이 아닌 이상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되는 것이지 그 ‘행위자’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방영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SBS는 1997년 11월 23일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술이 부른 비극-음주운전의 말로’라는 제목으로 음주운전 단속현장과 음주운전자의 뺑소니로 인한 피해사례 등을 방영하면서 교통사고처리반에서의 원고의 취중 모습을 음성변조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모습을 알 수 있는 형태로 방영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회사 내에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고, 결국 퇴사에 이르는 등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동 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에서도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촬영거부의사 표시를 무시하고 방영,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 판결문

사건 : 98가단779 손해배상(기)
원고 :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 배 경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한 영 환
피고 : 주식회사 서울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대표이사 윤세영, 윤혁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종걸, 김형성
변론종결 : 1999. 3. 19.
주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1. 23.부터 1999. 5. 14.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3분의 1, 피고가 3분의 2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방송은 1997. 11. 23. 일요일 문성근의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방송프로에서 술이 부른 비극-음주운전의 말로라는 제하에 음주운전 단속현장, 음주운전 뺑소니 사례 등을 방영하였다.
나. 위 방송프로 중 약 30초 정도 원고와 관련된 부분이 방영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남경찰서 교통사고 처리반에서 원고가 앉아서 ‘나 음주운전 했어, 난 음주운전해서 범법행위를 했고’라는 원고의 목소리가 변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막과 동시에 방영되었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다.
원고가 의자에서 일어나 취재진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려다 넘어지는 장면, 의자에 앉아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음주측정을 하는 장면,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면들이 방영되었다.
원고의 얼굴은 대부분 모자이크 처리가 되기는 했지만 졸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넘어질 때 순간적으로 보이는 얼굴 부분에 대하여는 이러한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원고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였다.
다. 당시 원고는 취재진들에 대하여 사진을 찍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취재진이 이를 거절한 채 위와 같이 방영하였다.
라. 원고는 삼성카드 주식회사 ○○영업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불미스러운 일로 원고의 모습이 방영되자 회사로부터 간부품위 손상 및 회사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1997. 12. 12.부터 1997. 12. 23.까지 대기 발령되는 인사처분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마. 원고는 1997. 11. 28. 자신의 처와 협의 이혼하였다.
(이상 증거 갑1-2, 을1-2, 증인 정 , 사실조회, 검증, 변론의 전 취지)
바. 나아가 원고가 이러한 방영으로 말미암아 이혼하였다는 점에 관한 갑3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이혼을 촉진하는 한 원인이 되었을 수는 있으나 이 사건만으로 이혼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방영된 것으로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나. 음주운전의 폐해를 다루는 프로그램인 이 사건 프로그램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방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범법행위가 아닌 수없이 많이 행해지는 단순음주운전에 대하여는 그 행위자가 공적 인물이 아닌 이상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되는 것이지 그 행위자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원고는 공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촬영거부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원고를 아는 주위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원고임을 알 수 있는 형태로 원고의 모습과 음성 및 행동을 촬영하여 방영한 것은 원고의 인격권(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라.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원으로 정한다.
1999. 5. 14.
판사 최 강 섭

2심 판결문

사건 : 99나49001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배경, 윤석희, 이영진, 이호천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서울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의 2
대표이사 윤세영, 송 도 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덕 우
변론판결 : 1999. 10. 1.
제1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9. 5. 14. 선고 98가단779 판결
주문 :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1. 23.부터 1999. 10. 2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 11. 23. 일요일 문성근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프로에서 '술이 부른 비극-음주운전의 말로'라는 제목하에 음주운전 단속현장, 음주운전자의 뺑소니로 인한 피해 사례 등을 방영하였다.
나. 위 방송프로 중 약 30초 정도 원고와 관련된 부분이 방영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남경찰서 교통사고 처리반에서 원고가 앉아서 '나 음주운전 했어, 난 음주운전해서 범법행위를 했고'라는 원고의 목소리가 변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막과 동시에 방영되었고, 원고의 얼굴은 흐릿하게 영상처리되어 방영되었다.
② 계속하여 원고가 의자에서 일어나 취재진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려다 넘어지는 장면, 의자에 앉아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음주측정을 하는 장면,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면들이 방영되었다.

③ 원고의 얼굴은 음주측정을 하는 장면에서만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을 뿐, 다른 장면에서는 원고의 얼굴이 흐릿하게 영상처리되어 졸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넘어질 때 순간적으로 보이는 얼굴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였다.
다. 당시 원고는 피고 소속 취재 기자들에 대하여 촬영하지 말 것으로 요구하였는데도, 위 기자들은 이를 거절한 채 계속하여 원고의 술에 취한 모습을 촬영한 후 위와 같이 방영하였다.
라. 한편 그 무렵 원고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공적인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공적인 활동을 한 바가 없이 삼성카드 주식회사 ○○영업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불미스러운 일로 원고의 모습이 방영되자, 위 회사로부터 간부품위손상 및 회사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하여 1997. 12. 12.부터 1997. 12. 23.까지 위 영업소장에서 ○○사업부지점 지원팀으로 대기발령된 후 1997. 12. 24.에는 ○○사업부 장기채권팀으로 전근되는 인사처분상의 불이익을 받았고, 1998. 2. 7.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마. 원고는 1997. 11. 28. 자신의 처와 협의이혼하였다(한편, 원고는 피고 서울방송의 이와 같은 방영으로 인하여 이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정 의 증언, ○○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 변론의 전취지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방영된 것으로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음주운전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공의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것이고, 음주운전과 상관없는 일반인도 타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이익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1호,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의 사생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음주운전의 폐해를 다루는 프로그램인 이 사건 프로그램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방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⑵ 그러나 음주운전을 한 후의 원고의 취중(醉中) 모습을 방영한 것이 공공의 관심대상이 되는 사항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위자가 일반인인 경우에는 행위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위자가 누구인지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행위자가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여부 자체가 바로 공공의 관심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보도하는 것은 국민에게 그 관심사를 보도하는 언론의 기능에 부합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수없이 많이 행해지는 단순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그 행위자가 공적 인물이 아닌 이상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되는 것이지 그 '행위자'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⑶ 앞서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 소속 취재 기자들이 평범한 시민에 불과한

원고의 촬영거부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원고를 아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원고를 알 수 있는 형태로 원고의 모습과 음성 및 행동을 촬영하여 방영한 것은 원고의 인격권(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피고 소속 취재 기자들이 원고의 촬영거부의사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촬영한 후 음성변조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모습을 알 수 있는 형태로 방영된 점,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1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1999. 10.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0. 22.
재판장 판사 최은수
판사 정창호
판사 박연옥 □

의견 내지 논평의 표명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표현방법을 넘어 인신공격에 이를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9. 11. 19.자 판결 (99가합1154)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1999년 11월 19일 조선일보 이 기자가 주식회사 월간 말과 소속 기자, 월간지 '인물과 사상' 의 강 발행인 및 전북대 신방과 강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월간 말과 기자는 원고에게 각 4백만원, 강 발행인과 강 교수는 각 7백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 의견 내지 논평으로서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피고 주식회사 월간 말과 소속 기자가 사용한 ‘지적 양심’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나, ‘마조히즘적 정신분열증세’라는 표현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사상의 과장 내지 강조, 또는 단순한 비유적 표현방법을 넘어 인신공격에 이를 정도로서 의견 내지 논평으로서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예훼손이 되며, 위의 표현들을 사용하여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조선일보 기자인 원고가 ‘최장집 사상검증’ 논쟁의 와중에 자신이 소속한 조선일보사의 입장에 서서 종전의 자신의 저술에서 보여준 입장에 모순되는 내용임에도 불구, 양심에 반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게재한 기사는 충분히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시했다.

조선일보사는「월간조선」1998년 11월호에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최장집 교수의 6·25 전쟁관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여 ‘최장집 사상검증’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우리의 학맥과 학풍>이라는 저서를 통해 최장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었던 원고가 1998년 10월 16일자 조선일보에 『미군과 한국군의 38선 돌파 “공격적 팽창주의의 발로”』라는 제목으로 최장집의 논문 중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 부분을 발췌, 정리하여 작성하자 월간 말의 정 기자는 1998년 12월호를 통해 원고의 지적양심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마조히즘적 정신분열 증세가 감지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강 교수는「인물과 사상」1998년 12월호를 통해 원고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모교의 교수에 대해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게 된 것이 마치 조선일보사 사주의 요청, 지시 내지는 사주를 받아 작성한 것처럼 보도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

사건 : 99가합1154 손해배상(기)
원고 :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 이대복
피고 : 1. 주식회사 월간말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7층
대표이사 박 충 열
2. 정
피고 1,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광희, 정연순
3. 강
4. 강
피고 3, 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 진선미
피고 3, 4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 광 희
변론종결 : 1999. 10. 1.
주문 :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월간말과 피고 정 은 각자 금 4,000,000원, 피고 강준우, 강 은 각자 금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8. 12. 22.부터 1999.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월간말, 피고 정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강 , 강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월간말, 피고 정 은 연대하여 금 1억원, 피고 강 , 강 은 연대하여 금 1억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0, 갑 제18호증의 1 내지 21, 갑 제19호증(을 제4호증과 같다),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3, 을 제20호증의 1 내지 8, 을 제29호증, 을 제30호증, 을 제45호증의 1 내지 3, 을 제48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고려대학교 영문과와 같은 대학원 철학과 등을 거친 후 1994. 12.경 소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조선일보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편집국 문화부에 근무하는 기자로서, 다수의 인문사회과학 분야 학술서를 번역하고, ‘우리의 학맥과 학풍’, ‘거대한 생애 이승만 90년’, ‘철학은 99개의 눈을 가졌다’ 등 저서를 집필한 바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월간말(이하 피고 월간말이라고만 한다)은 도서잡지 출판 및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진보적 시사종합지를 표방하는 월간지인 ‘월간 말’을 발간하고 있고, 피고 정 은 피고 월간말의 직원으로서 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3) 피고 강 는 성역과 금기에 도전함을 표방하는 월간지인 ‘인물과 사상’의 발행인이고, 피고 강 은 국립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서 위 인물과 사상에 다수의 기사를 기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

(1) 피고 월간말은 ‘월간 말’ 1998. 12.호 제93면부터 제97면까지 사이에 “‘진보인사 죽이기’ 뿌리는 친일 콤플렉스”를 큰 제목으로 하여, 그 제목 위에 “병리학적 심리분석 조선일보 왜 극우반공 집착하나”라는 작은 제목을 달고, 그 큰 제목 아래 기사의 본문이 시작되기 앞서 “…(전략)… 병리학적 심리분석을 통해, 조선일보가 왜 극우반공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는지 그 뿌리를 찾아보았다.”고 적은 다음, 본문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이른바 최장집에 관한 사상검증 논쟁의 과정에서 조선일보사가 자신이 발간하는 일간지 ‘조선일보’ 및 월간지 ‘월간조선’을 통하여 보인 태도에 관하여는 정신분석학을 통한 병리학적 심리분석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조선일보의 기왕의 기사나 논설 등을 분석한 결과, 조선일보가 전형적인 마조히즘적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서술한 다음 제96면부터 제97면에 걸쳐 “마녀사냥에 동원된 조선일보 기자들의 정신분열증”이라는 소제목 아래 원고에 대하여 “그의 ‘지적 능력’은 매우 뛰어난지 몰라도 그의 ‘지적 양심’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식인이 아무런 해명 없이 자신의 기존논리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학행위이다. 그에게서 마조히즘적 정신분열증세가 감지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 월간말 소속 기자인 피고 정 이 취재하여 작성한 별지 제1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제1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2) 한편 피고 강 또한 자신이 발행하는 위 ‘인물과 사상’ 1998. 12.호 제60면부터 70면까지 사이에, “기자를 사병화한 『조선일보』”라는 제목으로 “이 는 ‘아웃사이더’로서 텃세가 심한 『조선일보』에서 생존하기 위해 점점 극우화의 길을 걷게 된다(게다가 이 는 『조선일보』를 장악한 양대 학맥이라 할 서울대 출신도 연세대 출신도 아니다). …(중략)… 그리고 ‘최장집 죽이기’ 사건이 터졌다. 학계 전문 기자로서 이 가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기회가 온 것이다. 이 는 자신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모교의 존경받는 교수의 등에 칼을 꽂는 비정한 청부업자로 변신한 것이다.”, “한가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조선일보』의 일부(99%라도 일부는 일부네) 기자들은 사주의 사병화가 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 기자의 변신이 그걸 드라마틱하게 웅변해 주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 강 이 작성한 별지 제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제2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아.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 경위

(1) 당시 조선일보사는 1998. 10. 19. 자신이 발간하는 ‘월간조선’ 1998. 11.호 제206면 이하에 “심층취재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최장집 교수의 충격적 6·25 전쟁관연구”라는 제목으로, 고려대학교 교수로서 당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소외 최장집에 대하여, 그의 저서인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한국민주주의의 이론’에 저술된 내용 중 몇몇 표현을 인용하며 그의 6·25 전쟁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그 직후부터 위 최장집의 6·25 전쟁관, 나아가 그 사상문제까지 쟁점화되어 위 최장집의 해명과 공직으로부터의 사퇴를 요구하는 측과, 그와 같은 위 ‘월간조선’의 기사가 논문의 전체 취지와 문장의 전후 맥락을 생략한 채 발췌된 부분적인 표현에 터 잡아 전체적으로 위 최장집의 의도를 교묘히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월간조선’ 및 일간지인 ‘조선일보’를 발간하는 조선일보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문제제기는 특정인의 ‘색깔’에 대한 표적보도를 통한 이른바 ‘마녀사냥’에 다름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측이 팽팽히 맞서게 되었다.
(2) 이에 조선일보사는 위와 같은 논란이 한창이던 1998. 10. 16. 같은 날 발간한 일간지 '조선일보' 제4면에, 『미군과 한국군의 38선 돌파 "공격적 팽창주의의 발로"』라는 큰 제목 위에, "한국전쟁 관련 최장집 위원장 논문 발췌"라는 작은 제목을 달고, 기사 중앙부에 "김일성은 열렬한 민족주의자, 민족통일의 사명감 가졌다.", "마치 북의 공격 기다린 듯 미, 전광석처럼 개입"이라고 그 내용의 요지를 표시한 다음, 위 최장집의 위 각 논문 내용 중 그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 부분을 담은 별지 제3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제3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기에 이르렀는바, 이 기사는 그 무렵 조선일보의 문화부에서 학술담당기자로 근무하면서 사사편찬을 담당하고 있던 원고가 발췌, 정리하여 작성한 것이다.
(3) 한편 원고는 1995.경 발간한 "우리의 학맥과 학풍"이라는 저서의 제230면부터 제232면까지 사이에서, 별지 제4 기재와 같이 "진보정치학의 선구자 최장집"이라는 소제목 아래, 위 최장집이 이룬 학문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의 이론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의 글(이하 '제4저술부분'이라고 한다)을 쓴 바 있고, 피고들의 이 사건 제1, 2기사는 원고의 제3기사와 제4저술부분에 그 시각과 관점의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며 그에 터 잡아 작성된 것이다.
2. 피고 월간말 및 피고 정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성립
(1) 일반적으로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한편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앞에서 채용한 증거들 및 위 인정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위 피고들의 제1기사는, 원고가 종전에는 제4저술부분에서 위 최장집에 대하여 "80년대 정치학자 중 거의 유일하게 학문적 성과에 있어서 자기 영역을 확보한 학자", "'경제 있는 정치학'의 선봉 역할을 했던 최장집의 작업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서술하는 등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최장집에 대한 이른바 '사상검증' 파문이 한창이던 무렵 작성 게재한 이 사건 제3기사에서는 당시 월간조선 및 조선일보가 보인 보도태도와 궤를 같이함으로써 종전에 자신이 위 최장집에 대하여 내린 평가와는 서로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전제아래(위 피고들의 이 사건 제1기사는 제4저술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 인용하고 있음에도 원고의 제3기사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제1기사의 내용과 그 전체적인 취지 및 이 사건 변론에서의 위 피고들의 변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기사는 특히 원고의 제3기사에 대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에 대하여, 이러한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글을 작성한 원고의 지적양심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지식인인 원고가 아무런 해명 없이 자신의 기존 논리를 부인하는 것은 자학행위이고, 따라서 원고에게서 마조히즘적 정신분열 증세가 감지된다는 취지의 것

인바, 제1기사 중 원고의 지적양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원고에게서 마조히즘적 정신분열 증세가 감지된다는 부분이 과연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원고는 1999. 6. 16.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위 각 기사부분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이 사건 청구원인을 위 각 기사부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기사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위 각 기사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에서 본 제3기사와 제4저술부분을 아울러 작성한 사실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기사와 저술부분이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나름의 판단을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은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기사를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 평가를 내린 것으로서, 위 각 기사부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위에서 본 적시된 사실에 터 잡은 의견 또는 논평의 표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마조히즘적 정신분열증세'라는 표현에 대하여, 이는 원고가 사전적 의미의 정신분열증 환자라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 및 앞서 본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나타난 제1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는 비유적 내지는 온유적 표현에 불과하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런데,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즉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 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의견 또는 논평의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에 터 잡아 이를 기초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적시한 부분을 제외한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 부분, 즉 이른바 협의의 논평에 해당하는 부분이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 의견 내지 논평으로서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도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이제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3기사와 제4저술부본을 작성한 것임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제4저술부본은 다만 위 최장집의 정치학 저서 중 1988년의 "한국의 국가와 노동운동", 1989년의 "한국현대정치의 구조와 변화", 1993년의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등 3권의 저서를 중심으로, 정치학자로서의 그의 학문적 태도와 방향, 연구방법 등을 평가한 것인 반면, 제3기사는 한국전쟁과 관련한 그의 논문 중 일부 표현에 관하여 이를 발췌, 정리한 것이어서, 가사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이 제3기사가 위 최장집의 사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취지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3기사와 제4저술부분은 그 논의의 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서로 모순되거나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위 피고들의 위 각 기사부분은 그 전제가 되는 판단에 오류가 있거나 그 논리에 비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 피고들이 제1기사에서 사용한 "'지적양심'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나, "마조히즘적 정신분열증세"라는 표현에 있어서, 비록 의견 내지 논평의 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표현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사상의 과장 내지 강조, 또는 단순한 비유적 표현방법을 넘어 인신공격에 이를 정도로서 의견 내지 논평으로서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피고들의 제1기사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피고들의 제1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피고들은 제1기사를 작성·게재함에 있어 위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여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조선일보 기자인 원고가 이른바 '최장집 사상검증' 논쟁의 와중에 자신이 소속한 조선일보사의 입자에 서서 제3기사가 종전의 자신의 저술에서 보여준 입장에 모순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반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기사의 게재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보아 충분히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위 피고들의 제1기사의 게재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위 피고들은 원고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제1기사의 작성 및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제1기사의 전반적인 취지 및 그 전체 내용 중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 원고의 사회적 지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금 4백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피고 강　　, 강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성립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명예훼손이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신문 또는 잡지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제2기사가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제2기사의 내용을 보면, 위 피고들은 원고가 제3기사와 제4저술부분을 작성한 사실과 그 내용을 적시하면서, 원고가 최장집에 대한 이른바 '사상검증' 논쟁의 와중에 조선일보사 내에서 '아웃사이더'로서의 열악한 지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로 학계 전문 기자로서의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최장집에 대한 종전의 자신의 평가에 반하는 내용의 제3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서술하는 한편, 비록 위 피고들이 "청부업자", "사병"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그와 아울러 제2기사의 결론 부분에서 "한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조선일보』의 일부(99%라도 일부는 일부네) 기자들은 사주의 사병화가 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　　기자의 변신이 그걸 드라마틱하게 웅변해 주고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어, 결국 위 기사 전체의 문맥에 더하여 앞에서 채용한 각 증거 및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그와 같은 비유적 방법을 빌어 말하고자 한 것은, 원고가 종전에 제4저술부분과 같이 자신이 이미 위 최장집의 학문적 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신의 평가와 정반대되는 내용의, "'최장집 죽이기'를 시도하는 『조선

일보』의 광기 또는 살기가 유감없이 드러난” 제3기사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제3기사를 작성하게 된 것은 조선일보사 사주의 요청, 지시 내지는 사주를 받게 되자 자신이 소속된 조선일보사 내에서의 열악한 입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관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와 같이 제2기사가 위와 같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사주의 요청, 지시 내지 사주를 받아 자신의 학자적 양심 내지 신념에 반하여 제3기사를 작성한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보도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보아 충분히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위 피고들은 ‘청부업자’ 또는 ‘사병’이라는 표현은 비유적 표현으로 의견 내지 논평의 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비유가 지칭하고 있는 대상이 구체적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비유적 표현 역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들의 주장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제2기사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오로지 진실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언론 기사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보도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언론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함에 비추어 그 기사가 단순히 풍문이나 추측에 의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이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언론이 과장 또는 각색하여 보도하거나 자기의 견해나 추측을 부가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는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제2기사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 피고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위 보도를 하였는지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채용한 각 증거들과 위에서 본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은, 위 최장집의 사상을 문제삼은 위 월간조선의 보도를 둘러싼 조선일보의 논지와 그것이 앞뒤의 문맥을 생략한 의도적인 왜곡에 기한 것이라는 위 피고들을 비롯한 상대방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제3기사가 보도됨에 따라, 위 논쟁의 연장선사에서 위 기사 역시 의도적인 왜곡을 통하여 위 최장집의 사상논쟁을 오도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나름의 판단에 터 잡아, 이를 비판하기 위한 의도로 제2기사의 작성 및 보도에 임

하였다고 판단되어 일응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다시, 제2기사 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제2기사 중 원고가 제3기사와 제4저술부분을 직접 작성, 저술한 점은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사실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아가, 원고가 종전에 이 사건 제4 저술부분과 같이 자신이 이미 위 최장집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속된 『조선일보』 내에서의 열악한 입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로, 위 피고들이 "청부업자", 또는 "사병"으로 지칭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선일보』 사주의 요청, 지시 내지는 사주를 받아 종전의 자신의 평가와 정반대되는 내용의, "'최장집 죽이기'를 시도하는 『조선일보』의 광기 또는 살기가 유감없이 드러난" 제3기사를 작성하게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명예훼손에 대하여 그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이 위 피고들에게 주어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을 제6호증의 4, 을 제7호증의 3, 을 제24호증, 을 제25호증, 을 제27호증, 을 제28호증, 을 제43호증, 을 제44호증,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아래에서 보는 위 피고들의 주장내용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이 제2기사에서 적시한 위 사실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한편, 위 피고들은 스스로 이 사건 1999. 7. 15.자 준비서면에서, 당시 상황을 조선일보사가 전사적으로 위 최장집의 논문을 왜곡하고, 그 왜곡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 최장집에게 일체의 반론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붓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한편, 제3기사가 그와 같은 조선일보사의 이데올로기 공세의 와중에 그 일부분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와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아카데미즘에 이 있는 기자인 원고가 그처럼 문제가 많은, 결코 써서는 안될 그러한 기사를 작성하게 된 것은, 결국 조선일보 경영진의 명시적, 묵시적 요구 혹은 경영진의 이해관계나 회사의 이익을 기자 개인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조선일보의 분위기 같은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제2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제3기사와 제4저술부분은 그 논의의 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위 각 기사 및 저술에서의 입장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거나 상반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인바, 이러한 점과 위 피고들의 위 주장부분을 종합하면, 이 부분 사실의 적시는 제3기사 및 제4저술부분에 대한 나름의 평가에 자기의 견해나 추측을 부가하여 보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들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위 피고들의 제2기사의 게재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위 피고들은 원고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제2기사의 작성 및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제2기사의 전반적인 취지 및 그 전체 내용 중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

용이 차지하는 비중, 원고의 사회적 지위, 위 '인물과 사상'의 규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특히 위에서 본 위 최장집의 사상과 관련한 논쟁의 과정 등을 감안해 보면,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금 7백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월간말과 피고 정　　은 각자 위 위자료 금 4,000,000원, 피고 강　　, 강　　은 각자 위 위자료 금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각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12.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9. 11. 19.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각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정당하여 이를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월간말, 피고 정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강　　, 강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며,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1. 19.

재판장 판사 김 수 형

판사 최 창 영

판사 이 재 석 □

기사가 몰래카메라의 폐해와 실상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지만, 부주의하게 용어를 잘못 선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고등법원 1999. 9. 30.자 판결 (99나5066)
대법원 1999. 12. 29.자 판결 (99다62371)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의 진료를 맡았던 비뇨기과 전문의 박　　씨가 중앙일보사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가 몰래카메라의 폐해와 실상을 알리고, 일반 독자들에게 경각

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원고의 사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용어를 잘못 선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었으나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아닌 점, 원고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고 그 표현을 극히 추상적으로 하여 원고의 사례를 소개한 부분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알기 어려운 점, 원고의 사례를 소개한 부분의 내용이 극히 간략하며 사용한 용어가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액을 5백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가 구하는 공고문 게재에 관해서는 "원고가 사건 테이프를 녹화한 경위 및 테이프가 유출된 경위는 언론을 통하여 널리 보도됨으로써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대부분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피고 중앙일보 이외에도 여러 일간지에 공고문 게재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를 넘는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9년 12월 29일 심리불속행 사유로 기각 판결(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을 받았다.

중앙일보사는 1997년 9월 29일자에 『'1㎜ 구멍' 당신의 마음 훔친다』는 제하로 몰래카메라의 폐해와 역기능 사례 및 대처방안에 대해 보도하면서, "대통령 아들의 불미스런 모습이 믿었던 사람을 통해 사방팔방으로 퍼지기도 했으며"라고 보도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판결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6집 328~338면).

2심 판결문

사건 : 99나506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상 원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홍 석 현
2. 강
3. 허
4. 전
피고 2, 3, 4의 주소 서울 중구 순화동 7(중앙일보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춘원, 김창준, 최종현, 이종무
변론종결 : 1999. 9. 2.
제1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8. 12. 16. 선고 97가합76326 판결
주문 :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피고들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①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29.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고, ②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처음 발행되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의 각 제1면 하단부 가로 37cm, 세로 17.1cm의 칸 안에 가로, 세로 각 1.8cm의 크기로 '공고문'이라는 제목을 50급 고딕체로, 가로, 세로 각 1.5cm의 크기로 '1997. 9. 29.자 중앙일보 제45면에 보도된 속칭 몰래카메라 등 관련 기사에 대한 사과 및 정정보도'라는 제호를 40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제1심 판결의 별지 제2 기재와 같은 공고문을 15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하라.

원고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취지 ② 항 기재와 같이 공고문을 게재하라.

피고들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16행 중 "여자 화장실"을 삭제하고, 원고 및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제1심 판결의 별지 제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통하여 허위보도를 하여 원고가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환자들에게 심어 줌으로써 원고의 치료활동과 병원경영에 치명타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금5,000,000원으로 정하고, 또 제1심 판결의 별지 제2 기재와 같은 공고문의 게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에 상당한 손해배상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사의 게재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기사중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내용의 구체성 정도, 원고의 사회적 지위 및 중앙일보의 발행부수와 영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특히 이 사건 기사가 몰래카메라의 폐해와 실상을 알리고, 일반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원고의 사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용어를 잘못 선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었으나 피고들에게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원고의 이름을 적시하지도 않고, 그 표현을 극히 추상적으로 하여 전후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의 사례를 소개한 부분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알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기사중 원고의 사례를 소개한 부분의 내용이 극히 간략할 뿐 아니라 사용한 용어가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액을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또 공고문의 게재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하기 위하여는 명예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방해상태가 계속되어 그 제거의 필요성이 계속될 것을 요하며, 그 필요성은 이미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이 행해진 경우나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김현철의 진료상황과 전화통화장면을 녹화한 테이프(이하 '이 사건 테이프'라 한다)가 공개된 이후 중앙일보를 비롯한 일간지와 방송을 통하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사무국장인 소외 양 이 이 사건 테이프를 절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 사무총장이 사임한 사실이 크게 보도되어, 이 사건 테이프의 유출경위에 관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 원고는 1997. 4. 21. 국회 한보사건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테이프의 녹화경위, 유출경위 등에 대하여 충분히 해명하였고,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사실, 주식회사 문화방송에서는 원고가 환자의 진료상황을 몰래 촬영하였다고 보도하였다가 원고의 항의를 받고 1997. 7. 15.자로 정정보도를 한 사실, 이 사건 테이프를 절취한 소외 양 이 이 사건 테이프를 절취한 혐의 등으로 입건되어 1997. 12. 30. 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테이프를 녹화한 경위 및 이 사건 테이프가 유출된 경위는 언론을 통하여 널리 보도됨으로써 이 사건 기사로 인한 원고의 명예에 대한 침해는 이미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대부분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 원고가 구하는 공고문의 게재청구는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가 발해하는 중앙일보 이외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의 제1면에 사실상의 사과광고에 해당하는 공고문을 게재해 달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 기사에 의하여 침해된 법익과 손해배상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앞에서 고려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상회복의 범위를 넘는 구제수단에 해당하고,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적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에서 "대통령 아들의 불미스런 모습이 믿었던 사람을 통해 사방팔방으로 퍼지기도 했으며"라고 보도함으로써 이 사건 기사의 독자들에게 ① 원고가 소외 김현철의 전화통화장면을 몰래 녹화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테이프를 고의로 유출하였다는 인상을 주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기사는 몰래 카메라만에 관한 기사가 아니라 CCTV(폐쇄회로 TV) 일반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 등을 취재, 보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부분이 독자들에게 원고가 소외 김현철의 전화통화장면을 몰래 녹화하였다는 인상을 준 바 없고, ② 이 사건 기사 중에 CCTV 일반의 부작용사례로서 원고의 사례를 든기는 하였으나 '부작용'이라는 용어가 '어떤 일에 덧붙여 일어나는 부수적인 일'을 지칭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사례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③ "믿었던 사람을 통해"라는 표현은 포괄적인 인과관계를 함축하는 문구로서 '유포당사자' 뿐만 아니라 '대통령 아들의 불미스런 모습을 녹화하고, 이 테이프를 외부인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장소에 방치한 행위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표현 또는 이 사건 테이프가 유포되게 된 중간경로를 설명하는 표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가 독자들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인상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를 다시 보면, 제목을 "'1mm의 구멍' 당신의 마음을 훔친다"로 하고, 삽화로 밝은 등 밑에 몸을 웅크리며 자신을 감추려는 벌거벗은 사람들의 모습과 카메라 렌즈를 통하여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게재하고, 그 아래에 "누군가가 보고 있다. 훔쳐보기다. 당신은 안전한가. 카메라가 숨겨진 핀홀을 찾아라. 막아라. 하지만 그 행위마저 카메라에 잡혔을 터. 조심조심 불조심. 조심조심 구멍조심"이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기사가 전체적으로 CCTV 중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는 소형카메라(일명 몰래카메라)에 대한 것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또 전체적인 기사의 구멍을 보면, 이 사건 기사의 서두부분에 몰래카메라에 비친 젊은 여자의 행태를 묘사하고, 이에 대한 카메라관리인의 말을 인용하고, CCTV카메라의 보급상황을 언급한 후 CCTV카메라의 여러 가지 용법과 순기능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CCTV카메라의 역기능에 대하여 예를 들면서 "호텔방에 숨어든 불륜 커플이 렌즈에 붙들려 돈을 뜯기는 사례는 벌써 다반사다. 대통령 아들의 불미스런 모습이 믿었던 사람을 통해 사방팔방으로 퍼지기도 했으며, 여자화장실의 거북한 순간을 숨어본 한 백화점의 사례에서 우리는 극에 달했다."라고 표현하고, 끝으로 몰래카메라를 피하기 위한 기초상식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기사의 구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 중 CCTV 일반에 대한 용도, 보급상황 등에 대하여 설명한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의 기사는 몰래카메라의 폐해와 역기능 사례 및 그 대처방안에 대하여 보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일반 독자들로서는 다른 몰래카메라의 역기능 사례들과 함께 몰래카메라의 역기능사례의 하나로 열거된 원고의 사례의 경우에도 몰래카메라에 의하여 이 사건 테이프가 녹화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기사에서 "믿었던 사람을 통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소외 김현철이 신뢰하였던 의사인 원고가 소외 김현철의 신뢰에 반하여 소외 김현철의 불미스런 모습이 타인들에게 전파되도록 이 사건 테이프를 유출하는 등 고의적인 배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인상을 일반 독자들에게 줄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들은, 가사 이 사건 기사가 독자들에게 ① 원고가 소외 김현철의 전화통화장면을 몰래 녹화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테이프를 고의로 유출하였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① 소외 김현철이 원고에게 이 사건 테이프의 녹화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외 김현철 몰래 이 사건 테이프를 녹화한 것이고, ② 원고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소외 김현철의 전화통화장면을 녹화한 후 이 사건 테이프를 직접 유출한 것이어서 이 사건 기사는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거나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또 피고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소외 김현철이 원고에게 이 사건 테이프의 녹화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외 김현철 몰래 이 사건 테이프를 녹화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7, 을 제5호증의 10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녹화 테이프 검증결과와 반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경영하는 'G 남성 크리닉'에서는 환자에 대한 진료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료차트 또는 진료기록부를 이용하는 종래의 방식과 진료실 내에 설치한 녹화용 카메라로 진료 과정을 녹화한 뒤 그 테이프를 보존하는 녹화방식을 병용하고 있었는데, 소외 김현철은 1994. 12.경부터 1997. 2.경 사이에 위 병원에서 원고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녹화방식으로 진료 받기를 희망한 사실, 소외 김현철은 주로 원고 병원의 원장실에서 녹화방식에 의하여 진료를 받으며 녹화상황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는데 소외 김현철은 진료를 받는 사이사이에 그 곳에 있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외부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내용이 진료상황과 함께 이 사건 테이프에 녹화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김현철은 원고 병원의 원장실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그 상황이 녹화되는 것을 구두로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 원고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소외 김현철의 전화통화장면을 녹화한 후 이 사건 테이프를 직접 유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22, 26, 32, 33, 42, 43의 각 기재중 이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은 믿을 수 없고,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29, 30, 37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의 7, 을 제5호증의 10, 62,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양　은 1997. 2. 20. 18:30경 원고 경영의 위 병원 원장실에서 원고가 화장실에 간다며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꽂이에 꽂혀 있던 이 사건 테이프를 꺼내어 이를 절취하고, 같은 해 3. 13.경 국회의원, 기자 등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 테이프를 재생시켜 보여주어 이 사건 테이프의 녹화내용을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9. 30.

재판장 판사 김 재 진

판사 박 순 성

판사 최 규 홍

대법원 판결문

사건 : 99다62371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 박

피고, 상고인 : 1. 주식회사 중앙일보사(中央日報社)

대표이사 금 창 태

2. 강
3. 허
4. 전
피고들 주소 서울 중구 순화동 7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준, 최종현, 이춘원, 이종무, 김인희, 문광명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9. 9. 30. 선고 99나5066 판결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 상고인들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2. 29.
재판장 대법관 이 돈 희
대법관 이 임 수
주심 대법관 송 진 훈
대법관 윤 재 식 □

간접적·우회적인 표현으로 사회적 저명 인사인 원고가
친일행각을 하였다는 암시를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방법원 2000. 1. 19.자 판결 (99가합42730)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000년 1월 19일 전 국무총리이자 건국대학교 이사장 현 씨가 문화방송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와 같은 존재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간접적, 우회적으로 원고가 상당히 비난받을 정도의 친일 행위를 하였고, 이를 숨겨오다가 뒤늦게 고백을 한 것처럼 암시하여 일반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방송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방송내용의 전체 흐름, 구성과 배치, 편집의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방송의 일부 내용은 관계자들의 진술을 내세워 원고를 일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서 비방

하려는 간접적인 의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독립군과 싸운 경력이 있다는 부분과 친일행각, 전범 등 허위 사실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1999년 2월 2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원고가 일제말에 학도병이었고 일본군 소위였으며, 일제 군복을 입고 중국 팔로군과 전투하였다는 고백을 하였고, 이 내용이 연합통신을 통해 각 언론사에 전달, 원고가 일본군이었던 사실이 보도되어 건국대학교의 일부 학생과 교수들이 원고로 하여금 재단 이사장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자, 문화방송 사회부 기자인 피고 유 는 원고의 견해를 듣는 다른 노력을 취하지 않은 채 건국대 교수 및 일부 학생들의 주장을 취재한 후 1999년 4월 3일 06시 뉴스를 통해 신청인이 친일행각을 했다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 방송하자 원고는 문화방송과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

사건 : 99가합42730 손해배상(기)
원고 : 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김오섭
피고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노 성 대
2. 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문화방송 보도국
피고들 소송대리인 신필종, 전명호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 진 영
변론종결 : 1999. 12. 17.
주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천만원과 이에 대하여 1999. 4. 3.부터 2000. 1. 19.까지 연 5%, 2000.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MBC 텔레비전 아침 6시 뉴스 방송 시간에 50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뉴스 진행자의 오른쪽 상단 화면에는 '현 전총리 관련 기사 정정 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화면 아래 부분에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뉴스 보도할 때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표시하면서 뉴스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을 뉴스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3. 만약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위 제2항 기재 기간 안에 위 제2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의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원과 이에 대하여 1999. 4.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셈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송달받은 다음날 06:00 아침 뉴스 방송 시간에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목록 제1 기재 정정보도문을 방영하여야 하며, 만약 피고 회사가 위 기간 안에 위 정정보도문을 방영하지 않을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의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0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방송의 내용과 경위
(1) 원고는 국무 총리를 역임한 이후 학교 법인 건국대학교에서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방송 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MBC, 텔레비전, 라디오를 통하여 방송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 유 는 피고 회사의 보도국 사회부 기자이다.
(2) 원고는 1999. 2. 24. 연합뉴스 기자인 김 과 가진 인터뷰에서 '원고가 일제말에 학도병이었고 일본군 소위였으며, 일제 군복을 입고 중국 팔로군과 전투하였다'는 취지로 과거의 아픈 기억을 고백하는 인터뷰를 하였다.
(3) 원고의 위와 같은 인터뷰 내용이 연합통신을 통하여 각 언론사에 전해지자 일부 언론사는 원고의 고백이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보도하였지만, 일부 언론사는 위와 같은 인터뷰 사실을 보도하면서 역사의 실체를 명확히 하여 수치스러운 과거를 청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일부 언론사는 단순한 인터뷰 내용만을 보도하였다.
(4) 위와 같이 언론을 통하여 원고가 일본군이었던 사실이 보도되자 원고가 이사장으로 있던 건국대학교의 일부 학생과 교수들은 원고가 일본군으로 근무한 사실을 들어 친일 행각이라고 평가하며 원고를 전범, 매국노라고까지 칭하였으며, 원고가 위 학교 재단의 재정 부실까지 초래하였다면서 원고가 이 학교 재단 이사장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5) 피고 유 는 위와 같은 상황을 파악한 뒤 1999. 4. 2. 건국대학교에서 위 대학교 동문 교수 협의회장인 우 교수와 학생인 노 , 그리고 총학생회장이 강 을 만나 그들의 주장을 취재한 다음, 원고의 집무실을 1회 방문하여 원고와 인터뷰를 시도하였으나 인터뷰를 할 수 없다는 원고 비서실장의 이야기만 들었는데, 피고 유 는 원고의 견해를 듣는 다른 노력을 취하지 않은 채 취재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1999. 4. 3. MBC 텔레비전 아침 06:00 뉴스 시간에 별지 방송 내용 기재와 같이 50분 간격으로 2회에 걸친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하였다.
(6) 이 사건 방송 이후 원고는 위 대학교 동문 교수 협의회, 총학생회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위 학교 법인 재단 이사장직을 사임하였다.
(7) 한편 세계 제2차대전이 막바지에 이르자 일제 총독부는 한국인 총동원령을 내렸고, 1944. 1. 20.에는 전문대학생들 대부분을 학도병으로 징용하기까지 하였는데, 원고도 위 징용으로 말미암아 일본군에 편입되게 되었으며, 원고가 독립군과 싸운 사실과 전범 또는

친일 행각을 하였다고 칭할 정도의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바는 없다.
[증거] 인정 증거 : 갑 1~4, 갑 19~22의 각 1, 2, 갑 26, 27의 기재, 갑 5~14, 을 각 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배척 증거 : 갑 5~14, 을 각 호증의 각 일부 기재
나. 판단
살피건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직접 표현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와 같은 존재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독자 또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영상 매체의 방영 내용은 진행자를 비롯한 출연자들의 발언 내용 이외에도 일반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프로그램의 제목, 배경화면과 자막, 내용의 전체 흐름, 구성과 배치 및 진행자의 태도, 그밖에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을 종합하여, 그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학도병으로 징용된 사실을 친일 행위라 판단할 수 없고, 원고가 친일 행각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행위를 한 사실과 독립군과 싸운 사실 및 전범이라 평가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회사의 아나운서인 신 은 원고가 '친일 행각을 털어놓았다'고 모두에서 단정하여 이야기하였고, 피고 유 와 피고 회사의 뉴스 편집 담당자는 '독립군과 싸운 그런 경력이 가진 분'이라는 우 의 '전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노 의 각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편집, 방송하였는바, 일제 침탈기의 아픈 역사를 가진 우리 나라에서는 '친일 행각을 한 사람', '일본군으로 입대하여 독립군과 싸운 사람' 또는 '전범'으로 지목 당하는 경우 일반인인 경우에도 반민족 세력으로 낙인찍힐 수 있고, 사회적 저명 인사인 원고의 경우 더더욱 치명적인 상황을 불러 올 수 있는데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직접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은 채 원고가 친일 행각을 하였다는 부정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이 사건 방송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독립군과 싸운 경력이 있다는 내용, 원고를 전범으로 평가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여과하지 않은 채 그대로 편집하여 이 사건 방송을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한, 원고가 학도병으로 징용되어 일본군 예비 장교로 근무한 사실을 들어 친일행각, 친일 고백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논평의 자유의 범주에 들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방송의 내용, 구성과 배치, 원고의 사회적 지위, 사용한 어휘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방송은 간접적, 우회적으로 원고가 상당히 비난받을 정도의 친일 행위를 하였고, 그 사실을 숨겨 오다가 뒤늦게 고백을 한 것처럼 암시하여 일반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방송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방송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다. 피고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은 원고의 고백에 따라 증폭된 건국대학교 학내 분규와 이에 대한

교수, 학생들의 입장 그리고 향후 전망을 조명하는 취지에서 편성, 보도된 것이고, 그 내용도 모두 진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방송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도 그 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방송 내용이 진실하다고 증명되는 한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게 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방송은 사회 지도층 인사인 원고의 과거 일제 시대 행적과 그와 관련된 건국대학교 분규 내용과 향후 전망을 조명하는 내용으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한편 이 사건 방송내용의 전체 흐름, 구성과 배치, 편집 의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방송의 일부 내용은 관계자들의 진술을 내세워 원고를 일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서 비방하려는 간접적인 의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 회사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방송을 하였는지 의구심이 들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는 원고가 친일 행각, 친일 고백을 하였다는 부정적인 어휘를 사용하였고, 원고가 전범이고, 독립군과 싸운 경력이 있다는 관계자들의 표현을 여과없이 그대로 방송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아서, 이 사건 방송내용 중 일부는 허위인 사실(독립군과 싸운 경력이 있다는 부분), 일부는 사실상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표현(친일 행각, 전범)을 사용한 점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불법 행위에 따른 책임의 내용과 범위
가. 손해배상
원고가 이 사건 방송으로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그 행위로 원고가 입은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방송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방송의 방영 시점, 방영 시간,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피고 회사가 텔레비전 방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원고의 사회적 지위, 원고가 이 사건 방송이 일부 원인이 되어 위 이사장직을 사임하게 된 점, 그리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천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원과 이에 대하여 1999. 4.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0. 1.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2000.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또한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들에게 금전 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 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그 정정보도문의 방송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방송의 방송 시점, 방영 시간, 정정보도 방송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MBC 텔레비전 아침 6시 뉴스 방송 시간에 50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뉴스 진행자의 오른쪽 상단 화면에는 '현 전 총리 관련 기사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화면 아래 부분에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뉴스 보도할 때

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표시하면서 뉴스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을 뉴스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함이 상당하다.
다. 간접 강제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위 나항의 작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원고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조속한 명예회복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만약 피고 회사가 위 기간 안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의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암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2000. 1. 19.
재판장 판사 이 성 룡
판사 함 석 천
판사 김 선 일 □

사망한 아들의 명예를 훼손하여 부모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했다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지방법원 1999. 7. 6.자 판결 (98가단264437)
서울지방법원 2000. 1. 26.자 판결 (99나57095)

사실개요

1999년 7월 6일 서울지방법원 김재호 판사는 숨진 아들이 학원폭력을 일삼는 불량학생인 것처럼 보도한 KBS 및 소속 기자를 상대로 그 부모 홍○○, 탁○○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는 비록 인적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 방송 기사의 제목이 ‘학원폭력 응징하려다 오히려 숨지게 해’라고 되어 있어 방송의 전반적인 취지는 폭력을 응징하려다가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게 되어 있어 원고의 아들이 학원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으로 오도하기에 충분하며, 위 방송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아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학생이 원고의 아들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

건 사고에 대한 방송의 중점을 모범학생이 불량학생을 응징하다 일어난 사고라는 내용에 두면서, 담당학생을 가장 속속들이 알고 있는 담임선생님에 대한 취재 없이 가해 학생의 한 사람으로 밝혀진 동료학생으로 인터뷰하여 원고의 아들을 마치 불량학생으로 오인하도록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피고 KBS가 1998년 6월 17일 9시 뉴스를 통해 원고의 아들이 학원폭력을 일삼는 학생인데, 그 학급 반장에 의해 숨졌다는 보도를 하면서 마치 반장이 불량학생인 원고의 아들을 응징하려다 억울하게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표현하자 원고들은 KBS와 취재를 맡았던 담당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1심에 불복하여 피고들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서울지방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최춘근 부장판사)는 2000년 1월 26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판결문

사건 : 98가단264437 손해배상(기)
원고 : 1. 홍○○
2. 탁○○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 명 진
피고 : 1.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이사장 박 권 상
2. 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한국방송공사 사회부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오 수
변론종결 : 1999. 6. 1.
주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2. 4.부터 1999.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이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 1. 명예훼손의 성립
가. 원고들은 아래 사고로 사망한 ○○의 부모이고, 피고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전국에 방송의 시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방송 문화의 발전과 공공 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방송공사법에 따

라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곽　　은 피고 공사 보도국 사회2부 소속 기자이다.
나. ○○은 서울 강남구 ○○동 소재 ○○중학교 3학년 10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김○○은 같은 반 학생으로 반장을 맡고 있었다. ○○은 김○○이 체육시간에 ○○을 농구시합에 끼워주지 않았던 일로 섭섭하여 수시로 김○○의 의자 옆에 침을 뱉는 등 김○○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러던 중 김○○이 1998. 6. 17. 방과 후 ○○과 만나기로 한 후 친구인 이○○, 안○○에게 ○○과 오늘 싸우기로 했다며 함께 나가기로 한 다음, 1998. 6. 17. 16:00경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의 1 뒷쪽 골목길에서 ○○과 만나 서로 욕을 하고 밀치며 ○○이 복부를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데 대항하여 그의 얼굴과 가슴, 복부를 주먹으로 8, 9회 때리고, 김○○이 싸움에고 밀리자 이○○이 달려가 오른손 주먹으로 ○○의 오른 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김○○이 다시 주먹으로 ○○의 머리와 어깨를 2회 때리고 그를 밀어 쓰러뜨리고 오른발로 그의 발목을 1회 차서, ○○이 같은 날 16: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1의 1 소재 강남병원으로 후송 중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 곽　　은 ○○의 유족 및 동료 학생(그러나 별지 방송 내용 기재 중 학생 2.는 뒤에 가해 학생의 한 사람인 이○○으로 밝혀졌다)을 취재한 다음, 별지 방송내용 기재에 상응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1998. 6. 17. 오후 9시 정규 뉴스 시간에 별지 방송내용 1. 기재와 같이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하였다(방송내용의 제목에 관하여 실제 방송 자막은 별지 방송내용 기재와 같이 '급우에 맞아 사망'으로 되어 있으나 작성된 기사의 제목은 '학원폭력 응징하려다 오히려 숨지게 해'라고 되어 있었다).
라. ○○은 같은 반 학생들 중에 비교적 체격이 크고, 장난을 잘치는 학생이었다. ○○의 1, 2학년의 종합생활기록부 및 3학년 생활통지표를 보면, 교우관계는 비교적 원만하지만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학습의욕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담임선생님들이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학교에서 이루어진 선생님께만 들려드리는 내 이야기라는 설문조사에서 ○○은 가장 친해지고 싶은 친구로 김○○을 적고 있다.
마. 피고 곽　　은 위와 같은 내용의 방송 기사를 작성하면서, ○○의 담임선생님에 대한 취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제출된 각 증거들,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방송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시청자에게 부여하는 인상도 그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바, 피해자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는 비록 인적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후자의 판단에서는 진행자를 비롯한 출연자들의 발언 내용 이외에도 일반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프로그램의 제목, 배경 화면과 자막, 내용의 전체 흐름, 구성과 배치 및 진행자의 태도, 그밖에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을 종

합하여, 그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주는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방송 기사의 제목이 당초 '학원폭력 응징하려다 오히려 숨지게 해'라고 되어 있고, 방송 기사의 제목이 갖는 기사 전체의 함축적인 의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송의 전반적인 취지는 폭력을 응징하려다가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게 되어 있는 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 내용은 ○○을 학원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으로 오도하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숨진 학생과 싸운 학생은 다름 아닌 그 반의 반장이었는데, 이 학생은 숨진 학생이 평소 반 친구들을 괴롭혀 왔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싸움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라는 앵커의 멘트 뒤로 취재 기자인 피고 곽 이 '학원에 만연한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불러 사망사고로 이어졌습니다.'라고 보도하고, 또 '숨진 학생이 평소에 같은 반 친구들을 괴롭혔고, 이 때문에 반장이 나서서 싸우게 되었다는 것이 주변 학생들의 말입니다'라고 언급한 뒤 주변 학생 인터뷰에서 '괴롭혔어요. 애들을'이라는 인터뷰 기사를 보낸 다음, 마지막으로 피고 곽 이 '학교에 만연한 폭력이 부른 또 다른 비극입니다.'라고 끝을 맺고 있는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송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을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이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학생이 ○○이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고 위 방송내용은 ○○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판단된다.

또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학업성취도가 다소 미흡하고, 김○○과 사소한 다툼이 있었을 뿐이고, ○○이 김○○에게 시비를 건 것도 가장 사귀어 보고 싶은 친구에 대한 어린 학생으로서 다소 왜곡된 표현으로 보일 뿐 ○○이 다른 동료 학생들에게 폭력을 일삼는 불량학생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도, 이 사건 방송에서는 마치 ○○이 학원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으로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방송의 중점을 모범학생이 불량학생을 응징하다 일어난 사고라는 내용에 두면서, 담당학생을 가장 속속들이 알고 있는 담임선생님에 대한 취재도 하지 않은 채, 신중한 사실 확인 없이 가해 학생의 한 사람으로 밝혀진 동료학생으로 인터뷰하여 ○○을 마치 불량학생으로 오인하도록 유발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사건 방송내용의 전체 흐름, 제목, 경위, 구성과 배치 및 진행자의 태도에 비추어 ○○이 학원폭력을 일삼는 학생인데 그 학급의 반장이 이를 응징하려고 하다가 억울하게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표현을 하여, ○○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함으로써 그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공사와 이 사건 방송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 방송한 피고 공사의 피용자인 피고 곽 은 연대하여 이 사건 방송을 함으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된 것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형식의 리포트를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므로, 이 사건 방송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방송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그 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

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방송내용이 진실하다고 증명되는 한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게 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방송은 학원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내용으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한편 이 사건 방송내용의 전체 흐름, 구성과 배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방송의 일부 내용은 관계자들의 진술을 내세워 망인을 학원폭력을 일삼는 학생으로 표현하여 폭력을 행사하다가 오히려 폭력에 희생되었다는 선정적 내용을 담으려는 데 보도의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마치 망인이 학원에서 폭력을 일삼아 오던 학생인데 이를 응징하려던 정의의 반장으로부터 오히려 폭력으로 희생당하였다고 하여 망인을 학원에서 폭력을 일삼던 학생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아서, 이 사건 방송내용은 일부 허위인 사실인 점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은 1998. 6. 17. 19:00경 원고들의 친척이라는 사람의 제보전화를 받고 피고 공사의 담당자가 피고 곽　으로 하여금 취재를 지시하였고, 피고 곽　은 이 사건 사고의 1차 조사를 맡은 사고 관할 파출소로 전화를 하여 사건 내용을 확인하였던 바, 담당경찰관으로부터 가해학생인 김○○이 반장으로서 평소에 숨진 ○○이 학생들을 못살게 굴어서 버릇을 가르치려고 한 대 때렸는데 숨졌다, 또 목격자인 이○○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관할 경찰서로 취재를 하러간 후배기자도 파출소 경찰관의 얘기와 일치한다고 하여 기사를 완성하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방송이 진실이 아닌 점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담당결찰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그 정보가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들은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학생인 망인에 대한 평가를 내용으로 한 보도를 함에 있어 담임선생님 및 같은 반 학생들을 상대로 직접 취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성급하게 가해 학생을 동료 학생으로 보도하였을 뿐이다) 망인의 유족에 대하여는 기사화 하려는 망인에 대한 위와 같은 평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단순히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담아 구색만 갖춘 보도를 하였을 뿐인 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취재 기자인 피고 곽　이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들은 또 이 사건 보도후인 1998. 6. 19. 원고측이 요구하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2주일 안에 해 줄 경우 1998. 6. 17.의 보도내용을 불문에 붙이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공사에서는 이러한 합의에 따라 1998. 6. 24. 피고 공사 제1텔레비전의 9시 뉴스시간에 원고측이 요구하는 내용의 보도를 해준 바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공사에서 1998. 6. 24. 제1텔레비전의 9시 뉴스 시간에 별지 방송내용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한 사실은 원고들이 다투지 아니하나, 원고들이 피고측과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　의 증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방송내용 중

이 사건 방송의 내용, 방영 시간,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밖에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 공사가 우리 나라 언론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피고 공사가 1998. 6. 24.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추가 보도한 점, 그리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금 10,000,000원 및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1998. 12.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9.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등에 정하여진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1999. 7. 6.
판사 김 재 호

2심 판결문

사건 : 99나57095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1. 홍○○
2. 탁○○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 명 진
피고, 항소인 : 1. 한국방송공사(대표자 사장 박권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2. 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한국방송공사 사회부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변론종결 : 1999. 12. 22.
원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9. 7. 6. 선고 98가단264437판결
주문 :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원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 원판결 6쪽 12행 중 '밝혀진' 다음에 '이○○을'을 추가하고, 8쪽 9행 중 '담당결찰관'을 '담당경찰관'으로, 9쪽 1, 2행 중 '2주일안에'를 '빠른 시일안에'로, 6행 중 '보도한'을 '보도를 한'으로, 7, 8행 중 '증인 이 의 증언'을 '을 3,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 , 정 의 각 증언'으로 고치고, 9행 다음에 '(이 사건 방송 후 망 ○○의 이모부인 김

○○과 사이에, 피고 공사가 원고측이 요구하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해 줄 경우 이 사건 방송을 불문에 붙이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들이 별지 방송내용 2와 관련된 취재에 협조함으로써 피고 공사와 김○○ 사이의 위 합의를 추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앞서 본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를 추가하고, 11, 12행 중 '이 사건 방송 내용 중'을 삭제하고, 12쪽 4행 중 '힉생들을'을 '학생들을'로 고치는 외는 원판결과 같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000. 1. 26.
재판장 판사 최 춘 근
판사 류 용 호
판사 김 진 형 □

공인인 원고의 사생활에 대한 인터넷상의 허위사실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명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동의없이 보도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방법원 2000. 2. 2.자 판결 (99가합64112)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000년 2월 2일 유명 방송인 백 씨가 PC통신에 게재된 자신에 관한 소문을 기사화한 스포츠투데이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혼사유와 그 배경은 원고의 사생활(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영역일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소문은 모두 허위였기 때문에 원고는 일간지 등 언론기관을 통하여 보도되지 않는 데 대한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없이 피고가 속한 신문사를 통하여 소문을 보도한 것을 명백히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한 허위사실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소문에 대한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명의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을 전국에 판매되는 일간지에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의 이혼사유과 그 배경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고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람, 이른바 공인이라도 개인으로서 가지는 사생활(프라이버시)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하고, 언론기관이라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보도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보도할 때에는 사전에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거나 그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정도의 묵시적 승낙은 받아야 한다"고 밝

히고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것이 사회 일반의 공공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람의 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위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뿐이고, 이러한 예외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절차는 모두 거쳤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전화를 거절하지 않고 질문에 대답해 주었고 보도로 변명의 기회를 제공받았으므로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기자 신분임을 밝히고 수시로 전화하여 질문과 답변이 오고갔을 때에는 언제나 그 전화통화내용을 정리하여 인터뷰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보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할 뿐더러 본인이 원하지도 않은 변명의 기회를 주었다고 하여 이로써 보도에 동의하거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

사건 : 99가합64112 손해배상(기)
원고 : 백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배 숙, 최 승 수
피고 : 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CCMM빌딩 국민일보 스포츠투데이 5층 편집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은 창 용, 서 정 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우 식
변 론 종 결 : 2000. 1.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8. 6.부터 2000. 2. 2.까지 연 5%, 2000.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 1. 손해 배상 책임의 발생
가. 보도 경위
(1) 원고는 주식회사 문화방송에서 기자 및 앵커우먼(anchorwoman)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프리랜서(자유 계약직)로 방송 관련 활동을 하고 있고, 피고는 연예, 스포츠 기사를 주로 다루는 일간지 ‘스포츠 투데이’ 신문을 발행하는 스포츠투데이 신문 주식회사(이하 스포츠투데이라 함)의 연예부 소속 기자이다.
(2) 1999. 7. 10. 국내 PC 통신업체와 ‘미주 통일 신문사’라는 이름을 내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nity.co.kr)에 ‘여성 앵커를 울린 남자는...’, ‘모 여성 앵커 이혼

사유가...?' 등의 제목으로 '근래 이혼한 유명 여성 앵커가 낳은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상대는 모 방송사 고위 간부다.'라는 내용의 글이 오르면서 주로 국내 PC 통신업체를 통하여 사용자들 사이에 그 소문이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그 여성 앵커가 원고였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그러나 위 기사는 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회에 떠도는 소문을 과장, 윤색하여 사실인 것처럼 유포시키는 배 이라는 사람이 합리적인 근거나 확인 절차 없이 국내 PC 통신업체와 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원고의 고소로 개시된 배 에 대한 명예 훼손 사건에서 원고가 낳은 아이는 전 남편의 친자가 맞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 소문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배 은 명예 훼손 혐의로 구속되어 그 공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3) 한편, 피고는 1999. 3.경 원고가 소속 방송사에 사표를 낼 무렵부터 주로 전화를 통하여 원고의 근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에, 위와 같은 소문이 PC 통신에 게시되어 조회수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는 1999. 7. 11.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원고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위 소문에 대한 진위 여부, 배 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물어보았는데, 원고는 통화를 할 때마다 피고에게 배 에 대한 법적인 대응이 있을 때까지는 자신에 대한 소문이나 통화 내용을 기사화로 만들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1999. 7. 15. 10:00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그동안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인터뷰한 것으로 보고 기사를 작성하여 신문에 게재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인터뷰도 없이 무슨 기사를 쓰냐."고 항의하면서 위 소문을 기사로 쓰지 말 것을 재차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1999. 7. 16.자 '스포츠 투데이' 신문 제1판의 1면에, 우측에는 원고의 얼굴 사진을 싣고, 좌측에는 큰 글씨로 "사이버 테러, 백 모함", 중간 글씨로 "이혼 배경 헛소문에 운다"라고 제목을, 제목과 부제목 사이에 "인터넷 신문 보도"라고 기재하고 그 옆과 위 사진 사이에 "미주 통일 신문사(KOREA UNITY PRESS U.S.A [앵커]의 남편은 왜 침묵하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침묵할 수 밖에 없는 고통 이해"라는 기재가 있는 배 의 홈페이지의 사진 영상을, 그 아래에 "고통의 '白夜(백야)'…백 본보에 최초 고백"이라고 부제목을 각 붙이고 그 아래에 별지 '제1판(초판) 신문' 기재 신문 기사를 실었고, 스포츠투데이는 위 신문(이하 초판 신문이라 함)을 인쇄되어 전국으로 발행, 배포하였다.

(5) 원고는 같은 날 14:00~15:00경 초판 신문이 발행, 배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피고에게 전화하여 거세게 항의하면서 1999. 7. 16. 아침에 배포될 신문에는 위 기사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18:00경 원고를 찾아온 피고를 만난 자리에서 이미 발행된 신문은 어쩔 수 없으니 다음날 아침판에서라도 원고에 대한 기사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얼굴 사진 크기를 약간 줄이고 위 홈페이지의 영상 부분을 삭제하고 전체 지면 할당량을 1/5 정도 줄인 후 제목 다음의 부제목과 기사 내용을 수정하여 그 아래 별지 '제6판(수정판) 신문 기사' 기재 신문 기사를 다시 작성하였고(밑줄친 부분은 초판 신문에 실린 기사를 수정한 부분임), 스포츠투데이는 1999. 7. 16. 아침에 위 수정된 내용의 신문(이하 수정판 신문이라 함)을 발행, 배포하였다.

(6)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가 위 신문 보도 전에 수 차례 전화로 자신의 의견을 밝힌 바 있고 보도 시점까지 논의했으며 보도 후에는 직접 만나 문구 수정 부탁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사진이 마음에 든다는 말까지 하며 위 기사 작성에 적극 찬성하였다는 취지의 보도 자료를 만들어 스포츠투데이를 비롯한 다른 신문사나 기자 협회보지에 배포하였고, 1999. 7. 22.에는 SBS 방송의 '한밤의 TV 연예'에서 전화 인터뷰를 하며 같은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증거 : 갑 1~3, 5~7, 10호증, 을 1, 10, 11호증의 기재, 증인 김　　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나. 주장과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PC 통신에 오른 헛소문을 소개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일간지에 그대로 기사로 게재함으로써 위 PC 통신의 내용을 알지 못했던 신문 독자들까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신문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으로 미루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내용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원고의 비밀 영역 또는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내용을 함부로 보도하여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위 기사가 나간 후에도 원고가 마치 위 기사 게재에 동의하여 그 작성에 협력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까지 꾸며내 이를 언론 기관을 통하여 공표함으로써 원고 인격에 대한 평가까지 저하시켰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일간 연예 신문사 소속 기자인 피고의 전화를 거절하지 않았고 원고에게는 변명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므로 그 전화 내용을 기사로 사용하는 데 대한 동의가 있거나 인터뷰에 응한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보도에 원고의 승낙이 있었던 것이고, 또한 위 신문 기사의 내용은 이미 알려진 사실을 보도한 것이고 원고와 같이 널리 알려진 공인에 대한 소문은 그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부분이라도 그 진위 여부를 떠나 공인의 부정 행위나 도덕성, 윤리성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관심 대상이므로 일반인들이 그 사람의 사회 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의 자료로 삼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이는 공공의 이익에도 합치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생활에 관한 자유의 침해
개인의 이혼 사유와 그 배경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고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람, 이른바 공인이라도 개인으로서 가지는 사생활(프라이버시)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하고, 언론 기관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도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보도할 때에는 사전에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거나 그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정도의 묵시적 승낙은 받아야 한다. 나아가 명시의 반대 의사가 있다면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더더욱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것이 사회 일반의 공공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람의 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

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위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뿐이고, 이러한 예외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확인 절차는 모두 거쳤어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오랜 동안의 방송 활동을 통하여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람으로 원고의 경력이나 방송 활동 사항은 일반에 공개된 영역 혹은 원고의 사회 활동의 영역으로 이에 대한 보도에는 원고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원고의 이혼 사유와 그 배경은 원고의 사생활(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영역일 뿐만 아니라 배 이 퍼뜨린 원고에 대한 소문은 모두 허위였기 때문에 원고는 위 소문이 일간지 등 언론 기관을 통하여 보도되지 않는 데 대한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가 속한 신문사를 통하여 위 소문을 보도한 것은 명백히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나) 피고의 보도에 따른 원고의 명예 훼손

통신 시설과 개인 전산 장비가 발달하기 전에는 개인은 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통신과 개인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고 그 저변이 확대되어 누구라도 쉽게 인터넷이나 PC 통신을 통하여 능동적인 정보의 공급자가 될 수 있게 된 오늘날, 개개인은 각자가 생산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유통시킴으로써 사회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정보와 지식의 교환의 폭을 넓혀 궁극으로는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보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가운데 때로는 고의로 혹은 부주의로 말미암아 개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대량으로 유통되거나 확산되어 개인의 명예가 손상되는 일 또한 많아졌다.

한편, 일반인들은 개인이 유통시키는 정보에 비하여 정부 기관이나 공인된 언론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가 검증 과정이나 생산 과정에 오류가 적다고 믿게 되고 PC 통신이나 인터넷에서 개인이 유통시키는 정보에 비하여 보다 쉽게 그 정보를 신뢰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더욱이 독자층을 두루 갖추어 판매망이 전국에 이르는 일간지를 통하여 확산되는 정보는 아직까지는 PC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유통에 비하여 그 속도와 범위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다. 즉, 보통의 경우 개인이 홈페이지나 PC 통신을 통하여 퍼뜨린 정보는 다른 설득력 있는 정보의 뒷받침이 없으면 머지않아 이용자들의 관심은 식어 버리고 정보로서 가치를 상실한 채 사라져버려 공인되지 않은 '소문'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그 생명을 다한다. 그러나 만일 그 '소문'이 공신력이 있는 언론 기관에 의하여, 그것도 전국적인 판매·유통망을 가진 일간지에 그 내용이 게재되어 퍼진다면, 그 '소문'의 피해는 PC 통신의 게시판이나 개인 홈페이지에 머물러 있을 때에 비하여 더욱 확산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초판과 수정판 신문이 발행되기 전에 이미 배 이 PC 통신과 인터텟을 통하여 유포한 허위 사실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언론이 기사를 게재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기사의 객관적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가 통상 그 기사를 읽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기사의 제목과 내용,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기사의 배치, 기사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 인상도 아울러 고려해야 하는데, 피고가 작성하여 보도한 신문 기사를 보

면 배 이 퍼뜨린 원고에 대한 허위의 사실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우선 초판 신문 기사를 보면, 1면에 원고의 얼굴 사진이 크게 실리고, 제목으로 “사이버 테러, 백 모함”, 부제목로 “이혼 배경 헛소문에 운다”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그 옆과 위 사진 사이에는 “미주 통일 신문사(KOREA UNITY PRESS U.S.A [앵커]의 남편은 왜 침묵하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고통 이해”라는 제목이 붙은 배 의 홈페이지 사진이 들어가고, 그 아래에 “고통의 ‘白夜(백야)’…백지연 본보에 최초 고백”이라는 또 다른 부제목이 붙어 있는바, 기사의 제목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미주 통일 신문사’라는 이름을 내건 신문사가 원고에 대한 폭로성 기사를 냈는데 그에 대하여 원고가 ‘최초 고백’을 하여 그동안 밝히지 않은 숨은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풍기면서 기사 내용에도 충격적인 내용이 있을 것임을 은연 중에 암시하는 느낌을 준다. 그리고 기사의 본문에는 “문제는 지난 10일 ‘BAEBUJUN’이란 통신 ID로 ‘미주 통일 신문사’ 배 발행 겸 편집인이 한 앵커우먼의 이혼에 얽힌 소문의 글을 천리안 하이텔 등 국내 모든 PC통신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곧바로 네티즌들은 ‘모 유명 여성앵커가 이혼한 배경에는 낳은 아이가 모 방송국 고위층의 아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으로 특정인에 대한 비방임에도 불구하고 소문의 주인공을 ‘백 ’이라고 지목한 뒤 연일 갑론을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 ‘미주 통일 신문사’가 실제로 있는지, 배 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의 글을 다루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어, 위 ‘미주 통일 신문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일반 독자들에게 ‘미주 통일 신문사’에 소속된 발행 겸 편집인인 배 이 원고의 이혼 배경을 취재하여 알아낸 사실을 폭로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체 인상은 수정판 신문에서 1면 기사의 크기를 조절하고 위 홈페이지 그림을 빼고 부제목을 고쳐 어느 정도 약해지기는 했으나, ‘미주 통일 신문사’와 배 에 대한 본문 기재 내용은 그대로여서 초판 신문의 전체 인상을 바꾸기에는 부족하다.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피고는 PC 통신과 인터넷에서 비롯한 ‘소문’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해명의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원고에 대한 명예 훼손 사실을 전국에 판매되는 일간지에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보도 후의 정황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원고가 위 보도에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했으면서도 원고의 동의나 인터뷰 없이 보도를 한 것처럼 피고와 소속 신문사를 비난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 자료로 만들어 스포츠투데이를 비롯한 다른 신문사나 기자 협회보지에 배포하였고, 1999. 7. 22.에는 SBS 방송의 ‘한밤의 TV 연예’에서 전화 인터뷰를 하며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런데 위 보도 자료 배포와 방송 인터뷰 내용은 비록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이 때문에 원고는 인격에 대한 사회의 평가에 나쁜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따라서 다시 한번 그 명예가 훼손되었다 할 것이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일간 연예 신문 기자인 피고의 전화를 거절하지 않고 질문에 대답해 주었고 위 보도로 원고는 변명의 기회를 제공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설시한 법리와 사실 인정에 반하고, 만일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기자 신분임을 밝히고 수시로 전화하여 질문과 답변이 오갔을 때에는 언제나 그 전화 통화 내용을 정리하여 인터뷰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보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할 뿐더러, 본인은 원하지도 않은 변명의 기회를 주었다고 하여 이로써 보도에 동의하거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다.
피고는 다음으로 위 보도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혼 배경에 대한 소문과 그에 대한 원고의 반응을 신문지상을 통해 아는 것이 원고의 사생활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이 공익에 부합하거나 일반인들에게 계몽의 효과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손해 배상의 범위
위 인정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이를 일간 연예 신문에 보도함으로써 원고가 그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사회적 지위와 위치, 피고가 소속된 신문사의 규모와 언론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반인들에 대한 공신력, 피고의 확인 노력의 정도, 위 기사의 내용, 기사가 신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위 보도 후 피고가 취한 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보면, 위자료는 1억 원이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스포츠투데이 신문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9. 8. 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2. 2.
재판장 판사 이성룡
판사 함석천
판사 김선일 □

사설에서 비록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혹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터 잡은 것이거나 의혹이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명예를 해치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서울지방법원 2000. 2. 2.자 판결 (99가합77460)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000년 2월 2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관련 수사를 위한 '검찰특별수사본부'의 이 본부장 및 수사본부 소속 검사 11인이 조선일보사와 정 논설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및 검사로서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남겼고, 일반독자로 하여금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안겨주어 검찰 구성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1천5백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인적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사설의 주 내용이 휴대폰 통화내용을 검찰이 감청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며, 당시 위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는 검사인 원고들과 관련된 사설들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은 위 사설의 게재, 배포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라고 특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각 사설은 원고들이 불법 감청을 한 다음 그 감청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그 감청 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여러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전제 사실을 간접, 묵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사설에서 비록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의혹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암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1999년 7월 29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수사과정 중 진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강 과의 휴대폰 통화내용과 관련, 이들이 발맞추기를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수사 내용을 브리핑하였다. 이를 취재한 관련 기사를 참작하여 조선일보 논설위원인 피고 정 은『검찰의 감청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이 불법 감청을 한 후 그 내용을 공개하면서 감청 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여러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

사건 : 99가합77460 손해배상(기)
원고 : 1. 이
2. 이

3. 주
4. 길
5. 윤
6. 김
7. 조
8. 최
9. 한
10. 김
11. 이
12. 신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우 식
피고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 우 영, 방 상 훈
2. 정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조선일보사 내)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광 률, 김 태 수
변론종결 : 2000. 1. 26.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1999. 7. 31.부터 2000. 2. 2.까지 연 5%, 2000.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각 셈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조선일보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2면 기사 게재 부분에 '정정 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8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제1 정정 보도문 기재와 같은 정정 보도문을 14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하라.
3. 만약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위 제2항 기재 기간 안에 위 제2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의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20%는 피고들이 각 연대하여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억원과 이에 대하여 1999. 7. 3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셈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 발행하는 조선일보 '사설'란에 별지 제2 정정 보도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만약 피고 회사가 위 기간 안에 위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의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 1. 명예 훼손의 성립

가. 원고들은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로서 1999. 7. 20.부터 이른바 '조폐공사 파업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검찰 특별 수사 본부'의 구성원들이었는데, 위 수사 본부에서 원고 이 는 본부장, 원고 이 은 주임 검사, 나머지 원고들은 각 수사검사의 직책을 수행하였으며, 한편 피고 회사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정 은 피고 회사 논설 위원이다.

나.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이던 진 는 1999. 6. 7. 기자들에게 검찰이 조폐공사 파업 유도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그 발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치권과 일반 시민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으며, 그 보도를 접한 노동계와 시민 단체,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였는데, 그에 따라 대검찰청은 그 진상 조사를 위하여 위 수사 본부를 구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1999. 7. 21. 위 사건 수사에 착수하여 진 와 강 의 집과 대검찰청 공안부에 대한 압수 수색과 진 와 그 가족들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하고, 기타 관련자 소환 조사를 거쳤는데, 그 수사 결과 위 사건은 '진 가 구조 조정에 반발하는 노조의 파업에 대응하는 선례를 만들어 업적을 쌓을 목적으로 행한 1인극'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들은 1999. 7. 30. 진 를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위 수사를 종결하였다.

라. 그런데, 위 수사 과정에서 진 가 강 에게 전화를 하여 '집 전화로 통화하면 수사 기관에 추적될 수 있으니 휴대 전화기를 보내겠다.'고 제안한 다음 휴대 전화기를 강 에게 전하였고, 진 와 강 이 그 휴대폰으로 수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

마. 한편, 원고들은 위 수사 본부에서 위 수사 내용과 관련된 브리핑을 가끔 하였는데, 1999. 7. 29.에는 강 의 진술임을 전제로 진 가 강 에게 "강사장 우리 딱 한번 만난거야…알았지.", "우리가 5월에 한번 만난 것밖에 없지.", "당신이 나와 통화한 것은 범죄 신고 차원이 아니냐.", "구조 조정은 조폐 공사 스스로 한 것인데 내가 뭘 알겠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맞추기를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하였다.

바. 위 브리핑 관련 기사를 취재한 피고 회사 소속 이 기자는 '검찰이 감청이 아닌 강씨 진술로 밝혀진 것이라는 전제를 달고 위 브리핑을 하였고, 그 브리핑 전날까지도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던 통화 내용을 그 다음날에 상세히 공개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그러한 취지의 기사가 1999. 7. 30.자 조선일보 에 보도되었다.

사. 피고 정 은 위 보도 기사와 기타 다른 언론 보도를 참작하여 별지 제1 사설 내용 기재에 상응하는 사설을 쓴 다음 피고 회사 내부의 상의 또는 보고 절차, 편집 절차를 거쳐, 1999. 7. 30. 18:00경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1999. 7. 31.자 조선일보 서울지역 가판(街版)에 별지 제1 사설 내용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설을 실어 배포하였다.

아. 그런데 원고 이 가 위 신문을 보고 피고 회사 소속 서울지방검찰청 법조 출

입 기자에게 위 사설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항의를 하였음에도, 피고 정
은 다시 피고 회사 내부의 상의 절차를 거친 다음 제목만 달리하고 내용은 비슷한 제2 사설 내용 기재에 상응하는 사설을 쓴 다음 내부 편집 절차를 거쳐, 1999. 7. 30. 23:00경 1999. 7. 31.자 조선일보에 별지 제2 사설 내용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설을 실어 배포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을 1의 4,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손해 배상 책임의 발생

(1) 피해자의 특정과 사실의 적시

살피건대, 언론 보도로 말미암아 명예 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독자들에게 부여하는 인상도 그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바, 피해자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는 비록 인적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따르면, 위 각 사설의 주된 내용이 진
와 강 사이의 휴대폰 통화 내용을 검찰이 감청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고, 그 판단은 검찰이 위 파업 유도 사건을 조사, 발표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실들을 전제로 하였는바, 그와 같은 위 각 사설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위 파업 유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는 검사인 원고들과 원고들의 지휘를 받는 검찰 직원들뿐이었으므로, 원고들의 업무를 평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원고들의 직역과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위 파업 유도 사건 관련 기사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일반 독자들도 쉽게 원고들과 관련된 사설들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은 위 각 사설이 신문에 게재되어 배포됨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라고 특정된다.

다음으로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어떠한 표현 행위가 명예 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고, 신문 등 언론 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의 의미, 기사 전체의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사실 적시와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구별,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경우에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도 타당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위 각 사설은 '검찰의 감청 의혹' 또는 '휴대폰도 도청되나'라는 제목을 사용하였고, ① 검찰은 통화 내용이 감청이 아닌 강씨 진술로 밝

혀진 것이며, 등장 인물도 강, 진씨 두 사람뿐이라고 밝혔다는 표현, ② 검찰이 전날까지 개인 프라이버시라면서 통화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그 다음날 태도를 바꾸어 통화 내역을 공개하였다는 취지의 표현, ③ 검찰이 강씨 진술을 진씨의 1인칭 직접 화법으로 한편의 시나리오처럼 대화체로 발표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일반 독자가 위 각 사설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위 각 사설의 제목과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사설은 원고들이 불법 감청을 한 다음 그 감청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그 감청 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여러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전제 사실을 간접, 묵시로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위 각 사설은 비록 논평이라고 보아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 위 각 사설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각 사설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의 의미, 전체의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명예 훼손

또한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실제 진 와 강 의 대화를 감청하였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그러한 감청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나 원고들의 해명을 듣지 않은 채(심지어는 원고 이 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들이 불법 감청을 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위 각 사설을 신문에 게재하여 배포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들이 위 각 사설에서 비록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혹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터잡은 것이거나 '의혹'이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는 명예 훼손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각 사설을 신문에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 각 사설을 신문에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각 사설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으로서 내용이 진실하므로, 위 보도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방송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그 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방송 내용이 진실하다고 증명되는 한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게 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위 각 사설은 검찰이 당시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휴대폰 감청을 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위 각 사설 중 ① 검찰이 통화 내용은 감청이 아닌 강씨 진술로 밝혀진 것이며, 등장 인물도 강, 진씨 두 사람뿐이라고 밝힌 사실, ② 검찰이 전날까지 개인 프라이버시라면서 통화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그 다음날 태도를 바꾸어 통화 내역을 공개한 사실, ③ 검찰이 강씨 진술을 진씨의 1인칭 직접 화법으로 한편의 시나리오처럼 대화체

로 발표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들의 입증이 부족하며(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피고 회사나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들인데,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들만으로 위 사설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위 각 사설은 원고들이 불법 감청을 한 듯한 전제 사실을 담고 있어 그 내용 중 일부가 허위인 점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은 다시, 위 각 사설 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피고들은 피고 회사 및 다른 언론사들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 보도 사실에 터잡아서 위 각 사설을 작성한 다음 신문에 게재하여 이를 배포하였고, 위 각 사설은 평가, 비판, 촉구 따위의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한 것이며, 그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의 증명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언론 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 훼손에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에 터 잡아 볼 때, 피고들은 다른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선일보 관련 보도나 다른 언론사들의 관련 보도를 사실로 잘못 알고서, 원고들이 불법 감청을 한 다음 그 감청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감청 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여러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위 각 사설을 작성하여 그대로 신문에 게재하여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위 각 사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이 강 의 진술임을 전제로 진 가 강 에게 “강사장, 우리 딱 한번 만난 거야…알겠지.”라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는 브리핑을 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위 각 사설의 다른 전제 사실에 대한 진실이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위 인정 사실에다가 원고들이 불법 감청을 한 다음 그 감청 내용을 공개하면서 감청 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여러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의미를 가진 여러 사실들을 부당히 더한 다음 그러한 여러 사정을 합쳐 볼 때 원고들이 감청을 한 의혹이 있다는 위 각 사설을 작성, 신문에 게재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각 사설 내용이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그 전제되는 중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불법 행위에 따른 책임의 내용과 범위

가. 손해 배상

원고들이 위 각 사설이 게재된 신문이 배포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그 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 바, 위 각 사설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위 각 사설의 신문 게재 시점과 신문 게재 부분,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피고 회사가 언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원

고들의 검사로서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남긴 점, 일반 독자들에게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그릇된 의혹을 안겨주어 검찰 구성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더욱 조장한 점, 그리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각 15,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7.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0. 2.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2000.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명예 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또한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들에게 금전 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원고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 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그 정정 보도문의 크기, 게재 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사설이 신문에 게재된 크기, 게재면수, 정정 보도문의 글자수, 정정보도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조선일보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2면 기사 게재 부분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8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제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함이 상당하다.

다. 간접 강제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위 나항의 작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조속한 명예 회복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만약 피고 회사가 위 기간 안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의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2000. 2. 2.

재판장 판사 이성룡

판사 함석천

판사 김선일 □

원고 회사가 경영난으로 편파적인 신문보도를 일삼고 있어

언론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원고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손해배상하라

대전지방법원 2000. 2. 3.자 판결 (99가합6757)

사실개요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2000년 2월 3일 주식회사 중도일보사가 대전교차로주식회사와 발행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천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경영권 분쟁에 관하여 기사를 게재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회사를 비방할 의도로 생활정보지로서의 본래의 발행목적을 벗어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원고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하여 편파적인 신문보도를 일삼고 있어 언론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한 보도로 인해 원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저하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 회사가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하고 경영상 어려움의 타개를 위해 2, 30억원의 신규 자본영입을 추진하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허위가 아니라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며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이 사건기사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지역언론의 건전한 경쟁분위기를 조성하여 언론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인 중도일보사가 1999년 5월 29일자에 『정보지 교차로 내분』이라는 제하로 피고 회사의 경영권 및 지분율, 발행인 명의를 둘러싼 분쟁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자, 피고 회사는 1999년 6월 7일자에 『중도일보 보도행태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원고 회사가 재정난으로 인하여 불공정 보도에 이르게 된 것처럼 보도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

사건 : 99가합6757 손해배상(기)
원고 : 주식회사 중도일보사
대표이사 이 기 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영, 황찬서, 이창혁
피고 : 1. 대전교차로 주식회사
대전 동구 가양동 424의 4 하해빌딩 2층
대표이사
2. 박
대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송동호

변론종결 : 2000. 2. 3.
주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대전교차로 주식회사는 1999. 7. 10.부터, 피고 박　　은 1999. 7. 11.부터 각 2000. 2. 3.까지는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주식회사 중도일보사(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일간신문 발행업, 신문판매 및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일간신문인 '중도일보'를 발행하고 있고, 피고 대전교차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지역생활정보신문 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보도, 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중고물품 매매와 생활정보와 지역생활소식을 게재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생활향상에 기여할 발행목적으로 생활정보지인 '교차로'를 대전 지역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피고 박　　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교차로'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다.
나. 원고 회사가 1999. 5. 29.자 중도일보 제15면에 "정보지 교차로 내분"이라는 제목아래 "일부 주주 자회사 불법설립·공금유용 등 고소"라는 대제목과 "검찰, 박 전 대표 입건방침"이라는 소제목으로 교차로의 경영권 및 지분율, 발행인 명의를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별지2. 기재 내용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자, 피고 회사는 1999. 6. 7.자 교차로 제1면 상단에 "중도일보 보도행태 논란"이라는 제목아래 "지방언론, 건전한 경쟁분위기 조성돼야"라는 소제목으로 별지1, 기재 내용과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의 훼손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기사의 내용(특히, 이 사건 기사 중 ③, ⑦부분) 및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 내부의 경영권 분쟁에 관한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그 취재원에 있어서도 당원 98파714호 검사인선임사건에서 선임된 검사인 박광희의 1999. 2. 10.자 검사인조사보고서와 피고들에 관한 소송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하였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피고들에 관한 분쟁 내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박　　측의 주장도 게재하는 등 공정을 기하려 노력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음에도, 피고 회사는 다분히 원고 회사를 비방할 의도로 원고 회사의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문보도가 그 분쟁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듣고 작성된 편파적인 것으로서 원고 회사가 위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마치 원고 회사의 재정난으로 인하여 불공정 보도에 이르게 된 것이라

는 취지의 이 사건 기사(그 내용이 허위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를 보도함으로써, 이 사건 기사에 대한 일반적인 독자들의 인식에 따라 원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저하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지역언론의 건전한 경쟁분위기를 조성하여 언론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들을 보도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게재한 이 사건 기사의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심 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의 계열회사로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이 이 그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중도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중도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대전 서구 갈마동 274의 7 소재 중도일보 사옥에 입주하여 있던 당원 등기과가 1998. 10. 24.경 당원 신 청사로 이전함으로써 위 중도산업개발은 당원에게 그 임차보증금 400,000,000원 중 금 300,000,000원은 1998. 12. 30. 나머지 금 100,00,000원은 1999. 3. 20.,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지체에 따른 연체이자 금 4,383,560원을 1999. 3. 22. 각 지급한 사실, 위 사옥의 3, 6, 7층에 입주하여 있던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도 1999. 12.경 신청사로 이전하게 됨으로서 위 중도산업개발은 대전광역시에게 그 임차보증금 1,1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 또한 원고 회사의 계열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경암빌딩(위 이 이 그 이사 겸 지배주주이다) 소유의 대전 중구 대흥동 501 소재 경암빌딩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당원에서 1999. 1. 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은 사실, 원고 회사는 1998년도에 약 3개월간 그 직원들에 의한 급여를 체불하였고, 1999. 3.경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약 20 내지 30억원 규모의 신규 자본영입을 추진한 사실만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허위가 아니라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의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와 그 발행인 겸 편집인인 피고 박 은 공동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경영권분쟁에 관하여 기사를 게재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회사를 비방할 의도로 생활정보지로서의 위 교차로 본래의 발행목적을 벗어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원고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난 등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편파적인 신문보도를 일삼고 있어 언론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고(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 회사 및 그 계열사들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현재 다소간의 재정난에 봉착하여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위와 같은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 보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원고 회사의 사회적 명성, 피고 회사의 규모 및 재산상태, 피고들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게 그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금 7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그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9. 7. 10. 부터 피고 박　에 대하여는 그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9. 7. 11.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0. 2. 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2. 3.

재판장 판사 한 상 곤

판사 박 상 구

판사 안 동 범 □

원고를 '주사파'로 묘사하여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켰으므로
피고들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0. 2. 10.자 판결 (98나56579)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2000년 2월 10일 KBS 남　PD가 한국논단과 발행인, 사건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월간 <한국논단>이 1998년 3월호에 『빨갱이는 선으로, 경찰은 악으로 연출하는 공영방송 KBS』라는 제목아래 원고를 주사파로 묘사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법원에서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 또는 ‘친북세력’으로 지목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반사회세력으로 낙인찍혀 사회 활동의 폭이 현저히 위축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주사파’라는 발언은 단순한 모욕적 언사를 넘어 충분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원과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6집 251~264면 참조).

한편, 위 보도와 관련 남PD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신청을 한 바 있는데(98서울중재28), 중재결과 중재불성립결정되어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998년 4월 10일 법원으로부터 한국논단측은 남PD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6집 47~52면).

판결문

사건 : 98나56579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남
피고, 항소인 : 1. 주식회사 한국논단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1의 38
대표이사
2. 이
서울
3. 이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김선희
변론종결 : 1999. 12. 23.
제1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8. 9. 30. 선고 98가합18280 판결
주문 :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1.부터 2000. 2. 1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한국논단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월간 “한국논단”의 본문면 제1면 상단에 가로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38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하고, 아래 부분에는 별지 제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한국논단과 피고 이 은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처음

발간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월간 “한국논단”의 표지 및 차례란의 각 상단 부분에 각 “KBS 남　　PD에 대한 이른바 주사파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각 고딕체 특호 활자로 게재하고, 본문 제92쪽에 제목은 고딕체 특호 활자로, 내용은 명조체 10호 활자로 별지 제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만약 피고 주식회사 한국논단과 피고 이　　이 위 정정보도문 게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의 다음날부터 각 이행 완료시까지 월 금 100,000,000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 1. 명예훼손의 성립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3행부터 제18면 제3행까지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의 게재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기사의 크기, 그밖에 중견 언론인인 원고의 사회적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한편,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위 기사로 명예훼손을 당한 것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금전 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과 함께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이　　에 대하여도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나, 피고 회사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도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는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그 정정보도문의 크기, 게재 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크기, 게재면수, 정정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한국논단의 본문면 제1면 상단에 가로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38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하고, 아래 부분에는 별지 제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의 활자로 1회 게재함이 상당하다.

4. 간접강제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 및 피고 이　　이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간접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 및 피고 이　　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때까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정정보도문 게재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각 이행완료시까지 원고에

게 월 금 100,000,000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대체적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한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판결절차(협의의 소송절차)에서 먼저 채무명의가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민사소송법 제694조)을 거쳐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부대체적 채무 중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언제나 위와 같이 먼저 채무명의가 성립하여야만 그 다음 단계에서 비로소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채무명의의 성립과 집행단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동안에 채무자가 부작위채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이나 위반 결과의 제거 등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충분한 손해전보가 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집행제도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채무명의가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의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도 위 법조에 의하여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참조).
한편 부대체적 채무 중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경우에는 채무명의가 성립한 후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간접강제를 허용하여도 별문제는 없으므로, 부대채적 채무 중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요건을 갖춘 이외에, 채무이행기가 변론종결시에 이미 경과하였거나 임박하였고 극히 단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면 채권이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사후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실질적 손해전보가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결정을 함께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에 대한 간접강제청구는, 당원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명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채무의 이행기가 변론종결시에 이미 경과하였거나 임박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 정정보도문의 게재가 극히 단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면 채권이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여지지도 아니 하며, 피고 회사 등이 이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이 이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피고 회사 등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 이 에 대한 간접강제청구는 당원이 이 에 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한국논단”의 발행인인 1998. 3. 1.부터 피고들이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0.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5푼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2. 10.
재판장 판사 채 영 수
판사 박 순 성
판사 최 규 홍 □

원고의 전화통화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를 음성변조 처리 없이 방송하여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서울지방법원 1999. 7. 7.자 판결 (98가합51935)
서울고등법원 2000. 3. 9.자 판결 (99나43440)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2000년 3월 9일 변호사 손○○ 씨가 전세매매계약체결과 관련된 자신의 전화통화내용을 음성 변조처리 없이 방송한 서울방송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억4천여 만원의 손해배상과 광고문 게재 등을 청구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5백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의 전화통화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를 음성변조 처리 없이 재생하여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2000년 3월 9일 변호사 손○○ 씨가 전세매매계약체결과 관련된 자신의 전화통화내용을 음성 변조처리 없이 방송한 서울방송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5백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의 전화통화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를 음성변조 처리 없이 재생하여 방송하여 원고의 인격권인 음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원고가 허위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보도는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침해된 원고의 사생활의 권리 또는 인격권은 위 보도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사적인 사항을 취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생활의 권리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히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SBS는 1998년 4월 28일「뉴스추적」프로그램을 통해 부동산 매매 및 전세계약 당사자의 분쟁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가 매매계약 이행문제로 인해 원고와 전화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넘겨준 내용을 음성변조처리 없이 그대로 재생하여 방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와 서울방송 및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심 판결문

사건 : 98가합519355 손해배상등
원고 : 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광균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아람
담당 변호사 전 경 희
피고 : 1. 주식회사 서울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의 2
대표이사 윤 혁 기
2. 이
3. 고
피고 2, 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의 2 서울방송 내
4. 김
서울
5. 조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이종걸, 이광수, 정현교
변론종결 : 1999. 6. 16.
주문 : 1. 피고 주식회사 서울방송, 이 , 고 , 조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4. 28.부터 1999. 7. 7.까지는 연 5%, 1999.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김 가 1997. 11. 9. 서울 송파구
아파트 1동 1401호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 주식회사 서울방송은 1998. 4. 28.자 뉴스추적 프로그램에 방송된 원고에 관한 보도를 언급하는 일체의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에게, 피고 김 는 146,810,000원, 피고 조 은 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셈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

여 원고에게 150,19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4.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의 사회면 광고란에 별지 '명예훼손 사실광고' 기재와 같은 광고문을 제목은 45급 고딕체 활자로, 본문 내용은 20급 명조체 활자로 각 1회 기재하라는 판결.

이유 : 1. 매매 계약의 체결 및 피고 주식회사 서울방송의 보도

가. 원고와 피고 김 는 1997. 11. 9. 서울 송파구 1동 1401호(이하 위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매매 대금 : 405,000,000원

② 대금 지급일 :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30,000,000원은 1997. 12. 20., 잔금 205,000,000원은 1998. 2. 28.

③ 특약 사항 :

· 등기상의 담보 설정 내용은 매수인이 승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할 시만 승계받는다.

· 잔금은 매수인이 전세 보증금으로 대체 지급한다.

· 매수인 명의로 융자(은행) 신청시 매도인은 은행 규정에 따른다.

나. 피고 김 는 원고에게 계약 당일에 계약금 70,000,000원을, 1998. 12. 20. 중도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피고 김 는 잔금 지급일 2일 전에 위 매매 계약을 중개한 피고 조 을 통하여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김 에게서 지급받을 매매 대금으로 새로 구입할 주택의 대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삼풍아파트 1채를 8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서울방송(이하 피고 방송이라고 한다.)은 방송 사업 및 문화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회사이고, 피고 고 , 이 는 피고 방송의 기자이다.

마. 피고 방송과 고 , 이 (이하 피고 방송 등이라고 한다.)는 1997년 말 외환 위기로 국내 경제 전반이 침체 상태에 빠지고 부동산의 매매 가격과 전세 보증금 폭락으로 매매 및 전세 계약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빈발하여 사회 문제로 되자 이에 관한 적당한 사례들을 찾아 보도하기로 하였고, 마침 피고 김 에게서 위 매매 계약과 관련된 제보가 들어오자 위 매매 계약이 이에 적합한 사례라고 판단하고, 피고 고 , 이 가 피고 김 와 피고 조 을 상대로 위 매매 계약 성립과 이행 과정을 취재한 후, 피고 방송의 1998. 4. 28.자 "뉴스 추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별지 보도내용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바. 피고 조 은 위 매매 계약 이행 문제로 원고와 전화를 하던 중 별지 보도내용 중 "손변호사와 부동산중개업자와의 전화통화" 부분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통화 내용을 원고 몰래 녹음한 뒤, 피고 방송 등에게 그 녹음 테이프를 넘겨주었고, 피고 방송 등은 위 "뉴스 추적" 프로그램 시간에 위 녹음 테이프 내용을 음성 변조 처리 없이 그대로 재생하여 방송하였다.

(증거) 갑 3, 4, 5, 6, 7, 10, 21-1, 2, 22-1, 2의 각 기재, 증인 백 , 장 의 증언, 변

론의 전취지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⑴ 원고의 주장
㈎ 별지 보도내용 기재 내용 중 다음 부분은 사실과는 다른 허위 보도이다.
① “집을 전세내서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기로 주인과 합의를 보았다.”는 부분 : 피고 김 가 위 건물을 전세 놓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그 취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잔금 지급일까지는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지, 위 건물의 전세 보증금으로만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②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불하고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 “하는 수 없이 그 집을 전세 내어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기로 주인과 합의” 부분 : 피고 김 가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며, 위 매매 계약 당시에 잔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위 건물을 전세 놓는 것을 포함하여 전적으로 피고 김 가 알아서 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③ “손변호사는 삼풍아파트 66평짜리를 8억 3천만원에 구입해 두 달 전에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부분 : 원고가 잔금 지급일 두 달 전에 미리 이사를 간 것처럼 이해되나, 원고는 피고 김 의 잔금 지급 약속을 받고 잔금 지급일 이틀 전에 이사를 하였다.
④ “저희들은 26일인가 25일인가 통보를 했어요.” 부분 : 원고는 피고 김 에게서 잔금 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⑤ “그러면서 손변호사는 집을 산 김씨가 잔금을 제 날짜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해약을 해야겠으며, 김씨에게 팔았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새로 산 삼풍아파트를 다시 팔아야겠는데 가격이 그 사이 1억 3천만원이 하락했으니까 그 가격 하락분과 잔금에 이자까지 합쳐서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분 : 원고로서는 피고 김 에게서 잔금을 받아야 원고가 구입한 삼풍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피고 김 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삼풍아파트 매매 계약을 해제당하게 되고, 그러면 위 삼풍아파트 매도인은 원고에게 아파트 가격 하락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것이며, 그 손해는 결국 피고 김 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인데, 이 보도 부분은 전후 부분을 생략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⑥ “자기네 집값하고 저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가진 자의 횡포지. 왜 잔금을 치르지 않았으면 그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미리 이사 가놓고 왜 저한테 집값 내려간 거를 이 집을 팔려고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부분 : 원고가 이사간 것과 위 매매 계약 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와는 전혀 별개인데 마치 원고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손해가 확대되었고, 그 확대된 손해를 피고 김 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취지로 오해될 수 있다.
⑦ 원고와 피고 조 사이의 통화 내용 부분 : 통화 내용 전체를 청취하여 보면 쌍방이 IMF 사태의 피해자인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쌍방이 노력하고, 위 건물을 원고와 피고 김 모두 매도하여 보아 나은 가격으로 처분하자는 취지인데, 전후를 생략하고 계약 위반시 실손해배상 원칙을 설명한 부분만 재생하여 방송함으로써 대화 전체의

취지를 왜곡하였다.
㈏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허위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 먼저 피고들의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② 부분의 전체 취지는 피고 김 가 위 건물의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건물에 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없어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김 가 잔금 지급 방법 중 하나로 위와 같은 특약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김 가 위 매매 계약 체결시 특약 사항 중 하나로, 잔금은 위 건물의 전세 보증금으로 대체 지급하기로 하기로 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③ 부분은 문맥상 위 보도 당시를 기준으로 두 달 전에 이사를 갔다는 것으로 이해되며, ④ 부분은 피고 김 가 잔금 지급일 2일 전에 피고 조 을 통하여 원고에게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허위라고 할 수 없다.
⑤, ⑥, ⑦ 부분은 전체로 보면, ‘원고가 위 삼풍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결국 피고 김 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야말로 이 사건 보도의 핵심 내용인 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른바 ‘특별 손해’로서 피고 김 가 그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어야 배상 책임을 지는데도, 변호사로서 법률 전문가인 원고가 이러한 법리를 설명하지 아니한 채 위 피고에게 위 ‘특별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보도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법률 문외한인 피고들이 원고의 이러한 요구를 이해할 수 없었음은 어쩌면 당연한 바이고, 이 부분은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을 잘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를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일 뿐 이를 허위라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자초한 것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보도 내용은 다소 과장된 표현(”어처구니없는 일”, “착취”, “횡포”, “터무니없는 요구”, “허가 낸 도둑”, “칼만 안 든 강도”)이 있을 뿐 전체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허위 보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아가 위 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살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를 하게 된 경위나 목적은 1997년 말 외환 위기로 국내 경제 전반이 침체 상태에 빠지고 부동산의 매매 가격과 전세 보증금 폭락으로 매매 및 전세 계약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빈발하여 사회 문제(이른바 “전세 대란”)로 되자 이에 관한 적당한 사례들을 찾아 보도하고, 그에 관한 타당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려는 것이었으므로, 위 보도는 단순히 원고와 피고 김 사이의 매매 계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로 된 “전세 대란”에 관한 것이고, 따라서 위 보도는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나.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보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비방 및 보도 금지 청구와 광고문 게재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중,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김　　가 1997. 11. 9. 위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서울방송은 1998. 4. 28.자 뉴스추적 프로그램에 방송된 원고에 관한 보도를 언급하는 일체의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구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 다소 과장된 표현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들이 위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다시 원고를 비방하거나, 그와 관련된 보도를 할 위험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의 사회면 광고란에 별지 명예훼손 사실광고 기재와 같은 광고문을 제목은 45급 고딕체 활자로, 본문 내용은 20급 명조체 활자로 각 1회 기재하라는 청구 부분은,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유 없다.
4. 비밀 녹음과 녹음 테이프 재생 방송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가. 피고 방송 등과 피고 조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조　　이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와 전화로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그 녹음테이프를 피고 방송 등에게 넘겨주어, 피고 방송 등이 위 프로그램에서 위 녹음 테이프를 음성 변조 처리 없이 재생하여 방송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조　　과 피고 방송 등은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권인 음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조　　이 원고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한 점, 위 녹음 테이프가 음성 변조 처리 없이 그대로 재생되어 방송된 점, 위 프로그램의 시간대, 시청률, 방송 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김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김　　도 위 비밀 녹음에 가담하였으므로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김　　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피고 김　　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김　　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고, 그 후 1998. 7. 23. 위 건물을 당시 시세인 277,500,000원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건물의 원래의 매매 대금인 405,000,000원과 재 매매대금 277,500,000원과의 차액인 127,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또 피고 김　　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하여 그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김　　는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는 모두 특별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 김　　에게 그

배상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 김　　가 잔금 지급 채무를 불이행할 당시 원고가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피고 조　　에 대한 중개 수수료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매매 계약 당일인 1997. 11. 9. 피고 조　　에게 중개 수수료 3,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조　　은 피고 김　　와 통정하여 잔금 지급을 지연시켰고, 또 위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조　　에게 중개 수수료로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조　　이 피고 김　　와 통정하여 잔금 지급을 지연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된 이상 그 후 피고 김　　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　　에게 중개 수수료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 방송 등과 피고 조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음성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4.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9.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1999.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로 셈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7. 7.
재판장 판사 이성룡
판사 함석천
판사 김선일

2심 판결문

사건 : 99나43440 손해배상등
원고, 항소인 : 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람
담당변호사 전민기, 전경희, 원창연
피고, 피항소인 : 1. 주식회사 서울방송 인사1팀 차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의 2
대표이사 송 도 균
2. 이
3. 고
피고 2, 3의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의 2
(주)서울방송 내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최혜리
변론종결 : 2000. 2. 24.
제1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9. 7. 7. 선고 98가합51935 판결
주문 :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와 소외 김 가 1997. 11. 9. 서울 송파구 아파트 1동 140호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 주식회사 서울방송은 1998. 4. 28.자 '뉴스추적' 프로그램에 방송된 원고에 관한 보도를 언급하는 일체의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50,19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4. 2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각자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의 사회면 광고란에 별지 '명예훼손 사실광고' 기재와 같은 광고문을 제목은 45급 고딕체 활자로, 본문 내용은 20급 명조체 활자로 각 1회 게재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비방 및 보도 금지 청구와 광고문 게재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고, 금원청구 부분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45,19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4. 2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 7, 10, 12, 35호증,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백 , 장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와 소외 김 (제1심 공동피고, 이하 소외 김 라 한다)는 1997. 11. 9. 서울 송파구 1동 1401호(이하 위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매매 대금 : 405,000,000원
② 대금 지급일 :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30,000,000원은 1997. 12. 20., 잔금 205,000,000원은 1998. 2. 28.
③ 특약 사항 :
· 등기상의 담보설정 내용은 매수인이 승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할 시만 승계 받는다.
· 잔금은 매수인이 전세보증금으로 대체 지급한다.
· 매수인 명의로 융자(은행) 신청시 매도인은 은행 규정에 따른다.
(2) 소외 김 는 원고에게 계약 당일에 계약금 70,000,000원을, 1998. 12. 20. 중도금 1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일 2일 전에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소외

원(제1심 공동피고, 이하 소외 조 이라 한다)을 통하여 원고측에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결국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소외 김 에게서 지급받을 금원으로 대금을 충당할 계획하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삼풍아파트 금 8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서울방송(이하 피고 방송이라고 한다)의 보도
(1) 피고 방송은 방송사업 및 문화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회사이고, 피고 고 이 는 피고 방송의 기자이다.
(2) 피고들은 1997년 말 외환위기로 국내경제 전반이 침체상태에 빠지고 부동산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 폭락으로 매매 및 전세계약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빈발하여 사회문제로 되자 이에 관한 적당한 사례들을 찾아 보도하기로 하였고, 마침 소외 김 에게서 위 매매계약과 관련된 제보가 들어오자 위 매매계약이 이에 적합한 사례라고 판단하고, 피고 고 , 이 가 소외 김 , 조 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 성립과 이행과정을 취재한 후, 피고 방송의 1998. 4. 28.자 '뉴스 추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별지 보도내용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3) 위 보도 중 원고가 소외 김 에게 보낸 통고서를 보여주는 화면이 방영되었는데, 위 통고서는 원고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에 서신양식에 작성되어 있었고, 위 화면에는 서신양식에 인쇄된 법무법인 표시 중 일부인 '法務' 부분이 변조처리 되지 않은 채 방영되었다.
(4) 소외 조 은 위 매매계약 이행 문제로 원고와 전화를 하던 중 별지 보도내용 중 "손변호사와 부동산중개업자와의 전화통화" 부부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통화내용을 원고 몰래 녹음한 뒤 피고들에게 그 녹음테이프를 넘겨주었고, 피고들은 위 '뉴스추적' 프로그램 사건에 위 녹음테이프 내용을 음성변조 처리 없이 그대로 재생하여 방송하였다.
2. 원고의 특정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의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채 원고를 단지 '손모 변호사' 또는 '손변호사'라고만 지칭하고 있으나, 갑 제13호증,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8년경 서울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손씨 성을 가진 변호사는 7명이며, 그 중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는 원고를 포함하여 2명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가 보낸 통고서를 방송하면서 그 용지 중 '法務' 부분이 비추어져 원고가 법무법인에 근무한다는 사실이 암시된 점, 원고 몰래 녹음된 녹음테이프 내용이 음성변조 처리 없이 그대로 재생되어 방송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송을 본 사람들 중 일정 범위의 사람들은 위와 같은 표현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 별지 보도내용 기재 내용 중 다음 부분은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이다.
① "집을 전세 내서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기로 주인과 합의를 보았다."는 부분 : 소외 김 가 위 건물을 전세 놓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그 취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잔금 지급일까지는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지, 위 건물의 전세보증금으로만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②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불하고 잔금을 갚지 못한 상태”, “하는 수 없이 그 집을 전세 내어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기로 주인과 합의” 부분 : 소외 김 가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며, 위 매매계약 당시에 잔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위 건물을 전세 놓는 것을 포함하여 전적으로 소외 김 가 알아서 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③ “손변호사는 삼풍아파트 66평짜리를 8억3천만원에 구입해 두달 전에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부분 : 원고가 잔금지급일 두 달 전에 미리 이사를 간 것처럼 이해되나, 원고는 소외 김 의 잔금지급 약속을 받고 잔금지급일 이틀 전에 이사를 하였다.
④ “저희들은 26일인가 25일경인가 통보를 했어요.” 부분 : 원고는 소외 김 에게서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⑤ “그러면서 손변호사는 집을 산 김씨가 잔금을 제 날짜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해약을 해야겠으며, 김씨에게 팔았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새로 산 삼풍아파트를 다시 팔아야겠는데 가격이 그 사이 1억3천만원이 하락했으니까 그 가격 하락분과 잔금에 이자까지 합쳐서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분 : 원고로서는 소외 김 에게서 잔금을 받아야 원고가 구입한 삼풍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소외 김 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삼풍아파트 매매계약을 해제당하게 되고, 그러면 위 삼풍아파트 매도인은 원고에게 아파트가격 하락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것이며, 그 손해는 결국 소외 김 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인데, 이 보도 부분은 전후 부분을 생략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⑥ “자기네 집값하고 저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가진 자의 횡포지. 왜 잔금을 치르지 않았으면 그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미리 이사가 놓고 왜 저한테 집값 내려간 거를 이 집을 팔려고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부분 : 원고가 이사간 것과 위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와는 전혀 별개인데 마치 원고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손해가 확대되었고, 그 확대된 손해를 소외 김 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취지로 오해될 수 있다.
⑦ 원고와 소외 조 사이의 통화내용 부분 : 통화내용 전체를 청취하여 보면 쌍방이 IMF 사태의 피해자인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쌍방이 노력하고, 위 건물을 원고와 소외 김 모두 매도하여 보아 나은 가격으로 처분하자는 취지인데, 전후를 생략하고 계약위반시 실손해배상 원칙을 설명한 부분만 재생하여 방송함으로써 대화 전체의 취지를 왜곡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허위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들의 위와 같은 보도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②부분의 전체 취지는 소외 김 가 위 건물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건물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없어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소외 김　　가 잔금 지급방법 중 하나로 위와 같은 특약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김　　가 위 매매계약 체결시 특약사항 중 하나로, 잔금은 위 건물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체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③ 부분은 문맥상 위 보도 당시를 기준으로 두 달 전에 이사를 갔다는 것으로 이해되며, ④ 부분은 소외 김　　가 잔금지급일 2일 전에 소외 조　　을 통하여 원고에게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허위라고 할 수 없다.
⑤, ⑥, ⑦ 부분은 전체로 보면, '원고가 위 삼풍아파트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결국 소외 김　　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이다. 이 부분이 이 사건 보도의 핵심내용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손해는 이른바, '특별손해'로서 소외 김　　가 그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어야 배상책임을 지는데도, 변호사로서 법률전문가인 원고는 이러한 법리를 설명하지 아니한 채 소외 김　　에게 위 '특별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였고, 이 때문에 원고와 소외 김　　사이에 분쟁이 생기게 되었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에 이르게 된 것이다. 법률문외한인 피고들이 원고의 이러한 요구를 이해할 수 없었음은 어쩌면 당연한 바이고, 이 부분은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을 잘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를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일 뿐 이를 허위라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자초한 것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보도내용은 다소 과장된 표현("어처구니없는 일", "착취", "횡포", "터무니없는 요구", "허가 낸 도둑", "칼만 안 든 강도")이 있을 뿐 전체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허위보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위 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살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를 하게 된 경위나 목적은 1997년 말 외환위기로 국내 경제 전반이 침체상태에 빠지고 부동산의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 폭락으로 매매 및 전세계약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빈발하여 사회문제(이른바 "전세대란")로 되자 이에 관한 적당한 사례들을 찾아 보도하고, 그에 관한 타당한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려는 것이었으므로, 위 보도는 단순히 원고와 소외 김　　사이의 매매계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된 "전세대란"에 관한 것이고, 따라서 위 보도는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나.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보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사적인 경제활동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에 원고의 인격적 동일성, 주소지, 재산관계의 변동 및 분쟁의 발

생 등 원고의 사적인 사항들이 포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일응 원고의 사생활의 권리 또는 인격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고,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참조)라고 할 것인 바,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는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시고,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침해된 원고의 사생활의 권리 또는 인격권은 위 보도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보도가 원고의 사적인 사항을 취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사생활의 권리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도로 원고의 사생활의 권리 또는 인격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5. 비방 및 보도 금지 청구와 광고문 게재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중, 피고들은 원고와 소외 김 가 1997. 11. 9. 위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와 피고 방송은 1998. 4. 28.자 '뉴스추적' 프로그램에 방송된 원고에 관한 보도를 언급하는 일체의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구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다소 과장된 표현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들이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다시 원고를 비방하거나, 그와 관련된 보도를 할 위험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유없다.
나. 피고들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의 사회면 광고란에 별지 명예훼손 사실광고 기재와 같은 광고문을 제목은 45급 고딕체 활자로, 본문 내용은 20급 명조체 활자로 각 1회 게재하라는 청구 부분은,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유없다.
6. 비밀녹음과 녹음테이프 재생방송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소외 조 이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와 전화로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그 녹음테이프를 피고들에게 넘겨주어, 피고들이 위 프로그램에서 위 녹음테이프를 음성변조 처리없이 재생하여 방송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권인 음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조 이 원고의 승낙없이 무단으로 통화내용을 녹음한 점, 피고들이 위 통화내용의 방송여부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동의를 얻지 아니한 점, 위 녹음테이프가 음성변조 처리없이 그대로 재생되어

방송된 점, 위 프로그램의 시간대, 시청률, 방송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음성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4.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해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1999. 7.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3. 9.

재판장 판사 채 영 수

판사 박 상 훈

판사 한 양 석 □

Ⅳ. 헌법재판소결정사례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한 선거법의 규정은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제한이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와 알 권리 및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9. 1. 28.자 결정 (98헌바64)

사실개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 재판관)는 1999년 1월 28일 한겨레신문사의 철 기자가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 등의 규정이 국민의 언론·표현의 자유, 알 권리 및 선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밴드왜곤 효과 및 열세자 효과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때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반박·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므로 선거일을 앞두고 어느 기간동안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공표금지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서의 여론조사에 관한 여건이나 기타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 등의 공표를 금지한 것은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제한이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와 알 권리 및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재판관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외국의 언론매체와 인터넷 등에는 대응하지 못하므로 실질적인 효력면에서 의문이 있고,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는 선거기간에 유권자들의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와 그 지지도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 등을 헤아려보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표현의 자유의 핵심부분을 제한함으로써 여론형성을 제대로 못하게 막고 국민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침해하게 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보였다.

결정문

사건 : 98헌바6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 김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외 5인
당해사건 : 서울지방법원 98고합25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주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 및 제256조 제1항 제1호 파목 중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보도하게 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한겨레신문기자로서, 1997. 12. 18. 실시된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기소(98고합256호)되어 소송진행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고, 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108조 제1항과 제256조 제1항 제1호 파목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언론·표현의 자유, 알권리 및 선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1998. 7. 16.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98초2729)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1998. 8. 4.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및 제256조 제1항 제1호 파목 중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보도하게 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인바, 위 법률조항의 내용과 관련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파.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하게 한 자(이하 생략)
[관련조문]
개정 전의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고, 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로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구 대통령선거법(1992. 11. 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고, 1994. 3. 16.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법률) 제65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인기투표나 모의투표를 포함한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선거기간 중에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조사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이론에 의하여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입법부가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와 그 결과의 공표를 감시할 장치나 법령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여론조사의 결과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사정을 이유로 국민의 참정권과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다. 현재 여론조사의 기법도 세련되어 가고 있고, 신뢰도도 향상되어 선거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 여론조사결과공표가 금지됨으로써 정상적인 정보의 흐름이 차단되고 비정상적인 선거운동전략에 의하여 오히려 허위정보가 유통될 수 있고 선거일에 임박할수록 그로 인한 폐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바,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로 인한 폐해와 이를 금지함으로 인한 폐해를 비교 형량하여 보면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한 선거를 그르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강자들은 여론조사결과를 알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만이 여론조사결과를 알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마. 언론, 출판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의 침해 여부는 경제적 자유와 비교하여 훨씬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언론에 대한 사전허가와 검열을 절대로 금지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사전허가와 검열보다 더 기본권을 제한하여 언론,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1995. 7. 21. 92헌마177등(병합) 대통령선거법 제65조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구 대통령선거법 제65조가 합헌임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위 결정의 요지는 「대통령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것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공표되면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도록 만드는 이른바 밴드왜곤효과(bandwagon effect)나 이와 반대로 불리한 편을 동정하여 열세에 놓여 있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이른바 열세자효과(underdog effect)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더구나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가 갖는 부정적 효과는 극대화되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때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반박하고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진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그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금지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선거문화 및 국민의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부가 재량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인데, 우리 나라에서의 여론조사에 관한 여건이나 기타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 등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합리저긴 범위 내에서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알 권리 및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나. 그런데 1994. 3. 16.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선거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 여러 갈래로 나누어졌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등을 통합한 공직선거법을 새로 제정하였다. 새로 제정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구 대통령선거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조는 공직선거법을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대통령선거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구 대통령선거법 제6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도 그대로 타당하고, 위 결정 선고 이후에 그 이유와 결론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조승형의 다음 5.와 같은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 재판관 이영모의 다음 6.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이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

나는 주문표시를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재판소가 1995. 10. 26. 선고한 92헌바45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93헌바6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94헌바7·8(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위헌소원, 95헌바2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94헌바28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의 각 사건 결정시에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6. 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

나는, 1998. 5. 28. 97헌마362 등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사건에서 다수의견과는 달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의 지지도·당선인

의 예상 등에 대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보도(이하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라 한다)를 금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후보자를 추천·등록한 정당과 선거권을 갖는 국민의 알 권리·표현의 자유 및 참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 요지는, “알 권리의 현대적 의의는 자기실현의 가치와 관련된 개인권적 성격뿐만 아니라 널리 공공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알고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민주정치과정에의 참여를 확보하는 자기통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참정권적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정치과정에 참여하려면 다양한 의견·지식·정보가 필요하므로 이것에의 접근은 제한없는 절대적인 보장이 요청된다. 정치적 진실과 왜곡된 사실이 서로 섞여 있으면 여론형성이 제대로 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나 그밖에 모든 종류의 의견·지식·정보에 가감없는 접근이 보장된 자유로운 의견교환이나 토론만이 왜곡된 사실이 더 이상 번져나가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정치적 진실을 바탕으로 한 여론이 형성되게 하는 첩경인 것이다.

대의민주제에서의 선거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으로 결집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선거기간에 여론의 흐름을 파악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정당·후보자에 대한 자신들의 의사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여론조사 당시의 지지도를 알 수 있고 정당·후보자측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을 보완·시정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런데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내에 있는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만 규제할 수 있을 뿐 외국의 언론매체와 인터넷 등에는 대응하지 못하므로 오늘날의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걸맞지 아니한 약점을 안고 있어 실질적인 효력면에서 의문이 있다. 더욱이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필요·불가결한 조건으로 하고 있는 점, 선거는 대의민주제의 근간이고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는 선거기간에 유권자들의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와 그 지지도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 등을 헤아려보면,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금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표현의 자유의 핵심부분을 제한함으로써 여론형성을 제대로 못하게 막고 국민의 올바른 참정권행사를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는 수긍이 된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본 것처럼 실질적인 효력 면에서 의문이 있고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전면적인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적절성·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함에 있다.

나는, 위와 같은 반대의견을 밝힌 이후에 이를 달리 보아야 할 법률의 개정이나 사정변경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알권리·표현의 자유 및 참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에 변함이 없다. 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1호 파목 중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보도하게 한 자” 부분 역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1999. 1. 28.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주심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

이 사건보도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므로
피고소인들을 무혐의 불기소처분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1999. 6. 24.자 결정 (97헌마265)

사실개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1999년 6월 24일 전 강원도의회 의원인 정 씨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강원일보 발행인과 편집국장, 기자들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이 위법하다며 낸 불기소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간과 싸우는 신문보도에 오류를 수반하는 표현은, 사상과 의견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러한 표현도 자유토론과 진실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함께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속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신문의 속성상 허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거나,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모두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비록 강원일보사가 고소인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것이 인정되나, 고소인이 김일성 애도서신을 북한측에 전달하였고, 경찰·검찰에서 내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보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소인들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혐의 불기소처분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강원일보가 1995년 4월에서 9월에 걸쳐 당시 강원도의원이었던 청구인이 김일성 애도서신을 보냈고 이와 관련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위 보도가 비방 목적에 의한 허위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피고소인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 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청구인은 강원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인에게 2천만원을 손해

배상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결정문

사건 : 97헌마265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 정
대리인 변호사 고 광 록
피청구인 :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1388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제3대 강원도의회 의원이었던 청구인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동료 도의원인 청구외 정 , 김 (이하 "청구외 인"이라 한다)과 남북 강원도 교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사장으로 활동하면서 1994. 11. 17. 통일원으로부터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받았다. 1995. 3. 20. 중국 북경에서 북한대사관 직원을 만나 남북 강원도 교류문제를 논의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인의 명의로 된 김정일에게 보내는 별지 제1과 같은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고 한다)를 전달하였다. 이 사건 편지는 강원도 의회와 북강원 인민위원회간의 자매결연, 의원세미나 개최, 특산물 교환, 문화체육행사와 학생 수학여행단 교류, 남북 청소년 야영대회 등 남북 강원도 교류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 편지 앞머리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귀하. 안녕하셨습니까.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 말씀드립니다"라는 인사말과 중간 부분에는 청구인이 1994. 11.에 김정일로부터 서한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청구인이 역대 군사정권에 저항한 반독재 투쟁경력을 소개하고 끝에는 1995. 4. 평양에서 개최되는 "국제체육문화축전"에서 교류방안에 관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통일원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 편지의 내용과 전달 경위를 조사하게 되었다.
강원일보는 1995. 4. 9.자 신문에서 『북 접촉 도의원 3명 내사』라는 제목과 "검·경 김정일에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라는 부제목으로 된 기사를 게재한 이래 같은 해 9. 6.까지 별지 제2와 같이 모두 17차례에 걸쳐 '김일성 애도 편지'라는 표현을 제목 또는 본문에 사용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인이 김정일에게 이 사건 편지를 보낸 사실과 그 내용, 이에 대한 통일원의 조치, 경찰 및 검찰의 수사상황, 이북5도민회의 반응 등에 관한 기사와 독자투고를 게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강원일보의 보도가 비방 목적에 의한 허위 내용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1996. 11. 22. 춘천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조 (강원일보사 발행인 겸 편집인), 이 (강원일보사 편집국장), 이 (강원일보사 사회2부 기자), 최 (강원일보사 사회부 기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각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은 1997. 2. 26.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

1997. 8. 21.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강원일보를 상대로 신청한 정정보도 심판사건은 일부인용 판결이 있었고(춘천지방법원 1996. 10. 10. 선고, 95카기299 판결), 강원일보와 피고소인 이 를 공동피고로 제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사건에서도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7. 11. 6. 선고, 96가합2272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4. 23. 선고, 97나57360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등은 공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인이 김정일에게 남북교류 성사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낸 행위에 대하여 검찰·경찰이 수사 중임을 기화로 제4대 강원도의회 의원선거(1995. 6. 27.) 입후보 예정자였던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가. 이 사건 편지에 교류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형식상 상주(喪主)인 김정일에게 의례적으로 완곡하게 "위로"라는 표현을 단 한차례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5. 4. 9.자 강원일보에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라는 부제를 붙여 기사화한 이래 같은 해 9. 6.자 보도에 이르기까지 17차례에 걸쳐 같은 표현을 반복·사용함으로써 청구인이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편지를 작성 전달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나. 강원도지방경찰청이 청구인의 서신 전달 행위에 대하여 내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1995. 4. 9.자 강원일보에 '청구인의 서신 전달 행위에 대하여 검찰과 경찰이 도의원 3명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내사 중이다'라는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다. 통일원이 아무런 경고조치를 취한 일이 없는 데도, 1995. 4. 11.자 신문에 '통일원에서 관계 도의원들에 대하여 경고조치 하기로 결정하고 금명간 경고 공문을 보내기로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라. 강원도지방경찰청이 1995. 4. 24. 청구인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였음에도 같은 달 28.자 신문에 '김일성 애도 도의원 3명 보강수사 계속'이란 제목 아래 '강원도지방경찰청이 같은 달 27. 도의원 3명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계속 조사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마. 청구인이 1995. 9. 5. 검찰 조사시 편지에 반정부 투쟁을 담은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달 6.자 신문에 '검찰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위 서신에 반정부 투쟁을 담은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는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피청구인은 허위 기사가 보도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이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으나, 17차례 중 16차례의 기사는 1995. 4. 9.부터 같은 해 6. 11.에 보도된 것으로, 제4대 강원도의회의원 선거일이 같은 해 6. 27.인 점, 강릉시 주문진읍은 실향민들이 많고 반공의식이 강한 지역정서상 김정일에게 보낸 김일성 사망 애도 서신 관련 보도는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점, 언론사에 근무하는 피고소인들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집중 보도한 것은 비방 목적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편지는 김일성 사

망을 애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교류사업에 협력하여 달라는 것이었고, 의례적으로 '위로'라는 표현을 한 마디 사용하였을 뿐인데도 '애도'라고 기사화한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도외시한 채 지엽말단의 한 표현을 문제삼아 서신 내용이 마치 김일성 사망 애도 서신인 양 보도한 것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
나. 피청구인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만을 검토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으나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잘못이 있다.
4. 판단
가. 언론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이 사건은 공적(公的) 인물(도의회 의원)의 공적인 활동과 관련된 사실을 보도한 신문기사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 인격권(헌법 제10조)으로서의 개인의 명예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반되는 두 권리를 조정하는 한계 설정을 하는 것이 쟁점으로 된 사건이다.
(1) 헌법은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 … 를 가진다(제1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제4항)"고 하고,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는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그 부리를 두고 있으므로 두 권리의 우열은 쉽사리 단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자기의 사상과 의견 표현에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를 함부로 침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자기모순에서 헤어나지 못하므로,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이하 '언론의 자유'라 한다)는 보장하되 명예 보호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개인이 언론 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는 개인적 가치인 자기실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기본원리로 공생·공존관계를 유지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가치인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개인의 언론 활동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라는 개인 대 개인 간의 사적(私的) 관계에서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하나, 당해 표현이 공공적·사회적·객관적인 의미를 가진 정보에 해당되는 것은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알 권리)는 개인의 인격형성과 자기실현은 물론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공적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이 듣고, 읽고, 보는 이른바 알 권리는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이 보도를 통한 정보는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된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하는지를 감시하고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하며, 소수의견을 외면하지 않는 정치적 언론이 숨쉬는 열린 공간에서 여론을 수렴하여 그것을 다수의사로 결집·형성하는 과정을 갖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만들고 가꾸는 민주제의 참된 모습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다면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의 확보와 언론매체에 의한 정보의 전달은 민주제의 필수불가결한 본질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2) 개인의 명예 보호를 구체화한 일반법으로는 민법과 형법을 들 수 있다. 민법은 제750조, 제751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규정을 두고, 형법은 제307조 내지 제309조에서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에 형사제재를 과하는 한편, 제310조는 위법성의 조각으로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둔 것이 그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명예)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명예훼손 관련법은,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제한·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여졌다.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고, 명예 보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하는 기초가 되는 권리이므로, 이 두 권리를 비교형량하여 어느 쪽이 우위에 서는지를 가리는 것은 헌법적인 평가 문제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매체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위에서 본 실정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라는 상반되는 헌법상의 두 권리의 조정 과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私人) 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自招)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알 권리)로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방식에 따라 상반되는 두 권리를 유형적으로 형량한 비례관계를 따져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한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인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공적 인물이 그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하는 등 개별사례에서의 이익형량에 따라 그 결론도 달라지게 된다. 이곳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인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형사제재의 면책요건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만 설시하기로 한다.

(3)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라는 두 가치를 유형적으로 형량하는 조정을 꾀하고 있다.

그런데 진실성의 증명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위법성의 조각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형사제재의 범위는 넓어지고 언론의 자유는 위축된다. 가치있는 공적인 사안이나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알 권리)에 대하여 자유로운 비판이나 토론을 하지 못하게 형사벌로 규율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질식하고, 비교형량의 비중은 명예보호쪽에 너무 치우치게 된다. 이와 같은 언론 자유의 위축이나 질식은 바로 다수결 원리의 형해화로 이어지고 민주주

의 또한 이름뿐인 존재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형사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헌법적인 요청을 고려하여 첫째, 그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입증이 없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오인(誤認)하고 행위를 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라는 요건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그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의 배려라는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실(알 권리)에는 공공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이로 인하여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은 쉽게 수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6. 22. 92도3160, 공 1993하, 2188; 1994. 8. 26. 94도237, 공 1994하, 2572. 각 참조). 셋째, 명예훼손적 표현에서의 “비방할 목적”(형법 제309조)은 그 폭을 좁히는 제한된 해석이 필요하다. 법관은 엄격한 증거로써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자의 비방 목적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상의 법리를 공적 인물의 공적인 활동과 관련된 신문보도에 비추어 생각건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알 권리)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사안의 게재(揭載)를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신문의 속성상 허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거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모두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94도3191, 공 1996하, 2928 참조). 시간과 싸우는 신문보도에 오류(誤謬)를 수반하는 표현은, 사상과 의견에 대한 아무런 제한없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러한 표현도 자유토론과 진실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함께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진위(眞僞)를 알아보지 않고 게재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합헌성
도의회 의원인 청구인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북한의 김정일에게 보낸 이 사건 편지에 대해서 통일원과 경찰·검찰이 그 경위와 내용을 조사한 사실을 강원일보가 보도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고소인인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고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결정의 당부(當否)를 검토하기로 한다.
(1) 고소사실 “가”항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건대, 첫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귀하. 안녕하셨습니까.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 말씀드립니다”로 시작되는 이 사건 편지의 인사말에는 김일성의 죽음을 적시하고 그로 인한 김정일의 슬픔에 대해 위로와 격려를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 사용된 “위로”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이 풀어지도록) 좋은 말과 행동으로 따뜻하게 대하다] 와 격려(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아 주는 것)는 김일성의 사망과 관련된 것이고, 상주(喪主)의 슬픔을 위로하는 이른바 “조문(弔問)” [(남의 죽음에 대하

여) 슬퍼하는 뜻을 나타내며 상주를 위문하는 것] 에 해당된다. 이 “조문”은 “애도(哀悼)”(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석해 하는 것, 이상,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1998)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다. 비록 조문과 애도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일상적인 어법에서 그 차이가 뚜렷한 것은 아니다.
둘째, 편지 내용의 전체 취지는 교류를 촉구하는 내용임이 분명하나, 애도를 나타내는 인사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강원일보가 1995. 4. 9.자 처음 보도를 하기 전인 같은 해 3. 29. 통일원이 이 인사말을 비롯한 그 밖의 내용들을 문제삼아 청구인 일행으로부터 이 사건 편지의 작성 전달과정에 대한 경위서를 받는 한편, 경찰과 검찰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대외비로 내사한 사실이 있는 점(수사기록 2-7, 11, 2-19, 21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편지는 애도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공적 토론의 쟁점이었던 애도의 뜻이 담긴 인사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신문사가 사건의 성격을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라고 평가·규정한 것이 비합리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강원일보의 “애도 편지”라는 표현이 편지의 인사말 부분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실질적으로 볼 때에 그 뜻을 임의로 변경한 것도 아니다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1995. 4. 13.자)도 “김일성 사망의 애도와 김정일에 대한 위로의 인사말을 사용하였다”고 내용을 정리한 다음, “의례적 애도와 위로”라고 평가하고 있다(수사기록 139면)] .
(나) 별지 제2의 강원일보의 일련의 보도내용을 모두 살피면, 객관적으로 볼 때에, 강원일보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편지의 주된 내용은 남북교류 성사의 촉구이고 김일성 사망 애도는 편지의 인사말이라는 취지를 되풀이하였으므로 일반 독자들 또한 그와 같은 취지대로 인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더욱이 강원도민일보는 4. 21.자 기사에서 『김일성 애도한 것 아니다』라는 제목에 “김 의원 대북 서한 협조요청 차원 의례적 표현에 불과, 남북교류추진위, 도의회서 공식해명”이라는 부제목으로 해명기사를 쓰고(수사기록 30면), 다른 지면에서는 “인사치레가 와전된 것”이라는 제목과 “’ 슬퍼할 이유없어’ 강력주장, 실정법 위반 사실무근 강조” “통일원 사과가 증거일부 매도비판”이라는 부제목하에 김 도의원의 공식발언내용을 보도하여(수사기록 31면), 일반 독자들로서는 두 신문보도를 통하여 사건의 전말을 올바르게 알 수 있었다. 강원도민일보가 “애도 편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청구인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실었다는 것이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의 결론을 뒤집는 증거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고소사실 “나”항에 대하여
피고소인 이 는, 1995. 4. 7.자 춘천지방검찰청에서 법무부와 대검에 보낸 정보보고 문건을 보면 그 이전에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청구인의 남북교류 추진 배경, 성향 등에 대하여 대외비 공작 내사 중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튿날 춘천지방검찰청 공안 담당검사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내사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므로 허위가 아니라고 변소하고, 위 정보보고 기재내용(수사기록 2-7, 11면)도 이에 부합한다.
(3) 고소사실 “다”항에 대하여

통일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한 바가 없음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통일원이 회신한 문건에 의하여 확인되므로(수사기록 2-43면), 4. 12.자 기사에서 “통일원은 … 의원들에 대해 경고조치 하기로 결정하고 금명간 해당 의원들에게 경고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는 부분은 일단 위의 회신과는 그 내용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소인 이 는 그 전날인 4. 11. 통일원 교류2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그 내용을 확인한 바 있고, 같은 신문사 문 기자가 통일원에 확인하였더니 관계자를 경고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주므로 사실인 것으로 믿고 기사를 작성한 것이지 허위인 줄 알고 기사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위 문 의 진술내용(수사기록 175, 178면)도 위 변소에 부합한다.
4. 12.자 기사는 『‘김일성 애도 편지’ 관련 도의원 3명이 경찰에 자진 출두』라는 제목과 ‘찬양목적 없었다’ 진술… 통일원 ‘경고’ 결정”이라는 부제목으로 이 사건 편지를 보내게 된 경위와 중국 방문 중 북측과의 직·간접적인 접촉 활동내용 등을 조사받은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서, 통일원의 경고결정은 그 기사의 말미 부분에 있다.
통일원은 1995. 3. 29. 편지를 전달한 경위서를 받고 난 다음, 청구인과 청구외 인에게 교류취소 통고문을 작성하여 북측에 발송하도록 하였다가 정부당국이 남북교류를 방해한다는 역선전의 빌미를 줄 것을 우려하여 구두로 교류취소 통고를 하도록 종용하였고(수사기록 2-7, 11면), 4. 10. 통일원 대변인 성명에서 통해 이 사건 편지를 보낸 것은 당초의 승인사항을 명백히 벗어나는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수사기록 2-25면)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여기의 “경고”는 대북접촉 승인취소와 관련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소사실 “다”항에 대하여는 피고소인들의 명예훼손적 표현은 진실한 사실로 믿고서 한 행위이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4) 고소사실 “라”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원도지방경찰청이 4. 24.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마지막으로 내사를 종결하였는 데도 같은 달 28.자 기사에서 ‘27일 이들 의원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계속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수사기록 2-32면). 이에 대해 피고소인 이 는 청구인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경찰에 사건이 계류 중이라는 의미로 기사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경찰담당자와 춘천지검 차장검사에게 확인하였다고 하고 소환조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사내용에 “소환”이라고 쓰는데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만 보아도 허위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변소한다.
경찰청은 1995. 4. 15. 일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상황보고를 하였더니,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여(수사기록 132-137면) 같은 달 20. 통일원에 수사관을 파견조사하고, 같은 달 24. 청구인에 대해 소환조사를 마친 후 재품신을 하자 “검찰에서 직접 조사할 예정이니 내사 상태로 즉시 송치할 것”이라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같은 해 5. 3. 춘천지방검찰청으로 내사기록을 송부하였다(수사기록 2-19, 132, 145면). 위의 기사는 내사종결 여부가 쟁점이고 4. 24.은 아직 내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다. 4. 28.자 기사는 보강수사를 계속한다는 것으로 “소환”이라는 표현도 쓰지 아니하였으므로(수사기록 2-32

면) 피고소인 이　　의 변소에 수긍이 가고, 처욱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볼 증거도 없다.

(5) 고소사실 “마”항에 대하여

피고소인 최　　은 담당 검사에게 청구인을 상대로 남북접촉 승인과정, 접촉 경위와 방법, 서신에 반정부 투쟁내용을 담은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느냐고 물어본 바 그렇다고 대답하여 기사화한 것이라고 하면서 허위가 아니라고 변소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자신이 조사받은 조서에는 반정부 투쟁에 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소인의 기사는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그 부분을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청구인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 사건 편지의 주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찰과 검찰이 조사한 것은 이 사건 편지의 내용과 전달 경위로서 편지 내용 중의 일부인 반정부 투쟁에 관한 부분도 조사대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당일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조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했다고 해서 중요부분이 아닌 위 부분이 명예훼손적 표현이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더러 진실한 사실로 믿고서 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다.

(6) 비방할 목적의 유무

강원일보는 1995. 4.부터 같은 해 3. 23.까지 청구인과 청구외 인 등 도의원들의 대북접촉 활동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도해왔던 점(수사기록 65-68면), 통일원과 검찰·경찰에서 이 사건이 종결되자 같은 해 9. 29.자 기사에서 내사종결 배경에 관하여 자세하게 혐의가 없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점(수사기록 69면), 김일성 사망에 따른 조문문제는 당시 전국적인 관심사였고 청구인은 도의원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편지를 전달한 경위와 내용을 관계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보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의도에서 기사화하였다는 피고소인들의 변소에 수긍이 가고 달리 비방할 목적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7) 끝으로, 피청구인은 1995. 4. 9. 이전에 고소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내사하지 않은 점, 통일원에서 고소인에게 경고 결정을 않은 점, 1995. 9. 5. 검찰조사시 김일성 애도서신에 반정부 투쟁을 담은 경위에 대해 조사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이 김일성 애도서신을 북한측에 전달하였으며 경찰·검찰에서 내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보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소인들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우리 재판소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에 대한 평가결과와는 이유를 일부 달리하고 있으나, 결론은 옳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기한 정정보도 심판사건과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사건이 각 일부승소로 판결이 확정된 사정은, 이 사건과는 인정사실에 대한 평가와 적용법률의 차이로 인하여 결론이 다르게 된 것이다.

5. 결론

이상의 이유로 청구인의 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24.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주심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

중재신청인의 불출석에 대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출석을 강제하도록 하는
정간법 제18조 제5항은 중재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중재절차를 실질화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9. 7. 22.자 결정 (96헌바19)

사실개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1999년 7월 22일 한국전기통신공사노동조합이 중재피신청인의 경우 2회 불출석시 합의간주된 것으로 보는 반면 중재신청인의 경우 단 1회 불출석시에 중재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간법'이라 함) 제18조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동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간법 제18조 제5항의 입법목적은 중재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재재판부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중재절차를 실질화하는 데 있으므로 중재신청인의 불출석에 대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중재신청인의 출석을 강제하도록 하는 위 조항은 중재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실질화를 위하여 적합한 방법이라고 인정된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함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중재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이 허용되어 있으며, 언론중재제도가 전파력이 강한 대중매체인 정기간행물에 의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중재신청인과 피신청인을 합리적 기준 없이 차별취급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중재신청인이 불출석하여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정당한 신청기간 내에 다시 중재신청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재신청인이 불출석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피신청인에 비해 완화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청구인 한국전기통신공사노동조합은 조선일보의 1995년 5월 20일자 『한통파업땐 국가위협간주』 제하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95서울중재161)을 하였으나 중재기일에 불출석하여 철회 간주되었고, 이후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에 항소하여 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1996년 3월 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결정문

사건 : 96헌바19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 위헌소원
청구인 : 한국전기통신공사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김기중
당해사건 : 서울고등법원 95라178 정정보도
주문 :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은 1982. 1. 6.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소속 근로자 62,000여 명 중 52,000여 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조선일보는 1995. 5. 20.자 1면 왼쪽 상단부분에 『한통파업 땐 국가위협간주』라는 큰 제목 아래, “김대통령 불법분규 엄벌 경고”라는 중간 제목으로, “통신비상대책 마련 홍부총리”, “제3자개입 단호대처 박통상”이라는 작은 제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청구인은 그 조합활동이 국가를 전복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 것이 아닌데도, 조선일보가 과장·왜곡된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중재기일(1995. 7. 3. 09:30)에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중재신청은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본문에 의하여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정정보도 불이행시의 간접강제 신청(95카기3525)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청구인의 위 신청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여 그 소송(95라178)이 계속 중 재판의 전제가 된 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1996. 3. 5. 헌법재판소에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은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간법”이라 한다) 제18조 제5항(이하 “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간법 제18조 ④ 중재부의 장은 중재당사자나 이해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는 자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내용대로 정정기사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⑴ 청구인이 중재기일에 단 1회 불출석하여 중재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면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중재신청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⑵ 중재피신청인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여야 중재신청 내용대로 정정기사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는 반면 중재신청인은 단 ‘1회’의 불출석을 이유로 바로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중재신청인과 피신청인을 합리적 기준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당해법원의 제청신청기각 이유와 공보처장관 및 언론중재위원회의 의견 요지

⑴ 정간법 제18조 제1항은 피해자가 중재기일에 불출석을 반복함으로써 중재절차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언론보도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중재신청인으로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리인을 통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정간법 제18조 제1항, 제16조 제2항), 중재기일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을 면할 수 있는 점(정간법 제18조 제5항 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중재기일 1회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규정한 이 법률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⑵ 청구인은 중재절차의 적극적 당사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소극적 당사자보다 출석의무 불이행에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우리 법제도에 특유한 언론중재제도는 피해자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점, 청구인은 1회 불출석으로 중재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다시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데 반하여(정간법 제18조 제1항), 피신청인이 2회 불출석하면 중재신청 내용대로 정정기사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되고 더 이상의 구제절차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다.

다.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의 의견 요지

이 법률조항이 위헌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양보로 화해가 성립될 수도 있고, 신청인이 스스로 취하할 수도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그 밖의 내용은 위 나.의 요지와 같다.

3. 판단

가. 정정보도청구권과 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정간법은 제16조에서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해자에게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다만 위 정정보도청구권은 1995. 12. 30. 법률 제5145호 개정법률에 의하여 그 명칭이 반론보도청구권으로 변경되었다). 정정보도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그 바탕을 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보도된 사실적 내용에 대하여 반박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정한 여론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보도의 객관성을 향상시켜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을 더욱 충실하게 한다는 취지 아래 신설된 것이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5).

정간법은 정정보도청구권을 둘러싼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로서 언론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바, 제18조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이 있는 자 또는 그 상대방은 분쟁된 공표가 있은 날로부터 1월(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언론중재제도는 우리 법제에 독특한 제도로서 화해에 의한 명예로운 해결의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중재를 담당하는 중재부에 직업법관 이외에 언론계의 실정에 정통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함께 참여하게 함으로써 언론과 피해자 쌍방을 이해시키는 데 유리하고,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법원의 재판절차 이전 단계에서 절충할 기회를 갖게 되는 이점이 있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원의 재판절차상의 비용과 번잡함을 피하여 피해구제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제도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법률조항은 중재부의 장이 중재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내용대로 정정기사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라 중재절차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규정하는 취지는 중재절차의 지연을 방지하여 중재절차가 신속한 분쟁해결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재부의 장의 출석요구를 실질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재판청구권의 침해여부

⑴ 정간법은 제18조 제1항에서 분쟁된 공표가 있은 날로부터 1월(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단기간의 중재신청기간만을 허용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에서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에 따라 중재신청이 철회간주되면 중재신청인은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법원의 재판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실질적 불이익을 입게 된다(다만 피해자가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이유로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은 별론이다).

결국 이 법률조항은 재판절차의 전심절차인 중재절차를 규율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6. 11. 28. 96헌가15). 한편, 청구인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제한을 받는 기본권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이고, 표현의 자유는 재판청구권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그 실현이 제한될 뿐이므로, 여기에서는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⑵ 우리 헌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재판청구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요건 아래 법률로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목적의 정당성), 수단이 목적달성에 적합하며(방법의 적합성), 기본권침해가 필요최소한에 그치고(최소침해성), 제한되는 기본권과 그로 인하여 실현되는 공공이익 사이에 상당한 비례관계(법익의 균형성)를 갖추어야 한다(헌재 1996. 10. 4. 95헌가1등).

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중재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재재판부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중재절차를 실질화하는 데 있다. 특히 중재신청인의 태만으로 피신청인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재부의 장의 출석요구를 실질화 함으로써 중재절차가 법원의 재판을 위한 단순한 통과의례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27조 제3항에 비추어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법률조항은 중재신청인의 불출석에 대하여 불이익을 줌으로써 중재신청인의 출석을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중재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실질화를 위하여 적합한 방법이라고 인정된다.

그리고 정간법은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제18조 제5항 단서), 중재신청인은 중재절차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제18조 제1항, 제16조 제2항) 중재신청인이 중재절차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이 허용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법률조항은 최소침해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언론중재제도가 전파력이 강한 대중매체인 정기간행물에 의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재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실질화를 위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내지 정정보도청구권을 위와 같이 일부 제한하였다고 하여도, 제한되는 기본권과 그로 인하여 실현되는 공공이익 사이에 상당한 비례관계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비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평등원칙 위반여부

중재절차에 있어서 중재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면 중재신청 내용대로 정정기사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는 반면 중재신청인은 단 ‘1회’의 불출석을 이유로 바로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중재신청인과 피신청인을 합리적 기준 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차별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이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그 차별의 목적이 헌법에 합치하는 정당한 목적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차별의 기준이 목

적의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며, 차별의 정도 또한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6. 10. 4. 95헌가1등).
위에서 본 것처럼 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중의 하나가 중재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고, 이러한 중재절차의 신속성은 주로 피해자인 중재신청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절차진행의 신속성과 관련하여 중재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하여 각각 법적으로 다른 내용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리고 한편, 중재신청인이 중재기일에 불출석하여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정당한 신청기간 내에는 다시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재신청인이 불출석시에 받게 되는 불이익은 피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에 받게 되는 확정적인 불이익보다는 완화된 내용의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이와 같이 중재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중재절차에서 가지는 법적 지위 및 이들이 불출석한 경우에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법률조항이 불리한 법률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중재신청인에 대하여는 1회의 불출석을 요건으로 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2회의 불출석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조승형의 다음 5.와 같은 주문표시에 대한 별개의견과 재판관 이영모의 다음 6.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
나는 주문표시 중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재판소가 1995. 10. 26. 선고한 92헌바45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93헌바62 구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94헌바7, 8(병합)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위헌소원, 95헌바2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94헌바28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의 각 사건 결정시에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6. 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
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기본권)는 구제절차가 있어야 그 실효성이 보장된다. 기본권의 역사는 바로 공정·공평한 구제절차의 보장·강화의 역사이다. 우리 헌법도 기본권 보장의 핵심수단으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절차적 기본권 규정을 두고 있다(제27조 제1항).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재판절차를 통하여 구제받는 제도는 헌법이 추구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실현·지탱하는 필수 불가결한 수단에 속한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자유와 권리 등 다른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이러한 점을 헤아린 신중한 배려가 요청된다. 그러므로 재판의 전심인 중재절차에서 당해 조항이 이 권리의 본질을 훼손하고 재판의 이념인 공정과 공평을 해치는 결과를 빚는 것이라면, 이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기본권 제한 한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조항이 겉보기에 한쪽 당사자에게만 사소한 절차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일지라도, 이것이 곧 재판을 받을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보이면 망설임 없이 위헌선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 중재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은 정정보도신청 사건의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 있는데도 중재절차의 한쪽 당사자를 다른 당사자에 비하여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조항은 헌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신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제241조) 반하여, 중재신청인은 전심인 중재절차에서 단 한번 불출석하는 경우 신청철회간주효과로 인하여 법원에 정정보도심판 청구를 못하게 된다(정간법 제19조 제1항). 중재신청인의 1회 불출석으로 인한 정정보도신청의 철회간주효과는 정정보도의 적부(適否)에 대한 사법통제의 길을 봉쇄당하는 사실상의 패소확정을 뜻하고, 피신청인의 2회 불출석으로 인한 정정기사 게재 합의간주 또한 성질상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법률조항은 중재당사자의 불출석 회수(回數)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이것이 정당하고 합리적인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한 것인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다수의견은, 중재신청인(청구인)은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면 예외가 인정되고, 대리인 선임을 할 수 있으며, 신청철회간주효과가 생겨도 재청구를 할 수 있고, 또 절차의 신속한 진행으로 중재를 실질화하는 데 기여하므로 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중재신청인의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중재부가 결정하고, 중재부의 장의 출석요구에 변호사의 선임은 필요적 요건 사항도 아니다. 피해자의 청구기간은 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에는 14일, 그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월 이내 이고(정간법 제16조 제1항), 중재는 14일 이내에 하지 아니하면 중재불성립으로 본다(정간법 제18조 제7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철회간주효과가 생겨도 재청구가 가능하고 절차의 신속한 진행으로 중재의 실질화를 도모한다는 이유는,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 한계의 요건과 차별의 정당성 및 합리성을 요구하는 평등원칙에 대한 논증으로는 설득력이라는 측면에서 수긍이 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이해관계가 동일한 중재당사자 중 피신청인을 중재신청인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지 않으면 안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 결론적으로, 이 법률조항은 공정·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 한계의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중재당사자를 차별취급하고 있어 평등원칙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것은 중재신청인인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 제27조 제1항(재판청구권), 제11조 제1항(평등권)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생각한다.

1999. 7. 22.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주심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

Ⅴ. 기타사례

정간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관청에서는 시설 미비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1999. 2. 26.자 판결 (98구1115)
서울고등법원 1999. 10. 20.자 판결 (99누3425)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는 1999년 10월 20일 주식회사 뉴스서비스코리아가 문화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회사를 정간법상의 통신으로서 등록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8명 정도의 직원을 둔 소규모의 회사로서 그 인적·물적 조직의 규모 등에 비추어 현존하는 통신사와 같이 뉴스를 스스로 취재·보도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고, 이와 같은 인적·물적 조직은 정간법상의 ‘통신’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더러 현재까지의 회사운영실적, 원고가 등록신청서에서 밝힌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등에 비추어 해외의 유용한 정보를 국내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고, 더구나 피고로서는 정기간행물 발행자에 대한 등록 이후에도 정간법에 의한 직권등록취소 또는 등록취소심판청구제도 등을 통하여 발행자의 언론사 운영에 대하여 적절한 감독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등록신청 당시의 원고의 인적·물적 조직의 규모에 의하여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의 전파가 어렵다고 보고 원고의 등록신청 자체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정간법상 통신의 개념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정간법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물적 시설을 갖추어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무책임한 정기간행물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언론·출판의 공적 기능과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등록신청자가 정간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관청에서는 시설 미비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는 1995년 뉴스제공업, 출판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설립 이후 해외의 뉴스제공업체들과 뉴스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해외뉴스를 공급받는 한편, 국내 언론사와 뉴스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중 일부 언론사에는 온라인용 단말기를 설치하여 해외뉴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뉴스제공업을 해오던 중 1997년 11월 19일 정간법 제7조에 따라 피고(당시 공보처장관)에게 ‘NSK’라는 제호의 통신을 발행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정기간행물등록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피고는 이 신청이 정간법 제2조 제7호 및 제6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으로 등록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그 처분사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할 뿐 아니라 원고가 정간법상의 통신으로 등록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등록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바 있다.

1심 판결문

사건 : 98구1115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뉴스서비스코리아
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기중
피고 : 문화관광부장관
소송수행자 전영웅, 신동열
변론종결 : 1998. 12. 30.
주문 : 1. 피고가 1998.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 :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설립 당시의 명칭은 '주식회사 뉴스신디케이트코리아'였으나 1998. 3. 31. 그 명칭이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1997. 11. 19.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에 따라 공보처장관에게 'NSK'라는 제호의 통신을 발행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정기간행물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공보처장관은 1998. 1. 21. 원고의 위 정기간행물등록신청이 정간법 제2조 제7호 및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으로 등록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신청서를 반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공보처장관의 소관사무 중 출판, 간행물 등에 관한 사무는 정부조직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⑴ 원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사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② 원고가 정간법상의 통신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등록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내용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제시한 바 있고, ② 정간법상 통신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외국의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의 허가와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고, 외국의 통신사와의 통신계약도 체결하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발행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분야의 해외정보 및 칼럼, 사진 등을 간헐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정간법상의 '통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통신으로서의 정기간행물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등록신청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⑶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유제시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와, ② 원고의 위 정기간행물등록신청이 정간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라고 하겠다.

나.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 갑 제2, 3, 4, 5, 7, 1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8, 9, 10, 11, 15호증의 각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 17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김 , 최 의 각 증언(단 증인 최 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당원의 주식회사 에어미디어, 강원일보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문화방송, 기독교방송, AFP 한국지사, AP통신 서울지국, 주식회사 로이터(Reuters) 코리아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최 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⑴ 원고는 1995. 1. 16. 뉴스 제공업, 출판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설립 이후 해외의 뉴스 공급업체인 뉴스콤(News-Com), 뉴욕타임즈 뉴스서비스(NYT News Service & Syndicate), 파이낸셜 타임스 신디케이트(Financial Times Syndication), 러시아의 노보스티 통신사(Ria Novosti) 등과 뉴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해외뉴스를 공급받는 한편, 국내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문화일보 등의 언론사들과 사이에 뉴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중 일부 언론사에는 이미 온라인용 단말기를 설치하여 해외뉴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뉴스제공업을 영위하여 왔다.

⑵ 원고는 위와 같은 뉴스제공업에 필요한 통신설비 등을 소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주식회사 에어미디어(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1997. 11. 17. 무선데이타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이용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소정의 이용료를 지급하고, 소외 회사의 설비를 이용하여 국내 또는 해외의 뉴스를 송수신할 수 있게 되었다.

소외 회사는 국내의 기존 통신사업자들이 대주주로 참여하여 무선국 및 기지국설치를 위하여 1996. 5. 1. 설립된 회사로서 총자본금은 금 18,197,150,000원이며, 1996. 8. 16.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데이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이래 기지국 264국소, 교환설비 2식, 빌링 시스템 1식 등의 시설을 갖추고 무선단말기로 문자, 숫자 등 각종 정보를 주고받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무선데이타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이다. 소외 회사에서 취급하는 국내에서의 통신은 단말기로부터 송신된 정보를

전국의 기지국에서 수신하여 무선데이타교환기에서 처리한 다음 다시 기지국을 통하여 다른 무선단말기 또는 호스트 컴퓨터로 송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외국과의 통신의 경우에는 국내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인 주식회사 데이콤의 보라넷망(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위성지국을 통한 통신위성 또는 해저 광케이블망을 통하여 정보를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⑶ 국내외 통신사의 내외신 송수신 방법은 모르스(Morse Code) 송수신 방식에서 무선 텔레타이프 통신방식으로 발전되었다가, 송수신량 증가에 따라 유선 텔레타이프 통신방식이 도입되면서 국내 및 해외의 언론사들은 1970년대에 들어서 전화회선 또는 통신위성회선을 통한 유선 텔레타이프 통신방식으로 송수신 방식을 바꾸었다. 현재에도 전파를 이용한 무선통신방식으로 국내 및 국제간 통신이 가능하기는 하나 그 안정성과 정확성이 유선통신방법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져, 유선통신망이 닿지 않는 곳이나 선박방송의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국내의 언론사들이 해외뉴스 등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무선통신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유선통신시설 또는 위성통신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⑷ 원고는 국내에서의 해외뉴스 및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 비하여 그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보다 전문화된 해외뉴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 언론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설립된 이후 8명의 직원을 두고 위와 같은 활동을 하여 왔는데, 현재의 인적, 물적 조직의 규모 등에 비추어 뉴스를 스스로 취재하여 보도하는 활동보다는 경제, 의학, 과학, 정보통신, 컴퓨터, 패션, 출판,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의 전문화된 해외뉴스의 공급과 영상정보제공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⑸ 원고는 이와 같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통신을 발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무선데이타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1997. 11. 19. 정기간행물등록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호를 'NSK', 간별을 '매일(종일)', 종별을 '통신', 발행인과 편집인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최　　', 발행목적을 '세계화, 정보화되는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에서의 해외뉴스 및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뉴스가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 공급되고 있는 뉴스는 몇몇 세계 주요통신의 일반 스트레이트 뉴스에 편향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바, 보다 질 높고 전문화된 해외뉴스를 공급하기 위함. 단계적으로 국내뉴스를 해외시장에도 판매할 계획임', 발행내용을 '해외 일반뉴스는 물론, 특히 현재 국내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해외의 각 분야별(경제, 주식시장, 의학, 과학, 정보통신, 컴퓨터, 패션, 출판,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사회상 등)과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각 지역에 관한 보다 전문화·다양화된 뉴스와 정보, 칼럼, 사진, 그래픽 등을 국내 각 언론기관과 국가, 사회단체, 기업체에 공급하려 함', 보급방법을 '유·무선 통신', 보급지역을 '전국', 주된 보급대상을 '언론사 및 일반', 사용어를 '한국어 및 영어', 유·무가 여부를 '유가(有價)'로 각 밝혀 그와 같은 내용의 신청서에 정간법시행령 제6조 소정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⑹ 그 후 피고는 원고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단말기 보유 및 설치현황 소외 회사와의 이용계약체결사실, 제공받는 서비스의 내용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998. 1. 14. 전화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최　　에게 통신사 등록이 어려움을 알렸고, 같은 달 21. 이 사건 처분을

한 다음, 같은 달 23. 원고의 유권해석 요구에 응하여 원고의 해외뉴스제공업은 정간법상 등록대상인 통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존의 원고의 영업내용은 정간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다. 판단

⑴ 이유제시의무 위반 여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대로 처분하는 경우, 단순·반복적인 처분, 긴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문서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처분사유를 명시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중한 조사와 판단을 하여 정당한 처분을 하게 하고, 그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 나아가 이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심리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결국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이유제시의무에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위 정기간행물등록신청이 '정간법' 제2조 제7호 및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으로 등록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이유를 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간법 제2조 제7호는 '통신'이라는 용어를 정의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는 통신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요건에 관한 규정이므로, 피고가 밝힌 처분사유의 문언상 그 내용이 정간법상의 '통신'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구체적 설명의 기재가 없어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로서는 처분사유에 기재된 근거법령과 그 이유를 종합하여, 원고의 신청내용이 정간법 제2조 제7호의 '통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그 등록에 필요한 시설도 갖추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신청을 반려한다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신청내용이 '통신'에 해당되고 그 등록요건도 갖추었음을 주장하여 불복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처분사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정기간행물 등록요건 구비 여부

㈎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간법 제2조 제1호는 "정기간행물"을,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기타간행물"로 정의하고 있고, 제7호는 "통신"을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문화·사회·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발행하는 간행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 제1항 본문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등록사항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제9호는 “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시설”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통신의 발행에 있어서는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파법 제2조 제5호는 “무선국이라 함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청취를 위하여 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는 “무선설비라 함은 무선전신·무선전화·기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무선국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3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국”을 열거하고 있다.

㈏ 정간법 제7조 제1항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물적 시설을 갖추어 위와 같은 사항을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무책임한 정기간행물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언론·출판의 공적(公的) 기능과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금지된 허가제나 검열제와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실질적으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제와 같은 제한이 따르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등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등록신청자가 정간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관청에서는 시설미비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간법 제7조 제1항 제9에서의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시설”은 소유권에 기한 것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 등 기타 용역관계에 의한 법률원인에 의하여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가23 결정 참조).

㈐ 이제 이 사건에 돌아와 원고의 위 정기간행물 등록신청이 그 등록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원고가 정간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았고, 제6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정간법이 통신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위와 같은 시설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내외의 정치·경제·문화·사회·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발행하는 간행물’로서의 통신의 기능을 보장

함과 동시에 그러한 기능수행에 필수적인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지 못한 무책임한 통신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원고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무선데이타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전파법 제4조 소정의 무선국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방대한 설비를 갖추고 통신위성 또는 해저 광케이블망을 통한 무선데이타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그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원고로서는 정간법이 통신 발행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무선통신시설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비록 원고가 국내의 언론사 또는 외국과 직접 송수신할 수 있는 무선통신시설을 갖추고 이에 대한 무선국의 허가를 직접 받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무선데이타 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최근에는 전파를 이용한 직접적 무선통신방식은 그 불안정성과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국내의 언론사들이 해외뉴스 등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무선통신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유선통신시설 또는 위성통신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정간법이 정한 무선통신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통신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정간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외국의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설립 이후 해외의 뉴스공급업체와 뉴스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공급받아 이를 국내의 언론사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맺은 외국의 회사들은 통신사가 아닌 신디케이트 회사에 불과하여 원고가 정간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외국의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계약의 내용이 원고가 외국의 뉴스공급업체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해외뉴스를 공급받기로 하고 있는 것인 이상, 그 회사들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원고는 정간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통신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해외뉴스공급업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또한 피고는, 원고가 발행하고자 하는 통신의 발행내용은 사회 각 부문에 걸쳐 스스로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언론사 등에 뉴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정보와 칼럼 등만을 제공하고, 국내외 기사를 송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의 기사를 수신만 하며, 국내외의 뉴스를 종합적으로 취재, 보도, 논평하거나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분야의 해외정보 및 칼럼, 사진 등을 단건 위주로 판매하는 정보중개업에 불과하므로 정간법 제2조 제7호가 정의하고 있는 “통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간법상 통신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제2조 제7호의 해석상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의 전반에 걸친 모든 부문에 걸친 정보를 다루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과학 등과 같은 특정분야에 관한 정보만을 다루거나, 해외의

정보만을 다루는 형태의 통신사의 설립을 제한하여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등록신청서에서 위 인정사실과 같은 발행목적과 발행내용을 밝혀 통신을 발행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등록신청을 한 이상 피고로서는 이를 통신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가 8명 정도의 직원을 둔 소규모의 회사로서 그 인적·물적 조직의 규모 등에 비추어 현존하는 통신사와 같이 뉴스를 스스로 취재하여 보도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인적·물적 조직은 정간법상의 "통신"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더러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회사운영실적, 원고가 등록신청서에서 밝힌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등에 비추어 해외의 유용한 정보를 국내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고, 더구나 피고로서는 정기간행물 발행자에 대한 등록 이후에도 정간법에 의한 직권등록취소 또는 등록취소심판청구제도 등을 통하여 발행자의 언론사 운영에 대하여 적절한 감독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등록신청 당시의 인적·물적 조직의 규모에 의하여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의 전파가 어렵다고 보고 원고의 등록신청 자체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간법상 통신의 개념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2. 26.
재판장 판사 구욱서
판사 여남구
판사 김성진

2심 판결문

사건 : 99누3425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뉴스서비스코리아
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기 중
피고, 항소인 : 문화관광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주 교
변론종결 : 1999. 9. 29.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1999. 2. 26. 선고 98구1115 판결
주문 :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가 1998.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정기간행물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

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1. 16. 뉴스제공업, 출판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설립 당시의 명칭은 주식회사 뉴스신디케이트코리아였으나 1998. 3. 31. 그 명칭이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1997. 11. 19.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8. 12. 31. 법률 제5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간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보처장관에게 정간법 시행령 제6조 소정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기간행물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제호 : NSK
-간별 : 매일(종일)
-종별 : 통신
-발행인과 편집인 : 최 (원고 회사 대표이사)
-발행 목적 : 세계화·정보화되는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에서의 해외뉴스 및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뉴스가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 공급되고 있는 뉴스는 몇몇 세계 주요통신의 일반 스트레이트 뉴스에 편향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바, 보다 질 높고 전문화된 해외뉴스를 공급하기 위함. 단계적으로 국내뉴스를 해외시장에도 판매할 계획임
-발행 내용 : 해외 일반뉴스는 물론, 특히 현재 국내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이는 해외의 각 분야별(경제·주식시장·의학·과학·정보통신·컴퓨터·패션·출판·엔터테인먼트·스포츠·사회상 등)과 러시아·일본·중국·미국 각 지역에 관한 보다 전문화·다양화된 뉴스와 정보·칼럼·사진·그래픽 등을 국내 각 언론기관과 국가·사회단체·기업체에 공급하려 함
-보급방법 : 유·무선 통신
-보급지역 : 전국
-주된 보급대상 : 언론사 및 일반
-사용어 : 한국어 및 영어
-유·무가 여부 : 유가
다. 공보처장관은 1998. 1. 21. 이 사건 신청이 ‘정간법 제2조 제7호 및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으로 등록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공보처장관의 소관사무 중 출판·간행물 등에 관한 사무는 정부조직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사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② 원고가 정간법상의 통신으로서의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등록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내용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였고, ② 정간법상 통신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첫째,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둘째, 외국의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셋째,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위 첫째 및 둘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원고가 발행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분야의 해외정보·칼럼·사진 등을 간헐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정간법상의 '통신'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15, 갑 제2~5호증, 갑 제6호증의 1~5, 갑 제7호증, 갑 제8~11, 15호증의 각 1~2,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1~5, 갑 제16, 17호증의 각 1~3의 각 기재와 원심중인 김 ·최 의 각 증언(다만, 원심중인 최 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원심법원의 (주)에어미디어, (주)강원일보사, (주)조선일보사, (주)문화방송, (주)기독교방송, AFP한국지사, AP통신 서울지국, (주)로이터코리아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최 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설립 이후 해외의 뉴스공급업체인 뉴스콤(NewsCom), 뉴욕타임즈 뉴스서비스(NYT News Service & Syndicate), 파이낸셜 타임스 신디케이트(Financial Times Syndication), 러시아의 노보스티 통신사(Ria Novosti) 등과 뉴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외뉴스를 공급받는 한편, 국내의 조선일보사, 중앙일보사, 경향신문사, 한겨레신문사, 대한매일신보사, 문화일보사 등의 언론사들과 사이에 뉴스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중 일부 언론사에는 이미 온라인용 단말기를 설치하여 해외뉴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뉴스제공업을 영위하여 왔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뉴스제공업에 필요한 통신설비 등을 소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주)에어미디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1997. 11. 17. 무선데이타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이용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소정의 이용료를 지급하고, 소외 회사의 설비를 이용하여 국내 또는 해외의 뉴스를 송·수신할 수 있게 되었다.

(3) 소외 회사는 국내의 기존 통신사업자들이 대주주로 참여하여 무선국 및 기지국 설치를 위하여 1996. 5. 1. 설립된 회사로서 총 자본금은 금 18,197,150,000원이며, 1996. 8. 16.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데이타통신여부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이래 기지국 264개소, 교환설비 2식, 빌링 시스템 1식 등의 시설을 갖추고 무선단말기로

문자・숫자 등 각종 정보를 주고받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무선데이타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이다. 소외 회사에서 취급하는 국내에서의 통신은 단말기로부터 송신된 정보를 전국의 기지국에서 수신하여 무선데이타교환기에서 처리한 다음 다시 기지국을 통하여 다른 무선 단말기 또는 호스로 컴퓨터로 송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외국과의 통신의 경우에는 국내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인 (주)데이콤의 보라넷망(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위성지국을 통한 통신위성 또는 해저 광케이블망을 통하여 정보를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 국내외 통신사의 내외신 송수신 방법은 모르스(Morse Code) 송수신 방식에서 무선 텔레타이프 통신방식으로 발전되었다가 송수신량 증가에 따라 유선 텔레타이프 통신방식이 도입되면서 국내 및 해외의 언론사들은 1970년대에 들어서 전화회선 또는 통신위성회선을 통한 유선 텔레타이프 통신방식으로 송수신 방식을 바꾸었다. 현재에도 전파를 이용한 무선통신방식으로 국내 및 국제간 통신이 가능하기는 하나 그 안정성과 정확성이 유선통신방법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져, 유선통신망이 닿지 않는 곳이나 선박방송의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국내의 언론사들이 해외 뉴스 등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무선통신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유선통신시설 또는 위성통신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5) 원고는 국내에서의 해외뉴스 및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 비하여 그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보다 전문화된 해외뉴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 언론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설립된 이후 8명의 직원을 두고 위와 같은 활동을 하여 왔는데, 현재의 인적・물적 조직의 규모 등에 비추어 뉴스를 스스로 취재하여 보도하는 활동보다는 경제・의학・과학・정보통신・컴퓨터・패션・출판・엔터테인먼트・스포츠 등의 전문화된 해외뉴스의 공급과 영상정보 제공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6) 이 사건 신청 후 피고는 원고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단말기 보유 및 설치현황, 소외 회사의 이용계약 체결 사실, 제공받는 서비스의 내용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998. 1. 14. 전화로 원고의 대표이사 최　　에게 통신사 등록이 어려움을 알렸고, 그 달 21. 이 사건 처분을 한 다음 그 달 23. 원고의 유권해석 요구에 응하여 원고의 해외뉴스 제공업은 정간법상 등록대상인 통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존의 원고의 영업내용은 정간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다. 판단

(1) 이유제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대로 처분하는 경우, 단순・반복적인 처분, 긴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문서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신청이 '정간법 제2조 제7호・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으로 등록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이유를 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정간법 제2조 제7호는 '통신'이라는 용어를 정의한 규정이며 정간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통신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요건에 관한 규정이므로, 피고가 밝

힌 처분사유의 문언상 그 내용이 정간법상의 '통신'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구체적 설명의 기재가 없어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로서는 처분사유에 기재된 근거법령과 그 이유를 종합하여, 원고의 신청내용이 정간법 제2조 제7호의 '통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그 등록에 필요한 시설도 갖추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신청을 반려한다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신청내용이 '통신'에 해당되고 그 등록요건도 갖추었음을 주장하여 불복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유제시의무위반 주장은 그 이유 없다.

(2) 정기간행물 등록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간법 제2조 제1호는 "정기간행물"을,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기타간행물"로 정의하고 있고, 제7호는 "통신"을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문화·사회·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발행하는 간행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간법 제7조 제1항 본문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등록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제9호는 "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시설"을 열거하고 있고, 정간법 제6조 제3항은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통신의 발행에 있어서는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파법(1999. 1. 18. 법률 제5637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는 "무선국이라 함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청취를 위하여 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는 "무선설비라 함은 무선전신·무선전화 기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파법 제4조 제1항은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무선국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파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전

파법시행령(1999. 3. 3. 대통령령 제16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의 3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무선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국”을 열거하고 있다.

(나) 정간법 제7조 제1항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물적 시설을 갖추어 이와 같은 사항을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무책임한 정기간행물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언론·출판의 공적 기능과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금지된 허가제나 검열제와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실질적으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제와 같은 제한이 따르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등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등록신청자가 정간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관청에서는 시설 미비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간법 제7조 제1항 제9호에서의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시설”은 소유권에 기한 것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 등 기타 용익관계에 의한 법률원인에 의하여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가23 결정 참조).

(다) 첫째, 원고가 정간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았는지 및 정간법 제6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정간법이 통신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위와 같은 시설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내외의 정치·경제·문화·사회·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발행하는 간행물’로서의 통신의 기능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러한 기능수행에 필수적인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지 못한 무책임한 통신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원고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인 소외 회사의 사이에 무선데이타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전파법 제4조 소정의 무선국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고, 정간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무선국의 허가’에는 전파법 제4조 본문에 의한 정식의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만이 아니라 전파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며, 위 인정 사실과 같이 방대한 설비를 갖추고 통신위성 또는 해저 광케이블망을 통한 무선데이타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그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원고로서는 정간법이 통신 발행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무선통신시설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비록 원고가 국내의 언론사 또는 외국과 직접 송수신할 수 있는 무선통신시설을 갖추고 이에 대한 무선국의 허가를 직접 받지는 아니하였고 원고가 해당 시설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무선데이타 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최근에는 전파를 이용한 직접적 무선통신방식은 그 불안정성과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국내의 언론사들이 해외 뉴스 등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무선통신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유선통신시설 또는 위성통신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정간법이 정한 무선통신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통신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둘째, 원고가 정간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외국의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설립 이후 해외의 뉴스공급업체와 뉴스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공급받아 이를 국내의 언론사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맺은 외국의 회사들은 통신사가 아닌 신디케이트회사 내지 뉴스서비스사에 불과하여 원고가 정간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외국의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계약을 맺은 회사 중 러시아 노보스티 통신사는 이른바 신디케이트사나 뉴스서비스사가 아니라 주요통신사(이른바 뉴스에이전시)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그 계약의 내용이 원고가 외국의 뉴스공급업체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해외뉴스를 공급받기로 하고 있는 것인 이상, 그 회사들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원고는 정간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통신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해외뉴스공급업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 주장과 같이 정간법 소정의 통신계약을 보도·논평 등의 송신과 수신을 쌍방향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만으로 한정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외국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도 그 이유 없다.
(마) 셋째, 원고가 발행하고자 하는 간행물의 내용이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가 발행하고자 하는 통신의 발행내용은 사회 각 부문에 걸쳐 스스로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언론사 등에 뉴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정보와 칼럼 등만을 제공하고, 국내의 기사를 송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의 기사를 수신만 하며, 국내외의 뉴스를 종합적으로 취재·보도·논평하거나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분야의 해외정보 및 칼럼·사진 등을 단건 위주로 판매하는 정보중개업에 불과하므로 정간법 제2조 제7호가 정의하고 있는 “통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정간법 제2조는, 신문의 경우에는 ①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일반일간신문(제2호), ②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에 국한된 사항에 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한 특수일간신문(제3호) 및 기타, ③ 외국어일간신문(제4호), ④ 일반주간신문, ⑤ 특수주간신문(제6호) 등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성격에 걸맞은 각종 시설기준과 이에 따른 규율을 행하고 있으나, 통신의 경우(제7호)에는 규정 자체의 문언만으로 보면, 일반신문에 준하여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

파하기 위한 이른바 ‘일반통신’만을 상정하고 국내외의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에 국한된 사항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한 이른바 ‘특수통신’을 따로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간법 제2조 제7호의 해석상 국내외의 정치·사회·문화·시사 등의 전반에 걸친 모든 부문에 걸친 정보를 다루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과학 등과 같은 특정분야에 관한 정보만을 다루거나, 해외의 정보만을 다루는 형태의 통신사의 설립을 제한하여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위와 같은 특수통신의 경우를 정간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기타 간행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현행 정간법상으로는 일반통신이든 특수통신이든 모두 제2조 제7호 소정의 통신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가 8명 정도의 직원을 둔 소규모의 회사로서 그 인적·물적 조직의 규모 등에 비추어 현존하는 통신사와 같이 뉴스를 스스로 취재하여 보도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인적·물적 조직은 정간법상의 ‘통신’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더러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회사운영실적, 원고가 등록신청서에서 밝힌 발행 목적과 발행 내용 등에 비추어 해외의 유용한 정보를 국내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고, 더구나 피고로서는 정기간행물 발행자에 대한 등록 이후에도 정간법에 의한 직권등록취소 또는 등록취소심판청구제도 등을 통하여 발행자의 언론사 운영에 대하여 적절한 감독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등록신청 당시의 원고의 인적·물적 조직의 규모에 의하여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의 전파가 어렵다고 보고 원고의 등록신청 자체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간법상 통신의 개념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 회사가 영위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뉴스제공업 또는 정보제공업은 정간법상의 통신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신청서에서 위 인정 사실과 같은 발행 목적과 발행 내용을 밝혀 통신을 발해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등록신청을 한 이상 피고로서는 이를 통신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정간법상의 통신에 관한 규정은 현재 우리 나라에 등록된 통신사를 상정하였을 뿐 이른바 뉴스서비스업체 또는 신디케이트업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뉴스제공업체가 나타난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형태의 신종 통신업도 기존의 통신과 그 실질이 다를 바 없고 그 무제한적 난립이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능한 한 현행 법률의 규율 속으로 포섭하여 이들도 등록대상으로 봄으로써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의 시설기준…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영위하는 형태의 뉴스서비스업이나 이 사건 신청에서 원고가 내세운 현재 또는 향후의 사업내용은 모두 정간법상의 통신으로서 등록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 내용이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도 그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0. 20.
재판장 판사 고 현 철
판사 황 정 근
판사 김 인 욱 □

비록 사생활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진실하다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져 위법성이 없으므로 방송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9. 3. 16.자 결정 (99카합451)
서울고등법원 1999. 5. 20.자 결정 (99라108)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국제크리스천연합 신도인 김 씨가 국제크리스천연합 목사 겸 총재인 정 의 성 관련비리 및 교리상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방영할 예정이었던 SBS-TV「그것이 알고 싶다」프로그램에 대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위 방송내용은 비록 사생활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취재 및 방송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피신청인이 그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SBS는 1997년 1월 7일 8시 뉴스를 통해 '탈퇴신도 납치극' 제하로 국제크리스천연합 신도들에 의한 전 신도의 납치사건을 방송하였고, 이어 8일에도 '종교집단 성파문'이라는 제하로 국제크리스천연합의 총재 겸 목사인 정 의 성 관련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으로 보도를 하였다. 또한 정 의 성 관련비리 및 교리상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내용을 시사고발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방영할 예정이었는데, 신청인은 이와 관련 방송, 광고 및 통신, 인터넷 등에 게시를 금지하는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1심에서도 "취재경위와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진실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종교지도자가 여신도들과 집단적인 성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사회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다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뉴스 등을 통해 이미 보도되었으므로 위 프로그램 내용을 방송한다고 하더라도 중대하고

도 현저히 회복 곤란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1심 결정문

사건 : 99카합451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인(선정당사자) : 김
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신청인 : 주식회사 서울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의 2
대표이사 윤 세 영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강 훈, 서 현, 홍지옥, 김재호, 최영로, 최혜리
주문 :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가.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방송프로그램을 재방송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판매, 대여하거나 또는 이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별지 제2목록 기재의 내용 및 별지 제3목록 기재 자료를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하거나 이를 편집, 방송, 광고하여서는 아니되며, 다. 별지 제2목록 기재의 내용이 포함된 책 및 정기간행물, 보도자료, 속보, 성명서 등 유인물, 광고지, 기타 출판물 등의 인쇄물을 각 편집, 제작, 발행, 발매, 반포하거나 또는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의 다. 항의 경우 각 그 인쇄물에 대한 피신청인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선정당사자, 이하 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3. 만약 피신청인이 제1항을 각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은 각 신청인에게 각 그 위반한 행위 1건에 대하여 각 금 1억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구한다.
이유 :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선정자 정 은 전국에 15만명 이상의 신도들로 구성된 국제크리스천연합이라는 종교단체의 목사 겸 총재이고 신청인을 비롯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위 종교단체의 신도들인 사실, 피신청인은 방송매체를 운영하면서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별지 제2목록 기재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인 'SBS 8시뉴스'에서 1999. 1. 7. 및 8. 각 20:00경부터 이를 방영하였고, 위 정 의 성 관련비리 및 교리상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시사고발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를 방영할 예정인 사실이 소명된다.
2. 명예,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금지청구 등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먼저, 피신청인이 방영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방송프로그램 중 별지 제2목록 기재의 내용은 모두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것인데, 피신청인이 위 제1목록 기재의 방송프로그램을 재방송하거나 위 제2목록 기재의 내용을 자료로 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편집·방송·광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신청인을 비롯한 선정자들의 명예와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할 염려가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

여 신청취지 제1, 2항 기재(다만 뒤에서 보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금지청구부분은 제외)와 같은 가처분결정 및 그 불이행시에 대비하여 신청취지 제3항 기재와 같은 간접강제의 이행을 명하는 결정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언론기관의 방송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는 법원에 대하여 사전에 방송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한편 이와 같은 사전금지는 비록 헌법상 금지되고 있는 검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된다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님이 명백한 때이거나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서 가해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침해행위의 태양,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의 관계 및 사회적 지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가 중대하고도 현저히 회복 곤란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방송사 소속의 프로듀서인 신청외 남　　은 1998. 10.경 한 여대생으로부터 신청외 국제크리스천연합의 총재인 위 정　　이 자신을 재림예수라고 하며 여신도들과 집단적으로 성관계를 맺어왔다는 등의 제보를 받고 컴퓨터통신을 통하여 그 제보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자신의 여자친구가 위 정명석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등의 내용을 된 글을 올린 신청외 김○○(위 국제크리스천연합의 전 신도임)을 만나서 확인을 한 결과 위 제보내용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한 후 약 5개월여 동안 본격적인 취재를 하여 온 사실, 위 남　　과 그의 동료직원들은 위 취재과정에서 위 정　　과 집단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피해자 11명,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직접 피해자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 정　　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 7명 등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인터뷰하여 위 제보내용을 확인한 사실, 그러던 중 1999. 1. 6. 위 국제크리스천연합의 신도이던 신청외 황○○이 위 국제크리스천연합의 신도들에 의하여 납치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되자, 피신청인 방송사는 같은 달 7. 20:00경부터 방영된 'SBS 8시뉴스'라는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에서 '탈퇴신도 납치극'이라는 제하의 위 황○○의 납치사건을 보도하였고, 같은 날 문화방송에서도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같은 달 8. 위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에서 '종교집단 성파문'이라는 제하에 위 정　　의 성 관련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의 보도를 한 사실, 한편 위 남상문 등은 위 취재과정에서 신청인 측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위 정　　과의 인터뷰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위 정　　은 피신청인의 위 제1차 방송이 나간 직후인 1999. 1. 8. 해외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정　　과의 인터뷰는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위 국제크리스천연합의 총무인 선정자 정　　으로부터 위 정　　의 비리 등을 부인하는 진술만 들었던 사실 등이 소명되는 바, 위 소명사실에 나타난 취재경위와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별지 제2목록 기재의 내용이 진실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종교 지도자가 그를 추종하는 여신도들과 집단적인 성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사회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다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피신청인 등의 방송사에서 위 내용이 이미 보도된 터에 설령 피신청인 위 별지 제2목록 기재의 내용을 방송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을 비롯한 선정자들이 중대하므로 현저히 회복 곤란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초상권 및 대화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금지청구 등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다음으로, 위 남 이 선정자 김 , 김 , 김 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위 선정자들이 위 남 과 면담하는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녹음하였는데, 이를 자료로 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이를 편집·방송·광고를 하게 되면 위 선정자들의 초상권과 대화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할 염려가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제3목록 기재의 내용을 자료로 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 및 그 불이행시에 대비하여 신청취지 제3항 기재와 같은 간접강제의 이행을 명하는 결정을 구한다고 주자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방송사 소속의 위 남 프로듀서는 선정자 계 , 김 , 김 , 김 이 찾아와 피신청인의 1999. 1. 7.자 및 그 다음날의 방송내용에 대하여 항의하자 장래의 법적 분쟁에 대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그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위 선정자들이 위 남 과 면담하는 장면 등을 무단으로 촬영·녹음한 사실이 소명되는 바, 위 남 이 위 선정자들은 촬영한 경위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촬영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제3목록 기재의 내용을 자료를 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금지 등을 구하기 위하여는 위 선정자들이 입을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에서 방영할 예정인 신청인 정 의 비리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방송대본(소을 제10호증)에는 별지 제3목록 기재의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신청인 방송사는 위 정 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의 방영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의 분쟁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 별지 제3목록 기재의 녹화테이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그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16.
재판장 판사 길 기 봉
판사 이 건 배
판사 고 창 후

2심 결정문

사건 : 99라108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인(선정당사자), 항고인 : 김

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신청인, 상대방 : 주식회사 서울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의 2
대표이사 윤 세 영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강 훈, 서 현, 최혜리
심문종결 : 1999. 4. 29.
원심결정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9. 3. 16.자 99카합451 결정
주문 : 신청인(선정당사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신청인(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가.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방송프로그램을 재방송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판매, 대여하거나 또는 이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별지 제2목록 기재의 내용 및 별지 제3목록 기재 자료를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하거나 이를 편집, 방송, 광고하여서는 아니되고, 다. 별지 제2목록 기재의 내용이 포함된 책 및 정기간행물, 보도자료, 속보, 성명서 등 유인물, 광고지, 기타 출판물 등의 인쇄물을 각 편집, 제작, 발행, 발매, 반포하거나 또는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의 다. 항의 경우 각 그 인쇄물에 대한 피신청인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선정당사자, 이하 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3. 만약 피신청인이 제1항을 각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은 각 신청인에게 각 그 위반한 행위 1건에 대하여 각 금 1억원씩을 지급하라.
항고취지 :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함.
이유 : 1. 원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2.항과 같이 원심 결정의 일부를 고치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결정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정정 및 추가 부분
가. 원심결정의 제14행 중 '국제크리스쳔연합'을 '국제크리스천연합'으로 고치고, 제3쪽 제3행 중 '방영하였고,'라는 부분 다음에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으며'를 삽입하고 제4행 중 '방영할 예정인'을 1999. 2. 27.에 방영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 신청이 제기됨으로써 그 방영을 연기하였다가 원심결정이 난 후인 같은 해 3. 20. 23:00경에 방영한 것으로 고친다.
나. 원심결정의 제3쪽 제15행부터 제4쪽 제6행까지를 삭제하고 그 대신 ' 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별지 제2목록 기재의 내용은 진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방송 등을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추가하여 설시한다.
다. 원심결정의 제5쪽 제11행 중 '소명되는 바'를 '소명된다.' 고치고 그 부분 다음부터 제6족 첫 행까지를 삭제하고 그 대신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입 신도 수가 15만명이 넘는 종교단체의 지도자인 선정자 정 의 여신도들과 사이의 비윤리적인 성

관계 및 그릇된 성겨 해석이나 교리 상의 문제 등은 신도나 그 가족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할 것이므로 그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검증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별지 제2목록 기재의 방송내용은 비록 사생활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피신청인 측의 위 취재 및 방송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방송은 위 정 이나 신도인 나머지 선정자들을 해할 악의로서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별지 제2목록 기재의 내용은 진실에 부합될 개연성이 많고 또한 피신청인은 여전히 그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고 있는 점이 소명되고, 위 취재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따라서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피신청인이 별지 제2목록 기재의 내용이 포함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미 방영하였거나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는 것은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 및 위 정 을 포함한 선정자들로서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바로 신청취지와 같은 방송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를 추가하여 설시한다.

라. 원심결정의 제7쪽 제3행 중 '방영할 예정인'을 '방영된'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 및 선정자들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0.

재판장 판사 김 재 진

판사 박 순 성

판사 최 규 홍 □